



World Para
Athletics

세계장애인육상

규칙 및 규정

2023

2023년 2월





www.WorldParaAthletics.org

 [@ParaAthletics](https://twitter.com/ParaAthletics)

 [ParalympicSport.TV](https://www.youtube.com/ParalympicSport.TV)

 [/ParaAthletics](https://www.facebook.com/ParaAthletics)



세계장애인육상 규칙 및 규정 2023

2023년 2월

해당 규칙 및 규정의 변경

해당 규칙 및 규정들은 세계장애인육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예시: 세계육상연맹의 규정변경 혹은 등급분류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장애인육상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

세계장애인육상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은 본 규칙 및 규정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역본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홈페이지 내 등급분류 게시판에서 확인가능

<http://www.paralympic.org/athletics/classification/rules-and-regulations>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안내사항

1. 본 규칙 및 규정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국제업무전문인력에 의해 번역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전문적인 번역가가 아니기에 직역, 오역,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본 규정집은 임의 수정 및 출판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트 A – 일반	8
1 정의	8
2 일반 규정	10
2.1 범위 및 적용	10
2.2 해석	11
2.3 관리	11
2.4 규칙의 인쇄	11
2.5 규칙의 개정	12
파트 B – 세계장애인육상 규정	13
3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	13
3.1 대회 레벨	13
3.2 대회 주기	14
3.3 대회 운영(관리)	14
3.4 대회 엔트리	15
3.5 결과 인정	15
3.6 대회 중 광고 및 전시	16
3.7 반도박(Anti-gambling) 요건	16
4 자격 & 등급분류	16
4.1 자격 요건 – IPC 경기	16
4.2 자격 요건 –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	16
4.3 자격 요건 – 세계장애인육상 승인 대회	17
4.4 참가(Qualification) 요건	17
4.5 성별	18
4.6 등급분류	18
5 반도핑	19

5.1	반도핑 요건.....	19
6	의료(의학)	19
6.1	의료(의학) 요건.....	19
6.2	의료(의학) 책임.....	19
6.3	의료(의학) 철회 요청.....	20
6.4	의료 보험	21
6.5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의 의료 및 안전 서비스.....	22
6.6	괴롭힘.....	22
6.7	자율신경반사부전.....	22
6.8	저산소(Hypoxic) / 고산소(hyperoxic) 챔버 혹은 텐트	23
6.9	온도	23
6.10	금연.....	23
7	(과학) 기술 및 장비.....	23
7.1	기본 원칙	23
7.2	(과학)기술 및 장비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	23
7.3	금지된 (과학)기술.....	24
8	징계 규칙	25
8.1	IPC 윤리규정 및 세계장애인육상 행동강령	25
9	소청&항소.....	25
9.1	경기구역(Field of play)	25
9.2	반도핑.....	25
9.3	등급분류.....	26
	파트 C – 세계장애인육상 경기규칙.....	27
	섹션 I – 국제 임원	27
	규칙 1: 임원의 선임.....	27
	규칙 2: 임원 설명 및 임무	28

2.1	기술대표.....	28
2.2	의무대표.....	29
2.3	도핑 컨트롤 대표.....	31
2.4	국제기술임원.....	31
2.5	국제로드코스 계측원.....	32
2.6	국제스타터와 국제사진판정심판원.....	32
2.7	상소심판원단.....	33
2.8	경기대회 임원.....	34
2.9	경기본부장.....	36
2.10	대회총무.....	37
2.11	기술총무.....	38
2.12	대회연출총무.....	39
2.13	심판장(Referees).....	40
2.14	심판원(Judges).....	44
2.15	감찰원(달리기 및 휠체어 레이싱 경기 종목)(Umpires).....	45
2.16	계시원, 사진판정심판원 및 자동무선계시장치심판원.....	46
2.17	스타트 코디네이터, 스타터 및 리콜러.....	47
2.18	스타터 보조원.....	49
2.19	주회 기록원.....	49
2.20	기록정보처리원 및 기술정보센터(TIC).....	50
2.21	장내사령.....	52
2.22	풍속측정원.....	53
2.23	과학계측심판원.....	53
2.24	소집실 심판원.....	54
2.25	광고위원장.....	56
2.26	수석 등급분류사.....	56
2.27	국제 등급분류사.....	56

섹션 II – 일반 경기 규칙.....	57
규칙 3: 육상경기 시설.....	57
규칙 4: 연령, 성별 분류 및 혼성 대회.....	57
규칙 5: 엔트리(참가신청).....	60
규칙 6: 경기의복, 경기화 및 선수표(배번표), 인공기관 및 보조기구, 아이 마스크, 가이드끈(Tether), 장비 및 헬멧에 대한 불이행.....	63
규칙 7: 선수에 대한 조력.....	78
규칙 8: 실격의 결과.....	88
규칙 9: 다른 스포츠 등급에서의 경기 - 자격요건.....	89
규칙 10: 점검 및 계측.....	90
규칙 11: 기록의 유효성.....	90
규칙 12: 비디오 기록.....	91
규칙 13: 채점(Scoring).....	92
섹션 III – 트랙 경기.....	93
규칙 14: 휠체어 및 레이스런닝 프레임 요건.....	93
규칙 15: 트랙 계측.....	99
규칙 16: 스타팅 블록.....	100
규칙 17: 스타트.....	103
규칙 18: 레이스.....	110
규칙 19: 피니시.....	117
규칙 20: 게시 및 사진판독.....	118
규칙 21: 트랙경기에서의 조편성, 추첨 및 자격경기.....	123
규칙 22: 동순위의 해결.....	136
규칙 23: 릴레이 레이스.....	137
섹션 IV – 필드 경기.....	145
규칙 24: 총칙.....	145
A. 수직도약 경기.....	157

규칙 25: 총칙	157
규칙 26: 높이뛰기	162
B. 수평도약 경기	167
규칙 27: 총칙	167
규칙 28: 멀리뛰기	173
규칙 29: 세단뛰기	176
C. 입식 투척 경기	179
규칙 30: 총칙	179
규칙 31: 포환던지기	189
규칙 32: 원반던지기	192
규칙 33: 창던지기	201
D. 좌식 투척 경기	208
규칙 34: 총칙	208
규칙 35: 좌식 투척 요건	211
규칙 36: 좌식 투척 테크닉, 리프팅 및 실패	215
규칙 37: 곤봉던지기	218
섹션 V – 실내경기	221
규칙 38: 실내경기에 적용되는 실외경기 규칙	221
규칙 39: 실내 경기장	221
규칙 40: 직선 트랙	222
규칙 41: 타원형 트랙 및 레인	223
규칙 42: 타원형 트랙에서의 스타트와 피니시	225
규칙 43: 트랙경기의 조편성 및 레인 추첨 및 참가 라운드	227
규칙 44: 스파이크 길이	231
규칙 45: 릴레이 레이스	231
규칙 46: 높이뛰기	232

규칙 47: 수평도약 경기	232
규칙 48: 포환던지기	233
섹션 VI - 로드레이스	235
규칙 49: 로드레이스	235
섹션 VII - 항의(소청) 및 상소(항소).....	244
규칙 50: 항의(소청) 및 상소(항소).....	244
섹션 VIII - 세계기록 및 지역기록	250
규칙 51: 세계기록 및 지역기록.....	250
섹션 IX - 메달 및 수료증(상장) 수여	257
규칙 52: 메달 및 수료증(상장) 수여.....	257
부록 1	259
세계장애인육상 스포츠 등급별 용기구 무게.....	259
부록 2	264
등급분류 체계표 1 - 패럴림픽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	264
등급분류 체계표 2 - 지역선수권대회 및 지역 대회	265
부록 3	266
세계장애인육상 최대허용기립높이 ("MASH") 규정.....	269

파트 A - 일반

1 정의

등급분류(Classification): 선수의 장애가 각 구체적인 종목 또는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스포츠 등급을 분류하는 것(IPC 선수 등급분류 규정에 명시). 이 사항을 “선수 등급분류”라고도 지칭한다.

대회(Competition): 하나의 운영주체 하에 함께 시행되는 개인 경기 시리즈.

대회 의료 디렉터(Competition Medical Director):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 대회를 위해 세계장애인육상의 ‘대회 의료 서비스 범위’를 담당하며, LOC가 임명한 사람.

대회 규칙(Competition Rules): 본 규정 파트C에 작성된 세계장애인육상의 대회 규칙.

국제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IPC의 장애인 종목에 참여하는 장애 선수의 종목별 세계적 대표자로, IPC가 인정한 스포츠 연맹이다. IPC 및 IOSD는 특정 장애인 스포츠의 국제 연맹의 역할을 한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IP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대회(IPC Competitions): 세계장애인 육상 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지역 선수권 대회.

IPC 경기(IPC Games): 패럴림픽경기대회 및 파라판 아메리칸 대회.

IOSD: 장애인 스포츠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port for the Disabled), IPC가 IPC의 세부 장애 그룹의 대표 단체로 인정한 독립적인 기관(예:스페셜올림픽, IBSA)

LOC: 현지 조직 위원회 - IPC대회 혹은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세계장애인육상이 임명한 단체.

LOC 수석 의사(LOC Chief Medical Doctor): IPC 대회 및/또는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임명한 의사.

국가 연맹(National Federation): 국제 연맹의 국가 회원.

NPC: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 해당 국가 혹은 영토 내 장애인 선수들을 유일하게 대표하는

IPC의 국가 회원. 이들은 IPC의 국가 회원이다.

보조기(Orthosis): 해부학적으로 온전하지만 손상된 가동범위, 근력 혹은 불균형한 다리 길이를 기능하는데 있어 보조해주기 위한 정형외과적 기기 혹은 기관.

파라 스포츠(Para sport): IPC 선수 등급분류 코드에 의해 다스려지며 IPC에 의해 파라 스포츠로 인정받는 스포츠.

인공기관(Prosthesis): 트라우마, 질병 혹은 선천적 조건에 의해 없는 신체 부분을 대체하는 인공기관.

심판장(Referee):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에서 심판을 보기 위해 임명된 사람.

규정(Regulations): 해당 규칙 파트B에 명시된 세계장애인육상 규정.

규칙(Rules): 일반사항, 세계장애인육상 규정 및 세계장애인육상 경기 규칙으로 구성된 세계장애인육상 규칙 및 규정.

스포츠 등급(Sport Class): 선수가 파라 스포츠에 요구되는 세부 임무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관련하여 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정의된 대회 카테고리.

스포츠 등급 상태(Sport Class Status): 선수가 선수 평가에 착수되는 것이 요구 및/또는 등급분류 소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범위를 가리키기 위한 스포츠 등급에 적용된 명칭.(예:N/R/NE)

WADC: 세계 반도핑 규정

세계육상연맹(World Athletics): 기존 국제육상연맹(IAAF)

세계육상연맹 규칙(World Athletics Rules): 기존 국제육상연맹 대회 규칙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

WPA: 세계장애인육상.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World Para Athletics Approved Competitions): 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승인된 장애인을 위한 국제, 국내, 보증 대회 및 세계육상연맹 보증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선수 라이선스(World Para Athletics Athlete License): IPC 선수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따라 선수 및 가이드러너들이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IPC에 의해 발급된 라이선스.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World Para Athletics Recognised Competitions): IPC 경기, IPC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인정 및 승인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World Para Athletics Sanctioned Competitions):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및 기타 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결정된 세계장애인육상 국제대회.

세계장애인육상 기술대표(World Para Athletics Technical Delegate):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를 모니터 및 감독하며 모든 기술 운영이 해당 규칙에 따르는지 보장하기 위해서 세계장애인육상에서 임명한 인물.

2 일반 규정

2.1 범위 및 적용

- 2.1.1 본 세계장애인육상 규칙 및 규정은 세계장애인육상 규정(규정) 및 세계장애인육상 대회 규칙(대회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규정/대회규칙을 합쳐 '본 규칙'으로 지칭).
- 2.1.2 본 규칙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서 필수적이다.
- 2.1.3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의 모든 참가자(선수 및 보조 인력, 트레이너, 매니저, 통역관, 팀 스태프, 임원, 의료진 또는 준 의료 인력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는 참가 조건으로 본 규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2.1.4 세계장애인육상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은 본 규칙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는 세계장애인육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한장애인육상연맹 등급분류 게시판에 번역본 게시).
- 2.1.5 IPC 핸드북은 장애인 육상 종목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 2.1.6 본 규칙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안들은 IPC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될 것이다.
- 2.1.7 본 규칙은 2020년 2월1일부터 유효하다.

2.2 해석

- 2.2.1 '규정(regulation)에 대한 언급은 본 규칙 파트 B에서 언급된 규정을 의미하며, '규칙(rule)에 대한 언급은 본 규칙 파트 C에서 언급된 규칙을 의미한다. '부록(appendix)에 대한 언급은 본 규칙에서의 부록을 의미하며, 본 규칙에서 사용된 대문자로 된 용어들은 본 규칙의 '정의'섹션에 의미가 적혀 있다.
- 2.2.2 본 규칙의 여러 조항에 주석이 달린 모든 코멘트는 본 규칙을 해석하는데 있어 사용되어야 한다.
- 2.2.3 본 규칙에 사용된 제목들은 편의상의 이유로만 사용되며, 참조하는 규정(들) 혹은 규칙(들)과 별개라는 의미가 아니다.
- 2.2.4 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선수"와 관련된 모든 규정에는 "가이드러너"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본 규칙 파트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2.5 "그","그의","그를"이라는 모든 용어는 "그녀","그녀의","그녀를"을 뜻하기도 한다.

2.3 관리

- 2.3.1 IPC는 국제 연맹의 역할을 하며 장애인육상 종목을 관리한다. "세계장애인육상"이라는 이름 하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장애인육상"이라는 용어는 본 규정 및 규칙에서 IPC로 읽혀야 하며 반대로도 마찬가지로(IPC를 세계장애인육상으로).

2.4 규칙의 인쇄

- 2.4.1 본 규칙은 IPC의 저작권 재산이며 NPC, 선수, 임원 및 세계장애인육상의 공식 지위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출판되었다. 본 규칙은 IPC가 규칙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에 따라, 번역본에서 저작권을 IPC에 할당하여야 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단체에 의해 재인쇄 및 번역이 될 수 있다. 기타 타 단체들은 재인쇄, 번역, 혹은 출판하기 전에 IPC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4.2 본 규칙의 영문판은 해석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판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2.5 규칙의 개정

- 2.5.1 각 패럴림픽경기대회 종료 이후, IPC는 IPC 편람(IPC 홈페이지에 위치)에 따라 NPC 및 유사 IOSD들을 통해 본 규칙의 검토에 들어간다. 모든 개정은 관련 패럴림픽경기대회를 시행하기 전 두번째 시즌의 시작 때 시행된다.
- 2.5.2 본 규칙은 예를 들어 등급분류 관련 내용의 변경, 세계육상 규칙 혹은 세계장애인육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IPC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파트 B - 세계장애인육상 규정

3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

3.1 대회 레벨

3.1.1 세계장애인육상은 규모, 크기, 성격에 따라 각 대회에 적용 가능한 요건을 결정한다.

3.1.2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 레벨은 다음과 같다:

a) IPC 경기(Games)

- 패럴림픽경기대회(Paralympic Games)
- 판아메리칸 대회(Parapan American Games)

b) IPC 경기(Competitions)

- 세계장애인육상 선수권대회
- 세계장애인육상 지역 선수권대회

c)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

-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 기타 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결정된 국제대회

d)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

- 장애인육상을 위한 국제대회
- 장애인육상을 위한 지역대회
- 세계육상/NF 보증대회(세계육상 규칙에 따라 정의된)
- 기타 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결정된 모든 장애인육상 대회

3.2 대회 주기

3.2.1 IPC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이상,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의 주기는 다음과 같다:

주기	대회
1년차	세계장애인육상 선수권대회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2년차	세계장애인육상 지역 선수권대회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3년차	세계장애인육상 선수권대회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4년차	패럴림픽 경기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지역 선수권대회 세계장애인육상 그랑프리 대회 세계장애인육상 월드컵

3.3 대회 관리

3.3.1 IPC는 모든 IPC 경기를 관리한다.

3.3.2 세계장애인육상은 모든 IPC 대회와 세계장애인육상 승인 대회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승인 대회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세계”, “지역”, 그리고 “세계장애인육상”이라는 단어는 세계장애인육상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모든 장애인육상 경기에 연결되어 사용될 수 없다. 추가적으로, IPC는 스포츠 혹은 모든 IPC 활동, IPC 모토, 깃발 및 국가(anthem), 패럴림픽 문양(쓰리 아지토스 디자인) 및 기타 모든 상표권, 로고 그리고 패럴림픽 무브먼트 에 사용될 지표들에 사용되는 용어 “Paralympics”, “Paralympic”, “Para Athletics”에 대한 모든 권리는 IPC가 소유한다.

3.3.3 세계장애인육상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에 본 규칙을 시행할 것이다. 세계장애인육상은 다른 인원 혹은 독립체(예를 들어 임원 혹은 LOC)에 할당되지 않은 모든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3.3.4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의 경기와 경기 포맷은 대회 규칙에 설명되어 있다.

3.4 대회 엔트리

3.4.1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엔트리는 본 규칙과 세계장애인육상 홈페이지에 명시된 엔트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

3.4.2 IPC 경기에 대한 엔트리 기준과 최소자격기준은 IPC 홈페이지에 서술된 자격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3.4.3 IPC 대회와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대한 엔트리 기준과 최소자격기준은 IPC 홈페이지에 서술된 자격 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3.5 결과 인정

3.5.1 세계장애인육상은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서 적합한 선수(규정 4에 따른)에 의해 획득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인정한다:

3.5.1.1 세계장애인육상 랭킹;

3.5.1.2 세계장애인육상 기록;

3.5.1.3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 NPC 출전권(슬롯)의 할당; 그리고/또는

3.5.1.4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대한 엔트리 참가자격기준 달성.

3.6 대회 기간 동안 광고 및 전시

- 3.6.1 IPC 경기에서의 광고 요건은 IPC가 결정한다.
- 3.6.2 세계장애인육상 유니폼 및 장비 광고규정(세계장애인육상 홈페이지에 위치)은 IPC 경기에서 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허용되는 광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기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IPC경기 제외), IPC와 IPC의 승인 아래 관계된 LOC가 적용 가능한 광고 요건을 채택한다.

3.7 반도박 요건

- 3.7.1 IPC는 반도박 규정, 정책, 강령 혹은/그리고 요건을 수시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의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된다.

4 자격 & 등급분류

4.1 자격 요건 - IPC 경기

- 4.1.1 IPC 경기의 자격 요건은 IPC에서 결정한다.

4.2 자격 요건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

- 4.2.1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 대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아래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 4.2.1.1 IPC 선수 등록 및 라이선싱 프로그램(IPC 홈페이지에 명시)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IPC 선수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 4.2.1.2 국제 등급분류를 받았으며, 세계장애인육상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부적합(NE) 등급을 제외한 스포츠 등급이 지정되어 있는 자(예:C, R);
 - 4.2.1.3 NPC 혹은 관련 책임이 NPC에 의해 위임되었을 경우 NF에 소속된 자. 어느 경우에서 든 NPC는 IPC 소속 구성원이어야 함

- 4.2.1.4 IPC 국적 정책(IPC 홈페이지에 기재)의 국적 요건을 충족하는 자;
- 4.2.1.5 선수의 나이가 IPC 대회 혹은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가 열리는 해 12월 31일에 14세 이상이어야 함
- 4.2.1.6 실격,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4.2.2 IPC 대회와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이드러너는 조항 4.2.1.2를 제외한 위에 나열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3 자격 요건-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

- 4.3.1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가이드러너는 관련 조직위원회 혹은 운영주체가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4 출전 요건

- 4.4.1 위에 언급된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는 기준기록, 참가자격 및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 관련 적용 가능한 스포츠 엔트리 규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4.5 성별

- 4.5.1 아래의 규정 4.5.3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선수는 남자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 4.5.1.1 법적으로 남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 4.5.1.2 본 규칙에 따라 참가 자격이 있는 경우.
- 4.5.2 아래의 규정 4.5.3에 따라,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선수는 여자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
- 4.5.2.1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 4.5.2.2 본 규칙에 따라 참가 자격이 있는 경우.
- 4.5.3 세계장애인육상은 IOC 트랜스 젠더 가이드라인(IOC에 의해 수시로 개정됨) 및 적용 가능한 세계장애인육상 규정에 따라 트랜스 젠더 선수 관련 사건을 처리할 것이다.
- 4.5.4 법률상 제 3의 성별로 구분되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IPC가 모든 적용 가능한 세계장애인육상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4.6 등급분류

- 4.6.1 세계장애인육상은 국제 등급분류가 제공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를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대회에서 등급분류는 세계장애인육상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대회 시작 전에 실시될 것이다.
- 4.6.2 WPA가 다르게 판단하지 않는 이상, 세계장애인육상 등급분류 패널에 의해 평가를 받지 않은 선수 또는 등급분류사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은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참가할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5 반도핑

5.1 반도핑 요건

5.1.1 IPC 반도핑 코드(IP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는 모든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적용된다.

5.1.2 세계장애인육상 승인대회는 관련 주최 기관의 반도핑 규칙 및 WADC 국제 표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록이 수립된 대회에서 도핑 컨트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테스트는 대회 시작 첫날 전에 사전에 잡혀져 있어야 한다. 세계기록을 깬 선수가 테스트에 선택되는 것은 요구사항이 아니다.

대회에서 기록이 깨졌으나 사전에 도핑 컨트롤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6 의료(의학)

6.1 의료(의학) 요건

6.1.1 IPC 의료 코드는 모든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적용된다.

6.1.2 주최 기관의 의료 및 안전 규칙은 세계장애인육상 승인 대회에 적용된다.

6.2 의료(의학) 책임

6.2.1 IPC 의료 코드에 따라,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와 의료감독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6.2.2 IPC 경기, IPC 대회 혹은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선수가 관련 대회에서 등급분류의 참여와 관련 결과로 얻는 손실, 부상 또는 손상에 대하여 법이 허용되는 정도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IPC와 세계장애인육상은 해방(책임이 없다)된다.

- 6.2.3 위의 규정 6.2.1 및 6.2.2에도 불구하고, NPC는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 참가 전에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최상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6.2.4 모든 NPC는 선수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의료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NPC가 IPC 경기, IPC 대회 혹은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 참가하는 각 선수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 평가를 주최하고 NPC가 각 대회에 팀 의사를 선임하도록 권장한다.
- 6.2.5 본 규칙에 따라, 의료 대표는 기타 선수, 임원, 관중의 안전 및 대회에서의 위험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 6.2.6 선수, 임원 및 관중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관련 대회의 결과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절대로 미쳐서는 안된다.

6.3 의료 철회 요청

- 6.3.1 모든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 세계장애인육상 공식 의료 철회요청 신청서(세계장애인육상 홈페이지에 위치)는 최종 엔트리 숫자 제출 후 관련 대회에서의 선수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하기 위해 대회 엔트리 요건을 통해 판단하여 세계장애인육상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 6.3.2 의료 철회요청 신청서는 선수와 선수의 소속팀 의사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팀 의사가 없는 경우, 타 팀에서 본인들의 팀 의사를 사용함을 허용해줄 경우 다른 팀 의사가 서명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LOC 수석 의사가 서명할 수 있다.

- 6.3.3 의료 철회요청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작성되어야 한다.
- 6.3.4 모든 의료 철회요청 신청서는 최소 대회 중 관련 경기 시작 24시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예를 들어 24시간 내에 급성 부상 혹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 철회요청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 6.3.5 의료 대표 또는 IPC/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선임된 사람이 의료 철회요청이 승인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며 이를 기술대표에게 알린다. 이러한 결정은 소청 및 항소가 불가능한 최종 결정이다.
- 6.3.6 상황이 허가될 경우, 기술대표(TD)는 선수를 출발 목록에서 제외하고 출발 목록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6.4 의료 보험

- 6.4.1 NPC는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아래 규정 6.4.2에 따라)에서 대회장까지의 이동을 포함하여 각 대표단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보험 적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NPC는 필요할 경우 세계장애인육상에 보험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6.4.2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의 현장의료, 응급차, 응급처치 서비스 및 의료보험 범위의 보장은 LOC의 책임이다. IPC 의료 위원회는 각 대회에서 합당한 안전 조치 및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지속해서 타당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고 지속해서 업데이트 할 것이다.

6.5 IPC 경기,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의 의료/안전 서비스

- 6.5.1 LOC는 관련 호스트 협약에 따라 IPC 경기 내 의료 및 안전 서비스 실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 6.5.2 LOC는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 IPC 선수들을 위한 경기 내 의료 서비스의 범위(IPC와 LOC간의 호스트 조약의 일부를 구성하는)에 따라 의료 및 안전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책임이 있다.
- 6.5.3 대회 의료 담당자는 LOC에 의해 선임되며, 이들은 각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를 준비하고 관련 대회 동안 의료 서비스 및 안전 요건을 조직화 한다. IPC 의료 및 과학 담당자는 모든 의료 및 안전 관련사항에 대해 세계장애인육상과 대회 의료진 사이의 연락 담당관이 될 것이다. IPC 의료 및 과학 담당자는 그의 재량에 따라 특정 인물 혹은 인물들에게 특정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 6.5.4 모든 IPC 대회 및 세계장애인육상에 의해 결정된 경기들에서 세계장애인육상은 기타 대회 관련 의료 및 안전 규칙의 수행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의료 담당자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6.6 희롱(괴롭힘)

모든 개인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폭력 그리고/또는 희롱은 금지된다. IPC 행동강령과 우발적 폭력 및 학대에 관한 정책(IPC 홈페이지에 위치)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 대회에 적용된다.

6.7 자율신경반사부전(Autonomic dysreflexia)

자율신경반사부전에 관한 IPC 정책(IPC 홈페이지에 위치)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 적용된다.

6.8 저산소/산소과잉 챔버 혹은 텐트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서 저산소 혹은 산소과잉 챔버/텐트의 사용은 금지된다.

6.9 온도

IPC 온도정책(IPC 홈페이지에 위치)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 적용된다.

6.10 흡연 금지

흡연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 경기장에서 금지된다.

7 기술 및 장비

7.1 기본 원칙

7.1.1 IPC 스포츠 장비 정책(IPC 홈페이지에 위치)은 모든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 적용된다. 본 정책에 명시된 원칙들은 스포츠 특정 보철 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하지만 독점적으로는 아닌) 적용된다.

7.2 기술 및 장비의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

7.2.1 세계장애인육상은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서 기술 및 장비의 사용을 모니터링 하여 스포츠 장비에 관한 IPC 정책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해당 예시들은 세계장애인육상의 의견에 따라 본 규칙, 기술 및 장비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2.1.1 투척 경기에서 릴리스(release)를 비정상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제공;

7.2.1.2 비정상적인 걸음거리(stride length)를 제공;

7.2.1.3 선수가 아래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선수들에게 상업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7.2.1.3.1 기술 및/또는 장비가 최종 완제품 형태다;

7.2.1.3.2 제조사가 해당 기술 및/또는 장비의 시장 출시일을 알렸으며, 이 날짜가 선수가 사용 요청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여야 한다.

7.2.1.3.3 제조사가 해당 장비/기술에 대한 정보를 개시하였다.
그리고/또는

7.2.1.4 해당 기술/장비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선수보다 종합적인 대회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만들어내는 장치 혹은 재료를 포함하는 경우. (기술 및 장비가 상업적으로 아직 제공이 가능하지 않거나 2020년 2월부터 제공이 가능한 경우, 선수는 해당 기술 및/또는 장비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선수보다 종합적인 대회 경쟁력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개연성의 균형을 수립할 수 있다.).

7.2.2 세계장애인육상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특정 기술 및 장비를 허용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러한 규정은 대회 규칙에 서술되어 있다.

7.3 금지 기술

7.3.1 해당 기술들은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7.3.1.1 스포츠 장비에 관한 IPC 정책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장비;

7.3.1.2 운동 수행능력이 결과적으로 기계, 엔진, 전자장치, 모터, 로봇 기구와 같은 것들에 의해 발생되게 하는 장비

7.3.1.3 골 일체형 보형물(osteo-integrated prosthesis).

7.3.2 모든 IPC 경기, IPC 대회 혹은 세계장애인육상 인정대회에서 세계장애인육상 기술대표는 본 규정에 의해 금지된 장비들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의심되는 위반에 대한 모든 사례에서 세계장애인육상 기술대표는 세계장애인육상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세계장애인육상은 이러한 보고를 받은 이후 IPC 의회 및 과학 담당관에게 본 사항을 회부하여야 한다. 모든 추후 수사 및 행동은 사례에 따라 IPC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7.3.3 세계장애인육상은 장비 디자인 및 가용성의 기본 원칙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장비의 사용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추후 수사를 허용하기 위함)으로 금지할 권리가 있다.

8 징계 규칙

8.1 IPC 윤리강령 및 세계장애인육상 행동강령

- 8.1.1 IPC 윤리강령 및 세계장애인육상 행동강령(모두 IPC 홈페이지에 위치함)은 세계장애인육상 공인대회에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적용된다.
- 8.1.2 본 규정에 대한 모든 위반사항은 세계장애인육상 행동강령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9 소청 & 항소(이의제기)

9.1 경기구역(Field of play)

- 9.1.1 경기구역과 관련된 소청 및 항소는 대회 규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9.2 반도핑

- 9.2.1 위반에 대한 항소를 포함한 모든 반도핑 규칙 위반은 IPC 반도핑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9.3 등급분류

- 9.3.1 등급분류와 관련된 소청 및 항소는 세계장애인육상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파트 C - 세계장애인육상 경기(대회) 규칙

해석 - 다음 규칙들 제목 옆(밑)에 괄호 안에 숫자가 등장할 경우, 이는 보통 해당 규정에 관련된 WA 규칙이다. 이는 참고 목적일 뿐이며, WA 규칙은 제한된 몇 곳에서 본 규칙은 확실하게 WA 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WPA 공인대회(파트 B - 3.1.2참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 사용하면 안된다.

섹션 I - 국제 임원

(규칙 110)

규칙 1: 임원 선임 (임명)

1. IPC 경기 및 IPC 대회의 임원 선임:

- a) IPC 경기 및 IPC 대회의 경우 아래의 국제 임원들이 WPA 기술위원회의 추천에 기반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 b) WPA 기술대표(들);
- c) WPA 국제 기술 임원들;
- d) 의료 대표;
- e) 도핑 컨트롤 대표;
- f) 수석 등급분류사;
- g) 국제 등급분류사들;
- h) 국제 스타터
- i) 국제 사진판정관;
- j) 항소배심원.

참고: 국제 임원들은 차별되는 의복 혹은 휘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 - 3.1.2(a) 및 (b) 참고)에서 각 분야별 임원 선임 숫자(명수), 누구에 의해 어떻게 언제 임명될지는 각 WPA 기술 요건에 명시될 것이다.

본 규칙에 따라 WPA에 의해 선임된 각 개인에 대한 여행 및 숙박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LOC가 개인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2. WPA 인가 및 승인대회 임원 임명(파트 B – 3.1.2 (c) 및 (d) 참고):

- a) 국제 및 국내 대회를 위한 WPA 기술대표(들)은 WPA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 b) WPA 등급분류가 해당 대회에 결합되어 실시될 경우, 수석 등급분류사 및 국제 등급분류사들은 WPA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 c) STC 혹은 TD와 같은 기타 임원들은(LOC와의 협의 하에) 필요할 경우 결정한다.

규칙 2: 임원에 대한 설명 및 그들의 임무

2.1 기술대표(규칙 112)

기술 대표(들)는 모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줄 LOC와 함께 모든 기술적인 준비가 본 규칙 및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매뉴얼에 따르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당일 대회 이외의 대회에 선임된 기술 대표(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최종 경기 시간표 제출이 완료되고 이는 대회를 위해 엔트리 기준과 함께 개시되어야 한다;
- b) 필드 경기의 경우, 사용될 용기구 목록 및 선수가 공급자에 의해 제공받은 용기구 혹은 개인 용기구를 사용 가능하지 여부에 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c) 필드 경기의 경우, 출전 기준을 결정하며, 트랙 경기의 경우 라운드가 정해지는 근거를 결정한다;
- d) 적용되는 모든 기술 규정들이 대회 전에 모든 대표단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e) 육상 경기를 주최하는데 있어 필요한 모든 기타 기술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 f) 기술적 사유에 의한 엔트리 거부를 하여야 한다;
- g) 모든 경기의 조 편성 및 추첨은 본 규칙 및 모든 적용 가능한 기술 규정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모든 스타트리스트를 승인하여야 한다;
- h) 대회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및 본 규칙(혹은 모든 적용가능한 규정)에 준비되지 못한 내용 혹은 필요할 경우 LOC 및/또는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 – 3.1.2(a) 및(b) 참고)의 경우 WPA와 협의하여 대회와 관련한 준비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i) 필요할 경우 관련 심판원들 및 대회 본부장과 협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대회 이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및 본 규칙(혹은 모든 적용가능한 규정)에 준비되지 못한 내용 혹은 대회와 관련한 준비, 혹은 대회가 완전한 채로 지속되거나 구성원들에게 공정함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편차(일탈)을 요구할 경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j)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 회의를 주재하고 기술 임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 k) 준비 중인 대회 및 집행에 대한 결론이 난 이후 이에 관한 서면 리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추가판에 대한 권고 포함). 당일 대회를 위해 선임된 기술 대표들은 모든 필요한 지원 및 조안을 LOC에 제공해주어야 하며 대회 집행에 관한 서면 리포트의 제출을 보장하여야 한다.

2.2 의료 대표 (규칙 113)

의료 대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a) 모든 의학적 사안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b) 진찰, 치료 및 응급치료를 위한 충분한 시설이 대회 장소, 훈련장 및 워업장에 제공되며, 선수들이 숙박하는 곳에서 치료가 제공이 가능하며, 규칙 7.1의 요구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 c) 규칙 5.4 및 규정 6.3에 따라 진단서 검토.

d) 선수가 대회 중 경기 전에 기권하거나 경기 중에 즉시 경기를 그만두도록 선수에게 지시할 권력이 있다.

참고 (i): (c) 및 (d) 아래의 권력은 의료대표에서 완장, 조끼 혹은 유사한 눈에 띄는 의류로 일반적으로 구분이 가는 LOC가 임명한 의학 의사 한 명 혹은 그 이상에게 위임될 수 있다. 의료대표 혹은 의사가 선수에게 즉시 제공되기 어려울 경우, 그는 공식 혹은 승인된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안내 혹은 설명을 할 수 있다.

참고 (ii): 2.2(d) 아래 경기 시작 전 선수를 제외시키기 전에, 선수는 LOC에 의해 임명된 의학 의사 중 한명에 의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2.2(d) 아래 경기 중 제외된 모든 선수는 가능하면 빨리, 이론적으로는 제외 당한 직후 LOC가 임명한 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참고 (iii): 규칙 2.2(d) 아래 달리기 경기 중 제외되거나 기권하는 모든 선수는 상황에 따라 DNS 및 DNF로 결과지에 표시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르지 않는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실격처리 된다.

참고 (iv): 규칙 2.2(d) 아래 필드 경기 중 제외되거나 기권하는 모든 선수는 시기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DNS로 결과지에 표시될 것이다. 하지만 선수가 시기를 하였을 경우, 해당 시기는 유효할 것이며 선수 등급에 맞게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르지 않는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실격처리 된다.

코멘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WPA, LOC 및 운영 주체에 있어 최우선 고려대상이다. 특히나 대표 본인 또는 LOC 혹은 의료 대표에 의해 선임된 인물이 의학적 이유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대회에서 제외시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료 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전문가이면 널리 존경받으며 요건이 되는 사람의 유효성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 대표(혹은 그의 요청에 의해 임무를 대신하는 의사)의 권력은 모든 종목에 적용된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c) 및 (d)에 따라 스타트리스트, 결과 및 대회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의료 대표(혹은 그의 요청에 의해 임무를 대신하는 의사), 기술 대표들 및 경기 본부장은 기댈 수 있는 연락(communication) 시스템 및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3 도핑 컨트롤 대표(규칙 114)

도핑 컨트롤 대표는 LOC와 협력하여 도핑 컨트롤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적합한 시설이 제공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는 도핑 컨트롤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

2.4 국제 기술 임원 (ITOs)(규칙 115)

ITO가 선임되는 경우, 기술 대표는 이전에 선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선임된 ITO 중에서 수석 ITO를 선임할 것이다. 가능할 경우, 수석 ITO는 기술 대표와의 협의 하에 프로그램의 모든 경기에 최소 1명의 ITO를 선임할 것이다. ITO는 선임된 경기의 심판장이 될 것이다.

코멘트: 2016년 1월부터 국제 기술임원(ITO)의 역할은 확연히 변했지만, 이는 직책의 진화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이다. 이 시기부터 ITO는 선임된 경기에서 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지에서 임명된 임원들 사이에서, 수석 심판원은 "시니어"가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전에 현지에서 선임된 심판장에 의해 팀의 조직적 혹은 훈련 역할 요소를 수행했을 경우, 본 역할들은 수석 심판원의 임무가 된다.

ITO들은 기술 대표(들)와 LOC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은 규칙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있으며, 자신의 나라 내 국내 관리 기관에서 심판장의 역할을 각종 대회에서 수행한다. 그들은 또한 미팅 담당자의 임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익숙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영어 사용은 필수적이다.

WPA는 세계육상의 TOECS와 유사한 교육 경로를 기술 대표들을 위해 구축해 놓았다. 이는 온라인 입문 교육 프로그램, 국내 및 국제 기술 수행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국제 기술 임원 코스를 통과한 자들은(영어 회화 및 쓰기에 대한 요건 포함) 4년마다 수립되는 국제 기술 임원 패널에 적합하다. 첫 임원패널은 2017년 11월에 구성되었이다. 2016년에 ITO들이 임명된경기에 대해 관련 심판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기술 임원들이 심판장의 임무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5 국제 로드 코스 측정원(규칙 117)

국제 로드 코스 측정원은 경기장 밖 전체 혹은 일부에서 실시되는 로드 경기에서의 코스를 확인하기 위해 선임이 가능하다.

선임된 코스 측정원은 세계육상/AIMS 국제 로드 코스 측정원 패널의 멤버여야 한다(A혹은 B등급).

코스는 대회 이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원은 로드레이스 규칙에 충족할 경우 코스를 점검 및 공인할 것이다(규칙49.2 및 49.3 참조).

측정원은 코스 준비 과정에서 LOC와 협력하고, 선수가 쓰는 코스가 측정되고 승인된 코스와 동일하게 따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 진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는 기술 대표(들)에게 합당한 인증서를 제공할 것이다.

코멘트: WPA는 코스 측정원을 임명하지 않으며, 세계육상 로드 레이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경기에 대해 세계육상/AIMS에서 공인된 측정원을 사용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2.6 국제 출발신호원 및 국제 사진 판정관(규칙 118)

모든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및(b)참조)에서 국제 출발 신호원 및 국제 사진판정관은 WPA에 의해 선임된다. 국제 출발 신호원은 레이스를 스타트시킬 것이며 기술대표(들)에 의해 배정된 기타 모든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국제 사진 판정관은 모든 포토 피니시 기능을 감독할 것이며, 수석 포토 피니시 심판원이 될 것이다.

코멘트: 국제 사진 판정관은 그가 선임된 대회에서 수석 포토 피니시 심판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ITO들이 심판으로 활동하는 동안, 국제 출발 신호원(IS)과 스타트 팀의 다른 멤버들 간의 책임은 명확히 분리된다. IS가 그가 할당된 레이스에서 레이스를 시작할 때 모든 권력과 책임을 갖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변경하거나 출발 심판장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

2.7 항소

배심원(규칙 119)

모든 IPC 경기와 IPC 대회에서(파트B-3.1.2(a)및(b)참조) 항소 배심원이 선임될 것이다. 배심원은 평균적으로 3, 5, 혹은 7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성원 중 한 명이 대표(chairman)가 되며 다른 한 명이 서기(secretary)가 된다. 만일 및 만약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기는 배심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다.

항소 배심원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국가 담당 기관에 가입된 선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소에서는 배심원단의 모든 토의 과정에 참석할 수 없다.

배심원 대표는 해당 구성원이 아직도 심사에서 빠지지 않은 경우, 이 규칙에 해당되는 모든 구성원에게 심사에서 빠지도록 지시한다.

WPA 혹은 대회에 책임이 있는 기타 단체는 항소에 참석할 수 있는 배심원단을 1명 또는 그 이상의 예비 배심원단을 선임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LOC가 올바른 경기 진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 배심원이 임명될 수 있다.

항소 배심원의 주요 역할은 판결을 위해 회부된 대회의 진행 중에 발생된 모든 문제와 모든 소청/항소를 해결하는 것이다.

코멘트: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특정한 상황의 경우, 모든 심판장(소청의 경우) 및 배심원(항소의 경우)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 재고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여전히 적용 가능하고 실용적이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해당 경기 시상식 이전에 이루어진다.

2.8 대회 임원 (규칙 120)

LOC 및/또는 관련 운영주체는 본 규칙에 따라 모든 기타 임원을 선임한다.

아래 명단은 주요 국제대회에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 생각되는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LOC는 현지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운영 임원

- 1명의 경기본부장(Competition Director)
- 1명의 대회총무(Meeting Manager) 및 보조원 약간 명
- 1명의 기술총무(Technical Manager)
- 1명의 대회연출총무(Event Presentation Manager)

경기 임원

- 1명(혹은 그 이상)의 소집실 심판장
- 1명(혹은 그 이상)의 트랙경기 심판장
- 1명(혹은 그 이상)의 필드경기 심판장
- 1명(혹은 그 이상)의 경기장 외 경기 심판장
- 1명(혹은 그 이상)의 비디오 판정 심판장
- 1명의 트랙경기심판원주임(수석) 및 심판원 약간 명
- 1명의 필드경기심판원주임(수석) 및 심판원 약간 명
- 1명의 감찰원주임(수석) 및 감찰원 약간 명
- 1명의 계시원주임(수석) 및 계시원 약간 명
- 1명의 사진판정심판원주임(수석) 및 보조원 약간 명
- 1명의 자동무선계시장치(트랜스폰더)심판원주임(수석) 및 보조원 약간 명
- 1명의 스타트 코디네이터 및 스타터 및 리콜러 약간 명

- 1명(혹은 그 이상)의 스타터 보조원
 - 1명의 주회기록원주임(Lap Scorers) 및 기록원 약간 명
 - 1명의 대회 서기(Secretary) 및 보조원 약간 명
 - 1명의 기술정보센터(TIC) 총무 및 보조원 약간 명
 - 1명의 장내사령 주임(수석) 및 장내사령 약간 명
 - 1명(혹은 그 이상)의 풍속 측정원
 - 1명의 과학계측심판원주임(수석) 및 보조원 약간 명
 - 1명의 소집실심판원주임(수석) 및 소집실 심판원 약간명
- 기타 임원
- 1명(혹은 그 이상)의 아나운서
 - 1명(혹은 그 이상)의 통계원
 - 1명의 광고위원
 - 공식 검정원(Surveyor) 1명
 - 1명(혹은 그 이상)의 의사
 - 선수, 임원 및 보도계 간사 약간 명

심판장 및 심판원 주임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복장 또는 기장(휘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시합 중 임원의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한다.

여성부 경기가 실시될 경우, 가능하다면 여성 의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코멘트: 대회에 선임된 임원의 수는 요구된 임무가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게, 그리고 대회 기간이 하루 혹은 연속된 며칠 동안 굉장히 길 경우 효율적으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선임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회 지역이 어수선하고 불필요한 사람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임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점점 많은 대회에서 현장 임원의 일정 역할이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있으며, 논리적인 대안이 요구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요구는 임원을 선임할 때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안전에 관한 주석

육상 경기에서 심판장과 대회 임원들은 여러 중요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보다 그들의 역할에서 더 중요한 역할은 없다. 육상 경기장은 위험한 장소일 수 있다. 무겁고 날카로운 도구들이 던져지며, 이는 경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내포한다. 트랙 혹은 도움닫기에서 높은 속도로 달리는 선수들은 다칠 수 있으며 선수와 부딪히는 선수 또한 마찬가지다. 도약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경우, 예상치 못하거나 의도치 않은 곳에 착지할 수 있다. 날씨 및 기타 상황들이 육상 대회를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선수, 임원, 사진기사 및 기타 관계자들이 대회 현장 혹은 훈련 지역에서 다친 경우들이 있다(간혹 심각하게). 이러한 부상 사태의 다수는 예방이 가능했다.

임원들은 스포츠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모든 경우를 경계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산만해지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공식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임원은 육상 경기장을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모든 임원은 대회 현장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안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 혹은 상황을 목격했을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입하여야 한다.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 경기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갈등이 있는 혼치 않은 경기에서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만연하여야 한다.

2.9 경기 본부장(Competition Director)(규칙 121)

경기 본부장은 기술위원장과 협의하여 경기 운영안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그는 대회 참가자 간의 상호 교류 상황을 감독하여 통신장치를 통하여 모든 임원들과 연락을 취한다.

2.10 대회 총무(Meeting Manager) (규칙 122)

대회 총무는 대회의 올바른 진행에 책임이 있다. 모든 임원의 업무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임명하여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게 배정한 임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임명된 장내사령과 협조하여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경기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참고: 대회가 4시간을 초과하거나 2일 이상인 경우, 충분한 숫자의 보조원을 임명하는 것이 권장된다.

코멘트: WPA 규칙은 표현에 있어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대회에서도 경기 본부장이나 대회 총무의 임무를 고려할 때, 특히 패럴림픽경기대회, 세계 혹은 지역 선수권 대회 규모의 책임과 같은 매우 무거운 책임을 숨기고 있다.

대회 총무는 경기 본부장의 권한 아래 아래 및 기술대표의 안내 및 결정에 따라 경기장 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장 내에서 대회 총무는 현장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본인을 위치시켜서 필요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는 선임된 모든 임원의 전체 명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담당관, 심판장 및 수석 심판장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며칠 동안 진행되는 대회의 경우 몇 명의 시만원은 대회 전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대회 총무는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예비 임원들을 이용해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에 있는 임원일 지라도 대회 총무는 임원들이 그들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을 교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담당관은 심판원 및 그들의 보조원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혹은 충분히 임무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즉각적으로 경기장을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경기 본부장, 대회 총무 및 기술 대표(들)은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에서 대회를 치르며 관람객이 경기를 관람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11 기술 총무(Technical Manager) (규칙 123)

기술 총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 a) 모든 필드경기에서 트랙, 도움닫기, 서클, 아크, 섹터, 착지 구역 및 장비와 도구가 본 규칙에 따라야 한다.
- b) 장비 및 도구 배치 및 제거가 기술 대표들에 의해 승인된 대회 기술 조직적 계획에 따르는 지 여부.
- c) 대회 지역 내 기술 발표가 계획에 따라야 한다.
- d) 규칙 30.3에 따라 경기에 허용되는 개인 도구의 확인 및 표시.
- e) 대회 전 규칙 10.1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

코멘트: 기술 총무는 경기 본부장 및 대회 총무의 관할 아래 활동을 하지만 숙련된 기술 총무는 이들의 재량 혹은 감독 없이 그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는 항상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심판장 혹은 필드 경기 수석 심판원이 경기가 치러지는 장소(혹은 치러질 장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통보할 경우, 그는 기술대표에게 필요 행동을 이야기할 대회 총무에게 이 사안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심판원이 대회 현장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규칙 24.20) 그는 심판원의 요구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이미 수행한 기술 대표에게 지시를 내릴 대회 총무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행동할 것이다. 풍속 또는 풍향의 변동은 대회 장소를 옮기기 위한 충분한 상황은 아닌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경기 본부장 혹은 국제 대회에서의 기술 대표가 경기에 사용될 도구를 승인한 경우, 기술 총무는 관련된 다양한 용품을 구매, 준비 및 수령할 것이다. 나중을 위하여 그 또는 그의 팀은 규칙에 준수하기 위해 무게와 치수 및 허용되고 제출된 모든 개인 도구를 세심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그는 만약 기록이 세워질 경우 규칙 51.20(d)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투척 도구에 대하여, 기술 대표(들)는 공급자들의 새로운 도구를 승인할 때 부록에 나온 도구 무게 허용범위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 범위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이미 제출되거나 대회에서 사용중인 도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 최소 무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2.12 대회 연출 총무(Event Presentation Manager) (규칙 124)

대회 연출 총무는 경기 본부장과 함께 대회의 경기 진행 준비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또한 경기 진행 팀원들과 상호 연락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통해 팀원들 간의 상호관계를 지휘하여야 한다.

그는 스타트 리스트, 등급분류, 중간 및 최종 결과를 포함한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의 정보를 공지 및 사용 가능한 기술 장비를 통해 대중에게 안내되게 하여야 한다. 각 경기의 공식 결과(순위, 시간, 무게, 거리 및 포인트)는 정보를 수신한 후 가장 빠른 실행 가능한 순간에 전달하여야 한다.

코멘트: 대회 연출 총무는 인필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의 제작을 계획, 조정, 주도할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 내의 관람객들을 뭉치게 할 책임이 있다. 그의 임무의 최종 목표는 관람객들에게 제공될 쇼를 유익하고, 재미있고, 생동감 있고 매력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팀과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회 연출 총무는 아나운서, 스코어보드 및 비디오보드 운영자, 오디오 및 비디오 기술자, 시상식 관계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역할과 관련된 경기 프레젠테이션 담당자의 활동을 조정하는 담당자다. 거의 모든 대회에 있어 아나운서는 필수적이다. 경기 본부장 또는 대회 연출 총무와 즉시 연락할 때 대회 내용을 적절하게, 그리고 가급적 가까운 곳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대회 연출 총무는 아나운서와 음악/사운드 시스템이 이러한 경기보다 조용하여 지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더 조용히 해야 하는 경기(예: T11/12 멀리뛰기 혹은 세단뛰기 경기)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13 심판장(Referees) (규칙 125)

1. 심판장은 소집실, 트랙/필드 경기 그리고 경기장 밖 로드레이스 경기에 1명(혹은 그 이상)씩 선임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한 명(혹은 그 이상)의 비디오 심판장을 임명한다. 비디오 심판장은 비디오 리뷰실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다른 심판들과 소통하며 협의하여야 한다.

코멘트: 충분한 수의 임원이 있어서 대회(meeting)에서 레이스에 한 명 이상의 심판장이 선임되었을 경우 이중 한 명을 스타트 심판장으로 선임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해당 스타트 심판장은 기술적인 소리 배경(sound background)에 의거한 경험 많고 전문적인 스타터여야 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스타트 심판장은 스타트 심판장과 관련하여 심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트랙 심판장에게 보고하거나 이를 통해 행동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특정 대회의 레이스를 관리하는데 있어 한 명의 심판장만이 선임되었을 경우, 그가 가진 권한을 고려하여 각 스타트 마다(최소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는 경기에 대하여) 심판은 스타트 지역에 위치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목격하여 필요한 결정을 내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는 세계육상 공인 스타트 정보 시스템이 사용되면 훨씬 수월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리고 심판장이 스타트 절차 이후 피니시 라인에 위치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100m, 200m에서), 그리고 심판이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예견할 경우, 스타트 코디네이터(스타터로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를 스타트 심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다.

2. **적합하거나 필요할 경우 기술대표(들)과 함께** 심판원은 본 규정 및 규칙(그리고 적용 가능한 기술 요건)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경기 도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웬업 지역, 소집실, 대회 이후, 시상식에서의 문제 포함)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조항(혹은 적용 가능한 기술 요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트랙 경기 혹은 경기장 밖 경기의 심판장들은 순위 논란이 일어난 레이스의 심판원이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경우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관련 트랙 심판장(혹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심판장)은 스타트 팀이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타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어떠한 사유로 심판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세계육상 공인 스타트정보시스템에 의한 확실한 부정출발의 경우는 제외된다.

스타트를 감독하도록 임명된 트랙 심판원이 스타트 심판원으로 임명된다.

심판장은 심판원이나 감찰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자신의 관찰을 본보기로 하여 규칙에 따라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

참고: 모든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사진, 빅토리 랩, 관객과 상호작용 등)이 끝날 때 광고 규정을 포함하여 본 규칙 및 규정의 목적을 위해 시상식이 종료된다.

코멘트: 심판장은 심판원이나 감찰원을 통해 실격에 관한 리포트를 받는 것이 필수는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유의하여야 한다. 그의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항상 그는 직접 행동할 수 있다. 위의 참고는 해당 경기에서의 시상식에서 생기는 모든 경우에 해당 심판장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시상식이 다른 장소 혹은 다른 세션에서 진행되었을 경우, 기존 심판장이 상황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심판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기본 상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해당 심판장은 모든 최종기록을 확인하고, 이의가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응하고, 과학계측심판원이 임명된 경우에는 서로 협력을 하여 경기기록계측을 감독하여야 한다. 각 경기가 종료되면, 바로 기록카드를 작성해서 해당 심판원의 서명과 함께 대회 서기(Secretary)에게 제출해야 한다.

코멘트: 트랙 경기의 경우 트랙 심판원과 비디오 심판장이 경기를 "완료(dear)"한 경우, 결과는 수석 포토 피니시 심판원에 의해 개시되며 물리적으로 결과지에 서명할 필요는 없다.

4. 해당 심판원은 대회진행과 관련된 모든 소청 및 이의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웜업 지역, 소집실, 대회 이후, 그리고 시상식 포함).

코멘트: 패럴림픽경기대회, 세계 및 지역 선수권 대회 같은 주요 대회의 경우 ITO가 임명된다. 그는 시상식 관찰 및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여야 하며,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선수에게 옐로/레드 카드를 부여할 수 있다.

5. 심판원은 규칙 6.1, 6.18, 7, 17.5, 18.17, 18.18, 24.2, 24.5, 24.19 혹은 49.8(h)에 따라 신고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선수 혹은 릴레이팀에 대해 경고를 주거나 대회에서 제외시킬 권한을 가진다. 징계 사항의 경우, 소집실 심판장은 워업 지역에서 경기 구역까지의 권한을 가진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선수가 참가했거나 참가 중인 경기에 해당되는 시만장이 권한을 가진다.

해당 심판장(경기 본부장과 협의 후 실행이 가능한 경우)은 신고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규칙에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선수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경우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대회 구역(혹은 대회와 관련된 모든 구역, 워업 지역, 소집실 및 코치가 위치한 자리 포함)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경고는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보여줌으로써 나타낼 수 있으며, 레드카드를 보여줌으로써 제외를 시킬 수 있다. 경고 및 제외는 기록카드에 작성되어야 한다. 심판원에 의해 결정된 이러한 경고 및 제외는 대회 서기 및 다른 심판장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참고 (i): 심판원은 상황이 정당화될 경우, 경고 없이 선수 혹은 릴레이팀을 제외시킬 수 있다(규칙 7.2의 참고 참조);

참고 (ii): 본 규칙에 따라 선수 혹은 릴레이팀을 제외시킬 경우, 심판장이 이미 옐로카드를 준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두번째 옐로카드를 보여주면서 즉각적으로 레드카드를 보여주어야 한다.

참고 (iii): 옐로카드를 주었으나 심판장이 이전에 옐로카드가 부여된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이 사실을 아는 즉시 레드카드를 부여한 효과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 심판장이 선수 혹은 릴레이팀에게 알려주기 위함 혹은 그/그들의 팀에게 제외에 대한 추가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코멘트: 6개의 핵심 포인트가 카드 표시 및 기록에 대해 안내해주고자 만들어졌다:

(1) 옐로카드 및 레드카드는 징계적 사유(주로 2.13.5와 8.2참조) 혹은 심각하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경우의 기술 위반(예: 레이스에서 심각하고 명확한 방해 행위)에 대해 주어진다.

(2) 통상적으로 옐로카드가 레드카드 이전에 주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특별히 부적절한 행동 혹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레드카드가 주어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모든 경우에서 선수는 항소배심원에게 항소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옐로카드가 주어진 것이 옳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칙 7.2의 참고에서 규칙 7.3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 특정하게 즉각적인 레드카드를 줄 수도 있다.

(4) 심판원이 옐로카드를 주었으나 선수가 너무나 부적절하게 행동하여 즉각적으로 레드카드를 주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부적절한 행동이 시간적으로 두번이나 완전히 다르고 차이가 있을 필요는 없다.

(5) 참고(iii)의 경우에서 심판원이 선수가 이미 옐로카드를 대회 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있고 레드카드를 부여해야 할 경우, 심판원은 두번째 옐로카드를 보여준 후 레드카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일 심판장이 두번째 옐로카드를 보여주지 않았을 경우, 이는 레드카드의 발행에 대해 무효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6. 새로운 결정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심판장은 가능한 증거를 근거로 결정사항에 대해 재고할 수 있다(첫번째 결정 혹은 소청에 관련하여 고려 후). 이러한 재고는 해당 종목의 시상식 전이나 항소 배심원의 유효한 판결 전 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

코멘트: 이 규칙은 항소배심원(50.9참조)과 더불어 심판원은 결정을 재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첫 번째 사례에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는지 또는 그에 대한 소청을 고려할 때 내려진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똑같이 대할 수 있다. 이 옵션은 특히 새로운 정보의 증거가 신속하게 입수될 때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항소 배심원에게 더 복잡하거나 관련 항소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재고에 있어서는 시간적 제한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7. 해당 심판원의 판단으로 어떤 경기에서 혹은 어떤 경기 중 일부가 재경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경기의 결과 또는 해당 경기의 결과 일부분을 무효로 선언할 권리가 있으며, 무효가 된 경기는 심판장의 결정에 따라 당일 또는 다른 날에 재경기를 진행한다.

코멘트: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한 선수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추후 경기 혹은 재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심판원과 항소배심원은 명심하여야 한다.

8. 로드레이스 심판원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실격판정 전에 경고를 하여야 한다.

2.14 심판원(Judges) (규칙 126)

총칙

1. 트랙 경기 수석 심판원과 필드 경기 수석 심판원은 해당 종목의 심판원 업무 사항을 함께 조정한다. 해당 조직이 심판원의 임무 배정을 사전에 배정하지 않은 경우, 그 직무를 배정 해야한다.
2. 심판원은 기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거나 새로운 결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그들이 한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혹은 결정이 심판원 혹은 항소배심원에 의해 추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그들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항소배심원 혹은 심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트랙 경기 및 로드 경기

3. 심판원들은 트랙 또는 코스의 같은 쪽에 위치해서 선수와 피니시 순서를 판정한다.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 판정을 해줄 심판원에게 위임한다.
참고: 심판원들은 피니시라인에서 최소한 5m 떨어진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계단식 스탠드를 제공받아야 한다.

필드 경기

4. 필드 경기 심판원은 모든 필드 경기에서 각 시도를 판정하고 기록하며 선수의 각 유효한 시기를 측정한다. 높이뛰기에서 바를 높일 때, 특히 신기록에 도전할 때에는 정밀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최소한 두명의 심판원이 모든 시기의 기록을 관리하고 각 라운드가 끝날 때 마다 기록을 점검하여야 한다. 해당 심판원은 항상 적절한 흰색 또는 빨간색 깃발을 게양하여 유효한지 무효한지 알려야 한다. 또한 대체로 시각적 표시도 승인될 수 있다.

코멘트: 심판원은 규칙의 위반이 있었다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모든 의심에 대한 혜택은 선수에게 주며, 시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할 시 백기를 들 것이다. 하지만, 비디오 심판장이 임명되고 필드경기에 관한 영상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때, 의심이 들 경우 심판원은 현장 심판장과 협의하여 비디오 심판장의 조언을 확인할 때까지 어떠한 깃발을 드는 것을 연기시킬 옵션이 있다 – 항상 랜딩 마크가 보존 되어있는지 또한 측정한 시기가 유효한 경우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시기의 유효성에 대한 혼동의 확률을 줄이고자 필드 경기에서는 오직 1개의 세트의 백기 및 적기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도약 경기에서는 한 세트 이상의 깃발을 사용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 수평 도약에서 특정 스코어보드가 바람을 읽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적기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물건을 이용하여 읽어야 한다.

투척 경기의 경우:

다른 서클 심판원이 고장난 깃발을 사용하여 심판원에게 안내할 경우, 심판원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레드카드 혹은 일종의 수동 신호와 같은 다른 형태의 깃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도구가 섹터라인 혹은 섹터라인 밖에서 착지했을 경우, 깃발 대신 다른 형태의 수신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예를 들어 바닥으로부터 평행인 심판원의 펼친 팔;

창던지기에서 창이 메탈 헤드가 창이 다른 부분보다 늦게 땅에 닿았을 경우, 깃발 대신 다른 형태의 수신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예를 들어 심판원이 손을 바닥을 향해 펼치는 것.

2.15 감찰원(달리기 및 휠체어 레이싱 종목) (규칙 127)

1. 감찰원은 심판원의 보조자로서, 최종 판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
2. 감찰원은 심판원이 지정한 위치에서 경기를 엄중하게 관찰하며, 선수 또는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심판원에게 바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칙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노란 기를 들거나 기술대표(들)이 승인한 다른 신뢰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심판원에게 알린다.
4. 릴레이 레이스의 테이크오버 존을 감독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감찰원을 임명한다.

참고 (i):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이탈하여 다른 레인으로 달렸거나 릴레이 테이크오버가 테이크오버존 바깥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감찰원은 즉시 위반행위가 일어난 지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트랙 위에 표시를 하고 전자의 방법에 의해 종이에 비슷하게 표기한다.

참고 (ii): 감찰원은 선수(또는 릴레이경기의 경우 팀)가 레이스를 끝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심판원에게 모든 규칙 위반행위를 보고한다.

코멘트: 수석 감찰원(규칙 2.8참조)은 트랙 심판원의 보조자이며 각 감찰원의 임무와 리포트를 코디네이트 하며 배치를 표시한다. 트랙 심판원과의 협의 하에 대회 레벨, 엔트리 수 및 사용 가능한 임원 수에 따라 적당한 수의 감찰원을 선택하는 일은 대회 총무의 역할이다.

위반(침해)의 표시(Indication of an infringement)

경기가 합성 트랙에서 진행될 경우, 감찰원에게 접착테이프를 제공하여 위반(침해)이 발생한 트랙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다 -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규칙들이(위의 참고(i)참조) 보여준다.

위반 사항을 보고하지 못한 점이 유효한 실격처리를 막지는 못한다. 감찰원들은 선수나 팀이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 어도 규칙이 위반되었다고 믿는 모든 경우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2.16 계시원, 사진판정 및 트랜스폰더 계측 심판원 (규칙 128)

1. 수동계시를 할 경우, 계시원은 참가선수의 인원수에 따라 충분히 임명되어야 한다. 그 중 한 명은 수석 계시원으로 임명된다. 수석 계시원은 계시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이 계시원들은 완전자동사진 판정 장치와 트랜스폰더 계측 시스템이 사용될 때에는 보조 계시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2. 계시원, 사진판정 및 트랜스폰더계측 심판원은 규칙 20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3. 완전자동사진판정 장치가 사용될 경우,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 및 충분한 수의 보조원들이 임명될 것이다.
4. 트랜스폰더계측 시스템이 사용될 경우, 수석 트랜스폰더계측 심판원 및 충분한 수의 보조원들이 임명될 것이다.

2.17 스타트 코디네이터, 스타터 및 리콜러 (규칙 129)

1. 스타트 코디네이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스타트 팀의 업무를 배정한다. 하지만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 - 3.1.2(a)및(b)참조) 어떤 경기가 국제 출발신호원에게 임명될지 여부의 결정은 기술대표가 한다;
 - b) 스타트 팀의 각 심판원이 업무를 충실히 실행하는지 감독한다;
 - c) 경기 본부장에게 스타트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스타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린다(예: 계시원, 심판원, 그리고 가능한 경우 수석 사진판정 감찰원,

- 수석 트랜스폰더계측 심판원 및 풍속 계측원의 준비완료);
- d) 계시장치 회사 기술 스태프와 심판원 사이에 중간 대화자 역할을 수행한다;
 - e) 가능한 경우 반응시간 및/또는 부정출발 파형 이미지를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스타트 절차에서 나온 모든 자료들을 보관한다;

코멘트: 스타트 팀의 모든 구성원들은 규칙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 규칙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팀은 또한 경기가 딜레이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규칙을 적용할 때 어떤 절차를 따를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들은 각 구성원 및 팀의 의무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특히 스타터 및 스타트 심판장).

2. 모든 참가자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책임인 스타터의 경우, 제자리 상태에 있는 모든 선수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 출발정보장치를 사용할 경우, 스타터 및/또는 임명된 리콜러는 장치가 부정출발을 표시했을 경우 나오는 모든 음향신호를 정확히 듣기 위하여 헤드폰을 착용한다.
3. 스타터는 스타트 시 모든 선수들이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위치를 잡는다. 특히 계단식 스타트에서 선수들에게 스타트의 지시사항 전달을 하고 동시에 모든 리콜 신호를 위해 개인 레인에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스타터는 전체 선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는 경기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스타트 신호총이 발사되거나 공인 스타팅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차려 자세에서 완전히 정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이 규칙에서 이런 스타팅 장치는 모두 총이라고 지칭한다).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는 계단식 스타트 방식의 레이스에서는 스타터 자신과 각 선수 간의 거리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서도록 한다. 그러나 스타터가 이러한 위치에서 설 수 없는 경우, 스타트 신호총을 그 지점에 설치하고 전기접촉으로 발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코멘트: 스타터의 구령은 명확하여야 하며 모든 선수들에게 들려야 하지만, 선수와의 거리가 멀고 확성기(스피커 시스템)가 없을 경우가 아닌 이상 스타터는 구령을 내리는 동안 고함을 지르는 것은 방지하여야 한다.

4. 스타터를 보조하기 위하여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리콜러가 임명되어야 한다.

참고: 200m, 400m, 4x100m, 4x200m, 4x400m 릴레이 경기의 경우, 최소 2명의 리콜러가 있어야 한다.

5. 각 리콜러는 자신이 맡은 모든 선수를 고르게 볼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다.
6. 각 리콜러는 규칙의 위반이 관찰되는 경우 레이스를 리콜할 의무가 있다. 선수가 되돌아오거나, 또는 잘못된 스타트 후에 리콜러는 그가 관찰한 것을 스타터에게 보고하여 스타터가 경고 혹은 실격처리를 줄 것인지, 준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17.7, 17.10 참조).
7. 규칙 17.8에 따라 실격은 오직 스타터에 의해 결정된다.

코멘트: 이 규칙의 내용은 스타터와 심판원(임명되었을 경우 스타트 심판장) 모두 스타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스타트가 공정한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 2.13(심판원)과 결합하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리콜러는 이러한 권한이 없으며 스타트를 리콜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행동할 수는 없으므로 추후에 스타터에게 레이스를 리콜한 이유를 간략히 보고하여야 한다.

8. 크라우치 스타트를 사용하는 레이스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세계육상 공인출발정보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규칙 16.3참조).

2.18 스타터 보조원(규칙 130)

1. 스타터 보조원은 선수가 정해진 예선 또는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는지 여부 및 배번호표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점검한다.
2. 스타터 보조원은 각 선수를 정해진 레인 혹은 위치에 배치시켜야 하며, 스타트 라인 약 3m 후방 지점에 선수들을 모아야 한다(계단식 레이스의 경우 각 스타트 라인 뒤). 이 작업이 완료된 경우, 이들은 스타터에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신호를 보낼 것이다. 새로운 스타트가 지시될 경우 스타터 보조원들은 다시 선수들을 모을 것이다.
3. 스타터 보조원은 릴레이 레이스의 제 1주자에게 넘겨줄 배턴을 준비하여야 한다.
4. 스타터 보조원이 선수들에게 "제자리"를 명령했을 경우, 스타터 보조원들은 규칙 17.4와 17.5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부정출발의 경우, 스타터 보조원은 규칙 17.9에 따라 계속 진행할 것이다.
6. 스타터 보조원은 규칙 7.13에 따라 선수들이 본인의 스타팅 블록을 조정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코멘트: 스타터 보조원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참가자들이 정확한 조 및 레인에 배정된 것을 확인해줌으로서 대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들은 선수들이 지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및 스타터 보조원의 지시리를 확인함으로써 레이스의 스타트를 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추가적으로, 배턴이 사용되는 릴레이 경기에서 배턴을 제공하며 대회 종료 후 수거하는 책임이 있다.

2.19 주회 기록원 주임(규칙 131)

1. 주회 기록원 주임은 1,500m 이상인 레이스의 모든 선수들이 주회를 한 횟수를 기록한다. 5,000m와 그보다 거리가 긴 레이스는 심판장의 지시 하에 다수의 주회 기록원 주임을 임명하구 주회기록원 주임이 자신이 담당한 선수의 주회별 시간(공식 계시원이 전달한 기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주회 기록 카드를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 주회기록원 주임은 선수 네 명 이상의 주회 시간을 기록하지 않는다. 수동 주회 기록 대신 선수가 휴대하거나 착용하는 트랜스폰더와 같은 전산화된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 한명의 주회기록원 주임은 피니시 라인에서 남은 주회 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잔여 주회 표시는 선두주자가 피니시 라인이 있는 직선주로에 진입했을 때 바뀐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주회 횟수나 잔여 주회를 선수에게 전달해주며, 마지막 주회는 일반적으로 종을 울려서 각 선수에게 알려준다.

2.20 대회 서기, 기술정보센터 (TIC)(규칙 132)

- 대회 서기는 심판장, 수석 계시원,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 혹은 수석 트랜스폰더 심판원 및 풍속 측정원이 제공한 각 경기의 모든 결과를 수집한다. 그는 즉시 그 자료를 아나운서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기록하며 경기 본부장에게 기록카드를 전달한다. 경기 결과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할 경우, 각 필드 경기장에 있는 전산 기록원은 각 종목의 전체기록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트랙 경기 기록은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의 지시 아래 입력한다. 아나운서와 경기 본부장은 컴퓨터를 통해 경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선수가 다른 사양(예: 도구의 무게)로 겨루는 경기의 경우, 관련된 차이는 결과나 각 분야에 대해 표시하며 별도의 결과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다음 표준 약어는 적용 가능한 스타트리스트 준비 및 결과에 사용하여야 한다:

Did not start – DNS 스타트 하지 않음

코멘트: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DNS로 간주된다.

(a) 해당 경기에 대해 소집실에 보고하지 않고, 경기의 출발목록에 이름이 포함된 경우;

(b) 소집실을 통과하지 않고 필드 경기에서 시도하거나 진행중인 경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Did not finish – DNF 피니시 하지 않음

No valid trial recorded – NM 유효한 시기가 기록되지 않음

Disqualified – DQ 실격

Valid trial in High Jump – “O” 높이뛰기에서 유효 시기

Failed trial in Field Events – “X” 필드 경기에서 실패 시기

Passed trial in Field Events – “-” 필드경기에서 시기 패스

Retired from competition in Field Event – r 필드 경기에서 대회 기권(retire)

Qualified by place in Track Events – Q 트랙 경기에서 순위에 의한 통과

Qualified by time in Track Events – q 트랙 경기에서 시간에 의한 통과

Qualified by standard in Field Events – Q 필드 경기에서 기준에 의한 통과

Qualified without standard in Field Events – q 필드 경기에서 기준 없이 통과
Advanced to next round by Referee – qR 심판장에 의해 다음 라운드 진출

Advanced to next round by Jury of Appeal – qJ 항소배심원에 의해 다음 라운드 진출

Yellow Card –YC 옐로카드

Second Yellow Card –YRC 두번째 옐로카드

Red Card –RC 레드카드

선수가 경기에서 규칙에 의한 위반으로 실격되었을 경우, 위반된 규칙에 관한 레퍼런스가 공식 결과에 반영될 것이다.

선수가 경기에서 비신사적 혹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격이 되었을 경우, 실격 사유에 대한 레퍼런스가 공식 결과에 반영될 것이다.

코멘트: 규칙 2.20.2와 2.20.3은 상위 레벨 아래 단계의 대회(몇 개의 상위 레벨 대회에서도 포함)에서 다른 연령 및 카테고리의 선수가 같은 대회에 참가하는 흔치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이 규칙은 이러한 것들이 허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대회 최소 참가자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심지어 규칙 51.1과 51.2의 목적과 결과가 표현되어야 할 방법까지. 실격은 기술 및 근본적 이유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실격사유가 결과 기록지에 표시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는 DQ 표시 옆에 선수가 실격 처리된 규칙을 명시해주는 것이다.

4. 기술정보센터(TIC)가 WPA 공인 대회에서 설립될 것이며(파트B-3.1.2참조), 하루 이상 진행되는 대회에 권장된다. TIC의 핵심 요소는 팀 관계자, LOC, 기술 대표 및 대회 임원끼리 대회 내 기술적 혹은 기타 사유들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코멘트: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TIC는 고품질의 대회 조직 제공을 크게 지원할 것이다. TIC 담당관은 규정 및 규칙에 대한 훌륭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특히 특정(진행되는)대회의 세부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TIC의 운영 시간은 대회 시간과 다양한 단체 간의 상호작용, 특히 팀 관계자와 LOC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시점 전후의 일부 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큰 규모의 대회에서는 선수 숙소 위치치에 TIC “지부(branch)”(스포츠 정보 데스크(SID)라고도 부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수는 아니다. 이러한 경우, TIC와 SID간 훌륭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TIC와 SID의 운영 시간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TIC 담당관은 수 명의 보조원을 임명하여 그들을 근무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C의 임무는 대회 규칙에 명시 되어있지만(예를 들어 규칙 2.20, 50.3, 및 50.7), 나머지는 각 대회 규정 혹은 팀 핸드북과 같은 자료에 나타날 것이다.

2.21 장내사령(규칙 133)

장내사령은 경기장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경기 임원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타당한 출입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코멘트: 장내사령의 역할은 사전 준비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는 주로 경기 본부장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행동하며 더욱 즉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회 총무를 통해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는다. 따라서 그는:

선수, 임원, 현장 자원봉사자, 서비스 직원, 공인 언론 사진기자 및 TV 크루의 경기장 출입 통제권을 관리한다. 각 대회에서 현장 등록의 수 사전에 합의되며 이들은 특별한 배번(번호)표를 착용하여야 한다;

선수들이 경기를 마쳤을 때 경기장을 떠나는 위치(큰 대회의 경우 믹스트존 혹은 포스트 경기 컨트롤 지역)의 통제권 관리;

모든 경우에 대회 현장의 시야선(sight lines)은 TV 및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뚜렷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대회 총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장내사령과 그의 팀을 보조해주기 위해 선수를 제외한 경기장에 출입이 허용된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배번(번호)표 또는 AD카드 및 차별화된 유니폼을 통해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22 풍속 측정원 (규칙 134)

풍속 측정원은 해당 경기의 달리는 방향에 대한 풍속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 서명한 후 경기 서기에게 제출한다.

코멘트: 실제로는 풍속 측정원, 기술 대표 혹은 사진판정 심판원이 게이지를 올바른 위치에 놓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및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관련 심판장의 책임이다(규칙 18.13 및 27.12 참조).

트랙 경기의 경우 풍속기를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음에 유의하길 바란다. 어떠한 사례에서는 사진 판정 및 결과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풍속 측정원이 요구되지 않으며 그의 임무는 예를 들어 사진판정 팀의 멤버가 수행을 한다.

2.23 과학계측심판원 (규칙 135)

전자, 비디오, 혹은 다른 과학적 계측이 사용될 경우 1명의 수석 과학계측 심판원 및 보조원들이 임명될 것이다.

대회 시작 전, 이들은 관련 기술 직원을 만나 장치 사용법을 익힌다. 각 경기 전에 그는 제조사 및 장비 교정소에서 제시한 기술상의 필요사항들을 고려하여 측정 장치의 위치 선정을 감독한다.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경기의 경기 전후로 심판원과의 상의 및 심판장의 관리 아래 계측 강철 줄자를 사용하여 계측 값을 확인하여야 한다. 규칙에 다르겠다는 서약서가 발행되며 검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사인을 하고 기록카드에 첨부한다. 계측원은 경기 중에 전반적인 기기조작을 담당한다.

그는 장비가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러 심판장에게 보고를 한다.

참고: 필수는 아니지만, 과학계측심판원 주임은 경기 전 측정된 값을 입증하기 위해 경기 중 측정도구를 지니고 다니는 것을 권장한다.

코멘트: 전자 혹은 비디오 계측 장치가 사용될 경우 수석 심판원은 책임자로 위치를 하며 이는 사진판정 혹은 트랜스폰더 계측의 경우와 유사하다. 비디오 계측의 경우, 수석 측정 심판원은 완전한 현장 전자 거리 계측보다 더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경우 현장 심판원과 비디오 판독을 수행하는 심판원간의 적합한 교류 시스템이 배치되어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수평 도약의 경우 이미지가 확인될 때까지 착지 표시가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디오 판독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자가 수석 측정 심판원 혹은 다른 심판원이던, 그는 이전 것이 아닌 현재의 시기가 측정되게 특별히 신경 쓰어야 한다.

2.24 소집실 심판원(규칙 136)

소집실 심판원은 소집실에서 점검을 끝낸 선수가 경기 시작시간에 맞춰 경기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뒀업 지역에서 경기장으로의 이동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소집실 심판원은 선수들이 입고 있는 국가 또는 클럽 유니폼이 공식적으로 선수들의 국내 관리 기구에 의해 승인된 것인지, 배번(번호)표가 올바르게 착용되고 스타트리스트와 일치하는지, 경기화의 스파이크 수와 규격, 안대, 가이드끈(테더), 레이싱 휠체어, **레이스런닝 프레임** 및 투척프레임의 검사, 최대 허용 가능한 기립 높이 측정(규칙 6.12.2참조), 의복 및

선수 가방에 광고가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물건을 경기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소집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해결 상황 또는 문제들을 소집실 심판원에게 회부한다.

코멘트: 잘 계획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소집실은 대회 성공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소집실의 최대 수용량, 필요한 소집실 수(및 각 구역 내 섹션) 및 다른 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시스템, 워업지역에서 보고할 시기를 선수에게 알리는 것은 변함이 없다. 계획 과정에서 어떤 점검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스트레스 혹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와 팀에게 경기 직전에 미리 전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집실 심판원이 선수들이 맞는 조, 레이스 혹은 그룹에 위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들이 소집실 일정에 따라 대회 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소집실의 일정, 소집실의 출입 및 경기 현장 도착과 같은 주요 시간 및 경기 시작 시간을 표시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소집실 심판원은 가이드끈(테더), 안대, 아이마스크, 휠체어 및 투척 프레임과 같은 일부 선수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점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은 T/F 61-62 선수들이 최대 허용 가능한 기립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수들에게 확인시켜주는데 있어 책임이 있다(규칙 6.12.2 참조).

가이드러너 혹은 보조자를 요구하는 경기의 경우, 소집실 심판원은 개인 선수처럼 선수 및 가이드러너가 모두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스포츠 등급 F11-12, F31-33, F51-54 선수들의 투척 경기의 경우, 규칙 7.14 및 7.16에 따라 선수는 경기당 1명의 보조자가 허용된다. 도약 경기에서 T12 등급 선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규칙 7.20 참조). 하지만, 도약 경기의 T11 등급 선수들의 경우, 규칙 7.18에 따라 선수는 경기당 2명의 보조자가 허용된다.

T11 등급 선수들은 50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반드시 1명의 가이드러너가 있어야 하며 최대 2명까지 가능하지만, T12 등급 선수들은 1명 혹은 50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2명의 가이드러너를 사용할 수 있다. T11 혹은 T12 등급 선수가 5000m 이상 레이스에서 두 명의 가이드러너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 사전에 기술대표 및 심판장에게 해당 대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이드러너가 교체될 주회 및 가이드러너를 교체한다는 의중이 요청 서류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소집실 심판원은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 또는 올바른 방법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해당 경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을 경기장에 출입시킬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스타트리스트를 판단하기 쉬운 릴레이 레이스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2.25 광고 위원 (규칙 137)

광고 위원은(임명된 경우) 현행 광고 규정 및 규칙을 감독 및 적용할 것이며 소집실 심판원과 협의하여 소집실에서 일어난 미해결 광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2.26 수석 등급분류사

국제 등급분류가 진행되는 경우, 수석 등급분류사는 WPA에 의해 임명된다. 수석 등급분류사는 LOC 및 임명된 기술대표와 연락을 취하여 등급분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실행 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는 국제 등급분류사들이 WPA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를 진행하도록 감독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석 등급분류사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코멘트: 수석 등급분류사, 기술대표(들) 및 경기 본부장은 등급분류 평가 기간 및/혹은 등급분류 대회 기간 선수의 스포츠 등급 변경에 관하여 서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엔트리의 재등록이 고려가 되며 이는 기술대표의 승인에 따른다(규칙 5.3참조).

2.27 국제 등급분류사

국제 등급분류사는 WPA에 의해 임명되며 등급분류 패널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선수의 적격한 장애에 따라 대회 전 혹은 대회 중에 평가하고 관찰하여야 하며, WPA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스포츠 등급을 할당하여야 한다.

섹션 II - 일반 경기 규칙

규칙 3: 육상 경기 시설

(규칙 140)

WPA 공인 대회에서는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매뉴얼 세부사항에 의해 단단하고 고른 표면이 사용된다. 패럴림픽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 대회의 경우 세계육상 1등급 혹은 2등급 육상 시설 공인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합성 포장재에서만 대회가 치러진다.

모든 경우에 지역 선수권대회, 지역 대회 및 인가/승인 대회에서 사용하려는 모든 시설은 승인된 계측원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 트랙 공인증이 필요하다.

참고 (i):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매뉴얼은 세계 육상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트랙계측과 마킹에 대한 도면을 포함하여 육상 경기 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하는데 필요한 세부설명이 실려 있다.

참고 (ii): 공인 신청서 및 계측 보고서, 공인 시스템 절차에 관한 표준 양식은 세계육상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규칙 4: 연령, 성별 카테고리 및 혼성대회

(규칙 141)

연령 카테고리

- 다음과 같은 연령 그룹은 WPA에 의해 인정된다:
 - 마스터 남성/여성: 35번째 생일이 지난 선수
 - 20세 이하 남성/여성(U20): 대회 년도의 12월 31일에 17, 18, 19세인 선수;
 - 17세 이하 남성/여성(U17): 대회 년도의 12월 31일에 14, 15, 16세인 선수.

참고 (i): 오픈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는 대회 년도 12월 31일까지 14세가 되어야 한다.

참고 (ii):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 및 (b) 참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 및 최소 연령은 세부 대회 요건에 따른다.

- 본 규정 아래 선수는 본인의 연령이 해당 연령 그룹의 등급분류에 명시된 연령 범위 내에 들 경우, 연령 그룹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선수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 또는 대회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연령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선수는 대회 참가의 자격이 없다.

코멘트: 어린 선수가 참고(ii)에 의해 예상된 대로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특정 경기에 대한 기술 규정이다. 또한, 선수는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특정 등급분류에만 참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스포츠 등급의 선수들이 같이 참가하는 경우가 잦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WPA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합쳐진 선수들의 기록을 비교함으로써 메달리스트를 결정한다.

성별 카테고리

- 본 규칙 아래 대회는 남성, 여성, 그리고 혼성 카테고리로 나뉜다. 혼성 대회가 경기장 밖에서 진행되거나 규칙 4.7, 4.8에 언급된 제한적인 경우일 경우, 여전히 남성 및 여성 카테고리의 결과가 따로 선포되거나 표시될 것이다. 혼성 대회 혹은 경기가 진행될 경우 단일 카테고리의 결과만이 발표될 것이다.
- 선수는 파트B-4.5에 따라 남성으로 인정될 경우 남성(혹은 혼성)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 선수는 파트B-4.5에 따라 여성으로 인정될 경우 여성(혹은 혼성)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 관련 규정에 준수하기를 실패하거나 거부하는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코멘트: 혼성 대회는 남녀가 같이 참가하지만 카테고리 결과가 따로 나오는 경우와 릴레이 혹은 팀 경기에서 남녀가 한팀으로 참가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혼성 대회

7. 혼성 릴레이나 남녀 선수가 함께 경기하지만 단일 카테고리를 놓고 경쟁하는 기타 단체전의 경우 관련 기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허용이 가능하다.
8. 규칙 4.7의 내용을 제외하고, 경기장에서 온전히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서는 남녀 참가자 사이의 혼성 경기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아래의 내용은 파트B-3.1.2(a)및(b)에 따라 개최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대회에서 허용될 수 있다:
 - a. 5000m 이상의 경기에서 혼성 대회는 허용되지만 양쪽 성별 모두에서 개별 레이스를 진행하기에 선수 숫자가 부족함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과지에는 각 선수의 성별이 표시될 것이다. 이러한 레이스들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 성별의 선수가 다른 성별을 페이스/드래프팅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b. 남성 및 여성 필드 경기는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각각의 결과지가 사용될 것이며 각 성별 당 결과가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경기들의 각 라운드당 시기는 한 성별을 모두 호명한 후 다른 성별을 호명하거나 번갈아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규칙 24.17로 인해, 모든 선수들은 같은 성별로 간주된다. 한 곳에서 진행되는 수직 도약의 경우, 바는 사전에 명시된 증가폭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점으로 포함하여 대회 전체에 규칙 25 및 26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코멘트: 규칙 4.8의 목적은 필드 경기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5000m 혹은 그 이상의 긴 레이스의 경우, 한 성별 혹은 각 성별 당 소수의 선수만이 참가하여 타임테이블을 짜는데 제약이 있어서 개별 레이스를 프로그램 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서다. 이 규칙의 목적은 여성선수들이 잠재적으로 더 나은 경기 기록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성 선수들과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하 하기 위하여, 필드 경기 및 5000m 혹은 그 이상의 거리에서 혼성경기는.

해당 관리 기구의 규칙에 따라 WPA 승인 대회에서 허용됨[WPA의 추가적인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WPA에 의해 구체적으로 승인이 되었을 경우, 파트 B-3.1.2(c)에 따른 WPA 인정대회에서 허용됨;

파트 B -3.1.2(a), (b)에 따라 IPC 경기 및 IPC 대회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수직 도약 혼성 대회의 경우, 규칙 25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 대회 전체에서 합의된 단일 증가 세트에 따라 바를 계속 올려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트 B -3.1.2(a), (b)에 따라 IPC 경기 및 IPC 대회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수직 도약 혼성 대회의 경우, 규칙 25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 대회 전체에서 합의된 단일 증가 세트에 따라 바를 계속 올려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

혼성경기에서의 세계기록 인정에 대한 제한도 있다 – 규칙 51.2(트랙 경기 5000m 혹은 그 이상에 관한 부분) 및 51.22(여성 로드레이스 부분) 참조.

규칙 51.22의 참고(i)는 남녀 모두 경쟁 중이거나 경쟁 중일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전용 레이스가 수립될 수 있는 방법(여성 전용 기록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규칙 2.20.2 및 2.20.3참조).

규칙 5: 엔트리

(규칙 142)

1. 규정에 따른 대회는 자격이 있는 선수들에게만 제한된다.

동시 참가신청

2. 선수가 트랙 및 필드 경기에 모두 참가하거나 동시에 진행되는 한 종목 이상의 필드 경기에 참가한 경우, 심판장은 여러 시기 중에 한 라운드 또는 높이뛰기의 한 시기를 뒤흔 수 있도록 대회 시작 전에 실시한 대진추첨으로 결정된 순서와는 다르게 선수가 시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선수가 어느 시기에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아 그 허용된 시간이 경과되면 그 시기는 패스한 것으로 간주된다. 높이뛰기에서 다른 모든 참가선수들이 경기를 마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장은 그 선수의 다음 시기의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필드 경기의 경우, 심판장은 선수가 최종 라운드 시기에서 다른 순서에 시기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종 라운드 이전 라운드에서는 허용해줄 수 있다.

코멘트: 참고의 내용은 선수가 최종 라운드 시기(시기 라운드의 숫자와 상관없이)에서 다른 경기와

겹침으로 인해서 다른 순서에 시기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만일 선수가 최종 라운드에서 현장에 없고 사전에 패스를 할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경우, 그에게 주어진 시기의 시간은 흘러갈 것이며 종료되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패스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규칙 24.18에 대체 시기가 부여될 경우 순서 변경은 어느 라운드의 시기에서도 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 참조).

스포츠 등급 변경 후 재등록(Re-entry)

3. 모든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및(b)참조)에서 선수는 등급분류 평가 기간 및 등급분류 대회기간 동안 선수의 선수의 스포츠 등급 변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 대표(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 평가 기간 동안 선수의 스포츠 등급이 변경될 경우, 선수, 선수 대리인 혹은 팀의 공식 관계자는 등급분류 결과가 게시되자마자 즉시 선수의 재등록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재등록 대상인 선수들은 변경된 등급 이전에 참가한 동일한 경기에만 재등록할 수 있다. 변경된 스포츠 등급에 따라 참가할 수 없는 경기의 경우, 선수는 대체 가능한 경기에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대회 기간동안 본 규정 및 규칙 52.4에 따라 선수의 스포츠 등급은 관찰 후, 등급분류 소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선수의 스포츠 등급, 결과(들), 순위 및 기록(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수가 만일 동일한 대회에서 이전 스포츠 등급으로 참가하였을 경우, 선수는 기술위원장(들)의 승인에 따라 새로운 스포츠 등급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WPA 혹은 등급분류위원회가 선수 등급분류 단계에서 등급을 배정할 수 없는 경우, WPA 등급분류 심판장 혹은 해당 등급분류 책임자는 WPA 분류 규칙 및 규정 제 10조에 따라 해당 선수를 CNC(Classification Not Completed)로 지정할 수 있다. CNC로 지정된 선수는 공식 결과에 DNF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경기에서 선수가 달성한 모든 성과는 무효가 된다.

코멘트: 아래의 기준은 선수의 스포츠 등급 변경 후 재등록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 할당된 스포츠 등급의 최소자격기준에 충족

새로 할당된 스포츠 등급에 경기(들)가 제공 가능

팀당 최대 엔트리 수에 아직 도달하지 않음
대회에서 참가 고려중인 경기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음
대회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음.

참가 실패

4. IPC 경기 및 IPC 대회 (파트B - 3.1.2 (a) 및 (b))에서 선수는 아래의 경우 (선수가 동시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경기들을 포함하여) 릴레이를 포함한 추후 모든 경기에서의 참가가 제외된다:

a) 경기에서 스타트를 한다는 최종 안내를 하였으나 선수가 참가하는데 실패하였을 경우

참고: 참가 최종 확정을 위한 정해진 시간이 사전에 공지될 것이다.

b) 선수가 참가한 경기에서 예선을 통과하였지만 다음 시합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c) 선수 및 동행하는 가이드러너가 진실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주하지 못했을 경우, 심판장은 이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가 반드시 공식적인 결과에 포함되어야 한다.

규칙 2.2 아래 지정된 의료 담당관에 의해(또는 의료 담당관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조직위원회의 의료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고 선수 검사에 기반을 둔 의료진단서는 선수 본인이 대회 다음날에 추가 경기를 참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기타 정당한 사유들(예: 공식 수송 시스템의 문제와 같이 선수 본인의 행동과는 별개의 문제들) 또한 기술 대표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d) 선수가 규칙 5.5를 위배하여 경기에서 소집실 소집에 실패할 경우.

코멘트: 관련 심판장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경기를 포기한 선수가 선의의 노력으로 경기를 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충족한 후, 관련 결과에서 이를 "DNF 규정 5.4(c)"로 언급하여야 한다. 심판장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혹은 이의 제기로 인해 발생하는 이의를 고려하여 항소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선수 또는 선수를 대신하여 제안된 탈퇴 또는 불참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 규칙은 의학적인 이유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따라야 하는 과정을 규정한다.

소집실에 소집 실패

5. 아래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선수는 소집실 일정에 명시된 시간에 소집실에 소집하지 않은 경우 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는 결과에 DNS로 표시된다. 관련 심판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결정이 즉각적으로 내려질 수 없는 경우 소청 아래 있는 선수도 참가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 공식 결과에서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야 한다.

정당성 있는 사유(예: 공식 운송 시스템의 문제 또는 개시된 소집실 일정의 오류 등 선수 자신의 행동에 관계없는 요인)는 확인 후 심판장에 의해 승인이 가능하며 선수는 참가할 수 있다.

코멘트: 규칙에 나와있는 대로, 선수는 정해진 시간에 소집실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소집실 밖에 서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회 기술 규정은 따라져야 하는 소집실 절차를 서술할 것이다. 관련 심판장은 선수가 소집실에 제시 시간에 왔는지 혹은 제시 시간에 오지 못한 정당성 있는 사유가 있는지 결정할 것이다. 심판장은 결정을 즉각적으로 내릴 수 없는 경우 소청 중 상태로 선수를 경기에 참가시킬 수 있다.

선수가 만일 결과지에 "DNS"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그는 대회 나머지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음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DNS"가 규칙 6.16의 결과임을 참고)

규칙 6: 의복, 신발, 선수 배번호표, 인공기관 및 보조기구, 아이마스크, 가이드끈(테더), 장비 불이행 및 헬멧

(규칙 143)

6.1 의복

- 6.1.1 모든 경기에서 선수는 청결하고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된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의복은 젖어도 속이 비치지 않는 옷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선수는 심판원의 시각을 방해하는 의복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선수의 조끼/타이즈는 앞과 뒤의 색깔이 동일하여야 한다

- 6.1.2 예를 들어 몸통을 노출하기 위해 경기 종료 후 상의를 벗는 행동과 같이 의류 품목을 부적절하게 제거하는 모든 선수는 첫 위반 시 규칙 2.13.5에 따라 심판장에게 주의를 받는다. 해당 대회에서 두번째 위반이 있을 경우, 심판장은 규칙 2.13.5에 따라 선수를 실격시킬 것이다.
- 6.1.3 해당되는 경우, 선수들은 선수의 국가 운영기관이 승인한 의복을 착용하고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시상 식 및 우승주회를 하는 경우에도 대회의 일부로 여겨지며 이 규칙이 적용된다.

참고 (i): 좌식 투척 경기의 경우 의복은 심판원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헐렁한 옷이 아닌 몸에 딱 맞는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코멘트: 경기장 입장 전 소집실 임원들은 선수의 의복이 부적절하거나 불쾌하다고 여길 경우, 선수에게 옷을 바꿔 입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선수가 소집실 심판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련 심판장은 선수에게 경고를 주며 적합하도 여길 경우 옐로 혹은 레드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선수들은 임원들이 좌식 투척 경기 등에서 선수들의 품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임원들에 의해 옷을 조정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6.2 신발- 일반

- 6.2.1 선수는 맨발 또는 한쪽 혹은 양쪽에 신발을 신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신발을 신는 목적은 발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며, 그라운드를 힘차게 딛게 하기 위함이다. 신발은 선수들에게 불공정한 조력 또는 이득을 주어서는 안된다.
- 6.2.2 세계 육상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개시되는 세계육상 승인 경기화 목록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상응하는 WPA 대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목록에 나와있지 않은 모든 신발을 WPA 대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칙 6.2 – 6.6에 포함된 모든 내용과 본 규칙 6.10에 따라야 한다.

코멘트: 예를 들어, 특정 신발이 세계육상 승인 경기화 목록에 "트랙 800m 이상"의 항목에 있을 경우, 선수들은 세계장애인육상 트랙 800m 이상 경기에서 해당 신발을 사용할 수 있다.

- 6.2.3 육상의 보편성 아래 모든 종류의 신발은 합리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규칙 6.2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발은 특정 선수의 발의 특징에 맞게 맞춤 수 있다(커스터마이징).

Rule 6: Clothing, Shoes, Athlete Bibs, Prosthetics and Orthotics, Eye mask, Tether, Non-compliance on Equipment

그러나 원-오프 신발(one-off shoes)(예: 신발이 유일한 종류인 경우)의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 6.2.4 WPA가 신발의 종류 혹은 특정 신발 기술이 규칙 6.2-6.6에 따르지 않는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는 해당 신발 혹은 신발 기술에 대한 세부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점검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해당 신발 혹은 기술의 사용의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6.3 신발-스파이크 갯수

경기화의 밑창과 뒷굽 밑/또는 인공기관(들)(선수의 발뒤꿈치 아래 부분 포함)은 최대 11개 이내의 스파이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스파이크 수가 11개 이내라면 몇 개라도 상관없으나 스파이크 구멍은 11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6.4 신발-스파이크 규격

밑창이나 뒷굽에서 돌출된 스파이크 길이는 9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높이뛰기와 창던지기에서는 12m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스파이크는 길이로 따질 때 끝에서부터 1/2 이상이 한 변이 4mm인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트랙 제조업체나 경기장 운영인이 이보다 더 적은 최대치를 요구하거나 특정 모양 스파이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적용하고 선수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참고: 표면은 반드시 해당 규정 아래 승인된 스파이크를 수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코멘트: 개정된 스파이크 길이 요건은 일반적으로 대회팀 매뉴얼 혹은 기술 요건에 명시될 것이다.

6.5 신발-밑창

- 6.5.1 밑창(선수 뒤꿈치 아래 부분 포함)에는 골이나 용기물, 톱니모양, 돌기물이 있어도 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밑창 재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신발 밑창의 최대 두께는 규칙 6.10에 명시되어 있다.

참고 (i): 밑창의 두께는 선수가 경기화를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발 앞쪽(발볼)의 중앙 및 뒤꿈치의 중앙에서 측정하되, 위에서 언급된 특징뿐 아니라 어떤 종류나 형태의 안쪽 깔창, 기타 부속품 또는 삽입물을 포함하여 안쪽 상단과 지면과 접촉하는 바깥쪽 하단 사이의 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하단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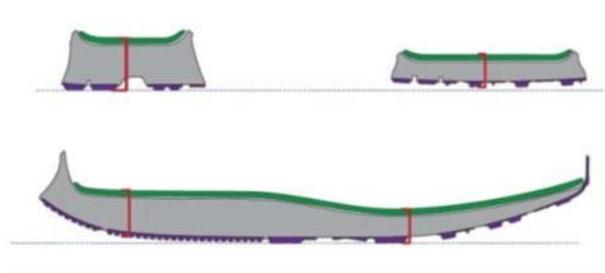


그림 1 – 밑창의 두께 측정

참고 (ii): 발 앞쪽(발볼)의 중앙이라 함은 경기화 내부 길이의 75% 지점의 신발 중심을 말하며, 뒤꿈치의 중앙이라 함은 신발 내부 길이의 12% 지점의 신발 중심을 말한다. 아래 그림 2를 참조. 유럽 신발 크기 기준으로 남녀공용 42사이즈의 표준 샘플(size 42(EUR))로 보면, 발 앞쪽(발볼)의 중앙은 신발 내부 뒤쪽에서부터 대략 203mm 지점의 중심이 되며, 뒤꿈치의 중앙은 신발의 내부 뒤쪽에서부터 대략 32mm 지점의 중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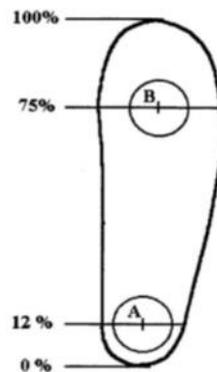


그림 2 – 발 앞쪽(발볼) 및 뒤꿈치의 중앙 측정 지점

참고 (iii): 규칙 6에 따른 밑창 두께의 허용한도 최대치는 유럽 신발 크기 기준으로 남녀공용 42의 표준샘플(size 42(EUR))을 기준으로 한다. WPA는 표준 샘플 이상 크기(사이즈)의 신발은 단지 크기(사이즈)로 인해 밑창 두께가 미미하게 다를 뿐이며, 동일한 제조사 및 제품 모델의 표준 샘플 크기보다 약간 두꺼운 밑창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미미한

Rule 6: Clothing, Shoes, Athlete Bibs, Prosthetics and Orthotics, Eye mask, Tether, Non-compliance on Equipment

중폭 차이는 본 규칙 조항의 준수 목적에 따라 중요하게 간주되지는 않는다.

6.6 신발-신발 삽입물 및 부착물

선수들은 신발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어떠한 기구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것은 신발 착용자에게 허용된 최대치 이상으로 밑창 두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거나 이전 단락에 서술된 신발 형식에서 얻을 수 없는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코멘트: 6.8(불이행) 및 6.10(모라토리움)에 명시된 신발에 관한 이후 규정 참조.

6.7 Athlete Bibs

6.7.1 경기 중에 모든 선수는 두 개의 배번표를 가슴과 등 혹은 경기 장비(예: 레이싱 휠체어, 레이스런닝 프레임 및 투척 프레임)에 아래 할당표에 맞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붙여야 한다. 어느 선수의 이름 또는 다른 적절한 신원 확인은 배번표의 일부 또는 모든 숫자를 대신하여 허용한다. 번호가 사용되는 경우, 이들은 스타트리스트 또는 대회 프로그램에 할당된 번호에 대응한다. 만약 경기 도중 트레이닝복을 입을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트레이닝복 위에 배번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배번표 할당표

	트랙 경기	도약 경기	필드 경기
입식 선수	등, 가슴에 배번표 1개씩 (총 2개)	가슴 혹은 등에 배번표 1개	등, 가슴에 배번표 1개씩 (총 2개)
휠체어 레이싱	레이싱 휠체어에 배번표 1개 선택사항: <u>선수의 헬멧에 배번표 1개</u>		
좌식 투척			투척의자 뒤, 가슴에 배번표 1개씩 (총 2개)
레이스런닝	등에 배번표 1개 선택사항: <u>헬멧 혹은 프레임의 측면에 배번표 1개</u>		

- 6.7.2 배번호 중 하나는 위에 언급된 배번호 할당표에 따라 레이싱 휠체어, 투척 프레임 및 레이스런닝 프레임의 측면 후방에 붙여서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6.7.3 선수들은 자신의 가슴 혹은 등 대신 다리에 어떠한 배번호도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 6.7.4 선수 배번호는 배포된 형태대로 부착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 자르거나 접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장거리 레이스의 경우 공기순환을 위해 배번호에 구멍을 뚫어도 좋으나, 이로 인해 배번호의 글자나 숫자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 6.7.5 사진판정장치가 사용되는 종목의 경우, LOC는 선수의 경기복 하의 측면에 접착성 형태의 허리 혹은 소집실 및 기술임원에 의해 판단된 기타 하체 부위에 번호표 표식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개인 및 팀, 트랙 및 로드 휠체어 레이스 및 레이스런닝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하여, 이러한 추가번호 표식이 헬멧에 부착되어야 한다.
- 6.7.6. 모든 번호표와 표식을 바르게 부착하지 않은 선수는 어떠한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

6.8 의복, 신발 및 배번호의 규칙 불이행

만약 선수가 본 규칙 6.1 – 6.7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준수하지 않고:

- a) 관련 심판장 혹은 기타 임원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 b) 대회에 참가하려 할 경우,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코멘트: 본 규칙 6.8은 규칙 6.1 – 6.7의 어떠한 내용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제재를 규정한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 관련 담당자가 선수에게 본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 선수가 경기에서 본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따르지 않고 임원들이 적용을 요청하기 타당하지 않을 경우, 선수들은 실격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스타터 보조원 및 감찰원(트랙 및 경기장 외 경기의 경우) 및 심판원(필드 경기의 경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긴장을 늦추면 안되며 관련 심판장에게 모든 관련 위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6.9 심판장의 신발(경기화)에 관한 지시

- 6.9.1 만약 심판장에 대회에서 선수가 착용한 경기화가 규칙의 내용 또는 정신에 준하지 않는다고 정당한 의심을 할 경우, 해당 심판장은 선수에게 경기화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선수는 경기를 마치는 즉시 경기화를 심판장에게 제출하고 WPA가 추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경기화가 규칙의 내용 또는 정신에 위배되었다고 이미 선언되었을 때 해당 심판장은 즉시 규칙 6.8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6.9.2 본 규칙에 따라 경기화가 심판장에게 제출되었고 선수는 동일한 경기대회 중 동일한 종목의 이후 라운드 또는 기타 종목에서 지속적으로 경기에 임하고자 할 경우, 심판장은 선수가 이후 남은 경기에서 해당 경기화를 신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 중 선수에게 경기화를 어떻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게 할 것인가는 심판장의 권한에 달려있다.

6.10 일시유예(Moratorium) (신발)

- 6.10 세계장애인육상이 서면으로 특별히 동의하지 않는 이상, 추가 공지가 있기 전까지 대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경기화는:
- a) (규칙 6.10.(b)가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탄소섬유 또는 탄소섬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졌거나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타 소재로 제작된 단단한 판 또는 날이 1면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 b) 경기화의 바깥 쪽 밑면에 스파이크를 부착하기 위한 이유에 의해서만 단단한 판 또는 기타 구조가 1면 더 있을 수 있다.
 - c) 아래의 표에 따라 최대 두께 내의 밑창이 있어야 한다.

경기화 밑창 두께 표

경기	규칙 6.5, 참고(i), (ii), (iii), 그림 1&2 및 규칙 6.10(c)에 따른 밑창의 최대 두께	추가 규칙 요구사항
필드 경기 (세단뛰기 제외)	20mm	세단뛰기를 제외하고 모든 입식 선수들의 투척경기 및 수직/수평도약 경기에 적용된다. 모든 필드 경기의 경우, 발 앞쪽(발볼) 중앙의 밑창이 선수의 발뒤꿈치 중앙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세단뛰기	25mm	발 앞쪽(발볼) 중앙의 밑창이 선수의 발뒤꿈치 중앙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800미터 미만(800미터 미포함) 트랙 경기	20mm	릴레이 경기의 경우 본 규칙은 각 선수가 달린 바퀴수의 거리에 따라 적용된다.
800미터 이상 트랙경기	25mm	릴레이 경기의 경우 본 규칙은 각 선수가 달린 바퀴수의 거리에 따라 적용된다.
로드 경기	40mm	

참고 (i): 규칙 6.10(a)에 따른 1면의 단단한 판 또는 날이 한 부분 이상에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부분들은 반드시 평행하지 않고(즉, 서로 쌓인 형태가 아니어야 함), 한 평면에 순차적으로 위치해야 하며, 겹치지 않아야 한다.

6.11 규칙 6.2, 6.5, 6.6 혹은 6.10의 예외

- 6.11.1 선수가 규정 6.2, 6.5, 6.6 혹은 6.10의 요구사항을 고수하는 것을 방해(방지)하는 해부학적 제한(예를들어 다리 길이 차이 혹은 발 기형)을 나타낼 경우, 평가가 WPA에 의해 경기 사전에 이루어질 것이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 6.11.2 선수는 장애가 없는 발 혹은 다리에 신는 경기화는 규칙 6.2, 6.5, 6.6 및 6.10을 따라야 한다.
- 6.11.3 WPA는 해당 규칙에 대한 적용 과정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6.12 인공기관

다리길이 불균형 및 하지결손이 있는 스포츠 등급 T/F61-64 선수들의 경우(WPA 등급분류 규정 및 규칙의 부록 중 최소장애기준 섹션 2.1.4.1 및 2.1.7의 기준에 부합), 양 다리가 균형을 이루고 경기 중에 대칭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공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기관은 선수에게 다른 도움을 주거나 파트 B-7.1에 명시된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a) 트랙 및 로드 경기의 경우, 스포츠 등급 T61-64 선수들은 하퇴 인공기관(들)을 사용하고 경기를 치를 것이며, 그리고 해당 장치로 레이스를 완주하여야 한다. 인공기관은 선수 몸의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선수가 레이스를 인공기관(들) 없이 마칠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 될 것이다.
- b) 필드 경기의 경우, 스포츠 등급 T/F 61-64 등급 선수들의 하지 인공기관의 사용은 선택적이다. 경기 시작 전, 선수가 인공기관을 사용하고 경기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선수는 관련 임원에게 사용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선수가 경기에 인공기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는 모든 시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관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수의 시기는 실패로 간주된다.

코멘트: 선수가 시기를 하는 동안 하지 인공기관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관련 임원은 규칙 25.7 및 27.14가 해당 시기에 관찰되도록 하여야 한다.

6.12.2 스포츠 등급 T/F 61-62 선수들의 경우, WPA 등급분류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선수의 의족을 포함한 실제 키가 최대허용기립높이(MAS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선수의 키는 소집실에서 국제등급분류사가 측정하거나 국제등급분류사가 대회에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소집실 심판원이 측정한다. **선수가 MASH를 초과할 경우**, 선수는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며 규칙 6.16에 따라 결과가 "DNS"로 표시될 것이다.

코멘트: 세계 및 지역 기록 - 기록 승인을 위해, 스포츠 등급 T/F 61-62 선수들이 달성한 모든 세계 및 지역 기록은 규칙 51.10 참고(i)를 준수하여야 한다.

6.12.3 스포츠 등급 T45-47 및 F45-46의 **선수**들의 경우, 상지근력장애, 가동범위운동장애가 있는 선수(WPA 등급분류 규정 및 규칙 부록1의 최소장애기준 섹션2.1.4.2, 2.2.1.1, 그리고 2.2.2.1)의 경우, 상지 인공기관(들)의 사용은 선택적이다.

a) 트랙 및 로드 경기의 경우, 대회 중 상지 인공기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스포츠 등급 T45-47 선수들은 기관을 사용한 채로 경기를 마쳐야 한다. 사용이 선택사항이므로, 선수는 다음경기에서 상지 인공기관(들)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예: 100m의 4강전 혹은 결승전에서). **인공기관은 선수 신체의 연장부위로 판단한다. 상지 인공기관(들)을 사용하며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피니시 라인의 선행구간까지 장치를 착용한 채로 도착하여야 한다. 선수가 만일 인공기관(들)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스를 완료할 경우, 해당 선수는 실격처리 된다.**

b) 필드 경기의 경우, 스포츠 등급 T45-47 및 F45-46 선수들의 상지 인공기관의 사용은 선택적이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은 사용 여부를 관련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선수가 인공기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는 첫 시기부터 마지막 시기까지 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기는 실패로 간주된다.

코멘트: 선수가 시기에 인공기관을 사용하기로 한 사례의 경우(예: 높이뛰기 혹은 멀리뛰기), 관련 임원은 해당 시기에 규칙 25.7, 27.14가 적용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6.13 보조기구

6.13.1 두 개의 해부학적 팔을 지닌 하지 장애 스포츠 등급 T32-34/F31-34, T/F35-38, T/F42-44 및 T51-54/F51-57 선수들은 보조기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13.2 상지 장애가 있는 스포츠 등급 T32-34/F31-34, T/F35-38, T45-47/ F45-46 및 T51-54/F51-57 선수들의 경우, 보조기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6.13.3 상지 및/혹은 하지 장애가 있는 선수는 주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칙 6.12, 6.14, 6.15 및 6.16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코멘트: 2018년 1월 1일까지, 스포츠 등급 T/F 42-44는 인공기관으로 참가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모두를 포함하였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기관을 사용하면 트랙 경기에서 성능 이점이 있을 수 있다

6.14 안대(Eye mask)

6.14.1 스포츠 등급 T/F11 선수들은 모든 트랙 및/또는 필드 경기 중에 반드시 승인을 받은 불투명 안경 또는 적절한 대체물을 착용하여야 한다. 불투명 안경 혹은 그 대체물은 반드시 해당 기술 위원이 승인하고 기술위원들이 보기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빛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담당 기술임원은 경기 시작 바로 직전 및 경기 종료 후를 포함한 어떤 때라도 불투명 안경 또는 그 대체물을 검사할 수 있다.

6.14.2 아이패치, 안대, 불투명 안경을 제공하고 해당 아이패치, 안대, 불투명 안경이 6.14.1에 나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에 대한 책임 선수에게 있다. 선수가 소집실에 도착한 이후 a)아이패치, 안대, 불투명 안경 혹은 합당한 대체제가 없거나 b)아이패치, 안대, 불투명 안경 혹은 합당한 대체제가 본 규칙 6.14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규칙 6.16이 적용된다.

6.14.3 아이패치 및 안대 / 불투명 안경 혹은 합당한 대체제는 선수가 소집실을 떠난 이후부터 경기가 끝날 때 까지(트랙 경기의 경우 선수가 피니시 라인의 선행 구간을 통과한 이후 혹은 필드 경기의 경우 선수의 최종 시기 이후) 혹은 선수가 경기에서 기권(포기)하기 전까지는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6.14.4가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고, 경기 종료 이전 혹은 선수에서 기권(포기)하기 이전에 아이패치 및/혹은

안대/불투명 안경을 벗었을 경우, 첫번째로는 규칙 2.13.5에 따라 경고를 받을 것이며, 해당 경기에서 두번째일 경우, 심판장은 규칙 2.13.5에 따라 선수를 실격처리 할 것이다.

6.14.4 필드 경기의 경우 선수는 경기 중 시기 사이에 **임시로** 안대/불투명안경(하지만 아이패치는 안됨)을 벗을 수 있다.

6.14.5 로드 레이스 경기 동안 선수들이 아이패치를 사용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코멘트: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수는 실격처리 당할 수 있다. 또한 ITO는 심판장으로서 아이 패치 및 안대는 소집실(규칙 2.24참조)에서 검사 받아야 하며, 선수가 경기 동안 사용하기로 한 적합한 아이 패치 및 안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 선수가 아이 패치나 안대를 제거하고 싶은 경우, 이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경기의 심판장 혹은 수석 심판장을 통해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된다.

트랙경기의 경우 아이 패치 및 안대는 일반적으로 출발선에 배치되며 경기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하지만 일부 필드 경기에서는 선수는 시기를 시도하는 사이에 한쪽 혹은 안대/불투명 안경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심판원과 심판장은 선수 혹은 그의 보조자가 다음 시도 전에 교체하는 것을 관찰하여야 한다.

아이 패치 및 안대를 제대로 착용하는데 실패할 경우, 선수는 실격처리 당할 수 있다. 이는 트랙 경기 동안 아이 패치 혹은 안대가 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6.15 가이드끈(테더)

6.15.1 가이드러너와 참가할 경우, 스포츠 등급 T11 및 T12 선수들은 선수에 의해 공급되고 규칙 6.15.4를 따르는 가이드끈(테더)를 통해 가이드를 받을 것이다. **만일 선수가 소집실에 도착하여 a) 가이드끈(테더)가 없거나 b)가이드끈(테더)가 규칙 6.15.4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칙 6.16이 적용된다.**

6.15.2 레이스 하는 동안 선수와 가이드러너 사이에 오직 1개의 가이드끈(테더)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6.15.3 레이스를 하는 동안 가이드끈(테더)가 끊어질 경우, 선수는 실격처리 될 것이다.

코멘트: 선수들의 가이드끈(테더)가 튼튼하고 쓸 수 있음에 대한 책임은 선수에게 있으며, 경기 중 가이드끈(테더)가 끊어질 경우 규칙 7.9에 따라 실격처리된다.

6.15.4 테더는 에너지를 수용하지 않고 선수가 이를 통한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되며, 탄성이 없는(비탄성)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테더는 두 개의 닫혀 있는 잡는 고리와 양쪽 끝에 두 개의 고정된 구형 모양의 스톱퍼가 있어야 한다.

- a) 트랙 경기의 경우, 테더를 최대 늘렸을 때 두 개의 고정고리(홀딩루프)간 가장 먼 포인트 간의 길이가 30cm를 넘어서는 안된다. 로드 경기의 경우, 테더를 최대 늘렸을 때 두 개의 고정고리(홀딩루프)간 가장 먼 포인트 간의 길이가 50cm를 넘어서는 안된다. 각 테더는 테더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 길이로 늘려서 소집실에서 측정될 것이다.
- b) 고정고리(홀딩루프)는 고리가 열릴 수 있는 어떠한 메커니즘도 포함해서는 안된다. 고정고리는 선수에 의해 쉽게 작동되며, 선수가 고리의 크기를 조절하고 잠글 수 있는 잠금 메커니즘은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절 가능한 잠금 메커니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두 개의 고정된 구형 스톱퍼를 넘어갈 수 없다. 중간 섹션은 최소 길이는 10cm가 되어야 하며,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최대 늘렸을 때 측정해 본다. 중간 섹션은 독특한 색깔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른 테더와 차이가 있어야 한다. 스톱퍼들은 구형(구체)이어야 하며, 지름이 최소 1cm이어야 한다



그림 3- 가이드끈(테더) 구성

코멘트: 위 그림은 트랙/로드 경기 동안 반드시 관찰되고 지켜져야 하는 최소/최대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집실 심판원이 적절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테더의 길이가 규정 6.15.1, 6.15.4에 따르는지 분명히 할 것이다

6.16 장비 불이행(미준수)

- 6.16.1 선수(릴레이의 경우 팀)는 경기 장비(예; 레이싱 휠체어, 레이스런닝 프레임, 투척 프레임, 인공기관(들), 헬멧, 가이드끈(테더) 및 안대)가 해당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경기에서 참가가 제외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의 경우, 소집실 심판장(혹은 기타 관련 심판장)은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발부하여야 한다.
- 6.16.2 선수가 만일 본 규칙들을 준수하기 위해 소집실에서 출발하는 시간 전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거나 분실한(없는)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예: 조직위원회에게 가이드끈을 대여),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선수가 본인 장비를 조정함으로 인해 경기가 지연될 수는 없다.
- 6.16.3 선수가 만일 본 규칙을 준수하는 데 실패할 경우, 선수는(릴레이의 경우 팀) 경기를 시작하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으며, DNS로 표기가 될 것이다. 공식 결과에도 위반된 규칙에 대한 참고사항이 명시될 것이다(예: DNS + YC 6.12.2). 특정한 상황의 경우, 선수는 규칙 5.5에 따라 향후 경기에서의 참가가 제외되지 않는다.
- 6.16.4 선수의 장비가 모든 후속 경기에 비준수를 할 경우,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소집실 심판장(혹은 기타 적합한 심판장)은 선수에게 두번째 옐로카드에 이어 바로 레드카드를 보여줄 것이며 특정 상황에 따라 선수는 대회 내 후속 경기들에서의 참가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 6.16.5 적합한 심판장에 의해 옐로 카드 및/또는 레드 카드의 발행에 관련한 해당 규칙 6.21은 경기를 시작을 하려 하거나, 이미 시작을 하였거나 경기를 마친 선수가 추후에(subsequently) 비 준수 장비를 사용하여 경기를 하여 해당 경기에서 실격을 당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코멘트: 선수의 장비가 규칙에 비 준수하는 상황의 경우, 해당 규칙의 적용을 일관되게 하기 위하여 소집실 심판장은 발행된 옐로 카드 및 레드 카드를 기록하도록 한다.

6.17 헬멧

스포츠 등급 T31-34, T51-54를 위한 헬멧

6.17.1 헬멧은 모든 트랙 및 로드 휠체어 레이스 및 레이스런닝 레이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헬멧은 인정되는 국제 안전 규격을 지니고 있는 단단히 보호되는 헬이 되어야 한다. [규격 예시: Snell b-84/90/95, BSI 6863, EN 1078.]

6.17.2 선수가 소집실에 도착 후 a) 헬멧이 없거나 b) 헬멧이 규정 6.17.1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규칙 6.16이 적용된다.

6.17.3 헬멧은 선수가 소집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레이스 종료 시 까지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경기 중 해당 시간에 헬멧을 벗을 경우 첫번째 경고로 규칙 2.13.5에 따라 심판장에게 경고를 받을 것이다. 해당 경기에서 두번째일 경우, 규칙 2.13.5에 따라 해당 선수는 심판장에 의해 실격처리 된다.

6.17.4 본 규칙 6.17의 목적은 트랙에서 모든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헬멧을 일시적으로 벗는 행동을 처벌하려는 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다. 예를 들어, 선수는 정지된 상황에서 잠시 헬멧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행동을 요하지 않는다.

코멘트: 안전상의 이유로 본 규칙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트랙에서 헬멧을 모든 상황에서 착용하고 있을 것을 권장한다(예: 경기 이후)

규칙 7: 선수 보조 (조력)

(규칙 144)

의료 진단 및 보조 *Medical Examinations and Assistance*

1.

a) 의료 진단, 의료 처치 혹은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최자가 임명하고 완장, 조끼 또는 의복으로 식별이 가능한 의무요원이 경기구역에서, 경기구역 밖 의무치료구역에서 의무 대표나 기술위원장이 임명한 의무요원팀이 물리치료나 건강진단 또는 의료 처치를 실시한다. 단, 어떠한 의료행위도 경기 진행이나 선수의 시기 순서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 중이거나 선수가 소집실을 떠나 경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다른 사람의 간호나 도움은 보조로 간주한다.

b) 의료대표 또는 완장, 조끼 및 눈에 띄는 의류로 식별이 가능한 공식 의료진의 명령이 있을 경우 선수는 즉시 경기를 기권(종료/retire)하여야 한다.

참고: 일반적으로 물리적 장벽이 있는 경기구역의 경우,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는 구역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접근 권한은 제한되며 승인된 임원만 접근 가능한 구역의 목적으로 정의된다.

2. 보조를 하거나 받는 모든 선수들은 심판장에 의해 경고를 받으며, 이를 반복할 시에는 해당 경기에서 실격당할 것임을 주의받게 될 것이다. 만일 선수가 경기에서 추후에 실격을 당할 경우, 실격을 당한 시점에서 달성된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그러나 이전 라운드에서 달성된 기록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참고: 규칙 7.3(a) 혹은 7.3(f) 아래의 사례들의 경우 실격은 경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이 규칙을 위해서 다음 예시 사항들은 보조로 허락되지 않는다:

- a) 아래에 허용되지 않은 이상, 한 바퀴 뒤쳐졌거나 막 뒤쳐지려고 하는 선수들에 의하거나 기타 모든 기술적인 장비에 의해 같은 레이스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 의한 페이스(규칙 7.4(d)에 의해 허용된 경우 제외)
- b) 경기구역에서 오디오 또는 비디오 레코더, 라디오, CD, 라디오 송신기, 핸드폰 또는 통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사한 장비의 소유 또는 사용;
참고: 7.3 b)에 명시된 장비의 소유 혹은 사용은 선수 보조자 및 가이드러너에게도 적용된다.
- c) 규칙 6.12에 준수하는 장치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규칙에 나와있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얻을 수 없는 이점을 주는 모든 기술 또는 장비의 사용.
- d) 대회의 공식 임원에 의한 조언이나 다른 지원의 제공은 그 당시 대회에 그의 특정 역할에 관련해서 하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다. (예: 코치 조언, 수직도약경기에서 실패를 표시하는 것 제외하고 도약경기에서 도약점수, 경주에서 시간 또는 거리 간격 등).

코멘트: 규칙 7.3(d)는 임원이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서 선수를 보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특히 수평도약 경기의 파울 점프에서 “임팩트” 지점을 표시할 목적으로 도약 경기에서 관계자들이 도약 위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 e) 입식으로 경쟁하는 입식 선수들이 경기구역에 접근하기 위하여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 f) 레이스에서 앞으로 가도록 보조해주는 다른 선수로부터 신체적 보조(입식 포지션으로의 회복 보조 제외)를 받았을 경우.

코멘트: 경기장에서 선수에게 불합리한 이득을 제공하는 신체적 또는 기술적 행동 및 활동은 금지된다. GPS 요소가 있는 속도계가 부착된 휠체어의 경우, 통신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있다(규칙 7.3(b)참조). 소집실 심판원은 선수가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레이싱 휠체어 프레임 포함, 헬멧 및 선수의 귀를 검사한다. 추가 검사는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 규칙은 경기장 내 모든 선수 및 가이드러너(혹은 보조자)에게 적용된다. 소집실 심판원은 항상 선수 및 가이드러너(혹은 보조자)가 본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를 조언한다. ITO 및 기타 기술임원들이 진행 목적을 제외하고 핸드폰, 카메라 혹은 기타 유사 장치를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것 또한 적합하다고 고려하지 않는다.

4.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조로 간주하지 않는다:

- a) 선수가 경기구역 밖에 있는 코치와 대화하는 경우. 이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필드 경기가 실시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스탠드에 자리를 코치석으로 확보해 놓는다;
참고: 코치 및 다른 사람들은 규칙 39.8을 준수하는 이상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다.
- b) 이미 경기구역에 있는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거나 또는 계속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 진단, 의료 처치나 물리치료는 필요하다. 이러한 의료 진단, 의료 처치나 물리치료는 규칙 7.1에 준수하여 경기구역에서 제공된다.
- c) 보호 또는 의무 목적의 모든 종류의 개인적인 보호물(예; 밴드, 테이프, 벨트, 지지대, 소목 쿨러, 호흡 지원, 기타 등) 혹은 장치(예: 소리 증폭기/보조기구). 심판원은 의료담당자와 협의하여 모든 사안이 바람직하게 판정될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규칙 30.5 및 34.5 참조).
- d) 심박기, 속도 거리 모니터, 보폭 센서 등 유사한 장치를 지니거나 경기 동안 선수가 개인적으로 지니는 기구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제공한 것.
- e) 필드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대신하여 경기구역 내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촬영된 이전 시기(들)의 이미지들(규칙 7.1참고를 참고). 관측 장비 또는 관측 장비로 촬영한 이미지들은 절대 경기구역 안으로 반입이 불가하다.
- f) 공식 스테이션에서 모자, 장갑, 신발, 의복 아이템을 제공받았거나 관련 심판장에게 승인을 받았을 경우
- g) 스탠딩 포지션으로 회복을 하거나 의료 보조에 접근하기 위해 공식 임원 혹은 LOC에서 임명한 인물에게 신체적 보조를 받는 행위.
- h) 관련 기록을 포함하여 레이스 동안 시간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주는 전자 광선 혹은 비슷한 기기.
- i) 레이스의 스타트를 신호로 나타내기 위해 임원의 깃발, 섬광전구, 기타 시각장치 혹은 선수를 터치하는 행위의 사용(규칙 17.2 참고를 참고).
5. WPA는 청각장애를 가진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음을 인정하고 선수들의 대회참가를 격려하고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청각-시각장애(농맹)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 기술위원장(TD)은 농맹 선수들의 효과적인 참가를 용이하게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본 규정의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칙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i): 규칙 7.3.b 아래 라디오 송수신기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청각 보조기구/외부 와우 보조기 부품도 경기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보조 - 트랙 및 로드 경기

6. 선수들은 자신의 가이드러너(들)를 스스로 구해야 한다.

코멘트: 이 규칙의 의도는 IPC가 선수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알지 못하는 가이드러너가 불리하게 선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7. 스포츠등급 T11-12 선수들을 위한 가이드러너는 허용이 됨에 따라 보조 또는 페이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스포츠 등급 T11 선수들은 모든 경기에서 가이드러너와 동행하여야 한다. 스포츠 등급 T12 선수들은 가이드러너와 함께 동행하거나 가이드러너 없이 혼자 경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LOC는 가이드러너에게 구별하기 쉬운 눈에 띄는 조끼를 제공할 것이다.

8. T11-12 선수가 가이드러너와 함께 경기를 시작할 때, 해당 선수 및 가이드러너는 본 규정에 따라 대회 결과가 인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두 명 모두 진실한 노력(bona fide)을 하여 기록에 대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결승선을 통과하여야 한다.

코멘트: 적합한 심판장이 선수 및 가이드러너가 특정 경기에 진실한 노력으로 출전한 점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비디오 증거가 고려될 것이다. 가능한 비디오 증거로 결론이 나는 경우, 그 선수는 규칙 8.2에 의해 실격처리 된다.

7.9.1 레이스 동안, 선수와 동행하는 가이드러너 사이의 안내 방법은 가이드끈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선수는 가이드러너에게 구두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가이드러너는 달리면서(혹은 걸으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모든 기계적인 의미의 대중교통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 7.9.2** 테더 부착은 오직 선수와 동행하는 가이드러너의 두 손 및/또는 두 팔 사이에만 가능하다. 선수 및 동행하는 가이드러너는 테더를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해 손, 손목 혹은 기타 다른 신체부위를 잡아서 안된다..
- 7.9.3** 선수와 그와 동행하는 가이드러너는 레이스 시작부터 레이스 종료까지 테더 부착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수와 그와 동행하는 가이드러너는 가이드러너 교체 과정을 제외하고 두 명 모두 피니시라인의 가까운 측면 수직면에 도착하거나 레이스를 종료하기 전까지 가이드끈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7.9.4** 레이스 어떠한 지점에서든 선수 혹은 그의 가이드러너(들)는(은) 스토퍼를 잡거나 및/또는 테더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중간 섹션의 어떠한 부분이어도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7.9.5** 선수 및/또는 가이드러너가 해당 규칙 7.9를 준용하는데 실패할 경우, 참가하는 페어(선수 및 가이드러너)는 실격 처리 된다.

코멘트: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모든 레이스에서 가이드러너는 피니시 라인 이전까지 선수를 놓쳐서는 안된다. 가끔은 피니시 라인 이전에 테더를 놓쳤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IPC 경기 및 IPC 대회에서 임원이 불확실해하는 경우, 결정하는데 비디오 심판 또는 수석 사진 판정 심판의 조언을 참고할 수 있다.

- 7.10.1** 가이드러너는 레이스 중 어떠한 때라도 선수에게 이점을 주기 위해 밀어주거나, 당기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력을 줄 수 없다.
- 7.10.2** 슬링슈팅(Slingshooting)은 선수의 주행방향 앞으로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서 가이드러너가 의도적으로(선수와 붙어있는) 팔을 앞으로 던지는 기술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술은 레이스 중 어떠한 때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7.10.3** 가이드러너는 자신의 주행방향을 향해 선수에게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 한 그의 발 디딤 및 방향의 회복이 더디거나 발을 헛디디는 선수를 도울 수 있다.

·선수 및/혹은 가이드러너가 해당 규칙 7.10의 어떠한 내용이라도 준용하지 못할 경우, 참가한 페어(선수 및 가이드러너)는 실격 처리 된다.

코멘트: 트랙 경기에 임명된 ITO와 다른 기술 임원들은 푸싱(pushing), 풀링(pulling), 프로펠링(propelling) 또는 슬링슈팅(slingshooting)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이드러너가 아닌 선수가 경기에서 런닝 스타일이나 박자(카덴스)를 지시하여야 한다. 가이드러너가 런닝 스타일을 지시할 경우, 선수의 과장된 팔 또는 어깨 상단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자주 관찰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비디오 분석의 사용 없이 푸싱, 풀링 또는 프로펠링을 관찰하는 것은 어렵다. 슬링슈팅은 선수가 가이드러너 이전에 도착하기 위해 가이드러너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피니시 라인에서 보통 관찰된다.

7.11.1 5000m 이상 거리의 레이스에서는 두 명의 가이드러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레이스 중간에 가이드러너 교체는 각 선수당 경기에서 한번만 허용된다. 레이스 중에 교체를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면 안되고 반드시 첫번째 직선주로(backstraight)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7.11.2 가이드러너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기록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선수와 교체된 가이드러너 두 명 모두 경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7.12.1 가이드러너 교체는 반드시 사전에 심판장 및 기술위원장에게 안내(알려)되어야 한다. 기술 임원들이 해당 교체 상태에 대하여 결정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선수에게 연락할 것이다.

7.12.2 기술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선수는 레이스에서 실격될 것이다.

코멘트: 트랙 혹은 로드경기에 임명된 기술 임원들은 가이드러너 교체가 본 규칙에 따라 행해지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아야 한다. 가이드러너 교체는 직선주로(백스트레이트)에서 행해지거나 로드 경기의 경우 사전에 결정된 지정된 위치에서 행해지며, 기술임원(들)이 가이드러너가 가이드러너 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랙/코스 밖에 적절히 위치하여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명된 기술임원은 교체를 준비하는 가이드러너가 다른 경기 및 근 시일 내에 진행될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트랙 경기에서 만약 "레일 카메라"가 백스트레이트에 있으면 가이드러너들은 실제 가이드 교체를 제외하고 "레일 카메라"와 참가 선수들 사이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임명된 기술임원은 교체 세부내용(선수 이름

및 가이드러너를 교체할 의향이 있고 교체가 이루어질 랍/위치)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임명된 기술임원은 가이드러너 교체가 오직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떠나는 가이드러너는 기술임원 혹은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의해 대회구역 밖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위의 프로세스에 따라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임명된 기술임원은 최종 결정을 위해 트랙 심판장/로드 레이스 심판장에게 이 사안을 보고할 것이다. 이는 선수 선수의 실격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13. T12, T20, T31-32 (레이스런닝), T35-38, T42-47 및 T61-64 등급의 몇몇 선수들은 본인의 스타팅 블록이 스타터 보조자들에 의해 본인에 맞게 조정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술위원장은 해당 선수 및 선수의 팀 코치에게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서류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 (i): 요청에 따라, 기술위원장은 보조자가 선수와 스타트 지점까지 동행해서 스타팅 블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해당 보조자는 레이스 시작 전 경기구역에서 나와야 한다.

참고 (ii): 요청에 따라, 기술위원장은 보조자가 스포츠 등급 T31-32(레이스런닝) 선수와 동행하여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 정확히 위치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해당 보조자는 레이스 시작 전 경기구역에서 나와야 한다.

참고 (iii): 가이드러너와 달리지 않는 스포츠 등급 T12 선수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자는 선수와 소집실부터 경기장까지 동행할 수 있다. 보조자는 레이스 시작 전 경기구역에서 나와야 한다.

코멘트: 해당 규칙에서의 모든 요청은 선수 혹은 그의 보조자 및 팀 리더가 관련 요청 서류(예: 보조 요청 양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이 완료된 서류는 TIC에 제출하여 기술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술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요청 서류는 선수, 보조자, 또는 팀 리더가 소집실의 소집실 심판원에게 제공한 후, 선수와 함께 출발선으로 가져가야 한다. 소집실 심판원이 요청의 승인유무에 상관없이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기술위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만일 규칙이 보조자가 선수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조 요청이 필요하지 않다.

보조 - 필드 경기

14. 스포츠 등급 F31-33 및 F51-54 선수들은 임원의 관리 통제 하에 보조를 사용할 수 있다(종목/선수당 보조 1인). 보조는 선수를 투척 프레임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투척 프레임에 선수가 자신을 끈으로 고정시킬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 (i): 끈을 이용한 고정은 프레임에만 고정시킬 수 있으며 탄력적이지 않은 재질이어야 한다.

참고 (ii): 보조가 요구될 경우, 해당 보조는 선수를 투척 프레임으로 옮기는데 문제없는 신체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보조가 요구되지 않는 경기의 경우 기술임원, 등록된 자원봉사자 혹은 기타 인원이 보조하는 행위는 기술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있지 않은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코멘트: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 3.1.2(a)및(b)참조)의 경우, 심판장은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동안 보조자(들)를 경기구역 밖으로 나가게 하고 경기구역 밖에 앉아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조자의 선수가 경기를 진행할 예정인 시간대이며 심판장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자는 선수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WPA 경기에서, 파트 B 3.1.2 (a)와 (b)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보조자는 3차와 4차 경기 사이의 휴식 시간 동안 선수에게 물/간식을 줄 수 있다. 보조자의 선수가 경기를 마친 후(시기를 마친 후), 보조자는 다시 경기구역 밖으로 나갈 것이다.

보조자는 오직 스포츠 등급 F31-33과 F51-54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스포츠 등급의 선수가 보조를 요청할 경우 해당 선수는 경기 24시간 전 보조를 요청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해 기술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는 기술위원장이 승인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임원들은 선수들을 투척 프레임에 이동시키는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선수 혹은 그들의 보조자(허용되거나 승인되었을 경우)가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기술 임원 혹은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선수가 일반 휠체어에서 투척 프레임을 옮겨질 때에 보조를 제공해 주어서는 안된다. 또한 반대의 상황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보조는 기술임원장에 의해 승인된 보조자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15. 해당 임무를 마쳤으면 보조자는 경기구역에서 물러나야 하며 경기구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종목 임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16. F11 및 F12 선수들은 한 명의 보조자가 투척 서클이나 투창 도움닫기로 인도할 수 있다. 보조자는 각 시기 전에 선수들을 서클이나 투창 도움닫기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보조자는 반드시 각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투척 서클이나 투창 도움닫기를 떠나야 한다. 각 시기 이전, 시기 중, 시기 후에 소리를 통해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허용된다. 선수는 임원들이 해당 시기가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만 투척 서클 혹은 투창 도움닫기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참고: 해당 경기를 관장하는 임원이 음성을 통해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보조자가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임원은 관련 보조자를 이동시킬 권한이 있다.

17. 스포츠 등급 F11 선수들은 멀리뛰기, 세단뛰기 그리고 높이뛰기를 할 때 음향 보조(acoustic assistance)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시설을 시각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어떤 종목에서 소리를 내어 도움을 줄 때에는 관중들에게 정숙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소리를 내어 도움을 주는 종목에서는 정숙을 위해 가능하면 다른 달리기 종목과 같은 시간에 하지 않도록 한다.

코멘트: 주로 이러한 경기들은 관람객 수가 가장 적은 세션의 시작이 계획된다. 아나운서를 포함한 스포츠 프레젠테이션 팀이 스포츠 프레젠테이션이 경기 동안 선수 혹은 그들의 보조자를 방해하지 않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18. 도약 경기 중 T11 선수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장 내에 두 명의 보조자를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다:
- a) 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에서 소리로 도움을 주기 위해 콜러(caller)로 활동하는 경우
 - b) 각 시기 전에 해당 선수의 위치를 잡고 방향지시를 하는 보조자로서 선수를 돕는다.

참고 (i): 각 시기 전, 중, 후에 소리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경기 임원이 해당 시기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만 선수를 소리 외의 유도를 받을 수

Rule 11: Validity of Performances

있다.

참고 (ii): 보조자(들)는 멀리뛰기 혹은 세단뛰기 도움닫기 옆에 위치하거나 착지 장소 뒤에 위치할 수 있다. 보조자(들)는 도약 구역 앞 혹은 뒤에 위치할 수 있지만, 도약구역(파우더로 된 구역) 혹은 착지장소에서는 안된다.

참고 (iii): 보조자(들)는 임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시기 동안 선수 옆 혹은 뒤에서 함께 달려서는 안된다.

코멘트: 선수와 그의 보조자들은 수석 심판원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표시하기 전까지는 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기가 끝나고 선수가 투척 서클, 도움닫기 혹은 착지장소를 떠난 이후 수석 심판원이 올바른 깃발을 든 이후에 이루어진다.

19. 스포츠 등급 T/F12 선수들은 필드 종목에서 기술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현장의 시설을 시각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예를 들어 페인트, 분필, 파우더, 고깔, 깃발 등 사용). 청각 신호 또한 사용할 수 있다.

20. T12 등급 선수들을 위해 도약 및 투척 종목에서 단 1명의 인원만이 콜러 및 에스코트로 활동하기 위해 선수와 함께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조자는 규칙 7.18을 관찰할 것이다.

21. 필드 종목에서 보조자는 규칙 7.14 그리고 7.20 아래 허용되는 행동 외에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해당 경기를 담당하는 임원이 보조자가 이러한 규칙들(예: 경기장 내에서 코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을 경우, 해당 선수 및 선수와 동행한 보조자는 심판장에 의해 경고를 받고 위반을 반복했을 시 규칙 7.2에 따라 해당 경기에서 실격처리 될 것임을 주의받게 된다.

참고: LOC는 선수와 선수들의 보조자들을 위해 분리된 대기구역을 준비하여야 한다.

22. T/F20, T/F35-38 및 T/F42-47 등급의 몇몇 선수들은 자신의 도움닫기 마커가 발구름판에서 사전에 정해진 거리에 위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기 전의 경우, 해당 마커는 필드 심판의 도움을 통해서 설치되어야 한다. 이는 투창에도 적용된다. 기술위원장은 해당 선수 및 코치들이 요구사항들을 나타낼 수 있는 문서를 제공할 것이다.

코멘트: 기술위원장이 도움을 주기 전에 NPC 담당자가 요구사항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보 양식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술위원장은 선수의 지정된 보조자 혹은 필드 심판원의 보조를

허용할 수 있다. 결정은 기술위원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보다 경기장에 더 많은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이드 동물

23. 어떠한 가이드 동물도 경기구역에 있을 수 없다.

규칙 8: 실격의 효과

(규칙 145)

기술 규칙 위반으로 인한 실격(규칙 2.13.5 혹은 17.5 제외)

1. 선수가 만일 경기에서 기술 규칙 위반으로 인해 실격을 당했을 경우(규칙 2.13.5 혹은 17.5제외), 해당 경기의 라운드에서부터 실격 시점까지 기록한 모든 기록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경기 이전의 라운드에서 기록한 기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경기에서의 실격은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다른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규칙 2.13.5에 의한 제외로 인한 실격(규칙 17.5 포함)

2. 선수가 만일 규칙 2.13.5에 의해 경기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실격 처리될 것이다. 선수의 두번째 경고가 다른 경기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선수는 두번째 경기에서만 실격처리 된다. 해당 경기의 라운드에서부터 실격 시점까지 기록한 모든 기록들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경기 이전의 라운드에서 기록한 기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실격은 선수가 해당 경기에서 모든 추가 경기 또는 이벤트 라운드(동시에 참여하는 다른 경기 및 계주 포함)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릴레이 팀이 규칙 2.13.5에 의해 대회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해당 경기에서 실격처리가 된다. 해당 경기의 이전 라운드에서 기록한 모든 기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실격은 선수 혹은 릴레이팀이 해당 대회에서 참가할 추후 경기들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현재 참가중인 경기 포함). 하지만 선수들 중 한 명 이상의 행동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칙 2.13.5가 해당 결과와 함께 선수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위반사항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본부장은 WPA에 보고하여 추가 징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선수들은 레그백과 같은 저장장치에서 경기구역 및 워업장에서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처리 당할 수 있다.

규칙 9: 다른 스포츠 등급에서의 경기 - 자격요건

IPC 등급분류 규정 코드 및 등급분류 총칙에 따라,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스포츠 등급의 선수들과 경쟁하여야 한다.

공인대회의 대회 엔트리, 출전권 및 참가자격 서류는 하나 이상의 스포츠 등급이 함께 경쟁하게 되는 경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3.1.2 (a) 및 (b) 참조)의 경우, 스포츠 등급의 통합은 원칙적으로 부록 2의 등급분류 계층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규칙은 채택일 이전에 엔트리 기준을 수립한 본 WPA 규정 및 규칙 채택 이후 발생하는 공인대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개 이상의 스포츠 등급이 통합된 필드 경기에서 순위를 정할 때에는 라자 포인트 시스템이 사용될 것이다(경기가 단일등급경기 혹은 통합등급경기로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LOC 및 TD에 의해 결정). 라자 포인트 시스템이 사용될 경우, 소수점 뒤의 숫자는 잘라버린다. 즉, 1000.501과 1000.499 모두 1000포인트가 된다. 동점일 경우에만 소수점 뒤의 숫자가 고려된다.

예외적이거나 제한된 상황의 경우 WPA는 위의 기준과 부록 2의 등급분류 계층표 2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스포츠 등급을 합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코멘트: 등급분류 규정 및 규칙의 변동사항에 따라 새로 추가된 스포츠 등급 T61-64는 부록 2의 등급분류 계층표에 반영되었이다.

규칙 10: 측량 및 계측

(규칙 148)

1. 규칙 3 및 규칙 11.2에 따른 육상 시설에 대한 표시 및 설치의 정확도는 관련 기관 및 시설 소유자 혹은 운영자에게 수행한 점검 측정의 세부사항과 함께 적절한 인증서를 제공해야 하는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이 점검하여야 한다. 이 점검을 위해 그는 경기장 계획, 도면 및 최근의 측정 보고에 대한 완벽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2.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및(b)참조) 에서의 트랙 및 필드 경기의 경우 모든 측정은 보정되고 인증된 철 테이프 또는 막대 아니면 과학적 측정 장치로 진행하여야 한다. 철 테이프, 막대 혹은 과학적 측정 장치는 국제 표준에 의해 제조 및 보정되어야 한다. 대회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국가 측정 기관에서 인증한 적절한 기관이 검증하여야 한다. IPC 경기 혹은 IPC 대회 이외의 대회의 경우, 섬유유리 테이프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

참고: 세계 및 지역 기록의 승인의 경우, 규칙 51.19.a. 참조.

코멘트: 전자 측정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모든 측정은 보정된 철 테이프 혹은 막대를 이용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규칙 11: 기록의 유효성

(규칙 149)

1. 선수가 WPA 공인대회(파트B-3.1.2참조)에서 기록을 달성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기록도 유효하지 않다.
2. 일반적으로 경기장에서 진행되거나, 전통적인 육상 시설 밖에서 진행되거나(예를 들어 도심광장, 다른 임시 스포츠 시설, 해변가 등등), 혹은 경기장 내에 건설된 임시시설에서 진행된 기록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하다:

- a) 파트 B-3에 명시된 관련 운영 기관이 해당 경기에 대한 허가증을 발행하였을 경우;
- b) 자격을 갖춘 국가 기술 임원이 임명되고 해당 경기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 c) 적용 가능한 곳에 규정에 부합하는 장비와 도구를 사용
- d) 경기가 규정에 따른 대회 지역 또는 시설에서 진행되면서 경기 당일에 규칙 10에 따른 조사가 진행이 된 경우.

코멘트: 규칙 11.2 아래 설명된 경기가 하루 이상 개최될 경우, 조사는 첫 경기가 진행되는 날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경우에 서든 조사관은 조사 대상 시설에 대한 이동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첫 경기 시작 전에 최대 이틀동안 조사를 진행 후 완료할 수 있다.

- 3. 실내 또는 시설의 길이나 기타 규격이 실내 경기 규정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커버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기에서의 공연은 유효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외에서 달성된 것처럼 인정되어야 한다.
 - a) 파트 B-3에 명시된 관련 운영 기관이 해당 경기에 대한 허가증을 발행하였을 경우;
 - b) 자격을 갖춘 국가 기술 임원이 임명되고 해당 경기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 c) 적용 가능한 곳에 규정에 부합하는 장비와 도구를 사용;
 - d) 타원형 트랙의 경우, 길이는 201.2m(220야드) 이상이지만 400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 e) 경기는 규정에 따라 대회 지역 또는 시설에서 진행되면서, 임시 시설에서 개최될 경우 규칙 10에 따라 조사가 수행된 경우

코멘트: 준수 시설에서 결과가 달성된 경우, 아무런 이점을 얻지 못하고 모든 관련 규칙을 준수됨에 따라, 해당 경기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실외 동등거리에 등재되어(예: 400m 트랙 및 직선 코스에서의 성능) 통계목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방해하지 않는다.

규칙 12: 비디오 녹화(기록)

(규칙 150)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 3.1.2(a) 및 (b) 참조) 및 가능한 경우 다른 대회에서도 기술 대표의 기준에 맞게 모든 경기의 공식적인 비디오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 기록은 WPA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을 포함하여 모든 규칙위반 사항과 기록의 정확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코멘트: 모든 대회에서의 비디오 심판 임명은 충분한 비디오 수집 및 리플레이 시스템이 제공되면서 대회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디오 심판은 일반적으로 트랙 경기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예: 스타트, 커브 주변의 내부에서의 주행, 조우 및 장애물, 너무 이른 차선 이탈, 릴레이 교체 등). 카메라 및 장비의 양이 충분할 경우 그는 필드 경기의 전부 혹은 일부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주로 현장 심판이 특정 사건에 대한 추가 관찰 혹은 검토를 요청할 때 반응하는 방식으로 임한다. 트랙 경기의 경우, 비디오 심판은 비디오실에 있는 한 대 혹은 그 이상의 스크린에서 경기를 관찰한 다음, 대회 지역의 심판장 혹은 수석 감찰원의 관찰 결과 혹은 비디오 심판 본인의 관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영상을 보면서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특정 문제를 검토한다. 만일 규칙 위반이 명백할 경우, 그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트랙 심판장 및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유사한 경우로 감찰원 혹은 트랙 옆(트랙사이드) 심판이 잠재적 위반사항을 보고하였을 경우, 이는 비디오 심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고 그에게서 적절한 조언을 제공받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추가적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공식 비디오 영상은 소청 및 항소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LOC가 직접 차리는 것보다 경험이 많은 회사가 대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하지만 양쪽 옵션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규칙 13: 채점(스코어링)

(규칙 151)

점수제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에서는 참가 신청서와 참가자격양식에 채점방식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규칙 14: 휠체어 및 레이스런닝 프레임 요건

(스포츠 등급 T32-34 및 T51-54)

1. 일반적인 휠체어 요건:

- a) 모든 WPA 인정대회(파트 B-3.1.2 참조)에서 휠체어는 2개의 큰 뒷바퀴 및 1개의 작은 앞바퀴를 가져야 한다.
- b) 모든 휠체어는 안전 목적을 위해 기능성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 c) 휠체어를 나아가게 하기 위한 기계식 기어나 레버는 허용되지 않는다.
- d) 휠체어 트랙경기 혹은 로드레이스에서 거울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e) 모든 레이스에서 선수는 조향 목적으로 앞바퀴를 수동으로 좌우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수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조향 장치만이 허용된다.
- f) 공기역학적 성능 향상을 위한 페어링 혹은 유사 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 g) 휠체어 및 휠체어의 부속품 및 악세서리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저장 용량(예: 탄력성)을 포함할 수 없다.
- h) 휠체어에 부착된 장치들은 규칙 7.4d(보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수 외에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안된다.

참고: WPA 및 기술대표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이상, 종목 참가 혹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전송 장치는 WPA 인정 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2. 휠체어 프레임 요건:

- a) 휠체어 프레임의 일부분 혹은 부속품은 앞바퀴의 허브를 넘어 확장되거나 뒷바퀴의 최후방 수직면(타이어 포함)을 넘어 뒤쪽으로 확장되면 안된다. 추가적으로, 프레임의

너비와 부착물의 너비는 미는 바퀴(pushing rim)의 경사면(그림A참조)[inclined plane of the pushing rims]보다 넓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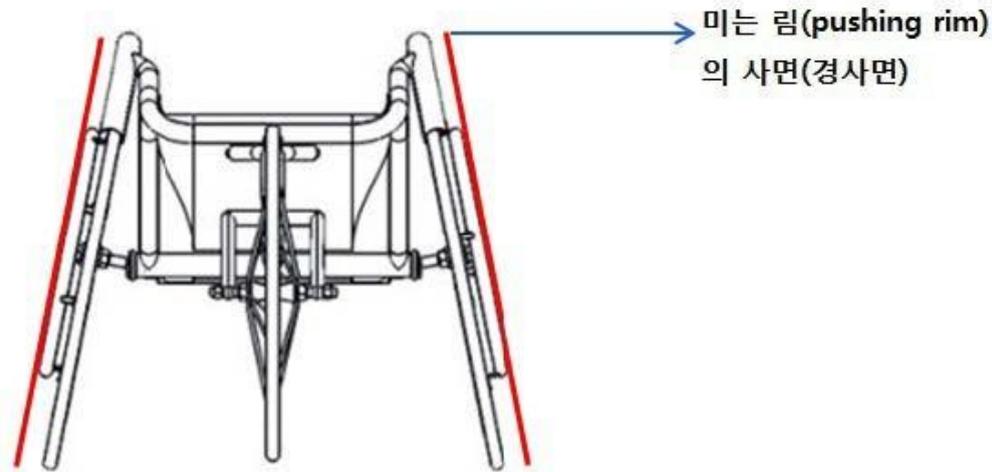


그림 2 – 미는 바퀴의 경사면(Inclined plane of the pushing rims)

코멘트: 소집실 심판원들은 부착물이 미는 바퀴의 경사면보다 밖에 위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 b) 지면에서 휠체어 프레임 바닥까지의 최대 높이는 50cm이다.
 - c) 프레임 구조는 안전 목적을 위해 충분한 안정성 및 강성을 제공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 d) 시트 포지셔닝(seat positioning)을 위해 프레임 구조는 좌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e) 선수를 바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이드가드의 사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규칙 14.2(a)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바퀴 및 미는 바퀴(Push-rim) 요건:
- a) 팽창된 타이어를 포함한 큰 바퀴의 최대 직경은 7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b) 팽창된 타이어를 포함한 작은 바퀴의 최대 직경은 5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 각 큰 바퀴에 1개의 평탄 혹은 원형의 미는 바퀴가 허용된다.

참고 (i): 이 규칙은 한 팔로 구동되는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적용된다.

참고(ii): 미는 동안 손목을 안정시키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는 T32/33/51/52 등급 선수들의 경우, 이 규정은 면제가 될 수 있으며, 미는 바퀴 및 휠 디스크가 같이 퓨즈되어 레이싱휠에 합병되도록 수정할 수 있다. 규칙 14.3의 일반 의도를 무효화하는 다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iii): 선수의 어떠한 신체 부위도 미는 바퀴 혹은 휠에 묶여져서는 안된다.

참고 (iv): 레이싱 휠체어로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레이싱 의자를 오직 선수들의 팔(들)을 미는 행동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야 한다. 하지(다리 및 발), 혹은 모든 기타 인공기관은 레이싱 의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스타트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바닥에 닿아서는 안된다.

4. 휠체어는 소집실에서 측정 및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를 받은 후 경기 시작 전까지 대회 지역에서 빼내면 안된다. 휠체어는 관련 심판원 혹은 기타 임원에 의해 경기 전후, 경기장 내외로 재검사를 할 수 있다.
5. 선수의 휠체어가 위에 언급된 요구 조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선수 본인의 책임이다. 선수가 휠체어를 조정하는 동안 어떠한 경기도 지연 되서는 안된다. 선수가 만일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수는 경기에서 스타트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규정 6.16에 따라 결과지에 "DNS"로 표기가 된다.
6. 관련 심판이 휠체어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선수가 안전 리스크를 나타낸다고 판단할 경우, 선수 및 휠체어를 경기에서 제외시킬 권한이 있다.

참고: 안전을 위해, 선수들은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지를 고정하여야 한다.

코멘트: 휠체어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치나 선수가 경기에 참가한 다른 선수들보다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장치도 부착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휠체어는 소집실에서 측정 및 검사가 이루어지지만, 세계 선수권대회, 패럴림픽경기대회 및 지역 대회 같은 주요 대회의 경우 대회 관련 광고 규정을 포함하여 경기용 휠체어를 사전 점검한다.

휠체어가 현재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때 다음 사항을 찾아야 한다.

50cm나 70cm 표시가 된 막대 혹은 미터 막대는 중요한 두 가지 치수이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정 스틱의 "0" 부분의 끝을 휠 옆 지면에 배치하여 휠 직경을 측정하고 평행하게 측정한다. 작은 휠의 직경은 50c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큰 휠의 직경은 7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여전히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선수 및 코치에게 조언하기를 사전 점검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소집실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면에서 휠체어 바닥까지 최대 높이가 50cm를 넘지 않도록 동일한 측정 스틱을 사용할 수 있다.

휠체어의 전체 길이에는 문제가 없지만, 앞 바퀴 또는 뒷바퀴를 넘어서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측정 방법은 의자를 벽 쪽으로 옮기는 것이다. 의자를 벽 쪽을 향하도록 하고 뒤쪽으로 돌린다. 만일 타이어가 착석 프레임 대신 벽에 닿을 경우, 해당 의자는 허용된다.

의자에는 제동장치 및 스티어링 용량과 같은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전점검 때 점검되어야 한다.

소집실 심판장은 규칙 14.1(h)에 따라 레이싱 휠체어가 선수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휠체어가 사전 점검 때 점검을 받았어도, 소집실에서 선수와 함께 다시 점검 받아야 한다.

ITO 및 휠체어 사전점검에 참여하는 기술임원들은 본 규칙과 소집실에서 휠체어를 점검하는 요구사항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코멘트: 워밍업 트랙이 없거나 워밍업 트랙 반경이 경기장과 동일하지 않은 경기에서, 기술대표(TD)는 200m 경기에서 경쟁하는 T32-34, T51-54급 선수가 휠체어 보정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단일 워밍업 랩(완전한 랩은 아닐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충돌이 발생하거나 경기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레이스런닝 프레임 요건(스포츠 등급 T31-32)

7. 일반 레이스런닝 프레임 요건:

- a) 모든 WPA 공인대회(파트 B-3.1.2 참조)에서 레이스런닝 프레임은 보조 안장, 신체 보조 플레이트, 핸들 바, 2개일 뒷바퀴 및 1개의 앞바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b) 모든 레이스런닝 프레임은 안전 목적을 위한 기능성 제동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c) 레이스런닝 프레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기계식 기어 혹은 레버는 허용되지 않는다.
- d) 거울의 사용은 레이스런닝 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 e) 모든 레이스에서 선수는 조향 목적을 위해 앞바퀴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수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스티어링 핸들바만 허용된다.
- f) 선수의 공기역학적 성능 향상을 위한 페어링 혹은 유사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 g) 레이스런닝 프레임 또는 부착 악세서리의 어떠한 요소도 성능 향상을 위한 에너지 저장 용량(예: 탄력성)을 포함할 수 없다.
- h) 레이스런닝 프레임 혹은 선수에게 부착된 장치는 규칙 7.4(d)를 준수하여야 하며, 선수 외의 사람과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야 한다.

참고: WPA 및 기술대표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이상, 종목 참가 혹은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전송 장치는 WPA 인정 경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8. 레이스런닝 프레임 요건:

- a) 레이스런닝 프레임 또는 부착물은 앞바퀴의 허브 또는 뒷바퀴의 최후방 수직면(타이어 포함)을 넘어서는 안된다. 추가적으로, 프레임의 너비 및 부착물은 뒷바퀴를 제외하고 뒷바퀴 허브 내부 사이의 길이보다 넓어서는 안된다.
- b) 레이스런닝의 프레임의 최대 길이는 200cm이며, 최대 너비는 타이어 포함 95cm이다.
- c) 프레임 구조는 안전 목적으로 충분한 안정성과 강성을 제공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d) 좌석 배치를 위해 프레임 구조에는 안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 참고: 안장은 전통적인 형태의 경주용 자전거 안장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f) 선수의 안정성을 위해 프레임 구조에는 차체 지지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 안전을 위해, 선수는 바닥에 떨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벨트 혹은 정형외과적 멍빵으로 차체 지지판에 묶일 수 있다. 손이 핸들바에 묶일 수도 있다.

9. 바퀴 요건:

a) 바람이 들어간 타이어를 포함하여 모든 바퀴의 최대 직경은 7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b) 뒷바퀴 내부에만 휠 가드를 포함시킬 수 있다.

10. 레이스런닝 프레임은 측정 및 점검 목적으로 규칙 14.4 및 14.6을 준수할 것이다.

11. 선수는 그들의 레이스런닝 프레임이 위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레이스런닝 프레임이 조정되는 동안 어떠한 경기도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선수가 만일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수는 경기에서 스타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규정 6.16에 따라 결과지에 "DNS"로 표기가 된다.

12. 레이스런닝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T31-32 등급 선수의 경우, 그들은 발로 프레임을 밀고 전진 및 후진을 할 수 있다;

섹션 III - 트랙 경기

규칙 15: 트랙 측정

(규칙 160)

- 표준 트랙 길이는 400m이다. 트랙은 평행을 이루는 두 개의 직선 주로와 반지름이 동일한 두 개의 곡선 주로로 구성된다.

트랙의 안쪽에 높이 50mm~65mm, 너비 50mm~250mm의 적당한 재료로 만든 연석을 경계선으로 만들어야 하며, 색깔은 흰색이어야 한다. 양 직선주로의 연석은 제외될 수 있으며 50mm의 흰색 선은 대체될 수 있다.

필드 경기에서 곡선주로에 있는 연석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경우, 연석의 위치를 너비50mm의 흰색 선과 최소 0.2m의 원뿔 또는 깃발로 표시를 하며, 원뿔이나 깃발의 밑바닥 가장자리가 트랙에 가장 가까운 흰색 선의 가장자리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간격은 4m 이내로 띄워서 세운다(깃발은 트랙에서 필드 쪽으로 60도의 각도로 세워 놓는다). 규칙 17.11에 따라 참가자들이 두 그룹으로 스타트를 하는 장거리 레이스의 스타트의 경우, 트랙의 바깥쪽 절반에도 이 규칙이 적용되고 선택적으로 직선주로에도 적용된다. 직선주로의 경우 간격은 10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참고: 트랙이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하는 모든 포인트는 평가관이 흰색 라인에 50mmx50mm의 독특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경기 중에 원뿔이 해당 지점에 배치되어야 한다.

- 계측은 연석의 바깥쪽으로부터 0.3m 떨어진 지점 또는 연석이 없는 곡선주로에 트랙 안쪽을 표시한 라인으로부터 0.2m 떨어진 지점을 계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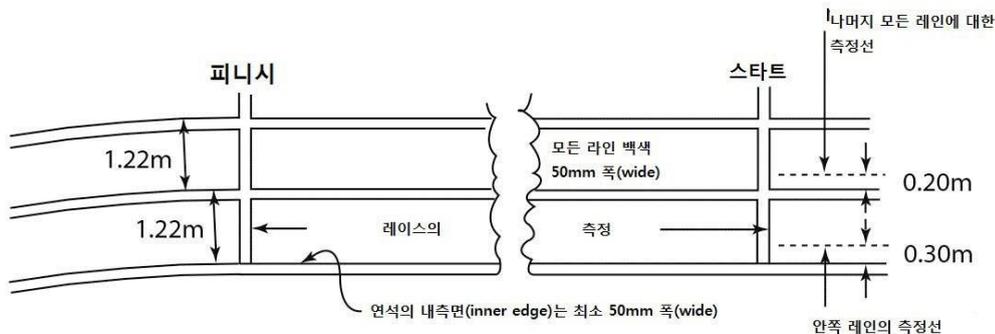


그림 5 - 트랙 측정(인필드 뷰)

3. 레이스의 거리는 피니시 지점에서부터 스타트 지점에 가까운 가장자리에서부터 스타트 지점에서 가까운 가장자리에서 부터의 피니시 지점까지 측정하여야 한다.
4. 400m 이하의 모든 레이스에서 각 선수는 너비 5cm의 흰색 선으로 구분된 1.22m ± 0.01m의 개별레인을 달러야 한다. 모든 레인의 너비는 동일하여야 한다. 안쪽 레인은 규칙 15.2에 따라 계측을 하지만, 나머지 레인은 흰색 선 바깥쪽 가장자리에서 20cm 떨어진 지점에서 계측한다.

참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트랙은 레인의 너비가 최대 1.25m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트랙이 새로 표면처리를 다시 했을 경우, 레인의 너비는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 및 (b) 참조)에서는 최소 8개의 레인이 있어야 한다.
6. 내부 가장자리를 향한 트랙의 측면 경사는 1:100(1%)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세계 육상이 면제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주행 방향의 전체하향 기울기는 1:1000(0.1%)를 스타트 지점에서 피니시 지점 사이에 초과해서는 안된다.

참고: 새로 지어진 트랙의 경우 측면 경사가 내부 차선을 향하도록 권장한다.

7. 트랙의 건설, 설계, 마킹에 대한 모든 기술적인 정보는 세계 육상 육상 경기 시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본 규칙은 기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코멘트: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규정 매뉴얼에 따른 트랙만이 세계 선수권대회 및 패럴림픽경기대회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규칙 16: 스타팅 블록

(규칙 161)

1. 스타팅 블록은 스포츠 등급 T31-32(레이스런닝), T35-38, T42-47 및 T61-64의 400m 이하 모든 레이스(4x100m, 4x200m 그리고 4x400m)에 사용되며, 다른 레이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스타팅 블록은 스포츠 등급 T11-13 및 T20의 모든 400m (혼성 릴레이의 첫번째 경기 포함) 이하의 레이스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트랙에 스타팅 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스타팅 블록의 어떠한 부분도 스타트 라인과 겹치거나 다른 레인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단, 다른 선수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프레임의 후면 부분은 레인의 바깥 부분을 침범할 수 있다.

2. 스타팅 블록은 다음의 일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스타팅 블록은 출발위치에서 선수의 발을 누르고 단단한 프레임에 장착하는 두 개의 발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조상 완전히 경직되어야 하며, 선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프레임은 블록을 떠날 때 선수의 발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b) 발판은 선수의 출발위치에 적합하도록 경사져야 하며, 이는 평평하거나 약간 오목할 수 있다. 발판 표면은 슬롯 혹은 벽감을 발판의 앞면에 사용하거나 발판의 표면을 적당한 재료로 채워 스파이크가 달린 신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선수의 신발에 달린 스파이크를 수용하여야 한다.
- c) 발판에 프레임의 고정은 조정 가능하지만, 실제 스타트 시 어떠한 움직임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경우에 발판은 서로에 대해 앞뒤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단단한 클램프 혹은 선수가 빠르고 쉽게 작동시킬 수 있는 잠금장 장치로 고정되어야 한다.
- d) 스타팅 블록은 여러 개의 핀이나 스파이크로 트랙에 고정시키되, 핀이나 스파이크가 트랙에 미치는 손상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야 한다. 스타팅 블록은 신속하게, 그리고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핀이나 스파이크의 개수, 두께 및 길이는 트랙의 구조에 따라 다르다. 고정된 스타팅 블록은 실제 스타트할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 e) 선수가 개인 스타팅 블록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의 일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른 선수에게 방해되지 않는 이상, 디자인이나 구조는 어떠한 것이던 무방하다.

참고: 스포츠 등급 T35-38, T42-44 및 T61-64는 스타팅 블록을 사용할 때 양쪽 발판 전부 사용하는 것이 필수 요구사항은 아니다.

코멘트: 본 규칙은 다음과 같이 해석도 가능하다:

- a) 프레임 혹은 발판의 어느 부분도 스타팅 라인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 b) 오직 프레임만(발판의 어떤 부분도 포함하지 않음)이 방해가 없는 이상 바깥 라인을 침범할 수 있다. 이것은 선수들이 자신의 블록을 출발 후 가장 직선 주로로 달릴 수 있는 각도에 맞추는 긴 스타팅 연습을 반영한다. 조명의 사용은 귀가 먹었이거나 혹은 청각 장애 선수들 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보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의 구매 및 공급 및 호환성에 대한 여부는 해당 선수 또는 그의 팀의 의무다. 특정 미팅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된 기술 파트너가 없는 한, 이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다.

3. IPC 경기 및 IPC 대회에서(파트 B -3.1.2(a)및(b)참조) 스포츠 등급 T11-13 및 T20의 세계기록 또는 지역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된 모든 기록들은 스타팅 블록들이 세계육상 공인 스타트정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스타트정보시스템은 다른 등급 선수들이 블록을 사용하더라도 위에 언급된 등급 이외의 등급에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
4. LOC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스타팅 블록만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참고 (i): 스포츠 등급 T20, T31-32(레이스런닝), T35-38, T42-47 및 T61-64 선수들 중 일부가 본인의 스타팅 블록이 스타터 보조원에 의해 본인에 맞게 설치되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술대표는 해당 선수들에게 본인의 요구사항을 나타낼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할 것이다(규칙 7.13에 따름).

참고 (ii): 개인 스타팅 블록의 사용은 기술 임원의 승인이 요구된다.

코멘트: 스타팅 블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선수들은 오직 스포츠 등급 T11-13 및 T20 선수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른 등급의 경우 스타팅 블록을 사용하거나 다른 승인된 스타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각 프레임에 블록이 하나씩 있는 두 개의 단일 스타팅 블록 또는 두 개의 분리된 단일 블록, 혹은 단일 블록을 요구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다(주로 팔이 절단된 선수들). 이는 일반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특정양식을 통해 기술위원장에게 작성 후 제출하면 기술위원장은 대회 전에 승인을 해준다. 모든 경우에, 스타팅 블록의 변경은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면 안되며, 규칙 파트B-7에 나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규칙 17: 스타트

(규칙 162)

참고: 스포츠 등급 T11과 T12의 선수와 관련하여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 따라 "선수"를 언급하는 것은 선수 및 가이드러너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이드 러너에 의해 규칙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받거나 실격 처리되며, 동행한 선수는 결과적으로 경고 혹은 실격처리된다.

1. 레이스 스타트 위치는 너비 50mm의 흰색 선으로 표시한다. 정해진 레인에서 달리지 않는 모든 레이스에서 스타트 라인은 곡선으로 하여 모든 선수들이 스타트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동일한 거리를 달리도록 한다. 모든 거리의 종목에서 선수의 스타트 위치는 달리는 방향을 향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를 매긴다.

참고 (i): 1500m 스타트라인 혹은 다른 곡선 스타트라인은 곡선레인 바깥에서부터 동일한 합성 표면이 가능한 지점까지 연장될 것이다.

400m이하 T11-13 및 T20 등급의 모든 레이스 (4x100m, 4x200m, 4x400m, 4x100m 혼성 릴레이의 첫번째 입식 릴레이 경기 포함)에서 크라우치 스타트 및 스타팅 블록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참고 (ii): T35-38, T42-47 및 T61-64 등급의 선수들은 크라우치 스타트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코멘트: 출발 절차를 효율적으로 완료하고 선수를 소개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선수들은 집합하였을 때 경주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 모든 레이스는 일반적으로 모든 선수가 움직이지 않고 올바른 스타트 자세를 취한 것을 확인한 후에 위로 향해서 발사된 스타터의 신호총과 함께 스타트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선수들이 제자리에 자세를 취한 후에 스타터가 스타트를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수들을 제자리 위치에서 물러나도록 지시하고, 스타터 보조자들은 선수들을 다시 집합선에 정렬시킨다.

참고: 선수가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 스타터 혹은 보조원은 피스톨과 더불어 깃발같이

시각적으로 출발신호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청각과 시각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의 경우에는 임원이 선수를 터치해서 스타트 신호를 준다.

코멘트: 스타터는 관련 타이밍 팀 및 200m 이하 대회 심판원 및 풍속계측원이 준비되기 전까지 스타트 절차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및(b)참조) 및 기타 상위 레벨의 대회에서는 항상 전자계시 및 스타트정보시스템을 책임지는 회사가 있다. 이러한 경우, 통신을 책임지는 담당 기술자가 있을 것이다. 다른 대회에서는 라디오, 전화기, 깃발 및 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통신 시스템을 사용한다.

3. 스타터의 구령은 반드시 영어로만 한다. 400m이하의 모든 레이스 (4x100m, 4x200m, 4x400m 및 4x100m혼성 릴레이의 첫번째 입식 릴레이 경기 포함)는 “제자리에”와 “차렷”이라는 구령을 사용한다. 모든 선수가 “차렷”을 했을 때 신호총이 발사된다. 선수들은 제자리에 상태에서 손이나 발이 스타트 라인 혹은 그 전방의 지면을 닿아서는 안된다. 400m보다 장거리의 레이스는 구령을 “제자리에”로 하고 모든 선수들이 정지했을 때 신호총을 쏜다. 400m보다 장거리의 레이스의 스타트 시 선수들은 지면에 손(한손 혹은 양손)이 닿아서는 안된다.
4. 400m 이하의 레이스에서 “제자리에” 구령 후에 선수는 스타트라인에 접근해서 완벽하게 자신에게 배정된 레인의 스타트라인 뒤에 위치한다. 스포츠 등급 T11-13 및 T20 선수의 경우, 양 손과 적어도 한 쪽 무릎은 지면에 닿아야 하며, 양 발은 스타팅 블록에 접촉한 상태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차렷” 구령 시, 선수는 즉시 양손을 지면에 대고 양 발은 스타팅 블록의 발판에 닿은 상태로 최종 스타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휠체어 레이스의 경우(스포츠 등급 T33-34 및 T51-54) 다음과 같은 구령과 자세가 필요하다. “제자리에” 구령 후 선수는 스타트라인에 접근해서 완벽하게 자신에게 배정된 레인의 스타트라인 뒤에 위치한다. “차렷” 구령 시 선수는 스타트 라인 뒤에서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유지하면서 자신의 최종 스타트 자세를 취한다.

코멘트: 크라우치 스타트를 사용한 모든 레이스의 경우, 휠체어 레이스 및 레이스런닝 경기를 포함, 선수들이 블록이나 라인 뒤에서 멈췄으면, 스타터는 총을 들고 있는 팔을 들고 “차렷”이라고 말할 것이다. 모든 선수가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총을 발사한다. 스타터는 너무 일찍 팔을 올려서는 안되며, 특히 수동 타이머가 사용될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그는 “차렷”이라는 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에만 팔을 드는 것이 좋다. “제자리에” 및 “차렷” 명령 사이에 경과하는 시간을 결정하는 규칙은 없다. “차렷”과 총소리 사이의 경과하는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다. 스타터는 선수들이 올바른 스타팅 위치에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 그들을 출발시킬 수 있다. 이는 특정 스타트에 대해 총을 꽤 빨리 발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그들이 모두 착실한 스타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400m 이하 레이스의 “차렷” 구령과 이보다 장거리인 레이스의 “제자리에” 구령에서 모든 선수들은 한번에 지연 없이 자신의 최종 차렷 자세를 완벽하게 취해야 한다.

스타터가 선수를 판정할 때/하는 경우,

- a) 400m 이하의 레이스의 “차렷” 구령과 이보다 장거리 레이스의 “제자리에” 구령 후, 그리고 신호총의 총성 전에 선수가 스타트를 중단시켰을 때, 예를 들면 타당한 이유 없이 손을 들거나 그리고/또는 크라우치 스타트에서 일어서거나 몸을 일으켰을 경우(이러한 이유는 관련 심판장이 평가한다)
- b) “제자리” 혹은 “차렷” 구령에 온당하게 따르지 못했을 경우, 또는 적당한 시간 후에도 자신의 최종 스타트 위치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 c) “제자리에” 또는 “차렷” 구령 후에 소리, 움직임 혹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선수들을 방해하였을 경우, 스타터는 스타트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심판장은 요구된 스타트 절차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선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같은 대회 동안 이 규칙을 두 번 어겼을 때는 선수를 실격시킬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이유가 스타트 중지의 원인으로 간주되거나 심판장이 스타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선수에게 부정출발이 선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해 녹색 카드를 보여주어야 한다.

코멘트: 스타트 규칙을 징계 문제(규정 17.2 및 17.5에 따라)와 부정출발(규칙 17.7)로 나누게 되면 단일 선수의 행동에 의해 필드 전체가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분리는 의도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고 스타터 및 심판장이 규칙 17.2와 17.5의 적용 및 부정출발을 탐지하는데 있어서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행위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신경과민에 의한 의도적인 행동이든 간에 규칙 17.2 및 17.5를 적용하여야 한다. 스타터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규칙 17.2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반대로, 선수가 정당한 이유로 스타트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스타터는 스타트 준비 및 헤드폰 착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 심판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요소와 관련하여 스타트 심판의 환경과 조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스타터 및 심판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행동하여 그들의 결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결정 사유를 레이스 하는 선수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가능할 경우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아나운서, 텔레비전 팀 등에서도 발표할 수 있다. 그린카드는 옐로 혹은 레드카드가 발부된 경우 제시할 수 없다.

참고: 상지절단 선수 또는 팔이 짧은 선수들은 스타트 시 또는 균형을 잡기 위해 패드를 사용해 패드 위에 절단부위를 받쳐 놓는 것이 허용된다. 패드는 완전히 스타트 라인 뒤에 놓아야 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된다. 패드는 트랙과 비슷한 색이거나 중성의 색이어야 한다.

코멘트: 상지절단 선수가 사용하는 패드의 색상은 항상 다루기 어렵다.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패드를 수정하기 위해 소집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트랙의 동일한 색상을 테이프고 고정하는 것이 좋다.

6. 800m 이상의 휠체어 및 레이스런닝 레이스에서 처음 50m 내에서 레이스 내의 선수들 간에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스타터가 재출발을 위해 레이스를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는 경기 중 심판들의 보고를 받고 심판장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감소시키거나 재제하지 않는다.

부정출발

7. 완전한 최종 출발자세를 취한 후에 선수는 총성 신호가 들릴 때까지 스타트를 하면 안된다. 스타터 또는 리콜러가 선수가 더 일찍 스타트를 하였다고 판단했을 때 이는 부정출발로 간주된다. 세계육상 공인 스타트정보장치가 사용되었을 때, 스타터 및 지정된 리콜러는 정보장치가 부정출발이 의심될 때 발생시키는 음향신호를 확실히 듣기 위해서 헤드폰을 착용하여야 한다(반응시간이 0.100초 미만일 경우). 이미 총이 발사된 상황에서 스타터 및 임명된 리콜러는 음향신호를 듣자마자 리콜을 선언할 것이고, 스타터는 어떤 선수(들)가 리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반응시간 및 스타트정보장치에 사용 가능한 다른 정보를 즉시 검사하여야 한다.

해당 규칙에 의해, '스타트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a) 크라우치 스타트가 필수 혹은 선택적인 관련 스포츠 등급의 경우(그리고 크라우치 스타트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선수들) (규칙 17.1 참고(ii) 및 참고(iii)참조), 스타트의 시작은 한쪽 다리/양쪽 다리 혹은 하지 인공기관(들)이 스타팅 블록의 풋 플레이트에서 접촉이 끊어지는 경우(스타팅 블록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지면), 혹은

한손/양손, 잘린 팔(stump), 짧은 팔 혹은 상지 인공기관(들)이 지면에서 접촉이 끊어지는 경우(적용 가능할 경우 패드)를 포함한 모든 움직임(motion)으로 정의된다.

- b) 스탠딩 스타트의 경우, 스타트의 시작은 결과적으로 한쪽 다리/양쪽 다리 혹은 하지 인공기관(들)이 지면과 접촉이 끊어지는 경우로 정의된다.

스타터가 총성이 울리기 전 선수가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착수하여 스타트의 시작까지 지속적으로 하였을 경우(위 내용에 정의된 대로)라고 판단할 경우, 이는 부정출발이 된다.

참고 (i): 세계육상 공인 스타트정보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을 경우, 이 장비의 증거를 관련 임원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ii): 선수에 의한 기타 움직임은 스타트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주의조치 혹은 실격의 대상이 된다.

참고 (iii): 스탠딩 자세에서 레이스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더 중심을 잃기 쉬우므로 이러한 움직임이 우발적이었을 경우, 스타트는 "불안정함"으로 간주된다. 만약 선수가 스타트 전에 라인 밖으로 밀쳐지거나 떠밀린다면 해당 선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해물 저지른 모든 선수들은 주의조치 혹은 실격의 대상이 된다.

코멘트: 일반적으로 선수가 지면 혹은 발판과의 접촉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부정출발이 부여 되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선수가 엉덩이를 위로 움직이지만 손이나 발이 지면 혹은 발판에서 접촉을 잃지 않는 상태로 내릴 경우, 이는 부정출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규칙 17.5에 따라 부적절한 행동은 경고의 사유(이전에 경고를 받았을 경우 실격처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롤링 스타트(rolling start)"의 경우, 스타터(혹은 리콜러)의 의견이 총성이 울리기 전에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았어도 연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스타트를 효과적으로 예상했다고 생각할 경우, 레이스는 리콜이 되어야 한다. 이는 스타터 혹은 리콜러를 통해 할 수 있지만, 선수가 움직임을 시작했을 때 총 방아쇠를 올려놓는 손가락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판단하는 최상의 사람은 스타터다. 총성이 울리기 전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이던 것이 명확하다고 스타터가 확신할 경우, 부정출발이 주어져야 한다. 참고(iii)에 따라 스타터와 심판장들은 스탠딩 포지션으로 시작하는 이벤트에 규칙 17.7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며, 2점 시작(two-point start) 혹은 3점 시작(three-point start)간 오버밸런스하기 쉽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발생한다. 동일한 것이 지나치게 처벌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어떠한 움직임이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될 경우, 스타터 및 심판장들은

우선적으로 스타트를 "불안정함"으로 먼저 부르고 규칙 17.12에 따라 진행하도록 권장한다. 하지만, 같은 경기에서 연속된 연습은 스타터 및 심판장이 부정출발 혹은 징계절차를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참고 (iv): 실제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들이 부정출발을 한 경우, 다른 선수들도 그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하면 그에 따라 나간 선수도 부정출발을 한 결과가 된다. 이 때 스타터는 부정출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들)에게만 경고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경고를 받는 선수는 두 명 이상일 수도 있다. 만약 부정출발이 어느 특정 선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경고를 주지 않고, 모든 선수에게 녹색카드를 보여준다.

8. 부정출발에 대한 책임을 가진 모든 선수는 스타터에 의해 실격처리 된다.
9. 부정출발이 발생했을 때, 스타터 보조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부정출발을 한 선수는 실격을 당하고 그 선수 앞에서 빨강과 검정이 대각선으로 반반 씩 섞인 카드를 들어올린다.

레인 마커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 부정출발을 한 선수에게 카드를 보여질 때 마다, 이어지는 표시가 레인 마커에 보여야 한다.

코멘트: 스타터가 선수를 실격처리 하는데 책임이 있지만, 실격 카드를 보여주는 사람은 스타터 보조자이다. 선수가 즉각적인 구두 소청을 할 경우 스타터 보조자는 일반적으로 스타트 심판을 불러 상황을 선수와 협의한 후 결정을 내려 "소청 중"상태로 경기에 계속 참가 시킬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

참고: 대각선으로 갈라진 카드의 이유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카드와 징계 사유로 주어진 카드(전통적인 옐로 혹은 레드)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 각 항목을 스타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 카드의 이유는 선수뿐만 아니라 스타트를 관찰하는 사람들, 특히 즉각적인 정보가 필요한 아나운서나 텔레비전 및 라디오 해설자 등에게도 명확해야 한다. 대각선으로 잘린 카드의 사이즈는 A5로 하고, 양면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존 장비를 수정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레인 마커의 표시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옐로 혹은 레드로 유지될 수 있단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스타터 또는 모든 리콜러의 의견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타트가 불공정했다면 신호총 쏘거나 혹은 적절한 청각 신호를 통해 선수들을 리콜 할 것이다.

코멘트: 공정한 출발에 대한 언급은 오직 부정출발의 경우와 관련이 없다. 또한 이 규칙은 블록 미끄러짐, 스타트 중에 한 명 그 이상의 선수를 간섭하는 이물질 등의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5000m 및 10,000m

11. 거리 경기에 선수가 12명 이상이 있는 경우, 스타트를 위해 두 그룹으로 나눌 것이다. 한 그룹(제 1그룹)은 정상적인 아크형 스타트 라인에 선수들의 약 65%를 배치하고, 다른 그룹(제 2그룹)은 트랙의 바깥쪽 반을 가로질러 표시된 별도의 아크형 스타트 라인에 배치될 것이다. 제 2그룹은 최초의 곡선 주로가 끝날 때까지 트랙 절반의 바깥쪽에서 달려야 하고 이는 원뿔이나 깃발로 표시한다. 별도의 아크형 스타트 라인(제 2그룹의 스타트라인)은 모든 선수가 동일한 거리를 달리도록 그어야 한다. 어떤 종류도 스타트 시 표시된 바깥쪽 레인을 지키지 않은 제 2그룹의 모든 선수는 자신의 레인을 벗어나 달린 선수와 같은 이유로 실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800m 레이스를 위한 브레이크 라인은 일반 스타트 피니시 라인(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스타트하는 레이스에서 제 2그룹/바깥쪽 그룹의 선수들이 일반 스타트를 하는 선수들과 합류하는 지점을 나타낸다. 피니시 라인 반대편 직선주로에서(200m 종목 스타트 지점) 스타트하는 모든 레이스는 제2그룹/바깥쪽 그룹에서 스타트하는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스타트를 하는 선수들(제 1그룹)과 합류하는 지점을 마지막 직선 주로의 시작 지점의 트랙에 표시한다. 이 표시는 제 4레인과 5레인(6레인 트랙에서는 제 3레인과 4레인) 사이의 라인 위에 5cmx5cm로 표시하고 이 표시의 위치는 원뿔 또는 깃발이 놓은 바로 뒤가 된다.

규칙 18: 레이스

(규칙 163)

1. 최소 하나의 굴곡을 포함한 레이스에서 달리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레인은 안쪽 레인 중에 가장 왼쪽 것이 제 1레인이 된다.

코멘트: 조건이 허용되고 트랙이 올바르게 측정된 경우, 직선 경기는 반대방향(예; 우측)으로 진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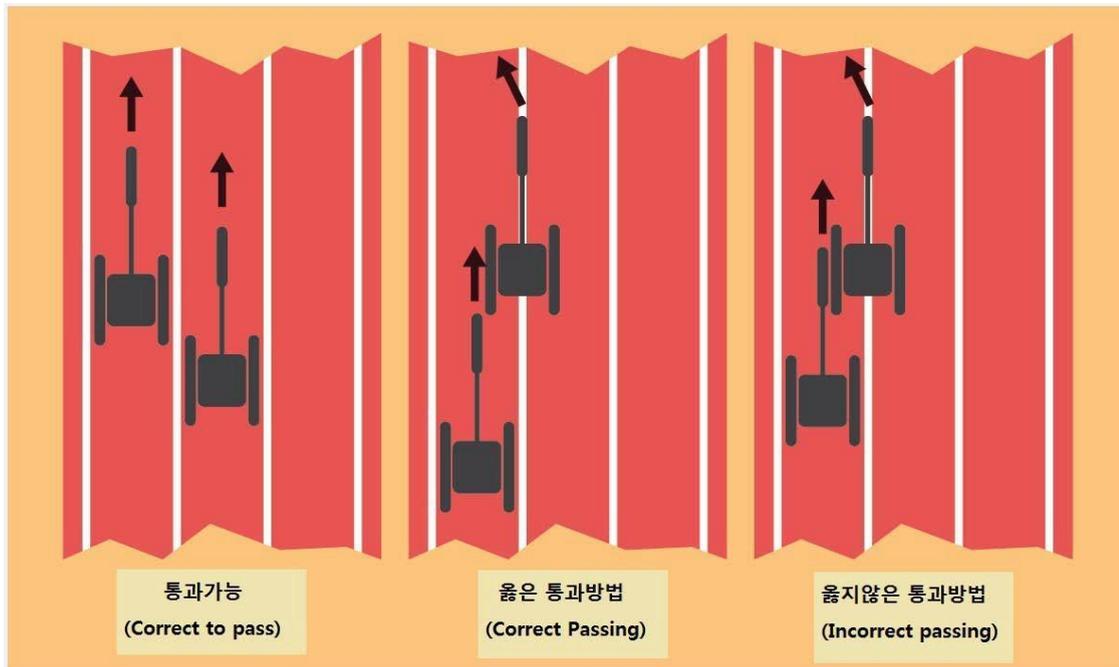
방해

2. 만약 선수 또는 가이드러너가 시합 중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밀쳐지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
 - a) 밀침 또는 방해가 의도적이지 않았거나 선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심판장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해당 선수(또는 선수의 팀)가 규칙 2.13.7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 레이스(한 명, 일부, 혹은 모든 선수에게)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거나 영향을 받은 선수(또는 팀)가 다음 라운드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b) 심판장에 의해서 다른 선수 또는 해당 선수의 가이드러너가 밀침 또는 방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해당 선수(또는 선수의 팀)는 해당 종목에서 실격의 대상이 된다. 심판장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피해를 받은 선수(또는 선수의 팀)가 규칙 2.13.7에 따라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실격을 당한 선수(또는 팀)를 제외한 후 해당 레이스(한 명, 일부, 혹은 모든 선수)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거나 영향을 받은 선수(또는 팀)가 다음 라운드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실격된 모든 선수들 또는 팀을 제외하고).

(a) 와 (b) 경우 모두, 해당 선수(또는 팀)는 진실한 노력을 다해 해당 종목을 끝마쳐야 한다.

코멘트: 이 규칙은 "밀침"은 다른 선수 또는 가이드 러너와 한 번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는 선수 또는 가이드 러너를 의미합니다.
3. 휠체어 레이스에서 선수가 바퀴 또는 미는 바퀴를 미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추진력을 얻을 경우 실격을 당할 것이다.
4. 휠체어 및 레이스런닝 레이스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뒤에서 오는 선수는 가로질러 가기 전에 추월을 하려는 휠체어와 충분한 간격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추월을 당하는 선수의 휠체어 바퀴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 선수를 방해해서 저지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그림 6 - 휠체어 추월



레인 위반

5.

- a) 정해진 레인에서 진행되는 모든 레이스에서, 각 선수 또는 선수의 가이드러너는 스타트부터 피니시까지 자신에게 배정된 레인을 지켜야 한다.
- b) 레인에서 달리지 않는 모든 레이스에서(또는 레이스의 모든 부분에서) 규칙 17.12에 따른 트랙 바깥쪽 절반부분 위의 곡선코스에서 주행하는 선수 **혹은 선수들의 가이드러너**들은 레인의 경계선 또는 구분지역(트랙 안쪽 또는 바깥쪽 절반)을 표시해 놓은 경계선의 위 또는 안을 밟거나 훑로 밟고 뛰면 안된다.

규칙 18.6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장이 심판원, 감찰원 또는 기타의 인원의 보고서에 만족하는 경우 선수 **혹은 선수의 가이드러너**가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그 선수, **그들 혹은 릴레이 경기의 경우 그들의 팀은 실격된다.**

6.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수 또는 선수의 가이드가 자신의 레인을 벗어나 달리거나 휠체어로 달려도 실격 당하지 않는다:

- a) 선수가 다른 사람에 의해 해당 경계를 표시하는 연석이나 라인 안쪽, 또는 자신의 레인 바깥쪽을 밟거나 달리거나 바퀴가 밀린 경우
- b) 직선주로에서 자신의 레인 바깥이나 곡선주로에서 자신의 레인 오른쪽 흰색 선 바깥쪽을 달리거나 바퀴가 밟았으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거나 다른 선수들이 밀리거나 본인의 진로가 지연되도록 방해받지 않은 경우.

- c) 모든 경기에서 레인으로 주행하거나, 왼쪽의 라인 또는 커브의 해당 경계를 표시하는 연석이나 라인에 한 번 접촉합니다(규칙 18.5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휠체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주용 의자의 바퀴가 라인을 밟고 유지하는 기간은 경주용 의자의 바퀴가 라인을 처음 밟은 지점에서 선수가 경주용 의자의 바퀴를 [2번] 미는데 걸리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휠체어 경기의 경우 휠체어의 휠이 주행하는 동안 레인을 밟은 선수가 레인을 밟은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은 선수가 휠체어의 바퀴가 처음 라인을 밟은 시점에서 [2번]바퀴를 미는데 걸리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d) 모든 경기(또는 경기의 모든 부분)에서, 곡선에 해당 경계 (규칙 18.5b에 정의된 바와

같이)를 표시하는 연석 또는 라인 위에서 한 번 또는 완전히 밟거나 달리지 않는 경우. 그리고 물질적 이득을 얻지 못하고 다른 선수들이 밀리거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규칙 18.2 참조). 물질적 이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획득한 선수(또는 팀)는 실격 처리된다.

여러 라운드가 있는 경기에서, 규칙 18.6. (c)와 18.6 (b)에 정의된 위반은 특정 선수의 실격 없이 이벤트의 모든 라운드에서 한 번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은 같은 라운드에서 이루어졌는 같은 이벤트의 다른 라운드에서 이루어졌든 간에 해당 선수의 실격 처리된다.

계주 경기의 경우, 두 번째 단계(이 규칙 18.6. (c)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8.6. (d) 한 팀의 구성원인 선수가 같은 라운드 또는 다른 경기의 다른 라운드에서 발생하는지와 상관없이 팀이 실격될 수 있다. 기록에 대해서는 규칙 51.7(d)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물질적 이득은 자신의 순위를 향상시키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이는 레이스에서 트랙의 안쪽 가장자리를 밟거나 가장자리 안에서 달려서 박스 포지션에서 본인을 제외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코멘트: 이 점은 특히 레이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선수가 트랙 안쪽으로 이동함으로써(다른 선수가 밀어 넣거나 선수에게 밀린 후) 안쪽에서 완주까지 뛰면서 박스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직선 구간에서 1번 레인 안쪽으로 주행하는 경우(곡선에서 달리듯이) 의무적인 실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심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선수가 원래 있던 사유가 밀리거나 흔들림에 의한 것이 여도 재량에 따라 실격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경우, 선수는 어떠한 이점도 얻거나 추구하지 않고

트랙으로 복귀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레인에서 경기를 시작한 후 별도의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규칙 18.5 및 18.6항이 각 레이스 부분에 따라 적용됩니다. 규칙 18.6.(c)의 예외가 신발/발/의족 또는 바퀴의 일부가 라인의 왼쪽에도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선수 신발/발/의족 또는 바퀴의 일부가 라인에 닿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즉, 예외를 적용하려면 라인과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신발/발/의족 또는 바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차선 위반은 경기 데이터 시스템에서 추적하고 출발 목록과 결과에 표시되어야 한다.

휠체어 선수에 대한 규칙 18.6 (c)의 예외와 관련하여, 단 한번의 접촉이 있을 수 있지만, 경주용 의자의 바퀴가 라인을 밟은 기간은 선수에게 물질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장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수는 경주용 의자가 처음으로 라인을 밟은 지점에서 경주용 의자의 바퀴를 두 번 밀어 자신의 레인 안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라인에 닿지 않도록), 선수가 경주용 의자가 라인을 밟은 동안 [3번째] 바퀴를 밀면, 선수는 실격 처리됩니다.

7.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3.1.2(a)및(b)참조) 800m 종목의 스타트부터 브레이크라인의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까지 선수는 본인의 레인에서 달려야 하며 이후 선수들은 본인의 레인을 벗어날 수 없다. 브레이크라인은 첫번째 곡선주로 이후에 표시된 등근 라인이며, 1번 레인을 제외한 모든 레인에 걸쳐 50mm의 너비로 표시된다. 선수가 브레이크라인을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50mmX50mm, 0.15m 높이 이하의 브레이크 라인 및 레인라인과 다른 색깔을 띤 고깔 또는 각기둥이 레인라인과 브레이크라인의 교차점 바로 직전의 레인라인 위에 설치된다. 선수 또는 동행하는 가이드러너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또는 릴레이 팀의 경우 그의 팀은 실격처리 된다.

참고 (i): 고깔은 휠체어 레이스의 트랙 위에는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색칠된 50mmX50mm의 평면 마커가 브레이크라인에서의 레인 라인의 교차로에 배치될 수 있다.

코멘트: 깃발 외에도, 어떤 종류의 평범한 마커는 브레이크라인 바로 전 레인 라인의 교차점에서 트랙 표면에 배치될 수 있다. 이는 선수가 더 잘 보이고 선수의 경기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평면 마커(일반적으로 테이프)의 색상은 트랙의 표면과 흰색 라인과 다른 색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선수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부드러운 "플랩"이 튀어나온 채색된 마커일 수 있다.

참고 (iii): 휠체어 레이스의 깃발은 반드시 트랙 바깥의 브레이크라인 양 편에 1.5m 높이로 위치해야 한다. 한 부분은 트랙 안에 설치되고 다른 하나는 트랙 바깥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참고 (iii): 휠체어 레이스의 선수는 땅에 닿는 모든 뒷바퀴의 바닥이 출발선에 가까운 브레이크라인의 가까운 가장자리를 지나갈 때 각각의 레인을 떠나야 한다.

참고 (iv): WPA 승인대회(파트B-3.1.2(d)참조)에서 참가국들은 레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8. 트랙 종목에서 스포츠 등급 T11과 T12인 선수들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 레인에서 진행된다. 각 등급은 2레인을 배정받게 된다. 스태거드(staggered) 스타트의 스타트라인은 1,3,5,7레인이 된다.

코멘트: 진행상의 이유로, 해당 두 개의 레인은 하나의 레인으로 판단하고 표기하여야 한다(레인 1&2 – 레인 1, 레인 3&4 – 레인 3 등등) 선수의 가이드러너가 어느 방향에 뛴지는

선수의 재량이다. 선수 및 가이드러너 두 명 모두 스타트에서부터 피니시까지 배정 받은 레인을 지켜야 한다(두개의 레인을 합쳐서).

가이드러너를 사용하지 않는 스포츠 등급 T12 선수들 또한 두 개의 레인을 배정 받는다. 해당 선수들은 스타팅 블록을 할당 받은 레인의 스타트 라인에 맞춰 어느 곳에던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배정받은 레인을 스타트에서 피니시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트랙 이탈

9. 레이스 코스 중 본인의 의사로 트랙을 피니시 이전에 떠난 선수 또는 동행하는 가이드러너는 규정 23.5(c)를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레이스를 계속할 수 없고 경기를 끝내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다. 만약 해당 선수 및 선수의 가이드러너가 레이스에 다시 참가하거나 레이스를 계속하려고 시도한다면 해당 선수는 심판장에 의해 실격 처리된다.

체크마크

10. 규칙 23.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트랙 위나 옆에 체크마크를 표시하거나 표시물을 둘 수 없다. 심판원들은 관련 선수에게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마크 및 물체를 조정하거나 제거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원이 직접 제거한다.

참고: 심각한 사례는 추후 규칙 2.13.5와 8.2에 의해 다루질 수 있다.

풍속 측정

11. 모든 풍속 측정계 장비는 국제 표준에 따라 제조되고 보정되어야 한다. 대회에서 사용하는 측정장비의 정확도는 국가 측정 단체에서 승인한 책임 있는 단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12. 기계적이지 않은 풍속측정계가 모든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 및 (b) 참조) 및 세계/지역 기록으로 승인되기 위해 제출되는 모든 기록에 사용되어야 한다.

기계적인 풍속측정계에는 옆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튜브를 사용할 경우 측정장치의 양쪽 길이는 적어도 튜브 지름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13. 트랙 심판장은 풍속 측정계가 결승선으로부터 1.50m 거리에 인접한 직선주로 옆에

설치되어야 하고 높이는 1.22m로 하며 트랙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서는 안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 풍속측정계는 자동 및 원격조종으로 시작되고 멈추며, 관련 자료는 대회 컴퓨터로 직접 입력되도록 한다.

15. 풍속을 측정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

100m 경기 - 스타트 직후 10초간

200m 경기 - 선두주자가 직선주로에 들어선 순간부터 10초간 측정.

16. 풍속측정계는 초속 몇m 인가를 기록하는데, 두번째 소수 자리가 0이 아닌 이상 양수(+)방향으로 초속 1m의 1/10으로 올림을 해서 계산한다(즉 초속 +2.03m는 +2.1로, -2.03은 -2.0으로 기록된다.). 초속 1/10m로 나타나는 디지털 표시 측정계는 본 규칙에 일치하도록 제작해야 한다.

중간 시간 표시

17. 중간 시간 및 예비우승기록은 공식적으로 발표 및 표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시간은 권한이 있거나 최대 2회의 승인된 타이밍 지점에서 시간을 콜하는 인원을 최대 1명 선임할 수 있는 해당 심판의 사전 승인 없이 대회지역에 있는 사람이 선수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 이 승인은 해당 시점에서 선수들에게 보여줄 시간에 표시가 없는 경우와 이 시간이 레이스에 모든 선수에게 제공되는 상황에만 주어진다. 이 규칙의 위반에 전달된 중간 시간을 받은 선수는 보조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고 규칙 7.2의 규정이 적용된다.

800m 이상의 경기에서 스포츠등급 T12 선수들 중 가이드러너 없이 경쟁하는 선수들은 해당 각 경기의 스타트라인에서 인접한 대회 지역 내 지정된 영역으로부터 중간 시간요청을 하면 대회 임원이 아닌 중간시간을 콜 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역의 배정은 기술위원장이 결정한다.

참고 (i): 경쟁 지역 안에 배정 되어있는 개인은 중간 시간 측정보다 선수에게 어떠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위반한 해당선수는 규칙 7.2에 의해 경고 또는 실격처리 된다.

참고 (ii): 일반적으로 신체적 방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기구역은 대회가 개최되는 영역 및 경쟁 선수 및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승인된 인원에게 접근이 제한을 가진 목적을 위해 정의된다.

음료 / 스펀지

18. 5000m 및 10000m 트랙 경기에서 LOC는 기상 조건 보장의 경우 물과 스펀지를 선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 a) 선수 및/또는 선수의 가이드러너는 시작부터 들고 갔거나 공식 스테이션에서 가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물 혹은 음료를 손이나 몸에 부착한 채 들고 다닐 수 있다.
- b) 선수 혹은 가이드러너가 음료나 물을 공식 스테이션 이외의 장소에서 수령한 경우, 레이스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제공된 의학적 사유 혹은 다른 선수 및 가이드러너의 음료를 가져간 경우가 아닌 이상 심판에 의해 경고를 부여받고, 두번째 위반 시 레드카드를 부여받는다. 이후 선수는 즉각적으로 트랙에서 떠나야 한다.

참고: 선수 및 가이드러너는 처음부터 수령했거나 공식 스테이션에서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다른 선수 및 가이드러너에게서 음료, 물, 혹은 스펀지를 받거나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선수 및 가이드러너가 한 명 이상의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한 조력을 간주될 수 있으며, 위에서 설명된 경고 혹은 실격이 적용될 수 있다.

규칙 19: 피니시

(규칙 164)

1. 레이스 종료 위치는 흰색 선 50mm 너비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입식 선수의 순위는 선수 몸통(머리, 목, 팔, 다리, 손, 발 제외)의 모든 부위 중 어느 곳이라도 결승선의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 수직면에 닿는 순서대로 정해진다.
3. 휠체어 및 레이스런닝 레이스에서의 순위는 선차 축의 중심이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결승선의 가까운 쪽 수직면에 닿는 순서대로 정해진다.
4. 가이드러너와 함께 달리는 스포츠등급 T11 또는 T12 선수들의 레이스에서 선수는 반드시 가이드러너 앞에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수는 실격을 당하게 된다. 사진판정이 사용될 경우, 수석 사진판정심판원이 결정을 내릴 것이며 모든 실격을 적용할 것이다. 모든 다른 경우에, 혹은 사진판정 이미지가 제공이 안될 때, 트랙 심판장이 결정한다.
5. 경기 시간 제한(스포츠 등급 T32-34 & T51-54)

1500m 이상의 장거리 휠체어종목에서 합의된 시간이 지나면 임원은 그 종목을 종료하고 트랙을 정리할 것이다. 종목이 종료된 후에 정해진 거리를 완주하지 못한 모든 선수는 공식기록에 "DNF"(Did Not Finish)로 표기될 것이다. 심판장은 중복된 모든 선수를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규칙 20: 계시 및 사진판정

(규칙 165)

1. 다음 세 가지 방법이 공식 계시 방법으로 인정된다:
 - a) 수동 계시
 - b) 사진판정장치에 의한 완전자동 계시
 - c) 로드 레이스에서만 – 트랜스폰더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계시.
2. 규칙 20.1(a), (b)에 따라 휠체어 및 레이스런닝 레이스를 위해 시간이 순간에 수행되어야 하는 선수의 신체의 일부(즉, 머리, 목, 팔, 다리, 손/발로부터 구별되는 몸통)는 피니시 라인의 가까운 쪽 끝의 수직면에 닿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잰다.
3. 휠체어 및 레이스런닝 레이스에서는 선차축의 중심이 위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피니시 라인의 가까운 쪽 끝의 수직면에 닿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잰다.
4. 피니시한 모든 선수의 시간은 기록되어야 한다. 게다가 가능하면 언제든지 800m 이상의 장거리 레이스의 매 주회 기록(랩 타임)을 기록한다.

수동 계시

5. 계시원은 트랙 바깥쪽 피니시 라인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가능한 한 트랙의 제일 바깥쪽 레인에서 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모두가 피니시 라인을 잘 볼 수 있도록 계단식 스탠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디지털 눈금이 있는 수동 전자 초시계를 사용한다. 이 규칙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계시 장비를 모두 “시계(watches)”라고 부른다.
7. 두 개 이상의 시간을 계시할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하는 임명된 수동 계시 팀, 보조 계시원들 또는 트랜스폰더 계시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주회기록과 중간 통과기록을 기록한다.
8. 신호총의 섬광/연기가 난 순간부터 시간을 잰다.

9. 공식 계시원 3명(이중 한 명은 수석 계시원이여야 한다) 그리고 1-2명의 보조 계시원이 모든 종목 승자의 시간 및 기록을 위한 임의의 행동을 계시한다.

보조 계시원이 기록한 시간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공식 계시원의 시계가 정확하게 계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고려하며, 그러한 경우, 보조 계시원에게 지시하여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모든 레이스에서는 3명의 계시원에 의한 기록을 공식 1위의 시간으로 기록한다.

10. 각 계시원은 자기의 시계를 다른 계시원에게 보여주거나 기록을 합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며, 기록 카드에 자신의 시간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 기록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수석 계시원에게 넘겨주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1. 수동계시를 하는 모든 레이스의 경우, 시간은 다음과 같이 읽고 기록한다:

- a) 트랙에서 하는 경주에서 시간이 정확히 1/10초가 아닌 이상 시간은 다음 1/10초 단위로 읽고 기록된다(예: 10.11은 10.2로 기록)
- b) 일부분 또는 전부가 경기장 외에서 실시되는 레이스에서의 기록은 그 다음의 초 단위로 기록된다(예: 마라톤 기록 2:39:44.3은 2:39:45로 기록된다).

12. 위와 같이 기록을 바꿨을 때 3개의 시계 중 2개가 일치하고 1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의 일치된 시계의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3개 모두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의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한다. 오직 2개의 시간만 기록이 되고 그 둘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늦은 시간을 공식기록으로 채택한다.

13. 위에 나온 규칙에 따라 처리한 후 수석 계시원은 각 선수의 공식기록을 결정하고 경기 서기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완전 자동 계시 및 사진판정 시스템

14A 완전 자동 계시 및 사진판정 시스템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반드시 대회시작 4년 내에 공인을 받아 정확성에 대한 공인증을 받아야 한다:

- a) 시스템은 결승선의 연장선에 위치하여 합성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반드시 피니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 i) 파트B-3.1.2에 명시된 대회에서 이러한 합성영상은 반드시 초당 최소 1000장 이상의 이미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 ii) 기타 대회에서 이러한 합성영상은 반드시 초당 최소 100장 이상의 이미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각의 사례의 경우 해당 이미지는 반드시 0.01초로 눈금이 균등하게 매겨져 있는 계시 눈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 b) 시스템은 스타터의 신호총의 발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되어서 총구에서 나온 총성 또는 이와 동등한 시각적인 신호와 계시 장치가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차는 일정하거나 0.001초 미만이어야 한다.

15. 카메라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피니시 이미지들을 판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레인 라인과 결승선의 교차지점은 적절한 디자인으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디자인은 오로지 교차점에 제한되어야 하며 2cm를 넘지 않아야 하고 결승선 앞 가장자리를 넘어가서는 안된다. 비슷한 블랙 마크는 적절한 레인의 교차법 및 추가 측정을 쉽게 하도록 피니시 라인의 양쪽에 배치될 수 있다.

코멘트: 규칙 19.24에 필요한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값을 정의하고 싶은 경우 초당 최소 100개의 구성 사진이 요구된다. 규칙 22.2에서 요구하는 시간에 따른 가장 빠른 패자를 결정하기 위한 정확도를 달성하려면 선수가 달성한 시간이 0.01초와 동일한 경우, 초당 1000개 이상의 구성 이미지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사진판정 시스템은 초당 1000개 혹은 그 이상의 이미지를 작동시킬 수 있다.

16. 선수의 순위는 커서의 판독 선(reading line)이 계시선과 수직이 되도록 한 이미지를 통하여 판별한다.

17. 시스템은 반드시 선수들의 피니시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각 선수들의 시간을 보여주는 출력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은 모든 선수의 시간이 나타나는 정리된 개요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 측정 값과 수동적 시간 입력의 후속 변경은 인쇄된 이미지의 시간 규모와 정리된 개요에서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피니시에서는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스타트에서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시스템이 규칙 20.8 혹은 유사한 정확도에 따라 시작되었다는 점이 제공되었다는 전체 하에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미지는 순위를 결정하고 선수간 시간차(time interval)을 조정하는데 유효한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 만일 계시 장치가 스타터의 신호에 따라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이미지상의 계시 눈금은 이러한 사실을 자동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9. 스타트에서는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피니시에서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수동 및 전자동 시간측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공식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시스템의 작동

20.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이 시스템 작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대회 시작 전에 관련 기술진과 만나 상의하며 시스템과 모든 해당 설정 확인을 익숙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트랙 종목 심판장과 스타터와 협력하여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은 매 레이스 시작 전에 영점 조절검사(zero control test)를 해서 1/1000초 한도에서 스타터와 신호총에 의해 자동으로 이 장비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은 장비검사를 감독하고 카메라가 정확히 정렬하였는지 확인한다.

21. 최소 2대의 사진판정 카메라를 트랙의 양쪽에 1대씩 두어 작동하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이 좋다. 즉, 서로 다른 전력공급을 받으며 독립된 장비와 케이블로 스타터의 신호총의 신호를 기록하고 전달한다.

참고: 2대 이상의 사진판정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대회 시작 전에 기술위원장(또는 임명된 국제 사진 판정 심판원)이 그 중 1대를 공식 카메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카메라 사진에 나타난 기록 및 순위는 공식 카메라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결승 순위에 대한 불확실성(즉, 공식 카메라의 사진에 선수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사진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하지 않는다.

22. 그의 보조자들과 함께, 수석 사진 판정 심판원은 선수들의 순위를 정해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기록을 결정한다. 그는 이 결과들이 경기 결과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고 경기 서기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는 또한 규칙 19.4에 따른 필요한 결정 및 실격을 결정한다.

코멘트: 기술이 사용한 주요 대회인 경우, 사진판정 사진은 주로 비디오 보드 혹은 인터넷 개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제공된다. 불필요한 소청 및 항소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사진을 볼 기회를 소청 및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23. 사진판정 시스템의 기록은 해당 임원이 어떠한 이유로 그 기록이 명백하게 부정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공식기록으로 간주된다. 앞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능하면 사진판정 사진에 나온 시간 간격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을 한 수동 계시원(back-uptime keeper)의 시간을 공식 시간으로 한다. TD의 재량으로, 이런 수동 계시원은 계시 장치에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배치를 한다.

24. 시간은 다음과 같이 사진판정 사진으로 판독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 a) 모든 10000m 이하 트랙 레이스의 경우, 시간이 정확한 0.01초가 아닌 이상 시간은 다음으로 긴 0.01초로 변환 및 기록된다(예: 26.17.533은 26.17.54로 기록된다).
- b) 경기 일부 또는 전체가 경기장 외부에서 실시되는 모든 레이스의 경우, 세 개의 0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시간은 그 다음으로 높은 초단위로 변환 및 기록되어야 한다(예: 마라톤 기록 2:39.44.322는 2:39.45로 기록되어야 한다).

트랜스폰더 시스템

25. 다음과 같은 경우에 로드레이스 종목에서 세계육상 로드 레이스 경기 규칙에 준수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 a) 스타트 라인, 코스 또는 피니시 라인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선수의 경기 진행을 방해하거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 b) 선수에 의해 착용되거나 부착되는 트랜스폰더 시스템과 케이스의 무게는 가벼워야 한다(특출나게 무거우면 안된다)
- c) 시스템의 스타터의 신호총에 의해 작동하거나 스타트 신호와 동시에 작동하여야 한다
- d) 시스템은 경기 도중, 피니시 라인 지점에서 또는 기록이 처리되는 모든 관문에서 선수의 조작이 필요 없어야 한다
- e) 모든 레이스에서 시간은 0.1초 단위로 전환되고 다음으로 높은 초 단위로 기록되어야 한다. 0으로 끝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다음으로 높은 초 단위로 전환 및 기록되어야 한다(예: 마라톤 기록 2:39:44.3은 2:39:45로 기록되어야 한다);

참고: 공식 시간은 스타트 총소리(또는 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스타트 신호)부터 선수가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기까지 경과된 시간이다. 그러나, 선수가 스타트 라인을 지나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까지의 경과시간을 선수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공식기록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f) 피니시 순위 및 선수 신원확인 결정을 돕기 위해 심판원의 판정 및/또는 비디오 기록이 제공되도록 권장한다.

26. 수석 트랜스폰더 계시 심판원은 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한다. 경기가 시작하기 전 심판원은 관련 기술 직원을 만나 모든 관련 설정을 확인하고 장비를 체크한다. 심판원은 장비의 테스트를 감독하고 피니시 라인을 통해 트랜스폰더의 통과가 선수의 피니시 시간기록을 보장하여야 한다. 규칙 20.25(f)가 필요한 경우 심판원과 함께 심판장은 그 조항이 신청서에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코멘트: 트랜스폰더 계시는 경기장 밖 레이스의 세계 기록 수행에 허용된다.

규칙 21: 트랙 경기의 시드배정, 추첨 및 예선통과

(규칙 166)

라운드 및 예선

1. 트랙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인원이 너무 많아서 단일 라운드(결승)로 만족스럽게 경기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예선 라운드를 실시한다. 예선 라운드가 실시될 경우, 모든 선수가 예선 라운드에 참가하여 다음 라운드 진출권을 얻어야 한다. 관련 운영주체는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경기에 대하여 추가적인 예선 통과 라운드를 같은 대회 혹은 한 개 혹은 그 이전의 대회 때 만들어 일부 선수 혹은 전체 선수가 대회의 어느 라운드에 참가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및 기타 수단(예: 지정된 경기 혹은 지정된 랭킹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엔트리 표준을 달성하는 것)은 참가 자격이 있으며 각 경기의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코멘트: 본 규칙은 2016년 3월에 세계육상 개정 이후 WPA에 의해 채택되었이다. 이는 선수권대회가 각 대회의 세부 규정을 통해 원래 대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2. 예선 라운드는 임명된 기술위원장에 의해 진행된다. 만약 기술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LOC가 배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표는 한 라운드 수와 각 라운드의 조 수를 결정할 때 각 라운드의 예선통과를 결정하는 절차로 사용한다. 즉, 트랙 경기의 각 라운드에서 순위(P)와 시간(T)에 의해 다음 라운드로 통과하는 선수들:

- a) 가능한 경우, 각 국가 혹은 팀의 대표자 및 최고 성적 선수는 모든 통과 라운드에서 다른 예선에 위치할 수 있다. 첫 라운드 이후 이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선간 요구된 선수의 교환은 규칙 21.4(b)에 따라 같은 "레인 그룹"에 배정받은 선수끼리 이루어질 수 있다.
- b) 예선이 구성되는 동안, 모든 선수의 기록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가 고려되어 예선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럼에 따라 일반적으로 최고 기록자가 결승에 도달한다.

코멘트: 예선통과 라운드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여 결과적으로 결승에 진출할 선수를 결정하는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같은 예선에서 최고 기록 선수 간의 충돌(일반적으로 예선통과 라운드 동안의 성적에 의해 결정되지만 최근 커리어 기록도 고려되어야 함)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국가 혹은 팀의 선수에게도 적용된다. 주요 대회 경우, 시드 배정의 기초는 사전 결정 기간동안 유효한 상태(관련 경기에 대한 바람 판독 포함)에서 취득한 각 선수의 최고 기록이어야 한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술 규정 혹은 대회의 엔트리 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는 문서에 명시될 것이다. 이러한 세부내용이 없을 경우, 기술위원장(들) 혹은 LOC가 시드 추첨의 기준을 결정할 것이다. 훈련 및 테스트에서 획득한 기록 등의 요소는 대회 혹은 선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보일지라도, 이는 시드배정의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최고 성적 선수"에 관한 규정의 요건은 위에 언급한 엄격한 프로토콜에서 약간의 편차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주로 높은 시드에 배정받을 선수가 사전결정 기간 사이에 아무, 혹은 있지만 나쁜 유효 기록(부상, 질병 부적격 혹은 실내대회가 오직 실외 결과만 있는 경우 등)만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선수는 낮은 시드에 배정되겠지만, 기술위원장(들)에 의해 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 라운드에서 결과가 엄격하게 같은 예선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지시할 경우, 예선통과 라운드에서 높은 순위로 고려되는 선수들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시에 동일한 국가 또는 팀의 선수가 서로 다른 예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조정하는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 시드 배정의 조정은 예선에 대한 최초 할당 후 레인에 대한 추첨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때, 선수의 교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a) 첫 라운드에서, 사전 결정 기간 동안 리스트에 있는 최고 유효 기록 랭킹이 비슷한 선수들 간
- b) 이후 라운드에서 규칙 21.4(b)에 따라 같은 "레인 그룹"에 배정된 선수 간.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것은 일부 대회에서 라운드의 수가 줄어든 경기에서 더욱 중요하다 - 정확하고 잘 고려된 시드 배정은 공정한 경기와 스포츠적으로 매력적인 결과를 모두 달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하위 레벨 대회의 경우, 기술위원장(들) 혹은 LOC가 유사한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 다른 원칙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00m, 200m, 400m,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시간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시간
	조	순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9-16	2	3	2						
17-24	3	2	2						
25-32	4	3	4				2	3	2
33-40	5	4	4				3	2	2
41-48	6	3	6				3	2	2
49-56	7	3	3				3	2	2
57-64	8	3	8	4	3	4	2	4	
65-72	9	3	5	4	3	4	2	4	
73-80	10	3	2	4	3	4	2	4	
81-88	11	3	7	5	3	1	2	4	
89-96	12	3	4	5	3	1	2	4	
97-104	13	3	9	6	3	6	3	2	2
105-112	14	3	6	6	3	6	3	2	2

800m, 4x100m, 4x200m, 4x400m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시간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9-16	2	3	2						
17-24	3	2	2						
25-32	4	3	4				2	3	2
33-40	5	4	4				3	2	2
41-48	6	3	6				3	2	2
49-56	7	3	3				3	2	2
57-64	8	2	8				3	2	2
65-72	9	3	5	4	3	4	2	4	
73-80	10	3	2	4	3	4	2	4	
81-88	11	3	7	5	3	1	2	4	
89-96	12	3	4	5	3	1	2	4	
97-104	13	3	9	6	3	6	3	2	2
105-112	14	3	6	6	3	6	3	2	2

1500m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시간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16-30	2	4	4						
31-45	3	6	6				2	5	2
46-60	4	5	4				2	5	2
61-75	5	4	4				2	5	2

5000m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시간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시간
	조	순위		조	순위	조	순위	
20-40	2	5	5					
41-60	3	8	6			2	6	3
61-80	4	6	6			2	6	3
81-100	5	5	5			2	6	3

10,000m

공표된 엔트리 Time	첫 라운드		시간
	조	순위	
28-54	2	8	4
55-81	3	5	5
82-108	4	4	4

아래의 대체 표는 특정 등급 혹은 혼성 등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혼성등급의 경우 위에 언급한 기본 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표는 기술 대표에 의해 결정된다.

100m, 200m, 400m, 800m (T11-12)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5-8	2	1	2						
9-12	3	1	1						
13-16	4	1	4				2	1	2
17-20	5	1	7				3	1	1
21-24	6	1	6				3	1	1
25-28	7	1	5				3	1	1
29-32	8	1	8	4	1	4	2	1	2

1500m (T11-12)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7-12	2	2	2						
13-18	3	1	3						

5000m, 10000m (T11-12)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11-20	2	3	4						
21-30	3	2	4						

1500m, 5000m (T32-34 및 T51-54)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11-20	2	3	4						
21-30	3	3	1						
31-40	4	4	4				2	3	4

10000m (T32-34 및 T51-54)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13-24	2	4	4						
25-36	3	3	3						
37-48	4	3	0						

4x100m, 4x100m 혼성 릴레이, 4x400m (T11-13, T33-34, T51-52 및 T53-54)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조	순위	시간
5-8	2	0	4						
9-12	3	0	4						
13-16	4	0	8				2	0	4

참고: 세계 선수권대회 및 패럴림픽경기대회의 경우, 기술 규정에 대체 표가 사용될 수 있다.

코멘트: 시드 배정에서 가장 복잡하 종목은 800m로서, 시드 기록이 필요한 레인 경기 및 비 레인 경기 모두를 넘나든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전 레이스에서 진행상황이 결승점 및 시간에 기초하고, 이전 레이스에서 시드 시간 및 기록에 따라 랭킹이 지정되므로, 레인 배정 시 매우 중요하다(규칙 21.3(b)참조).

랭킹 및 예선 조 편성

3. 첫 라운드에서는 미리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에 달성된 유효 기록의 해당 명단에 의해 조 편성을 하며, 지그재그 배치 방식을 사용하여 선수들의 조 위치를 정한다.
- a) 첫 라운드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다음 라운드의 선수들 조 편성을 실시한다:
- 100~400m 종목과 4x400m까지의 릴레이 경기의 조 편성은 이전 라운드의 순위와 기록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를 위해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순위를 부여한다:
- i) 가장 빠른 예선전 승자(Fastest heat winner)
 - ii) 2번째로 빠른 예선전 승자(2nd fastest heat winner)
 - iii) 3번째로 빠른 예선전 승자(3rd fastest heat winner) 기타 등.
 - iv) 가장 빠른 2위(Fastest 2nd place)
 - v) 2번째로 빠른 2위(2nd fastest 2nd place)
 - vi) 3번째로 빠른 2위. 기타 등
(마무리 지으며)
 - vii) 가장 빠른 시간 통과자(Fastest time qualifier)
 - viii) 2번째로 빠른 시간 통과자(2nd fastest time qualifier)
 - ix) 3번째로 빠른 시간 통과자(3rd fastest time qualifier), 기타 등.
- b) 다른 종목에서는 최초 기록 명단으로 시드 배정을 계속 하고 앞선 라운드에서 기록이 향상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 c) The athletes shall then be placed in heats in the order of seeding in a zigzag distribution, e.g., three heats will consist of the following seedings:
- | | | | | | | | | |
|---|---|---|---|----|----|----|----|----|
| A | 1 | 6 | 7 | 12 | 13 | 18 | 19 | 24 |
| B | 2 | 5 | 8 | 11 | 14 | 17 | 20 | 23 |
| C | 3 | 4 | 9 | 10 | 15 | 16 | 21 | 22 |
- d) 선수들은 각 조의 조 편성 순서에 있어서 지그재그 배치방식으로 배정된다. 예를 들면, 3개 조의 예선 경기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 편성을 한다.

코멘트: 첫 라운드에 대해 요구된 예선의 수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400m 이하 모든

레이스에 사용 가능한 레인(예를 들면 직선 또는 타원형 트랙에서 9번째 레인)을 사용하고 800m 레이스 스타트 시 레인에 한 명 이상 있는 것이 허용되고 일반적이다.

예선이 수행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기초한다. 중장거리 레이스의 경우 마지막 예선이 달리는 선수는 예선 통과를 위해 필요한 기록을 알 수 있다. 레이스가 짧더라도 기후 상태가 변경될 수 있다(비가 갑자기 내리거나 풍속 및 풍향의 변화). 공정성은 우연히 그 질서를 결정하도록 지시한다.

레인 추첨

4. 라운드가 수 차례 연속으로 진행되는 100m~800m 까지의 경기와 4x400m까지의 릴레이 종목은 다음과 같이 레인 추첨을 한다:

- a) 1라운드 및 규칙 21.1에 명시된 모든 예선 라운드의 레인 순서는 제비 뽑기로 결정한다.
- b) 이후의 라운드부터 위에 나온 절차에 따라 각 라운드 후 선수의 순위를 정한다.

다음과 같이 세 번의 추첨이 실시된다:

- i) 3,4,5,6 레인에 상위기록의 선수 4명 또는 4팀의 위치 결정
- ii) 7,8 레인에 5위와 6위 선수 또는 팀 위치 결정
- iii) 1,2 레인에 가장 기록이 낮은 선수 또는 팀 위치 결정.

참고 (i): 레인이 8개 미만일 경우, 위의 방식에 필요한 수정을 가해서 결정을 한다.

참고 (ii): 인정 대회 또는 승인 대회의 경우 800m 종목은 각 레인에 선수가 1명 또는 2명이 레이스 해도 좋으며, 아크형 스타트 라인에서 스타트하는 그룹 스타트를 해도 좋다. 단 이것은 동순위 또는 심판장의 진출 허락으로 인해 다음 라운드의 한 조에 출전하는 선수 수가 예상 보다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라운드에서만 적용이 된다.

참고 (iii): 결승전을 포함한 모든 800m 레이스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활용 가능한 레인보다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경우, 기술위원장은 한 명 이상의 선수가 추첨된 레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iv): 선수보다 더 많은 레인이 있는 경우에는 안쪽의 레인(들)이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

코멘트: 참고 (iii)에 관련하여, 기술위원장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다. 이 문제는 레이스의 첫 번째 곡선구간에만 영향을 미치며, 짧은 레이스에서 레인 할당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기술위원장(들)은 선수들을 레인에 추가로 위치시켜 “더블업”이 불편화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같이 타이트한 곡선에서 달리지 않도록 바깥 레인을 권장한다.

참고 (iv)에 관련하여, 8레인 이상 사용 가능한 경기장의 경우, 기술위원장(없을 시 LOC)은 이 목적에 의해 사용될 레인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9차선 타원형 트랙의 경우, 9명 이하의 선수가 참가할 경우 1레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규칙 21.4의 목적상, 2번 레인은 1번 레인으로 간주된다. 9차선 트랙을 사용할 경우 T11-12 트랙 레이스를 위한 레인 할당은 다음과 같다: 레인 1-2, 3-4, 5-6, 7-8은 선수 및 가이드러너에게 할당되며, 바깥레인(9)은 자유(free)로 남는다.

싱글(단일) 라운드

5. 오직 싱글(단일) 라운드(결승)만 요구되는 모든 트랙 경기의 경우, 레인/스타팅 순서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파트 B-3.1.2(a) 및 (b)에 따른 IPC 경기 및 IPC 대회를 제외하고, 레인에서만 달리는 트랙 경기의 경우(예: 100m, 200m, 400m, 4x100m) 레인은 사전결정기간 및 규칙 21.4 b) (i), (ii), (iii) 기간 동안 관련된 유효 기록의 리스트를 통해 결정된 랭킹에 따라 추첨한다.

코멘트: 본 규칙의 의도는 대회의 예선 및 결승을 정당화할 충분한 선수가 없을 경우, 더 나은 선수가 랜덤 레인 추첨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IPC 경기 및 IPC 대회에서 대회를 위한 기술규정에 명시된 사전결정기간 동안 기록한 시드 시간/기록은 레인 추첨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 라운드 및 결승전보다 경기 경구 시리즈를 수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대회를 위한 규정은 배정, 추첨 및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설정한다.
- 선수는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조 또는 레인이 아닌 곳에서 경기를 할 수 없으나, 심판장이 조 편성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진행(Progression)

- 모든 예선 경기에는 규칙 21.2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표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한 적어도 각 조의 1,2위 선수를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나, 가능하면 3위까지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는 것이 권장된다. 규칙 22의 적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선수들은 특정 경기규칙 21.2 또는 기술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순위 또는 기록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권자를 결정한다. 기록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결정할 때에는 한 가지의 게시 방법만 사용한다.

참고: 기술위원장이 다른 표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800m 이상의 레이스에서 라운드가 진행될 때, 소수의 선수만이 시간에 의해 통과하는 것을 권장한다.

코멘트: 경기 규정에서 표를 규정하는 경우, 규칙 21.8에 명시된 원칙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술위원장 혹은 LOC가 진행 테이블을 사용하는데 동일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규칙 22가 변화를 적용할 경우, 특히 순위에 따른 최종 예선 순위에 동순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한 명 적은 선수가 적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추가 레인이 가능한 상황의 경우 혹은 800m의 경우(스타트에서 레인이 한 명 이상의 선수가 사용할 수 있을 경우) 혹은 레인이 없는 레이스의 경우, 기술위원장(들)이 추가 선수를 진행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규칙 21.8에 명시된 조항 때문에 시간 통과에 오직 한 가지 시스템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전 시스템이 실패할 경우 백업 계측 시스템(일반적으로 사진판정)이 예선 라운드에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2회 이상의 예선에서 서로 다른 계측 시스템의 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기술위원장은 트랙 심판과 함께 특정 대회 상황에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선수를 결정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레인이 사용 가능할 경우, 본 옵션이 먼저 고려되기를 권장한다.

당일 대회(One Day Meetings)

9. 파트 B- 3.1.2(d) 아래 WPA 승인 대회의 경우, 선수는 해당 대회에 적용 가능한 규정들 혹은 LOC에 의해 결정된 다른 방법에 따라 시드배정 및 레인 할당을 받을 수 있지만, 가급적 선수와 관계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코멘트: 당일 대회의 경우, 만일 한 개 이상의 레이스가 있지만 "결승"라운드만 있을 경우, 레이스는 대회 혹은 일련의 대회에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선수가 없을 경우, LOC에게 임명된 기술위원장이 요청을 할 경우, 다양한 "레이스"에 선수를 할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사한 고려사항은 해당 경기에서 선수의 최종 순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적용된다. 일부 대회에서는 메인 레이스를 제외한 "레이스(들)"를 별도의 레이스로 간주하고 이는 전체 랭킹에 반영되지 않지만, 다른 대회에서는 두 개 이상의 레이스의 결과를 "결합"하여 전체 랭킹을 부여한다. 또한 시상(prizes) 혹은 기타 고려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참가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이 좋다.

라운드 사이 최소 시간

10. 각 라운드의 마지막 조와 다음 라운드의 첫 번째 조 또는 결승 경기 간에는 다음과 같이 최소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한다:

200m 이하	45 분
200m 초과, 1000m 이하	90 분
1000m 초과	같은 날에 실시 안함

규칙 22: 동순위

(규칙 167)

1. 심판원 또는 사진판정 심판원이 규칙 19.2, 19.3, 20.22 혹은 20.25에 따라 어떤 순위로도 선수들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동순위는 유지된다.

랭킹 포지션의 동순위(규칙 21.3(a)에 따라)

2. 규칙 21.3(a)에 따라 랭킹 포지션에 따른 동순위가 있을 경우,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은 선수가 기록한 실제 시간을 0.01초로 간주하고, 동점일 경우 동순위로 판정하고, 추첨을 하여 상위 랭킹을 결정한다.

순위에 따른 마지막 예선 통과 포지션의 동순위

3. 규칙 22.1의 적용 후, 마지막 예선통과의 순위에 의한 포지션에 동순위가 있을 경우, 만일 이용 가능한 레인과 포지션이 있다면(800m 레이스에서 레인 공유 포함), 동순위 선수들은 다음 라운드에서 진출한다. 이것이 적용 가능하지 못할 경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선수를 추첨을 통해 뽑을 것이다.
4. 다음 라운드를 위한 진출 자격이 기록과 시간에 의해 결정되고(예: 두 차례의 각 예선전에서 상위 3명의 선수+차상위 선수2명), 기록을 근거로 마지막 진출 자격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라운드에 동일한 성적을 기록한 선수들을 진출시키는 것은 기록 시간에 의해 진출자격을 획득하는 선수들의 숫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시간에 따른 마지막 예선 통과 포지션의 동순위

5. 시간에 따른 마지막 예선 통과 포지션에 동순위가 있을 경우, 수석 사진판정 심판원이 선수들이 기록한 실제 시간을 0.01초로 간주하고, 동점일 경우 동순위로 결정한다. 만약 레인 및 포지션이 있다면(800m에서 레인공유 포함), 동순위 선수들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다. 이것이 적용 가능하지 못할 경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선수를 추첨을 통해 뽑을 것이다.

규칙 23: 릴레이 레이스

(규칙 170)

1. 각 구간의 거리와 스크래치 라인은 너비 50mm의 흰색 선을 트랙에 가로질러 그어서 표시한다.
2. 입식 릴레이 레이스의 4x100m, 4x200m 릴레이 및 4x100m 혼성 릴레이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테이크오버의 경우 각 테이크오버 구역의 길이는 30m이어야 하며, 이 중 스크래치 라인은 구역의 시작으로 부터 20m이다. 4x100m과 4x200m의 휠체어 릴레이 레이스 및 4x100m 혼성 릴레이에서의 세 번째 테이크오버의 경우, 테이크오버 구역의 길이는 40m이어야 하며, 이 중 스크래치 라인은 구역의 시작으로 부터 30m이다. 구역들은 주행 방향의 시작 라인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 라인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하고 마쳐야 한다. 레인에서 수행되는 각 테이크오버의 경우, 임명된 임원이 선수들이 본인의 테이크오버 구역에 맞게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임명된 임원들은 또한 규칙 23.3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코멘트: 감찰원은 각 팀의 각 선수가 정확한 레인 또는 포지션에 위치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스타터 보조자들은 첫 주자를 위치시키는데 책임이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 배턴을 제공(공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추후에 스타트 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이크오버 구역에서 지원을 하도록 임명될 수 있다. 각 테이크오버 구역의 수석 감찰원과 원하는 위치에 배치된 감찰원들은 후속 주자의 위치 배정을 책임진다. 모든 선수들이 올바르게 위치되어 있을 경우 구역 수석 감찰원은 관련된 기타 임원들에게 합의된 의사소통 수단을 알려야 한다 - 주요 대회인 경우 일반적으로 라디오를 사용한다. 이들은 또한 모든 테이크오버에서 출발하는 주자의 발, 인공기관 및 양쪽 뒷바퀴가 움직임을 시작하기 전 완전히 구역 안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배턴 혹은 터치를 잡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움직임은 구역 밖에서 시작되어서는 안된다.

3. 릴레이 레이스의 전부 또는 첫 부분이 정해진 레인에서 치러지는 경우, 선수는 다른 기존의 마킹과 혼동되지 않도록 눈에 띄는 색상의 최대 5x40cm 크기의 접착 테이프로 본인 레인 내의 트랙 위에 1개의 체크 마크를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체크 마크를 하여서는 안된다.

참고: 4x100m 혼성 릴레이의 경우, 기술위원장(들)은 요청에 따라 각 테이크오버 구역에 보조자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레인에서 눈에 띄는 체크 마크를 트랙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릴레이 배턴은 이음새가 없는 한 조각의 목재나 금속 또는 다른 단단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단면이 둥글고 표명이 고르며 속이 빈 관형이어야 한다. 길이는 28~30cm 이내이고, 바깥 직경은 40mm이어야 하며 ($\pm 2\text{mm}$) 무게는 50g 미만이어야 한다. 배턴은 레이스 동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색이 칠해져야 한다.

참고: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 및 (b) 참조)에서의 휠체어 릴레이의 경우, LOC는 레이스 동안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각 팀에게 헬멧 덮개를 제공하여야 한다.

코멘트: 휠체어 릴레이 레이스의 경우 헬멧덮개는 추가적으로 헬멧 숫자와 함께 선수들이 착용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필요한 경우, LOC는 헬멧 덮개가 제공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집실 심판원은 헬멧 덮개가 소집실에서 점검 받게 하여야 한다.

5.

- a) 배턴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모든 릴레이 레이스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휠체어 릴레이 및 절단 릴레이에 대한 규칙 23.6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 내내 손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 및 (b) 참조)에서는 적어도 각각의 배턴은 다른 색상 및 다른 번호이어야 하며 트랜스폰더 게시장치를 포함할 수 있다.

참고: 가능한 경우 각 레인 또는 스타트 순서 위치에 정해진 색상은 스타트리스트에 표시되어야 한다.

- a) Athletes and guide-runners are not permitted to wear gloves or to place material (other 선수 및 가이드러너가 배턴을 잘 잡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거나 손에 어떠한 재료(규칙 7.4(c)에서 허용하는 재료 제외)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b) 배턴을 떨어트렸을 경우, 떨어트린 선수 또는 가이드러너가 배턴을 주워야 한다. 선수 또는 가이드러너는 떨어트린 배턴을 줍기 위해 자기 레인을 벗어날 수는 있으나 자신이 달려야 할 거리를 단축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배턴이 떨어져서 측면이나 주행 방향 앞으로 굴러갔을 경우(결승선 너머로 굴러간 경우를 포함), 배턴을 떨어트린 선수/가이드러너는 배턴을 다시 잡은 후 레이스를 재개하기 전 반드시 본인 손에서 배턴이 떨어졌던 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절차를 지키며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 배턴을 떨어트린 것으로 실격을 당하지는 않는다. 만일 선수 혹은 가이드러너가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팀을 실격된다

6. 모든 릴레이 레이스에서 배턴은 테이크오버 구역 내에서만 패스해주어야 한다. 배턴 패스는 배턴을 받는 선수 또는 가이드러너의 손에 처음 배턴이 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받는 선수 또는 가이드러너의 손 안에 완전히 넘겨진 순간에 끝난다. 테이크오버 구역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수의 신체 위치가 아니라 배턴의 위치이다. 테이크오버 구역 바깥에서 배턴을 패스하는 경우는 실격처리 된다.

코멘트: 배턴의 위치를 고려할 때, 배턴 전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찰원들은 특히 4x100m 입식 릴레이에서 배턴이 테이크오버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턴과 접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부지런하여야 한다. 만약에 나가는 주자가 배턴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배턴을 만질 경우, 팀은 실격처리 된다.

휠체어 릴레이(T33-34, T51-52 및 T53-54), 입식 릴레이(T42-47, T61-64) 및 4x100m 혼성 릴레이와 관련해서, 테이크오버는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선수 양쪽 모두의 신체 중 어느 부분이라도 터치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터치는 반드시 테이크오버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테이크오버 동안 이득을 얻기 위해 선수를 미는 행위는 실격으로 처리된다.

참고: 4x100m 혼성 릴레이의 경우, 휠체어 선수가 착용한 헬멧은 신체의 일부로 인정된다.

7. 테이크오버를 완료하기 전 및 완료한 후에 선수와 가이드러너는 다른 선수 및 가이드러너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코스가 클리어 되기 전까지 자신의 레인 혹은 구역에 머무르고 있어야 한다. 규칙 18.5 및 18.6은 이러한 선수/가이드러너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자신의 구간 끝 부분에서 본인의 위치나 레인 밖으로 달려 나가 다른 팀의 선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규칙 18.2를 적용한다.

8. T11-13 릴레이의 배턴 교환:

- a) 선수 또는 가이드러너 둘 중 아무나 한 명이 배턴을 들고 달릴 수 있다
- b) 배턴 교환은 가이드러너와 선수 사이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단, 가이드 방법에 대한 규정은 지켜야 한다.
- c) 테이크오버 구역 내에서 배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턴을 받는 사람에게 배턴을 넘겨주어야 규칙에 맞는 배턴 교환이 된다
- d) 배턴을 주는 주자가 일단 테이크오버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배턴을 받기 위해 다시 테이크오버 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예: 너무 빨리 달려 나간 경우)

- e) 가이드러너가 없이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T12 선수들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테이크오버 구역당 1명의 보조자가 트랙에 있을 수 있다. 해당 보조자는 경기의 시작에 앞서 대회 지역에서 나오고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기술임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한 선수는 경고 또는 규칙 7.2에 따라 실격처리 된다.
9. 레이스 중에 선수가 다른 팀의 배턴을 가져가나 주웠을 경우, 그의 팀은 실격처리 된다. 다른 팀의 경우 이득을 얻지 않은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10. 릴레이 팀의 각 멤버는 한바퀴만 달릴 수 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 중 4명의 선수와 동반된 가이드러너가 있는 선수는 모든 라운드의 릴레이 팀 구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릴레이 팀이 시합에 참가하게 되면, 같은 시합에 참가했던 최대 4명의 선수와 그에 상응하는 가이드러너를 팀 구성의 대체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된다.
- 참고: 가이드러너의 교체는 선수 교체 총합에 카운트되지 않는다.*
11. 릴레이 레이스에서 팀의 편성과 달리는 순서는 해당 대회의 각 라운드 제 1조의 첫번째 소집시간 1시간 전까지 공식적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변경은 오직 질병이나 부상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선수를 방지하는 경기에서 허용된다. 그리고 반드시 LOC가 임명한 의무 담당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며, 해당 팀이 참가하고 있는 조의 마지막 콜 타임 전 까지만 이루어진다. 이 팀은 선언된 순서에서 나온 이름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본 규칙을 지키지 않은 팀은 실격처리 당한다.

WPA 공인 대회(파트B-3.1.2참조)에서 릴레이는 아래 표에 나온 스포츠 등급군과 함께 해당 팀 구성조건에 따라 시합을 진행한다.

스포츠 등급(들)	릴레이팀 구성조건
T11-13	최소 1명의 스포츠 등급 T11 선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최대 1명의 스포츠 등급 T13 선수를 포함할 수 있다.
T33-34	최소 1명의 스포츠 등급 T33 선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T35-38	최대 2명의 스포츠 등급 T38 선수를 포함할 수 있다.
T42-47, T61-64	최대 2명의 스포츠 등급 T46/47 선수를 포함할 수 있다.
T51-52	최소 1명의 스포츠 등급 T51 선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T53-54	최소 1명의 스포츠 등급 T53 선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4x100m 혼성 릴레이의 팀 구성, 달리는 순서 및 적합한 스포츠 등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 팀은 반드시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 선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최대 2명의 선수가 해당 스포츠 등급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T13, T46/47, T38, T54.
- 나머지 2명은 아래 표에 명시된 모든 기타 스포츠 등급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 달리는 순서는 아래의 테이블에 따라야 한다:

달리는 순서	적합한 등급
첫 바퀴	T11-13
두번째 바퀴	T42 - 47, T61 - 64
세번째 바퀴	T35 - 38
네번째 바퀴	T33 - 34, T51- 54

코멘트: 모든 릴레이 레이스의 경우, 전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팀들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4x100m 혼성 릴레이의 경우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다. 입식과 휠체어 릴레이 레이스와 다르게, 4x100m 혼성 릴레이는 추가 요건이 있다. 첫째, 팀은 2명의 남자 선수와 2명의 여자 선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에 결정된 주행 순서는 경기 중에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즉, 각 구간은 위 표에 설명된 대로 다른 스포츠 등급의 선수들이 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직 최대 2명의 선수가 다음 스포츠 등급에서 선택될 수 있다: T13, T46/47, T38, 및 T54. 그러므로, 팀의 전략에 따라 그들은 해당 등급에서 0명, 1명, 혹은 2명을 선택할 수 있다. 팀의 전략과 상관없이 이전 스포츠 등급에서 최대 2명의 선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한 팀이 T13과 T54 선수를 각각 첫 번째 및 네 번째 구간을 달리기로 했다. 그러면 두 번째 및 세 번째 구간의 경우 그들은 T38 혹은 T46/47 등급의 선수를 선택할 수 없다.

12. 4x100m 혼성 릴레이를 포함한 4x100m 레이스는 전적으로 레인 내에서 달려야 한다.

13. 4x200m 레이스는 다음의 모든 방식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 a) where possible, entirely in lanes (four bends in lanes)
- b) 가능한 경우, 전적으로 레인 내에서(레인 내 4번의 곡선주로)
- c) 처음 두 명의 주자는 레인 내에서, 세 번째 주자는 규칙 18.7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수들이 각자의 레인을 벗어날 수 있는 브레이크 라인의 끝 부분 근처까지 레인 내에서 주행(레인 내 3번의 곡선주로)
- d) 첫 번째 주자는 규칙 18.7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수들이 각자의 레인을 벗어날 수 있는 브레이크 라인의 끝 부분 근처까지 레인 내에서 주행(레인 내 1번의 곡선주로).

참고: 4개 이하의 팀들이 참가 중이고, a)항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c)항이 적용되도록 권장된다.

14. 4x400m 레이스는 다음의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 a) 첫 번째 주자는 레인 내에서, 두 번째 주자는 규칙 18.7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수들이 각자의 레인을 벗어날 수 있는 브레이크 라인의 끝 부분 근처까지 레인 내에서 주행(레인 내 3번의 곡선주로)
- b) 첫 번째 주자는 규칙 18.7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선수들이 각자의 레인에 벗어날 수 있는 브레이크 라인의 끝 부분 근처까지 레인 내에서 주행(레인 내 1번의 곡선주로).

참고: 시각 및 휠체어 이외의 릴레이 레이스의 경우, 4개 이하의 팀이 참가중인 경우, b)항이 적용되도록 권장한다.

15. 모든 테이크오버에 대해 선수들은 본인의 테이크오버 구역 밖으로 달려서는 안되고 테이크오버 구역 내에서 주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만약 특정 선수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의 팀은 실격처리 된다.

16. 4x100m 릴레이 종목의 제 3구간과 4구간의 선수/가이드러너들은 지정된 임원의 지시에 따라 각자 팀의 선행주자가 본인의 마지막 곡선구간에 진입한 순서대로 안쪽에서 바깥쪽 순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앞의 선수/가이드러너가 일단 이 지점을 통과하면 대기하는 선수/가이드러너는 본인의 순서를 지켜야 하며, 테이크오버 구역 시작지점에서 위치를 바꾸면 안된다. 선수/가이드러너가 본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팀은 실격처리 된다.

참고: 이전 구간이 레인에서 진행되지 않은 4x200m 릴레이 레이스에서는(레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레인에서 진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수/가이드러너는 스타트리스트의 순서에 따라 정렬하여야 한다(안쪽에서 바깥쪽으로).

17. 휠체어 릴레이 및 T11-13등급(가이드러너 포함) 릴레이 경기의 경우, 해당 릴레이가 레인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각 팀은 서로 맞닿아 있는 레인 2개를 배정받는다. 해당선수/가이드러너는 본인들에게 배정된 레인 2개를 사용하게 된다. 배정된 2개의 레인의 안쪽에 그려진 선은 2개 레인의 바깥쪽까지 연장되어 스테이지의 거리 및 출발선을 표시한다. 1,3,5,7 레인에 대해선 변경이 이루어진다. 출발선의 연장 및 교환 박스 레인은 기존에 있는 레인 표시와 동일한 색상과 너비의 테이프로 표시되어야 한다.

18. 모든 입식 레이스에서 레인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 가능할 시 4x200m 및 4x400m에서 선행 주자를 기다리는 선수/가이드러너는 선행주자가 접근할 때 다른 선수를 밀거나 방해해서 그 선수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지 않는 이상 트랙의 안쪽에 위치할 수 있다. 4x200m와 4x400m에서는 규칙 23.17에 따라 선수/가이드러너는 본인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만약 선수/가이드러너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팀은 실격 처리된다.

코멘트: 수석 감찰원은 할당된 구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 선수들이 레인에 올바르게 배치되고 레이스가 시작되면, 구역 수석 감찰원 및 함께 선임된 감찰원들은 본 규정 및 규칙 그리고 특히 규칙 18에 따른 위반사항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19. 모든 휠체어 릴레이 레이스에서 가능한 경우 4x200m 및 4x400m에서 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기중인 선수들은 다음 순서 및 규칙 23.16(a)에 따라 두 개의 인접 레인을 할당 받는다. 대기하는 선수들은 두 레인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두 레인에서 머물러야 한다. 휠체어 릴레이 레이스에서 대기 중인 선수들은 할당된 두 레인 이외에 내부 위치 또는 다른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선수가 만일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팀은 실격처리 된다.
20. 본 규칙에서 다루지지 않은 릴레이 경기의 경우, 관련 대회 규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세부 규칙 및 릴레이가 진행되어야 할 방법을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섹션 IV - 필드 경기

규칙 24: 총칙

(규칙 180)

경기 구역에서의 연습 시기

1. 경기 구역에서 경기 시작 전, 각 선수는 연습 시기를 할 수 있다. 투척 경기의 경우, 연습 시기는 추첨 순서에 의해 진행될 것이며 심판원의 감독 아래 진행된다.

코멘트: 이전 규칙에서는 투척 경기에서 각 선수당 두번의 연습 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으나, 현재는 특별한 세부내용이 없다. 규칙 24.1은 워업 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연습 시기 횟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요 경기의 경우, 여전히 두개의 연습 시기로 남아있지만, 이는 최소로 간주되며 시간이 가능할 경우에 선수 일부 혹은 전체가 추가 연습 시기를 요청할 경우, 이는 허용될 수 있다.

2. 대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 선수들은 연습 목적에 의해 다음을 사용할 수 없다,
 - a) 도움닫기 혹은 테이크오프 구역
 - b) 용기구
 - c) 용기구의 유무에 상관없이 섹터 내 서클 혹은 그라운드.

코멘트: 높이뛰기 및 세단뛰기에서 선수들은 트랙이 대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을 경우 워업 목적으로 트랙을 사용할 수 없다. 그들은 경기 구역에 근접한 범위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원의 지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심판장의 자격으로 ITO는 현장을 통제하여야 하며, 허락 없이 대회 지역을 벗어나는 선수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옐로카드 혹은 레드카드를 발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규칙의 적용은 다른 선수나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경우에 선수가 자신의 시기를 준비하는데 선택된 용기구를 만지거나 준비하는 것을 막으면 안된다. 심판원이 이 규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경기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선수가 자신이 선택한 시기를 시도할 시간이 오면 즉각적으로 시기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커

3.

- a) 도움닫기를 사용한 모든 필드 경기에서는 도움닫기 곁에 마커를 둘 수 있다. 단, 높이뛰기는 도움닫기 위에 마커를 둘 수 있다. 선수는 도움닫기와 발구름을 돕기 위해 1개 혹은 2개의 마커(LOC에 의해 공급 혹은 승인)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마커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선수는 접착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분필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 또는 표시가 지워지지 않는 그 외의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 b) 서클에서 시작되는 투척경기의 경우, 선수는 한 개의 마커만 사용할 수 있다. 마커는 서클 바로 뒤쪽이나 서클에 근접한 지면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마커는 선수 각 개인의 투척 시기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심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착지 구역 내에 또는 근처에 개인의 마커를 둘 수 없다;

참고: 각 마커는 오직 한 개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코멘트: 지면이 젖었을 경우 높이뛰기에 사용된 접착 테이프는 지면에 여러 색상의 핀을 뽑아서 고정시킬 수 있다.

각 마커가 1개가 되기 위한 요건은 심판장에 의해 현명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두 개의 재료를 이용하여 1개의 마커를 만들었으며 이는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 제작이 되었을 경우, 이 마커는 허용된다. 유사한 경우로 선수가 두 마커를 동일한 위치에 두기로 결정한 경우, 이 또한 허용된다. 높이뛰기의 경우, 테이프를 하나 이상의 조각으로 찢어서 다른 모양의 단일 마커를 만들어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선수의 경우, 이 또한 허용된다.

기록 마커 및 풍향계

4.

- a) 현재 세계기록을 표시 및 가능한 경우, 존재하는 지역, 국가, 혹은 대회 기록을 표시하기 위해 특별한 깃발 또는 마커를 제공할 것이다.

- b)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풍향계가 모든 도약 경기, 원반던지기 및 창던지기 경기에서 선수들에게 바람의 대략적 방향 및 풍속을 보여주기 위한 적합한 위치에 위치시켜야 한다.

참가 순서 및 시기

- 5. 규칙 24.6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들은 추첨으로 뽑힌 순서에 따라 경기를 해야 한다. 선수가 스스로 판단을 하여 이전에 나온 순서와 다르게 시기를 수행했을 경우, 규칙 2.13.5와 8.2가 적용된다.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 시기의 결과는 유효하다(성공 혹은 실패). 예선전이 있을 경우, 결승전에서는 새롭게 추첨을 한다.

코멘트: 선수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전에 결정한 것과 다른 순서로 시기를 진행하였을 경우, 규정 2.13.5 및 8.2에 따라 경고를 받게 되지만(2번째 위반일 경우에는 실격), 경고의 경우 시기의 결과(유효 혹은 실패)는 고려될 것이다.

- 6. 높이뛰기 및 좌식 투척 종목을 제외하고 어떠한 선수도 대회 한 라운드의 시기에서 한 개 이상의 시기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높이뛰기를 제외한 모든 입식 필드 경기의 경우, 8명 이상의 선수가 있을 경우 각 선수는 세 번의 시기를 허용하고, 유효 기록이 가장 좋은 상위 8명의 선수에게는 추가적으로 3회의 시기를 허용한다.

코멘트: 8명 이상의 선수가 있는 수평도약 경기의 경우, 유효한 성적이 가장 좋은 8명의 선수만 추가 시기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선수가 공정한 점프에서 측정된 기록하거나 처음 3회의 시기 중 적어도 1번은 던져야 한다. 8명 미만의 선수가 유효한 성적을 달성할 경우, 8명 미만의 선수가 진행하더라도 추가 기회가 허용된다.

마지막 통과 순위에서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선수들이 동일한 최고 기록을 세운 경우, 규칙 24.22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동순위로 판단될 경우, 동순위의 선수들은 추가적 시기가 허용하는 결승전에 위치할 것이다. 높이뛰기의 마지막 통과 순위에서 동순위가 있을 경우, 이는 규칙 24.22에 서술된 대로 해결할 것이다.

좌식 투척 경기의 경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풀에서 진행할 수 있다.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 및 (b) 참조)의 경우, 6번의 연속된 시기의 참가 순서는 미리

결정된 기간동안에 달성된 유효한 경기 기록의 역순에 따라 진행되기를 권장한다.

선수가 8명 혹은 그 이하인 경우, 해당 규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이상 6번의 시기가 허용된다. 첫 세번의 시기 라운드에서 한 명 이상의 선수가 유효한 시기를 기록하는데 실패할 경우, 해당 선수들은 기존 추첨에 따른 동일한 순서로 유효한 시기를 기록한 선수보다 먼저 후속 라운드에 참가한다.

두 개 사례 모두의 경우:

- a) 추가 라운드의 시기 순서는 관련 규정의 적용이 있지 않은 이상 첫 세 라운드의 시기 이후에 기록된 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참고: 좌석 투척 경기의 경우(스포츠 등급 F31-34, F51-57), 처음 세번의 라운드가 2개 혹은 그 이상의 풀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이상, 첫 세 라운드의 시기 이후에 기록된 순위의 역순으로 한다(관련 규정의 적용이 있지 않은 이상).

- b) 경기 순서가 바뀌고 동순위가 발생되었을 때, 해당 동순위 선수들은 처음 추첨에 의한 경기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경기를 한다.

참고 (i): 수직 도약 경기의 경우, 규칙 25 참조.

참고 (ii):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선수가 규칙 50.5에 따라 "소청 중" 상태로 시합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심판장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 이러한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이 시합을 계속 진행하기 전까지 남은 시기의 모든 라운드를 마쳐야 하고 만일 이러한 선수들이 한명 이상인 경우, 처음 추첨에 의한 경기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경기를 한다.

참고 (iii): 관련 운영기관의 규정은 시기의 횟수를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6회 이상이 아니라고 제공된 경우), 세번의 시기 이후 추가 라운드를 진출할 선수의 수 또한 정할 수 있다.

Note (iv): 좌석 투척 경기의 경우, 관련 운영기관의 규정은 세번째 시기 이후 라운드 이후 참가 순서가 한번 더 바뀔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코멘트: 해당 조항의 필드 경기 5라운드 이후의 순서에 관한 변경 내용은 2011년에 삭제되었이다. 이 경우 순서 변경 조항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적용된 원래 상황으로 돌아간다. 이 조항은 대회 프레젠테이션에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 많은 경우 선두 선수가 마지막 시기를 치루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을 때 이를 손상시켰다.

시기의 기록

7. 높이뛰기를 제외하고, 유효 시기는 계측된 기록에 의해 표시된다.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 약어 및 기호는 규칙 2.20.3 참조.

시기의 완료

8. 심판원은 해당 시기가 끝날 때까지 유효시기를 나타내는 흰색 깃발을 들어서는 안된다. 심판원은 그가 잘못된 깃발을 들어 올렸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유효한 시기의 완료는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 a) 수직도약 경기의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심판원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 b) 수평도약 경기의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선수가 착지구역을 벗어난 이후
- c) 입식투척 선수들의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선수가 서클 혹은 도움닫기를 벗어난 이후
- d) 좌식투척 경기의 경우, 용기구가 허용된 구역에 착지한 이후.

코멘트: 이 때문에 필드에 있는(투척 경기의 경우) 혹은 착지 구역에 있는(수평도약 경기의 경우) 심판원이 수석 심판원이 실수로 잘못된 깃발을 들었을 경우 프리즘 혹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선 경기

9. 예선경기는 참가선수가 너무 많아 단일 라운드(결승)에서 만족스러운 경기를 실시할 수 없는 필드 종목에서 실시된다. 예선전이 치러진 경우, 모든 선수들은 같은 경기 또는 하나 이상의 이전 경기에서 추가 예선전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라운드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예를 들어 지정된 기간, 지정된 경기에서의 순위, 혹은 랭킹에 의한 엔트리 기준 획득) 및 선수가 참가할 자격이 있고, 대회 중 어느 라운드 등의 기타 내용은 각 대회의 규정에 명시될 것이다. 예선전에서 이루어진 기록은 최종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코멘트: 기록이 결승의 일부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만일 세계 기록이 이루어지고 세계기록으로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WPA는 이 기록을 세계기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 예선경기의 선수들은 무작위로 둘 또는 그 이상의 그룹으로 나뉜다. 그러나 어디든지 가능한 각 국가 또는 팀의 대표는 다른 그룹에 위치하여야 한다. 예선경기의 그룹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실시한 그룹이 경기를 마친 후 다음 그룹이 즉시 연습시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11. 대회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예선경기와 높이뛰기 결승 사이에 하루의 휴식일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예선통과 기준과 결승진출 선수들의 수 등 예선통과 조건은 기술대표(들)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기술대표(들)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LOC가 이 조건을 결정할 것이다. 대회를 위한 규정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결승 진출 선수는 최소 12명이 이상적이다.

코멘트: 이는 기본적으로 결승에서 12위의 자리를 두고 동순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12명 이상의 선수가 결승에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격에 대한 "최대" 숫자는 없지만, 결승에서 12명 이상을 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13. 예선경기에서 높이뛰기를 제외하고 각 선수는 세 번의 시기가 허용된다. 선수가 통과 기준을 달성한 후, 예선 경기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는다.

14. 높이뛰기 예선경기의 경우, 3회 연속 무효시기로 실격되지 않은 선수는 결승진출자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규칙 25.2에 따라 정해진 예선통과 기준기록 높이에서 마지막 시기까지 계속해서 뛸 수 있다(시기 통과 포함). 선수가 결승에 갈 것이라고 결정된 경우, 선수는 더 이상 예선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

15. 만일 사전에 결정된 예선통과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없거나 필요한 선수의 수보다 적을 경우, 예선경기의 기록 순서에 따라 정해진 진출자 수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선수를 추가로 진출시킨다. 결승진출 마지막 자리의 경우, 선수 두 명 혹은 그 이상이 대회 전체 결과에서 최고 기록이 동순위인 경우 규칙 24.19가 적용된다. 만약 여전히 동순위인 경우, 동순위 선수들은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
16. 높이뛰기 예선경기를 두 그룹으로 동시에 진행할 경우 바 높이는 두 그룹이 동일하게 동시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두 그룹은 거의 같은 경기수준의 선수들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멘트: 높이뛰기 예선 그룹의 시드배정을 할 때 규칙 24.10 및 24.16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대표와 ITO/심판장은 높이뛰기의 예선경기 진행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예선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규정 25.2에 따라 선수가 탈락하지 않은 한 점프(혹은 통과 중임을 표시) 해야 한다(규칙 24.12에 정의한 대로 결승에 진출할 선수의 수가 도달하지 않은 이상). 한편으로, 두 그룹의 전체 순위에서 선수 사이의 동순위는 규칙 25.9에 따라 해결한다. 규칙 24.14의 적용하여 예선전에 계속 참가하는 다른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선수들은 불필요하게 경기를 계속하지 않는다.

시기에 허용된 시간

17. 책임이 있는 임원은 선수에게 시기를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알리며, 본 시기에 필요한 시간은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 시기에 허용된 시간이 시작된 이후 선수가 시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시기에 허용된 시간이 소요된 후 무효(실패)로 간주된다. 다음의 시기 허용 시간은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 규칙 24.18에 따른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 시기는 무효(실패)로 기록된다:

개인 경기

경기에 남은 선수의 수

	<u>높이뛰기</u>	<u>기타 입식 경기</u>	<u>좌식 투척 경기</u>
3명 이상 (혹은 각 선수의 최초 시기)	1분	1분	1분
2명 혹은 3명	1.5분	1분	1분
1명	3분	-	-
연속 시기	2분	2분	2분

참고 (i): 좌식 투척 경기의 경우, 세 번째 및 네 번째 투척 사이에 추가적인 1분이 추가될 것이다.

코멘트: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석 심판원이나 심판장은 선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임원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투척 사이에 추가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좌식투척의 경우 장비가 선수에게 건네 졌으며 섹터가 준비되었었고 임원들이 길에서 벗어났을 때 타임클락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석 심판원으로부터 선수에게 일종의 청각적인 지시가 필요할 수 있다. 선수가 세번째 투척을 마치고 측정이 완료되면 1분 휴식을 위해 타임클락을 작동시켜야 한다. 1분 휴식 기간 동안, 선수가 1분 휴식 경과 전 장비를 요구한 후, 즉각적으로 4번째 투척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예: 장비가 선수에게 건네 졌고 섹터가 준비되었었고 임원들이 길에서 모두 벗어났을 때), 장비를 선수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참고 (ii): 시기에 허용된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가 선수에게 보여야 한다. 또한 시기에 허용된 시간이 15초 가량 남았을 때 심판원은 노란색 깃발을 올리거나 혹은 계속 들고 있거나 다른 방법으로 잔여시간이 15초라고 선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참고 (iii): 높이뛰기의 경우, 한 시기에 허용된 시간은 바를 새로운 높이로 올릴 때까지 변경될 수 없다. 단, 어떤 선수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시기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연속 시기에 지정된 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 (iv): 만일 한명의 선수만이(대회를 우승한) 높이뛰기에 남아있으며 그가 세계 기록 혹은 대회에 관련된 기타 기록을 시도하고 있을 경우, 시간제한은 위에 언급된 내용을 넘어서 1분이 추가될 것이다.

코멘트: 선수 한명 이상이 특정 대회를 위해 합쳐진 경우, 이는 임원들에게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다. 만약 한 등급에서의 선수가 본인 등급에서 "경기를 우승"했을 경우 그는 대회 기술 요건이 허용할 경우 바를 그의 선택에 맞게 움직일 수 있고, 기술대표가 이를 허용할지 결정한다. 이로 인해 대회 o의 다른 등급에 대한 대회가 중단될 수 있다.

참고 (v):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의 첫 시기의 경우, 시기에 허용된 시간은 1분이다.

참고 (vi): 경기에 남아있는 선수의 수를 계산할 때,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수들도 포함하여야 한다.

참고 (vii): 선수들이 콜러와 에스코트의 도움을 받는 T11-12 등급 선수들의 경우, 시기 허용 시간은 선수가 방향 안내를 받는 과정이 끝났다고 해당 임원이 판단을 내린 순간부터 시작된다. 만일 선수가 구두로 시기 허용시간 계속 시작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경우 임원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코멘트: 심판원은 항상 시기를 치를 다음 선수와 그 다음 선수를 알리거나 부르는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선수가 자신의 시기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 1분일 경우 이는 필수적이다. 또한 선수를 부르고 시계를 시작하기 전에 대회구역이 다음 시기를 위해 완벽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심판원과 심판장은 특히 시계를 시작할 때 또는 "타임아웃"을 하고 무효(실패)를 부르지 결정할 때 현재 대회 환경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고려 되어야 할 상황은 높이뛰기와 창던지기(트랙 경기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을 때)에서 선수의 시기를 위해 도움닫기 갈림길을 이용할 수 있고 선수가 케이지에서 서클까지 시기를 걸어가는 거리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시기를 시도하는 선수가 2-3명만 남아있을 경우 수평도약 필드 경기의 결승전의 시간제한은 변동되지 않는다.

참고 (viii): 선수가 만일 방향을 잃어서 다시 방향안내를 받기 원할 경우, 계측을 멈추고 방향설정이 완료된 후에 다시 계측을 시작한다(이미 경과된 시간을 기록하여 포함).

코멘트: 본 상황에 추가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의 방향안내를 다시 해주는 동안 시간은 잠시 정지되어 있다.

참고 (ix): 좌식 투척 경기의 경우, 허용 시간은 투척 프레임이 투척 서클에 고정되고, 선수가 끈을 조이고 프레임 위에서 자세를 잡은 이후 투척 기구가 선수에게 전달된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코멘트: 시간은 할당된 시간 내에 선수가 위치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찍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선수가 준비가 되었을 경우, 24.17 참고(i) 아래 코멘트에 따라, 섹터가 임원들로부터 자유로울 때 시작된다.

또한 카운트다운 시계가 선수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 시기

18. 어떠한 이유라도 선수가 시기 중에 방해받거나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없는 경우, 심판원은 그 선수에게 대체 시기를 부여하거나 부분적 혹은 완전히 시간을 리셋하는 것을 허용할 권한이 있다. 순서의 변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간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교체시기를 위한 적당한 시간은 허용된다. 대체 시기가 부여되기 전 경기가 진행되었을 경우 다른 대체 시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코멘트: 절차적 혹은 기술적 실패로 인해 시기가 측정이 되지 않고 대체 시기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선수에게 대체 시기를 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우수한 시스템 및 백업을 사용하여 방지하는 것이 좋지만, 기술을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더더욱 많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경기가 지속되지 않는 이상, 순서 변경이 허용되지 않기에 심판은 각 특정 사건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 시기를 허용할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경기 도중 이탈(부재)

19. 선수는 심판원의 허가 혹은 동행이 있지 않은 이상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가능할 경우 경고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하지만, 심각한 경우 선수는 실격처리 된다.

코멘트: 이는 코치와 대화를 하기 위해 트랙을 지나가는(crossing)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경기 구역의 변경tion Area

20. 기술 대표 혹은 관련 심판원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경기 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구역을 변경시킬 권한이 있다. 경기 구역의 변경은 어느 한 라운드가 종료된 후에만 할 수 있다.

참고: 바람의 풍속과 방향의 변화가 경기장소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코멘트: "라운드"라는 문구 대신에 "시기 라운드"는 대회 내 필드 경기의 "시기 라운드"와 "대회 라운드"의 명확한 구별을 위해 디자인되었다(예: 예선경기 혹은 결승). 조건 때문에 장소나 시간이 변경되기 전에 시기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기술대표 또는 심판장은 일반적으로 해당 시기(상태 폐가 및 방해가 있던 시간까지의 시기의 결과)에서 이미 완료된 시기를 종료하여야 한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경기를 재개한다.

결과

21. 높이뛰기의 경우를 포함, 각 선수의 결과는 동순위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시기 중에서 가장 좋은 기록으로 인정한다.

동순위

22. 높이뛰기를 제외하고, 동일한 최고기록을 가진 선수들의 두번째 최고기록이 동순위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에도 필요시 3번째, 4번째 등으로 차 순위 최고기록이 선수들의 동순위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규칙 24.23의 적용 뒤에도 해당 선수들의 기록이 계속 동일하다면, 이는 동순위가 되는 것으로 결정된다. 높이뛰기를 제외하고, 1위를 포함한 모든 순위에서 동순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동순위는 계속된다(규칙 25.9, 25.10 참조).

호핑 테크닉(Hopping Technique)

23. T42-44 및 T61-64 등급의 선수들의 경우, 도약경기에서의 어프로치에서 호핑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다.

A. 수직 도약

규칙 25: 총칙

(규칙 181)

1. 경기가 시작되기 전, 수석 심판원은 대회에서 우승한 한 명의 선수 혹은 1위의 동순위 선수들만 남을 때까지 각 라운드의 종료 후에 올리는 바의 높이를 선수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코멘트: 경기 관련 팀 매뉴얼 혹은 기술정보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감독자회의(테크니컬 미팅)에서 진행된다. 선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석 심판원에 의해 현장에서 일부 조정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시기s

2. 선수는 수석 심판원이 사전에 발표한 높이 중 어느 높이에서부터 도약을 시작해도 무방하며, 다음 도약할 높이의 선택은 선수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 1위 동 성적을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에 관계없이 3회 연속 무효시기가 되면 다음 도약을 할 수 없다.

이 규칙의 효과는 선수가 특정한 높이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시기(첫번째 혹은 두번째 시기 실패 후)를 패스한 경우라도 다음 높이를 뛸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가 만약 어느 높이에서 시기를 한번 패스하였을 때는 1위 동 성적을 해결하는 제외하고는 그 높이에서는 그 이후의 시기를 진행할 수 없다.

3. 다른 모든 선수가 실패한 후에도, 선수는 경기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 때까지 계속 도약을 할 수 있다.
4. 선수가 1명만 남게 되어서 그가 그 대회의 승자가 되지 않는 이상:
 - a) 바는 각 시기의 라운드가 끝난 다음 2cm 미만으로 올려서는 안되며,
 - b) 바를 올리는 폭은 절대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해당 규칙들은 세계 신기록 높이로 바로 올리는 것에 동의한 선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대회에서 우승한 후에는 바가 올려지는 높이는 선수가 해당 심판원 또는 심판장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측정

5. 모든 측정은 지면으로부터 수직으로 바 상부와 가장 낮은 면까지 cm 단위로 측정한다.
6. 새 높이에 대한 측정은 선수가 해당 높이를 시도하기 전에 이루어진다. 바가 교체가 되었을 경우 재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과 관련된 모든 경우, 심판원은 마지막 측정 이후 바가 만져진(건드려진) 경우에는 각 기록 시기 이전에 재점검하여야 한다.

인공기관 장치(들)

7. 스포츠 등급 T61-64에서 높이뛰기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우, 인공기관 장치(들)의 사용은 선택적이다. 관련 임원은 규칙 6.12(b)가 관찰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 a) 만약 도움닫기 도중 인공기관 장치(들)이 떨어진 경우, 선수는 인공기관 없이 이어갈 수 없다. 선수는 인공기관 장치(들)를 수리/조정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시기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 b) 만약 도약 과정에서 인공기관 장치(들)를 분실하고 인공기관(들)이 바를 클리어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는 실패로 카운트되고 기록된다.

크로스바

8. 크로스바는 섬유유리, 또는 금속이 아닌 기타 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횡단명은 원형이어야 한다. 전체 크로스바 길이는 높이뛰기에서 4.00m ±0.02m이다. 크로스바의 최대 무게는 높이뛰기에서 2kg이다. 크로스바의 원형부분의 직경은 30mm±1mm이다. 크로스바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원형 바와 2개의 양쪽 끝 부분. 양쪽 끝 부분은 지주의 바걸이에 엮기 위하여 너비 30-35mm, 길이 0.15m-0.20m이어야 한다.

양쪽 끝 부분은 바를 바걸이에 걸었을 때 표면이 하나의 완벽한 평면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 평면 표면은 크로스바의 수직 횡단면의 중심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양쪽 끝 부분은 단단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바걸이는 바걸이와 바의 표면에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고무나 기타 재질로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크로스바는 무게중심이 편중되어서는 안되며, 바걸이에 바르게 걸었을 때 최대 20mm 이내로 휘어야 한다.

탄력성 조절: 크로스바가 본 위치에 있을 때 크로스바 중간에 3kg 무게의 중량을 달아 놓는다. 이 때 70mm 이내로 휘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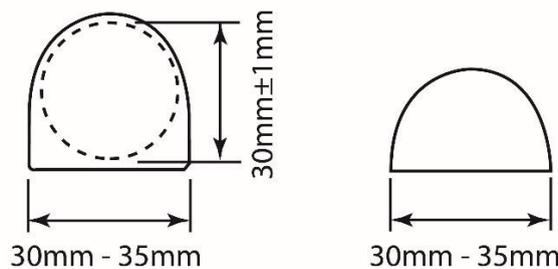


그림 7- 크로스바 끝 부분의 대체 형태

순위

9. 만일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같은 최종 높이를 통과하였을 때,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마지막으로 통과한 높이에서 도약 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높은 순위로 결정된다.
 - b) 위 규칙을 적용시켰을 경우에도 선수들이 동률인 경우, 마지막으로 통과한 높이를 포함해서 그때까지의 경기 중 총 무효시기 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높은 순위로 결정된다.
 - c) 1위를 정하는 경기를 제외하고 여전히 이 규칙을 적용해도 선수들의 동률일 경우, 그 선수들은 동순위가 된다.

- d) 1위를 결정하기 위해 우승 결정전(jump off)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규칙 25.10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데, 대회에 적용되는 기술적인 규정에 의해 사전에 결정이 되거나 기술위원 또는 기술위원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심판장이 대회 중간에 결정을 한다. 해당 선수들이 어떠한 단계에도 더 도약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경우를 포함해서 우승 결정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위 동순위에 대한 결정은 유지된다.

코멘트: 우승 결정전을 종료(제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 a) 대회 시작 전에 규정에 명시되어 대비가 되었을 경우
- b) 대회 기간 동안 기술위원장에 의한 결정(기술위원장이 없을 경우 심판장)
- c) 우승 결정전 중 모든 스테이지에서 더 이상 도약을 하지 않겠다는 선수들의 결정에 따라.

기술위원장이나 심판장이 우승 결정전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경기 시작 전에 결정하여야 하지만, 경기장의 조건이 우승 결정전을 하기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여 우승결정전을 시작하거나 이어 가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상황에 의해 이러한 결정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심판장은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규칙 2.13 또는 24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해당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

우승결정전(Jump-off)

10.우승결정전이 있을 경우:

- a) 해당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이 더 이상 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혹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높이에서 도약을 하여야 한다.
- b) 각 선수들은 각 높이마다 한 번의 도약 기회가 주어진다.
- c) 규칙 25.1에 따라 우승 결정전은 해당 선수들이 도약을 성공한 마지막 높이의 다음 높이에서 시작된다.
- d)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경우, 한 명 이상의 해당 선수가 정해진 높이를 성공하면 바를 올리고, 모두 실패할 경우 바를 내린다. 올리고 내리는 간격은 2cm이다;

e) 선수가 우승 결정전에서 높이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그의 1위에 대한 클레임은 자동으로 기권 처리된다. 오직 한 명의 선수만 남을 경우 그 선수는 높이를 성공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승자로 인정된다.

높이뛰기 - 예시

다음 자료는 '설정된 예시'일 뿐이다.

대회 시작 전 수석 심판원이 발표한 높이: 1.75m; 1.80m; 1.84m; 1.88m; 1.91m; 1.94m; 1.97m; 1.99m...

선수	높이 (m)							실패	우승결정전			순위
	1.75	1.80	1.84	1.88	1.91	1.94	1.97		1.91	1.89	1.91	
A	O	XO	O	XO	X-	XX		2	X	O	X	2
B	-	XO	-	XO	-	-	XXX	2	X	O	O	1
C	-	O	XO	XO	-	XXX		2	X	X		3
D	-	XO	XO	XO	XXX			3				4

A, B, C 및 D 모두 1.88m를 통과하였다.

동순위에 관한 규칙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된다. 심판원은 마지막으로 성공한 높이에 총 실패 숫자를 더한다(예: 해당 사안의 경우 1.88m)

"D"는 "A", "B" or "C"보다 실패 횟수가 많기에, 4위로 결정된다. "A", "B" 및 "C"는 여전히 동률이며 이는 1위 자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률인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성공한 높이인 1.91m에서 한번 더 도약한다.

모든 동순위 선수들이 실패하면서, 바는 또 다른 순위 결정전을 위해 1.89m로 내려간다. "C"만 1.89m를 실패하였기에, 나머지 2명의 동률 선수 "A" 및 "B"는 1.91m에서 세번째 우승 결정전을 하며 여기서 "B"만 성공을 했기에 B가 우승자가 된다.

코멘트: 선수가 우승결정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할 때, 다른 선수(남아있을 경우)가 규칙 25.10에 따라 우승자로 선언된다. 해당 선수는 해당 높이를 시도할 필요는 없다. 한 명 이상의 선수가 우승결정전에 남아있을 경우, 우승결정전은 본 선수들로 계속 진행이 되며, 중단한 선수는 당시 순위에 위치하며, 그는 1등을 포함한 모든 상위 순위에 관한 권리를 상실당했다.

외부의 영향력

11. 바가 선수와 무관한 힘에 의해 떨어진 것이 분명할 경우(예: 돌풍 등의 경우):

- a) 만약 선수가 바를 건드리지 않고 성공을 한 후에 바가 떨어졌을 경우, 이 시기는 성공으로 인정된다.
- b) 만약 다른 기타 상황에서 바가 떨어졌을 경우 새로운 시기가 주어진다.

규칙 26: 높이뛰기

(규칙 182)

경기

1. 선수는 한쪽 발로 발구름을 한다.
2.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패처리 된다:
 - a) 도약 후, 선수가 도약하는 중 동작에 의해 바가 바걸이에서 떨어진 경우
 - b) 선수가 먼저 바를 통과하지 않고 수직면을 넘어 크로스바의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를 통해 착지 구역을 포함한 지면을 만진다. 하지만, 만일 선수가 도약할 때 착지구역이에 발이 닿았으나 심판원의 의견에 따라 이득이 취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도약은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 c) 도약 없이 뛰어오를 때 크로스바 혹은 지주의 수직 단면에 닿은 경우.

참고 (i): 본 규칙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바의 도움단기 쪽의 지면 및 그 연장선상에 양 지주의 바깥쪽 3m 지점까지의 지면에 도움단기 주로에 가까운 크로스바의 가장자리를

통과하는 수직면을 따라 접착 테이프나 유사한 재료로 너비 50mm의 흰색 선을 긋는다.

참고 (ii): 스포츠 등급 T11 선수들은 도움닫기를 하기 전에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바를 만질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선수가 만약에 바를 떨어트리게 되더라도 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참고 (iii): T12 및 T13 등급 선수들은 바에 적합한 시각적 표시를 해놓을 수 있다.

코멘트: 명확성을 위해, 이 규칙을 적용할 때 규칙 2.13과 24에 따른 심판장의 권한은 경기에서 선수의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즉각적인 구두 소청을 대회가 계속되기 전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선수는 예를 들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청 중"상태로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도움닫기 및 발구름 지역

3. 도움닫기의 최소 폭은 16m여야 하며 최소 길이가 25m인 IPC 경기 및 IPC 대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회에서의 도움닫기의 최소 길이는 15m이다.
4. 도움닫기의 후반 15m와 발구름 장소의 전체적인 최대 경사 허용 한도는 지주 사이의 중간을 중심으로 하여 반 원형의 도움닫기 장소의 반경을 따라서 **1:167 (0.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착지 장소는 선수의 도움닫기보다 위쪽으로 경사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참고: 도움닫기 및 발구름 지역의 2018/19 세부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5. 발구름 장소는 수평면에 어떠한 경사물도 없어야 하며,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경기 기구

6. 단단하다는 점이 제공(확인)될 경우 어떠한 형태의 지주나 기둥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주에는 크로스바를 올려놓을 수 있는 지지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지주의 높이는 크로스바를 올렸을 때의 실제 높이보다 적어도 0.10m 이상 더 높아야 한다.

양 지주 사이의 거리는 최소 4m 최대 4.04m로 한다.

7. 경기 중에는 지주나 기둥을 이동할 수 없으나, 심판장이 발구름 혹은 착지장소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동시켜도 무방하다. 지주나 기둥을 이동할 경우에는 시기를 중 한 라운드가 끝난 후에 옮겨야 한다.
8. 바결이는 평평한 직사각형으로서 너비는 40mm, 높이는 60mm로 한다. 바결이는 도약 중에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반대편 지주와 마주 보도록 하여야 한다. 크로스바의 양 쪽 끝부분은 선수가 도약 중에 건드리면 앞쪽이나 뒤쪽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바결이 위에 얹어야 한다. 바결이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바결이는 바결이와 바 표면에 마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고무 또는 그 밖의 재질로 덮어 씌워서는 안되며, 어떤 종류던 탄력이 있는 것을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바결이는 크로스바의 양 끝 바로 아래의 발구름 장소에서 위쪽으로 같은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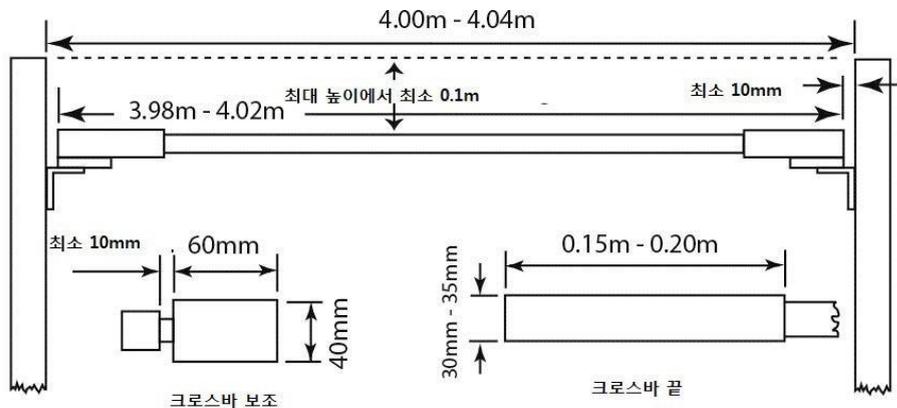


그림 8- 높이뛰기 지주 및 크로스바

9. 크로스바의 양 끝과 지주 사이에는 최소 10mm 이상 떨어진 공간이 있어야 한다.

착지 장소

10. 파트 B-3.1.2(a) 및 (b) 아래 IPC 경기 및 IPC 대회에서 착지 장소는 크로스바의 수직면 뒤에 위치하며 길이 6m x 너비 4m x 높이 0.7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참고: 지주와 착지 장소의 간격은 착지 장소가 이동하여 지주에 닿아 크로스바를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0.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한다.

코멘트: 다른 대회의 경우, 착지 장소는 길이 5m x 너비 3m x 높이 0.7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임원 구성

높이뛰기 경기의 경우, 해당 임원을 아래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며 계측을 승인할 것이다. 그는 두 개의 깃발을 제공받아야 한다 – 시기의 유효를 안내하기 위한 흰색 깃발 및 실패일 경우를 안내하기 위한 빨강색 깃발. 그는 특정한 두 개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위치에 본인을 위치시켜야 한다:
 - a) 선수가 건드린 크로스바가 지지대 위에서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수석 심판원은 크로스바의 위치에 따라 바의 진동을 멈추고 적절한 깃발을 올려야 하는 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 b) 선수가 크로스바 및 지주의 수직 부분 혹은 크로스바의 가까운 끝부분의 수직면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완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선수가 측면으로 뛰거나 바 "아래"로 가는 선수의 발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착지 구역 양쪽에 위치한 심판원 (1) 및 (2)가 크로스바가 떨어질 때 교체하는 임무에서 약간 뒤로 물러서서 위의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수석 심판원을 보조한다.
- 3) 심판원 – 결과 기록지에 채점을 하고 각 선수를 부르는 기록원(그리고 그 다음에 올 선수)
- 4)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 5)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6) 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 (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인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무도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 (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참고 (iii): 풍향 및 풍속(힘)을 표시하기 위해 풍향계를 설치할 공간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B. 수평 도약

코멘트: 해당 규칙들은 멀리뛰기 및 세단뛰기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T11-12 등급 선수들, 셋업 및 도약은 제외된다. 추가적으로, 풍속계의 장소(위치) 및 타이밍(지속시간 및 장비의 시작)은 멀리뛰기 및 세단뛰기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규칙 27: 총칙

(규칙 184)

도움닫기

1. 도움닫기의 길이는 최소 40m이어야 하며, 발구름선에서 도움닫기 끝까지 측정한다. 너비는 $1.22\text{m} \pm 0.01\text{m}$ 이며 너비 50mm의 흰색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트랙의 도움닫기의 너비는 최대 1.25m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움닫기가 완전히 재포장될 경우, 레인의 너비는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면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세계 육상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도움닫기의 최대 경사 한도는 1:100(1%), 도움닫기 방향으로 후방 40m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1:1000(0.1%)이다.

구름판 및 도약장소

참고: 아래 규칙 27.3~27.5는 2020년 2월 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협의상의 목적에 의해, 2020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회 규칙 27.3~27.5는 부록 3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3. 발구름은 도움닫기 및 착지 장소의 표면과 같은 높이로 매설된 구름판에서 실시한다. 착지 장소 쪽에 더 가까운 구름판의 가장자리선을 발구름선이라 한다. 발구름선 바로 앞에 심판원이 판정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점토판을 설치할 수 있다.

참고: 도움닫기 및/또는 구름판을 건설(construction) 하는 과정에서 점토판 위치가 제공되었으나 해당 판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 우묵히 들어간 부분은 구름판과 같은 높이의 블랭킹 판(blanking board)로 채워져야 한다.

4. 구조: 구름판은 선수 신발의 스파이크가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히는 목재 또는 기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하며, 길이 $1.22\text{m} \pm 0.01\text{m}$, 너비 $20\text{cm} (\pm 2\text{mm})$ 및 깊이(deep)는 최대 10cm 여야 한다. 구름판은 흰색으로 칠해야 한다. 발구름선이 확연히 눈에 띄며 구름판과 대조됨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발구름선 넘어에 있는 지면은 흰색 이외의 색깔이어야 한다.
5. 규칙 28의 적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심판원들을 보조하기 위한 영상 혹은 기타 기술의 사용은 모든 레벨의 대회에서 강력하게 권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제공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점토판은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

점토판은 단단한 판을 포함하여야 하며 $10\text{cm} (\pm 2\text{mm})$ 의 너비와 $1.22\text{m} \pm 0.01\text{m}$ 의 길이, 그리고 목재 혹은 기타 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구름판과 대조되는 색깔로 칠해져야 한다. 점토판은 가능한 경우 세번째 대조적인 색상이어야 한다. 판은 착지 장소 근처 구름판 측면 쪽의 도움닫기의 우묵 들어간 부분 혹은 단에 장착되어야 한다. 표면은 높이 $7\text{mm} (\pm 1\text{mm})$ 로 구름판 수평면보다 높게 만들어야 한다. 측면은 점토로 우묵한 부분을 채울 때 발구름선에서 가까운 표면의 점토가 90° 일 때 깎아서 만들어야 한다 (그림 9 참조).

착지 구역의 권장되는 최소 너비는 3.50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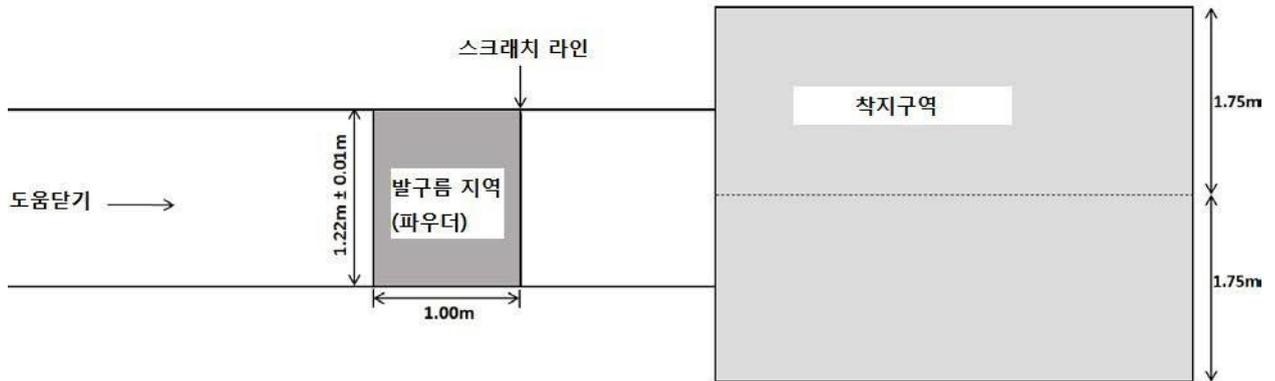


그림 10 – T11 및 T12 선수들의 도약장소

착지 장소

7. 착지 장소의 너비는 최소 2.75m이상, 최대 3m이내여야 한다. 착지 장소는 가능할 경우 도움닫기 중앙의 연장선이 착지 장소의 중앙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i): 도움닫기의 중앙선이 착지 장소 중앙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착지장소에 한 개의 테이프, 또는 가능할 경우 2개의 테이프를 쳐서 도움닫기의 중앙선의 연장선 양 쪽이 동일한 너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그림 9 참조).

참고 (ii): 스포츠 등급 T11-12의 경우, 안전상의 목적으로 도움닫기 중앙선과 착지 장소의 측면의 최소거리가 1.75m가 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그림8 참조). 만일 이 권장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술위원장은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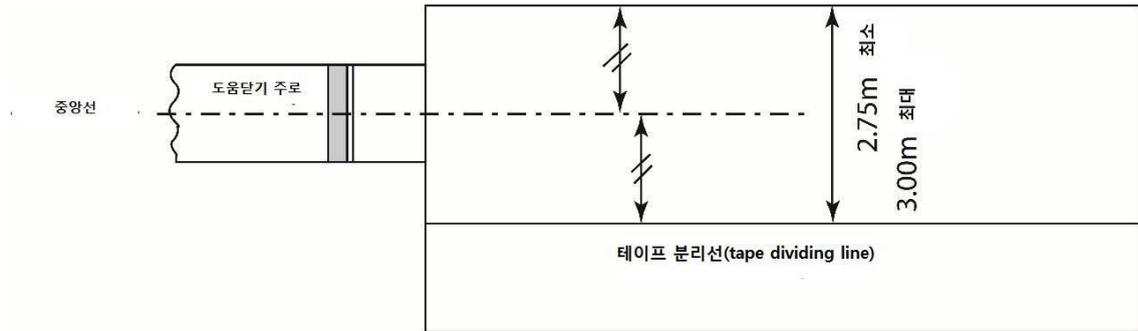


그림 11 - 도움닫기 중앙과 일치하도록 구획한 멀리뛰기/세단뛰기 착지 장소

코멘트: 시각장애 선수가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시설 지어지고 있을 경우, 최소 1개의 늘어난 너비(세계육상에 나온 최대 3.00이 아닌 3.50m)의 구덩이(pit)을 만들어야 한다.

8. 착지 장소는 부드럽고 습기 있는 모래로 채워야 하며, 그 상부의 표면은 구름판과 수평이 되어야 한다.

거리 측정

9. 각 도약의 측정은 각각의 유효 시기 이후에 곧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또는 규칙 50.5에 따라 즉각적인 구두 소청 이후에 이루어진다). 모든 도약은 신체의 일부 또는 도약 시 발구름선에 흔적을 남긴 신체에 부착된 모든 기구에 의해 착지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남은 흔적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측정은 발구름선 혹은 그의 연장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10. 스포츠 등급 T11 및 T12 선수들의 경우, 모든 도약은 도약발에 의해 남겨진 표시 혹은 그의 연장선으로부터 수직인 착지 장소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선수가 구름판에서 도약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도약을 한 경우, 착지 장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도약장소 가장자리를 측정한다.
11. 모든 수평도약 경기의 경우, 거리는 가까운 0.01m 단위로 기록하며, 완전한 센티미터로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끝자리 수를 잘라서 0.01m에 가깝게 한다.

코멘트: 불규칙성이 가해지지 않은 한, 각 시기는 기타 다른 시기 측정이 카운트백 결정 혹은 선수의 다음 라운드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를

포함하여 도달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한다. 규칙 50.5가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불규칙성이 가해진 시기의 경우 측정되어서는 안된다. 심판원들은 대체 관행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들의 재량을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보통 특별한 사례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비디오 측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모든 유효한 시기에서 마커(일반적으로 금속)를 선수가 착지장소에 남긴 각인에서 가장 가까운 도약선으로부터 수직적인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커는 기울어진 금속 테이프의 끝에 있는 루프를 통과하여 "0"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테이프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평으로 당겨야 한다.

T11 및 T12 등급의 점프 거리 측정

초크(백약) 파우더는 1.00m x 1.22m ± 0.01m 구름판의 파우더로 사용될 수 있다.

점프 측정은 구역 내에 있을 경우 도약발에 의해 남겨진 가장 가까운 각인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도약이 도약 장소 이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측정은 가장 멀리 있는 도약장소 가장자리로부터 착지장소까지 측정한다(그림12 참조).

멀리뛰기 T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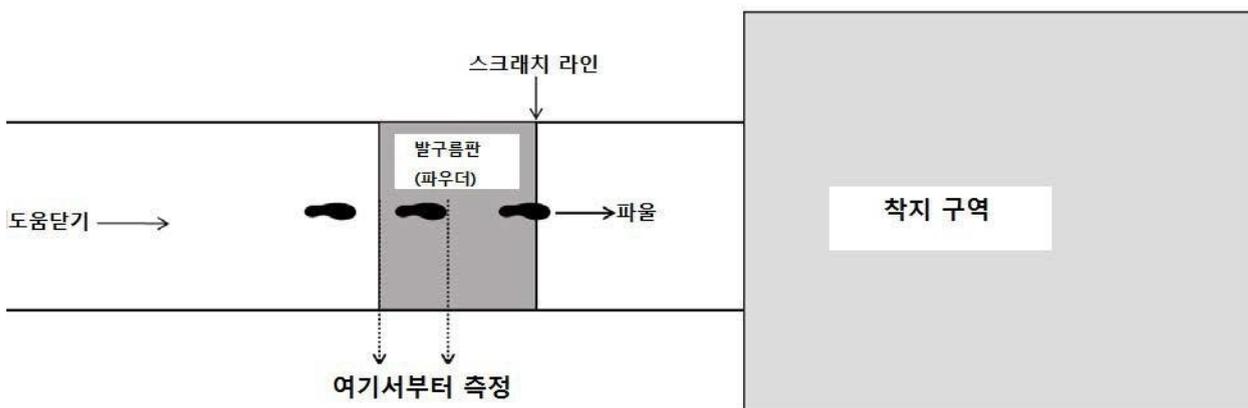


그림 12 – T11, T12 선수들의 수평 도약 경기 거리 측정

풍속 측정

12. 풍속계는 규칙 18.11 및 18.12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하여야 한다. 규칙 18.14, 18.15 및 18.1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
13. 관련 트랙 경기 심판장은 풍속측정계가 구름판에서 20m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높이는 1.22m로 하며 도움닫기에서 2m 이상 떨어져서는 안된다. 풍속은 선수가 발구름선으로부터 멀리뛰기의 경우 40m, 세단뛰기의 경우 35m 전방의 도움닫기 옆에 설치된 마크를 통과한 순간으로부터 5초간 측정한다. 선수가 만일 40m 혹은 35m 보다 더 적게 달렸을 경우, 풍속은 그가 달리기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측정된다.

인공기관 장치(들)

14. 스포츠 등급 T61-64에서 수직 도약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경우, 인공기관(들)의 사용은 선택적이다. 관련 임원은 규칙 6.12(b)가 관찰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 a) 만약 도움닫기 도중 인공기관 장치(들)이 떨어진 경우 선수는 인공기관 장치(들)없이 경기를 다시 이어갈 수 없다. 선수는 인공기관 장치들을 수리/조정하여 시기를 위해 주어진 시간 내에 시기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 b) 도약 과정에서 선수의 인공기관 장치가 떨어지고 인공기관 장치가 떨어진 그 마크가 착지 장소의 발구름판에 가장 가까운 쪽일 경우 그 마크로부터 그 시기를 측정한다.
 - c) 만일 그 인공기관 장치가 착지장소의 가장 가까운 쪽 뒤에 떨어졌지만 착지장소 밖에 떨어질 경우 이는 파울로 기록되며 실패로 인정된다.

규칙 28: 멀리뛰기

(규칙 185)

대회

1.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실패로 간주된다:

다음 규칙 28.1(a)는 2021년 10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 a) 선수가 발구름을 할 때 도약하지 않고 달려 나가거나 도약 동작 중에 신체 일부분이 발구름선 앞 지면에 닿은 경우;

아래의 규칙 28.1(a)는 2021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 a) 선수가 발구름을 할 때(도약판 혹은 지면과 접촉을 그만두기 직전) 도약하지 않고 뛰어가거나 도약 중, 발구름선의 도약선을 발/신발 혹은 인공기관을 통해 깨트렸을(break) 경우 ;
- b) 발구름이 발구름선 연장선을 넘거나 뒤쪽에서 구름판의 어느 한 쪽 측면을 완전히 벗어날 경우;
- c) 도움닫기 중이거나 도약동작 중에 공중회전(somersaulting)과 같은 동작을 할 경우
- d) 도약 이후, 하지만 착지장소에 첫 접촉 전에 선수가 도움닫기를 밟았을 경우
- e) 착지 과정에서 구름판을 건드리거나, 모래장에 표시된 발구름선에 가장 가까운 착지 흔적보다 발구름선에 더 가까운 모래장 바깥 지면에 닿은 경우
- f) 선수가 규칙 28.2에 명시된 방식을 제외한 모든 방식을 통해 착지장소를 나온 경우.

2. 착지 장소를 나올 때, 선수의 발이 착지 장소 가장자리 경계나 바깥 지면에 최초로 접촉하는 지점은 발구름선으로부터 모래에 표시된 착지 표시(착지 지점의 완전히 안쪽으로 균형을 잃으며 쓰러져서 생긴 표시 또는 착지 시 처음 생긴 표시보다 발구름선 쪽으로 뒤로 가면서 생긴 표시) 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어야 한다

참고: 이러한 최초 접촉은 착지장소를 나오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실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a) 선수가 어느 지점에서라도 도움닫기를 마킹하는 흰색 선 바깥으로 달린 경우
- b) 규칙 28.1(b)에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 구름판에 도착하기 전에 발구름(도약)을 한 경우
- c) 규칙 28.1(b) 아래 선수의 신발/발 일부분이 발구름판 끝(또는 11,12등급은 도약구역) 또는 발구름선 이전의 지면 바깥에 닿은 경우
- d) 규칙 28.1(d) 혹은 (e)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착지 시 선수가 본인의 신체 모든 부위 또는 착지 시

몸에 부착된 모든 것으로 구름판 또는 착지구역의 바깥지면을 건드리는 경우

- e) 규칙 28.2에 명시된 방식으로 착지장소를 떠난 이후 다시 착지장소 가운데로 걸어서 되돌아온 경우;

도약선 및 스크래치 라인

4. 도약선과 착지장소의 먼 쪽 끝 간의 거리는 최소 10m이어야 한다.
5. 도약선은 착지장소의 가까운 끝에서부터 1~3m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6. 스포츠 등급 T11 및 T12 선수의 경우, 스크래치 라인과 착지장소의 먼 쪽 끝 사이의 거리는 최소 10m이어야 한다. 스크래치 라인은 착지장소의 가까운 끝에서부터 1~3m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코멘트: 임원 구성

높이뛰기 혹은 세단뛰기 경기의 경우, 해당 임원을 아래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다.
- 2) 도약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및 시기를 측정하는 심판원. 그는 두개의 깃발이 제공되어야 한다 - 시기가 유효한지 알리는 흰색 깃발 및 실패를 알리는 빨간 깃발. 도약이 측정되었을 때, 심판원은 착지장소가 수평이거나, 점토판이 교체되었을 때 구름판 앞에 위치하며, 빨간색 깃발을 들고 있기를 조언한다. 고깔이 대신 사용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특정 대회에서는 이 역할을 수석 심판원이 대신한다).
- 3) 착지 지점에서 착지장소에서부터 발구름선까지의 가장 가까운 브레이크를 결정하는 심판원. 스파이크/프리즘 설치 후, 테이프가 사용될 경우 0에 테이프를 고정시키는 것을 결정한다. 비디오 측정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장에 심판원이 필요하지는 않다. 만일 현장에서 측정에 시신경계(optic system/육안으로 확인)이 사용될 경우, 두 명의 심판이 착지 포인트에 필요하며, 한 명은 마커를 모래에 심고, 다른 한 명은 시신경계 장비에

결과를 읽는다.

- 4) 심판원 - 결과 기록지에 채점을 하고 각 선수를 부르는 기록원(그리고 그 다음에 올 선수)
- 5)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 6) 구름판으로부터 2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풍속계를 담당하는 심판원.
- 7) 각 시기 이후 착지장소의 수평을 맞추는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심판원.
- 8) 점토판 교체를 담당하는 심판원 혹은 보조자.
- 9)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 10) 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 (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인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모두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 (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참고 (iii): 풍향 및 풍속을 표기하기 위해 풍향계를 설치할 공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규칙 29: 세단뛰기

(규칙 186)

다음의 추가사항들과 더불어 멀리뛰기의 규칙들은 세단뛰기에도 적용된다:

경기

1. 세단뛰기는 홑, 스텝, 그리고 점프 순서로 되어있다.
2. 홑은 선수가 도약을 한 발과 같은 발로 최초 착지를 해야 하고, 스텝은 반대 발로 착지하고, 이어서 점프를 한다.

선수가 도약 중에 “발구름하지 않는 다리(sleeping leg)”가 지면에 닿아도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참고: 규칙 28.1(d)는 홑과 스텝 단계의 정상적인 착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발구름선 및 스크래치 라인

3. 남자의 경우, 발구름선과 착지장소의 먼쪽 끝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21m가 되어야 한다.
4. WPA 공인 대회인 경우, 남자와 여자의 발구름판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스포츠 등급 T45-47 선수들에게는 발구름선이 여자는 9m 남자는 11m로 하도록 권장된다.

스포츠 등급 T11-13 선수들에게는 스크래치 라인의 거리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장된다:

- a) 스포츠 등급 T11: 최소 9m
- b) 스포츠 등급 T12-13: 최소 11m.

참고: 스크래치 라인에서 구덩이(pit) 까지의 정확한 거리는 매 대회마다 기술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안전상의 이유로, 기술위원장에 의해 승인되었을 경우 다른 스크래치 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

5. 발구름판과 착지장소 사이에는 스텝과 점프 단계에서 안정되고 균일한 발구름을 할 수 있도록 너비 $1.22\text{m} \pm 0.01\text{m}$ 의 발구름 장소가 있어야 한다.

참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모든 트랙에서는 발구름 장소의 최대너비가 1.25m이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해당 트랙도 완전하게 재포설할 시에는(전체를 다시 깔 때에는) 레인의 폭은 본 규칙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코멘트: 세단뛰기에서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패로 인정되지 않는다(한가지 이유에 단독적으로):

a) 흰색 선을 건드리거나 발구름선 및 착지장소 사이의 바깥 지면을 건드린 경우

혹은

b) 선수가 자신의 잘못 없이 구덩이(pit)에 착지하는 경우(예; 심판원들이 발구름판의 위치를 잘못 안내한 경우) – 이러한 경우 심판원은 선수에게 재 시기를 제공할 것이다.

점프가 착지장소 내에 착지하지 못할 경우, 실패로 간주된다.

C. 입식 선수들의 투척 경기

코멘트: 대회 장소에서의 연습 시기

필드 경기의 선수들은 대회 시작 전 대회 장소에서 워업할 권리가 있다.

입식 투척 선수들의 경우, 기존에는 2번의 연습 던지기가 주어졌으나, 현재는 그러한 세부사항은 없으며 선수들은 워업 시간이 허용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연습 던지기를 할 수 있다.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3.1.2(a)및(b)참조)의 경우, 표준 연습은 여전히 두 번의 연습 던지기이며 순서는 추첨을 통해 뽑는다. 확정된 선수의 경우 입식 투척 요건(35.5)과의 차이를 확인하면 좋다.

규칙 30: 일반 총칙

(규칙 187)

용기구

1. 사용되는 장비는(장애인육상에 독점적인 장비가 아닌 이상) 현행 세계육상 세부사항에 따라야 한다. 현재 유효한 세계육상 상품 공인증을 보유한 장비만이 WPA 인정대회에서 사용될 수 있다(파트 B - 3.1.2 참조).

장애인육상 용기구 무게 리스트는 부록 1에 나와 있다.

참고: 파트 B-3.1.2아래 WPA 공인 대회에서 선수들 자신의 스포츠 등급에 관련된 용기구 무게를 사용하여야 한다(부록1에 나와있는 대로)

2. 부록 1의 용기구 무게에 부합하지만 세계육상 세부사항에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기술대표가 용기구가 적합한지 승인을 하여야 한다.

참고: 이는 세계육상 규칙 187 혹은 관련 부록에 문서화되지 않은 장애인육상에 독점적인 장비를 의미한다.

3. 아래에 제공된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장비는 LOC에서 제공한다. 기술대표는 각 대회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선수들이 개인장비, 공급자가 제공하는 장비, 세계육상 인증을 받은 장비, 세계육상 인증 용기구 목록에는 없지만 대회에서 사용하기 전에 LOC에 의해 측정되어 인증 및 승인표시를

받은 후 기술대표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LOC가 제공하는 장비 목록에 이미 같은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술 임원이 결정하지 않는 한, 선수가 참가하는 모든 투척경기에서 2개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제출할 수 없다.

참고: “세계육상 공인” 용기구는 이전에 공인증이 있었지만 현재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구형 장비도 포함한다

코멘트: LOC는 과거에 비해 더 적은 범위의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이는 대부분 구매 비용 때문이다). 이는 기술담당관 및 그의 보조자들이 경기를 위해 준비된 모든 개인 장비를 면밀히 점검하여 장비가 규칙을 준수하며 세계육상 공인 제품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육상 공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공인증을 보유하고 있던 장비는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대회를 위해 허용될 수 있다

4. 대회 중에는 장비에 어떠한 변화/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조력(보조)

5. 다음의 항목들은 조력(보조)로 간주됨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a)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함께 테이핑 하는 행위. 손과 손가락에 테이핑을 사용할 경우 손가락 두개 혹은 그 이상이 함께 테이핑 되지 않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테이핑은 수석 심판원에게 경기 시작 전에 보여주어야 한다;
- b) 몸에 부착되어 있는 중량을 포함하여 시기를 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조력을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의 사용;
- c) 장갑의 사용;
- d) 선수가 서클 안쪽이나 신발에 어떤 물질을 뿌리거나 퍼트리거나 행위 및 서클의 표면을 거칠게 하는 행위..

참고: 심판원들이 인지하고 있을 경우, 그들은 본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선수들에게 상황을 고치라고 말할 수 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시기(들)는 실패로 인정된다. 시기가 불이행이 발견되기 전에 완료되었을 경우, 심판원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심각하다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규칙 2.13.5 및 8.2 또한 적용 가능하다.

6. 아래의 사항들은 조력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허용이 된다:

- a) 선수가 더 잘 잡기 위해 본인의 손에만 적합한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투포환 선수는 이러한 물질을 본인의 목에 사용할 수도 있다.
- b) 투포환 및 원반던지기 종목에서 선수가 경기 기구에 초크(분필) 또는 유사한 물질을 바르는 행위. 모든 물질은 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젖은 천으로 쉽게 지워져야 하고 어떠한 잔여물도 남겨서는 안된다.

코멘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수들은 손이나 장비에 물질을 도포할 수 있지만 젖은 천을 사용하여 쉽게 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젖은 천을 사용하여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임원들은 장비 랙으로 반환되기 전에 장비에서 해당 물질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것은 포환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창던지기를 하는 사람은 기구에 어떠한 물질도 바를 수 없다. 하지만, 창던지기 선수가 규칙 30.6(a)를 준수하면서 손에 물질을 바르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c) 규칙 30.5(a) 항을 위반하지 않는 손과 손가락의 테이핑 사용.

투척 서클

7. 서클의 테두리는 철, 강철 또는 기타 적절한 재료로 되어 바깥 지면과 같은 높이로 되어야 한다. 두께는 최소 6mm 이상이어야 한다. 테두리의 내부와 상단은 흰색이어야 한다. 서클을 둘러싼 지면은 콘크리트, 합성수지, 아스팔트, 목재 또는 기타 적합한 재료로 될 수 있다. 서클의 내부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기타 단단하지만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만들어진다. 서클 내부의 표면은 평평해야 하며 서클 테두리 상단 끝보다 2cm±6mm 낮아야 한다. 포환 종목의 경우, 본 상세조건을 준수하는 이동식 서클이 가능하다

8. 서클의 내측 지름은 포환던지기에서는 $2.135\text{m} \pm 0.005\text{m}$, 그리고 원반던지기에서는 $2.50\text{m} \pm 0.005\text{m}$ 이다. 서클 테는 최소 6mm 두께로 흰색이어야 한다.

참고: 규칙 30.8에 요구되는 흰색 선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원형 링(circular ring)은 오히려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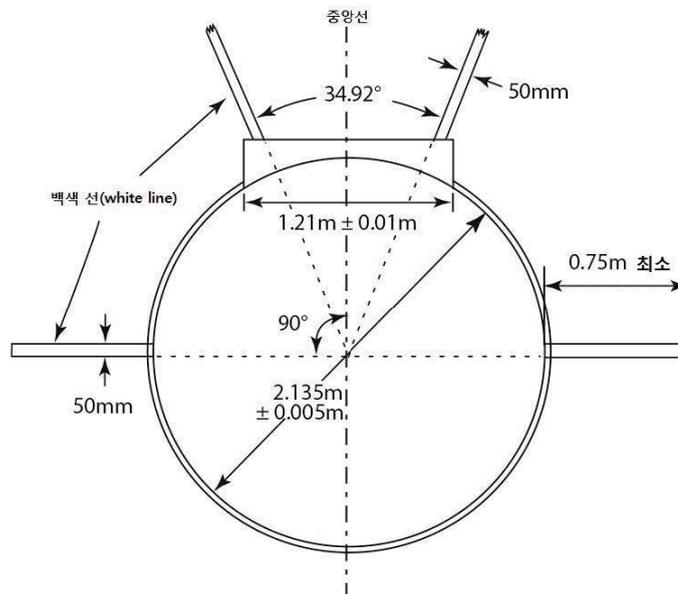


그림 13 – 포환던지기 서클 설계도

양쪽 서클에는 금속 테 끝에서부터 최소 75cm의 연장선을 5cm 너비의 흰색 선으로 긋는다. 이 흰색 선은 페인트로 칠하거나 목재 또는 기타 적합한 재질로 만든다. 이 흰색 선의 뒤쪽 가장자리는 낙하구역의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면서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론적인 연장선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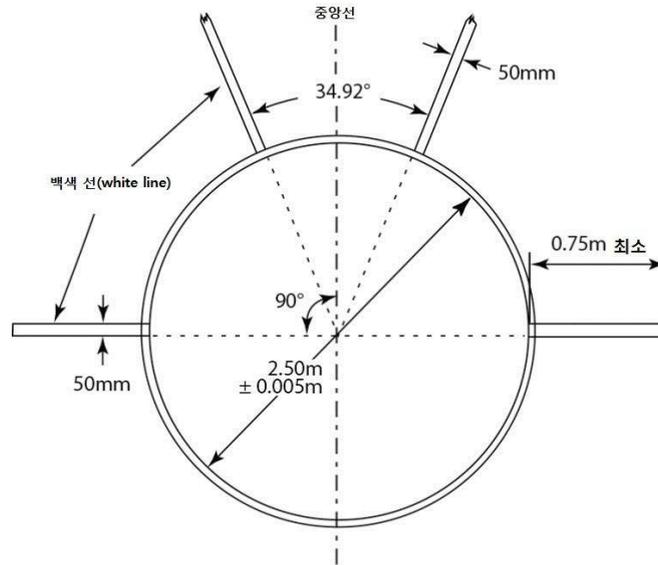


그림 14- 원반던지기 서클 설계도

창던지기 도움닫기(Runway)

9. 최소길이가 33.50m인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3.1.2(a)및(b)참조)를 제외하고, 창던지기 도움닫기의 최소길이는 30m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소길이는 36.5m로 한다. 도움닫기는 두 평행선을 4m 간격으로 너비 5cm의 흰색 선으로 표시한다. 반지름 8m 서클의 원호 뒤쪽에서 던지기를 실시한다. 원호는 너비 최소 70mm로 페인트칠하거나 목재 또는 플라스틱과 같이 부식되지 않는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원호는 흰색이어야 하며,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원호 끝에서 도움닫기 주로를 표시하는 2개의 평행선과 직각이 되도록 2개의 라인을 긋는다. 이 라인은 적어도 길이 0.75m, 너비는 0.7m의 흰색 선으로 긋는다. 도움닫기의 최대 허용 측면경사한도는 1:100(1%), 도움닫기 방향으로 후반 20m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1:1000(0.1%)를 초과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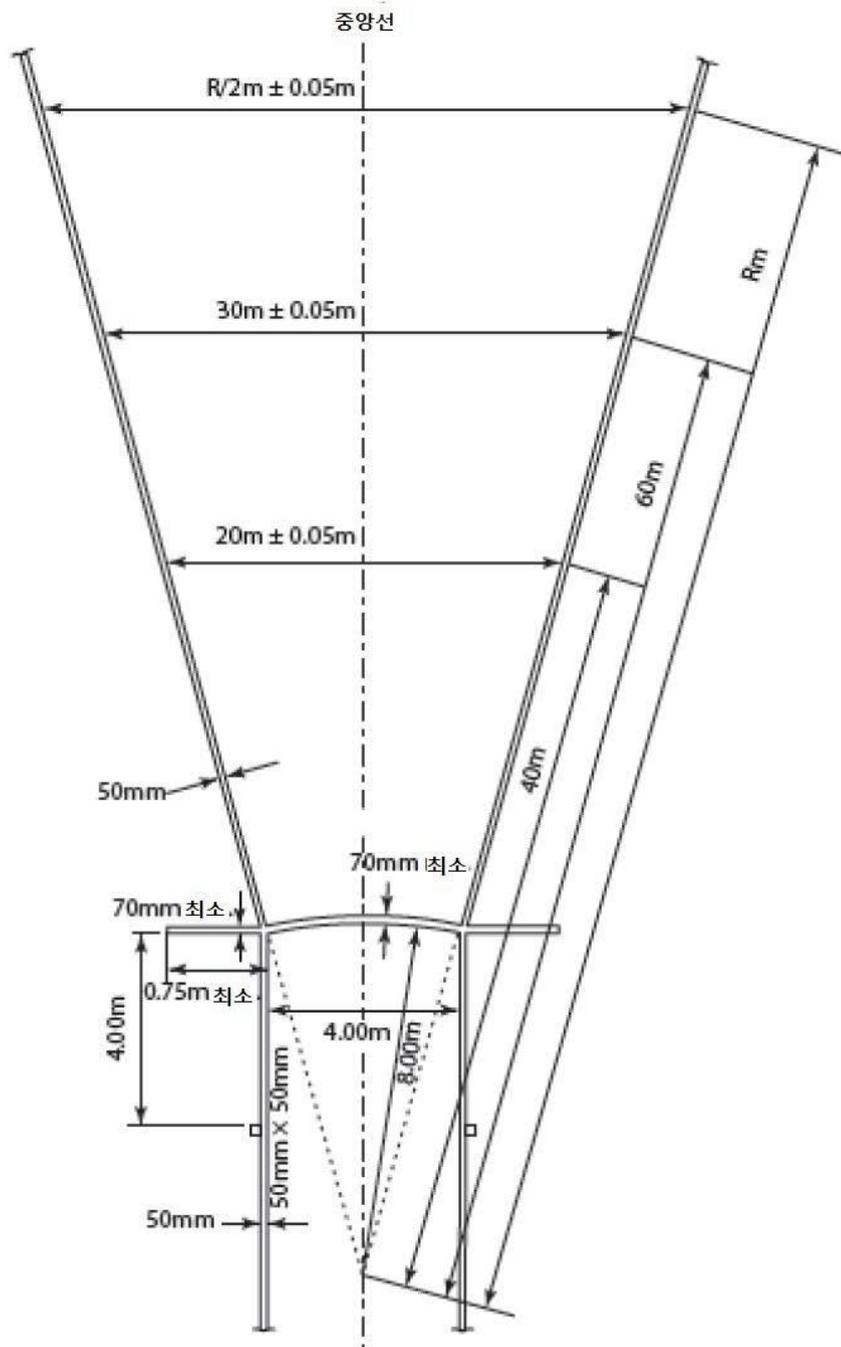


그림 15 - 창던지기 도움닫기 및 낙하구역(축적하지 말것)

낙하 구역

10. 낙하 구역은 투척 장비의 흔적이 남도록 신더(석탄재)나 잔디 또는 기타 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11. 낙하 구역의 최대 허용 경사 한도는 던지는 방향으로 1:1000(0.1%) 이내여야 한다.

12.

- a) 창던지기를 제외하고 낙하 구역은 두 흰색 선은 안쪽 가장자리가 서클의 중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34.92° 의 각도로 5cm 너비의 흰색 선으로 표시한다.

참고: 34.92° 의 낙하구역은 2개의 낙하구역 각도 표시선(the sector line)에 서클 중심으로부터 각 20m 지점 사이의 간격이 12m(20x0.60)가 되도록 그리면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클중심으로부터 매 1m 지점 사이의 간격이 60cm씩 증가하게 된다.

- b) 창던지기에서 낙하구역은 너비 5cm의 2개의 흰색 선으로 각도를 표시하고, 이 흰색 선의 내측 가장자리를 연장하면 원호의 내측 가장자리와 2개의 도움닫기 주로를 표시하는 평행선과 교차하는 2개의 교차점을 통과하여 서클의 중심에서 교차되도록 한다. 낙하구역의 각도는 28.96° 이다.

코멘트: 낙하구역은 심판원에 의해 장비의 최초 추락 지점이 명확히 보일 수 있도록 충분히 부드러운 표면이어야 한다. 착지 표면은 용기구가 뒤로 튕겨져 측정 포인트가 지워질 위험이 발생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시기

13. 포환과 원반던지기는 서클 안에서 던지기를 실시하며 창던지기는 도움닫기에서 실시한다.

서클 안에서 행하는 시기의 경우 선수는 서클 안에서 정지자세로부터 투척동작을 시작하여야 한다. 선수는 서클철대 내측 면에 닿아도 무방하다. 포환던지기에서도 규칙 31.2에 나온 대로 스톱보드 안쪽에 닿는 것이 허용된다.

코멘트: 선수가 서클에 진입하는 방법이나 방향에 제한은 없으며, 포환던지기의 경우 이 과정에서 스톱보드와 접촉하는데 제한이 없다. 관련 요건은 일단 내부에 들어가면 판단하기 전까지 정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정지자세는 시기를 하기 위해 서클에 들어간 선수와 그 전에 양발이 동시에 서클 내부의 지면과 단단하게 접촉하고 림의 상단이나 외부의 지면과 접촉하지 않는 자세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접촉은 심판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시간이다. 선수 신체의 다른 부위나 팔이나 손이 정지해 있을 필요는 없다.

14. 시기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실패로 간주된다:

- a) 포환 또는 창을 31.1 및 33.1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던지는 경우;
- b) 선수가 서클에 들어와 투척동작을 시작한 후 신체의 어느 부분이 서클 철대 상단 또는 서클 밖의 지면에 닿은 경우;
참고: 그러나, 접촉이 이루어졌으나 아무런 추진력을 얻지 않고 이론적으로 서클을 통과하여 서클 런닝 바깥쪽에 그려진 흰색선 뒤로 완전히 넘어간 지점에서의 첫 회전 중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실패로 간주되지 않는다.
- c) 포환던지기에서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스톱보드의 안쪽 면이 아닌 다른 부분에 닿는 경우(상단의 일부로 간주되는 스톱보드의 상단 측면은 제외);

코멘트: 임원들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선수의 신발 끈이 스톱보드의 상단에 닿으면 실패가 아니지만, 신발의 하단이 스톱보드의 상단에 닿으면 실패다.

- d) 창던지기에서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도움닫기나 바깥 지면에 닿은 경우.
참고(i): 기구를 던진 후 (착륙공간으로 향할 때 오른손 던지기 선수의 왼쪽, 왼손 던지기 선수의 오른쪽) 디스크가 케이지의 먼쪽에 부딪히면 실패로 간주된다.
참고(ii): 기구를 놓은 후 원반이 낙하구역선과 가까운 쪽(착륙공간을 향할 때 오른손 잡이의 경우 오른쪽, 왼손잡이의 경우 왼쪽)에 부딪힌 후 낙하구역선을 벗어난 착지공간 안에 착지한 규칙 30.16을 포함하여 다른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다.

코멘트: 서클의 림 상단 내부 가장자리와 스톱보드의 상단 내부 가장자리는 각각 림 상단과 스톱보드 상단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이 명확하다. 이는 선수가 림 또는 스톱보드의 상단 안쪽 가장자리에 접촉할 경우, 실패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 30.14(b)의 추가된 참고는 포환던지기 및 창던지기 시 선수가 사용되는 회전 기술에 적용된다. 첫 번째 회전 중 원의 뒤쪽 절반과 관련하여 림 상단 또는 바깥쪽 지면의 “우연한” 터치 자체가 실패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레버리지 또는 추진을 통해 이득을 얻는 어떠한 기술도 실패가 될 수 있다.

15. 각 투척 종목에 해당되는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시기 중에 선수는 이미 시작된 시기를 중단하고 장비를 서클이나 도움닫기의 안이나 바깥에 내려놓고 서클 혹은 도움닫기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참고: 본 항에서 허용한 모든 동작은 규칙 24.17에 명시된 시기 허용 최대시간에 포함된다.

코멘트: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가 서클이나 도움닫기를 떠나는 방법이나 어느 방향으로 떠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관련 요구사항은 다른 규칙이 이미 위반되었다는 것이다.

16. 포환, 원반, 또는 창 축의 끝이 처음 닿는 곳이 낙하구역선 또는 낙하구역선 바깥 지면 또는 다른 물체(규칙 30.14에 명시된 그물장이 아닌)일 때는 실패로 간주된다.

17. 장비가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서클 또는 도움닫기를 벗어나거나 또는 아래의 경우, 이는 실패로 처리되어야 한다:

a) 서클에서 투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클을 벗어날 때 서클의 테두리 상단 또는 서클의 바깥 지면에 닿는 해당 선수의 첫 번째 접촉이 이론상으로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여 양쪽 바깥으로 그어진 흰색 선보다 완전히 뒤쪽이지 않은 경우.

참고: 서클의 테두리 상단이나 서클 바깥의 지면에 닿은 첫 번째 접촉은 서클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b) 창던지기의 경우, 선수가 도움닫기를 벗어날 때 도움닫기를 표시하는 평행선이나 도움닫기 바깥 지면에 닿는 선수의 최초 접촉이 원호의 흰색 선 뒤나 원호의 끝단에서 평행선과 직각으로 그어진 선보다 완전히 뒤쪽이지 않은 경우, 선수는 일단 창이 지면에 닿았으면, 창을 던지는 원호의 양쪽 끝으로부터 4m 후방에 주로를 가로질러 그어진 선(실제로 그어져 있을 수도 있고, 주로 옆의 표지들에 의해 표시되는 가상의 선일 수도 있음)에 닿거나 선 뒤로 가는 순간, 그 즉시 주로를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어떤 선수가 그 선 뒤에 있거나 혹은 창이 지면에 닿는 순간에 주로 안에 있다면, 그 선수도 역시 주로를 올바르게 떠난 것으로 간주된다.

코멘트: 규칙 30.17(b)의 두번째, 세번째 문장은 판단 속도를 높이고 선수에게 실패를 주는 추가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4m 표시(mark)"의 목적은 심판이 흰색 깃발을 들었으며 선수가 이 지점 뒤로 물러날 때(도움닫기를 맞는 방법으로 떠났을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시기 측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선수가 던질 때 "4m 표시(mark)"를 지나가지 않으면 장비가 착지한 이후 깃발을 들 수 있다

18. 투척 후 장비는 서클이나 도움닫기를 다시 가져올 때에는 던지지 않고 들어서 가져온다.

계측(측정)

19. 모든 투척종목에서 측정거리가 1cm 미만일 경우에는 측정거리의 아래에 가장 가까운 0.01m로 끝을 잘라서 가장 가까운 0.01m 단위로 기록한다.

20. 각 투척의 계측은 유효한 시기 후 즉시 측정해야 한다(또는 규칙 50.5에 따라 즉시 구두상의 소청이 이루어진 이후):

- a) 포환 또는 원반이 낙하한 가장 가까운 흔적에서 원호를 만든 서클 중심에 이르는 선을 따라 서클 안쪽까지 계측한다;
- b) 창던지기의 계측은 창의 금속제 축 끝부분이 지면에 최초로 낙하한 흔적에서 서클의 중심점을 잇는 선을 따라 원호의 안쪽 가장자리까지 계측한다.

코멘트: 불규칙성이 가해지지 않은 한, 각 시기는 다른 시기 계측하다 카운트백 또는 선수의 다음 라운드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유를 포함하여 닿은 거리를 계측하여야 한다. 규칙 50.5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관행에서 불규칙성이 발생한 시기는 측정해서는 안된다. 심판은 대체 관행을 적용할 때 신중하게 재량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통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비디오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유효한 시기에 대해서는 마커(일반적으로 금속)는 도약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장소 내에 이 장비에 의해 남겨진 각인의 수직적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커는 기울어진 금속 테이프의 끝에 있는 루프를 통과하여 "0"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테이프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수평으로 당겨야 한다.

규칙 31: 포환던지기

(규칙 188)

대회

1. 포환은 어깨에서부터 한 손으로만 던져야 한다. 선수가 서클 안에서 던지기를 시작하기 위해 자세를 취했을 때 포환이 목 또는 턱에 닿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고, 투척 동작 중에는 해당 위치 밑으로 손이 떨어지면 안된다. 포환을 어깨선의 후방으로 가져가서도 안된다.

참고 (i): 카트휠링 기술(Cartwheeling techniques)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ii): 스포츠 등급 F33-34, F52-57의 경우, 시작부터 끝까지 포환의 움직임은 직선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움직임이어야 한다.

참고 (iii): 스포츠 등급 F32의 경우, 퍼팅 동작 중에 샷이 턱이나 목에서 떨어지는 횡방향이동이 허용되고, 이 규칙의 다른 요소가 위반되지 않는 한 샷을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퍼팅 동작에 넣은 요건은 면제된다.

코멘트: 중요한 것은 샷이 "슛을 하다(put)"이 아니라 "던져진다(throw)"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깨라인 뒤에서 샷을 하는 것은 누가 슛(put)하는 것보다 누가 던질 때(throw) 어떻게 보이는지 다. 손은 턱 아래로 떨어지면 안되고, 샷은 어깨선 뒤로 넘어갈 수 없으며, 샷은 던지면(throw) 안된다.

F32 등급의 경우, 횡이동이 허용되며 샷을 직선적이고 연속적인 퍼팅 동작에 넣어야 하는 요구 사항이 면제된다. 퍼팅 동작에 관한 다른 요소들은 동일하게 남을 수 있지만, 손이 턱 아래로 떨어질 수 없고 어깨선 뒤로 쓸 수도 없다

스톱보드

2. 스톱보드는 흰색으로 하며 목재 또는 기타 적합한 재질로 된 안쪽 가장자리와 서클 테의 안쪽 가장자리가 합치되는 원호 모양이며 서클의 표면과 수직이다. 스톱보드의 중심과 낙하구역의 중심선이 일치되도록 놓여야 하고(그림 8 참조), 지면이나 서클 주변의 콘크리트에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참조: 1983/84 IAAF 스톱보드 규격은 여전히 유효(허용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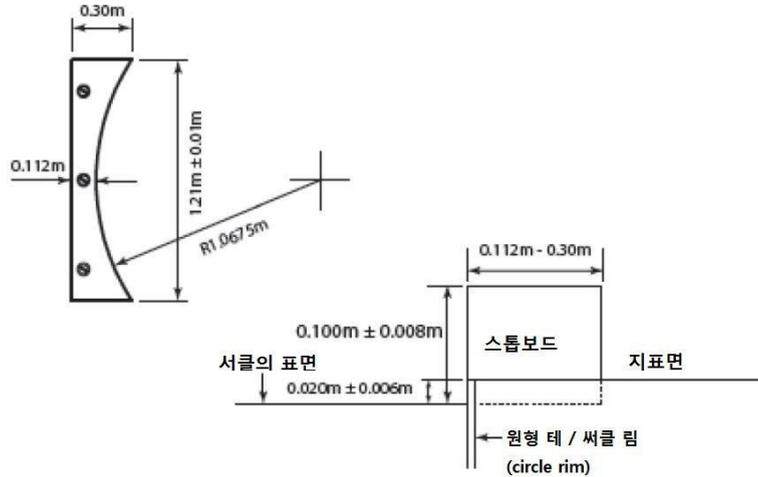


그림 16- 포환던지기 스톱보드(상단 및 측면 뷰)

계측

- 스톱보드의 너비는 0.112m~0.30m이고, 길이는 서클과 동일한 반지름의 호(arc)의 현(chord)의 길이는 1.21m ±0.01m이며, 높이는 서클 안의 수평면에 비교하여 0.10m±0.008m 높다.

포환(Shot)

- 포환은 견고한 철구, 황동구, 황동보다 부드럽지 않은 금속구 또는 속에 납이나 기타재질을 채운 상기와 같은 금속 외곽으로 만들어야 한다. 포환은 구형이고 표면은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매끈하여야 한다.

제조사를 위한 정보: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균 표면높이는 1.6µm 미만이어야 한다. 즉 미가공도 번호가 N7 또는 그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포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야 한다:

포환						
경기 허가 및 기록 공인을 위한 최소 중량	2.000kg	3.000kg	4.000kg	5.000kg	6.000kg	7.260kg
제조사에 대한 정보						
경기장비 공급범위	2.005kg	3.005kg	4.005kg	5.005kg	6.005kg	7.265kg
	2.025kg	3.025kg	4.025kg	5.025kg	6.025kg	7.285kg
최소 직경	80mm	85mm	95mm	100mm	105mm	110mm
최대 직경	100mm	110mm	110mm	120mm	125mm	130mm

코멘트: 임원 구성

포환던지기 경기의 경우, 해당 임원을 아래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다.
- 2) 포환이 제대로 던져졌는지와 시기를 측정하는 두 명의 심판원. 한 명은 2개의 깃발을 제공받아야 한다- 시기의 유효를 나타내는 흰색 깃발과 실패를 나타내는 빨강색 깃발. 포환이 측정된 후, 심판원은 장비가 반납되고 착지장소가 정리되는 동안 빨강색 깃발을 소지한 채 서클 근처에 서있도록 조언한다. 고깔이 서클안에 대신 위치할 수 있다(어떠한 대회에서는 이 위치는 경기의 수석 심판원이 한다). EDM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두번째 심판원은 측정 테이프를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당겨서 고정하여야 한다.
- 3) 투척 이후 즉시 측정될 시기의 포인트를 나타내는 마커를 위치시키는 심판원
- 4) 마커가 놓인 곳에 스파이크/프리즘을 위치시키며 테이프가 제로 표시에 있는지 확인하는 심판원
- 5) 장비를 되찾아오며 장비를 장비 스탠드에 반납 또는 반납 활송 장치에 위치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심판원

- 6) 심판원 – 결과 기록지에 채점을 하고 각 선수를 부르는 기록원(그리고 그 다음에 올 선수)
- 7)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 8)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 9) 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 10) 장비 스탠드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 (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인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모두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 (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규칙 32: 원반던지기

(규칙 189)

원반

1. 원반의 본체는 속이 차거나 비어도 좋고, 목재 또는 기타 적합한 재질로 만들고 테는 금속제로 하되, 가장자리는 둥글어야 한다. 테 가장자리의 횡단면은 반경 약 6mm의 정확한 원호가 되어야 한다. 원반의 상하 양쪽 중심부에는 평평하고 둥근 금속판을 붙여야 한다.

대안으로 금속판이 없는 원반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나 원반 중심부분이 평면이고 원반의 치수나 전체 무게가 규격에 맞아야 한다.

원반의 양면은 동일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하거나(요철) 돌기 또는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 테의 커브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원반의 중심을 기준으로 25mm~28.5mm 지점에서 직선으로 점차 가늘어진다.

원반의 단면은 다음과 같이 고안되어야 한다. 원반 테의 커브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원반의 두께는 최대두께 D까지 고르게 증가한다. 원반의 중심축 Y부터 25mm~28.5mm 떨어진 부분에서 최대 두께가 결정된다. 이 부분부터 Y축까지는 원반의 두께가 일정하다. 원반의 상면과 하면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고, 또한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원반은 테의 표면을 포함해서 거칠면 안되고 끝마무리가 매끈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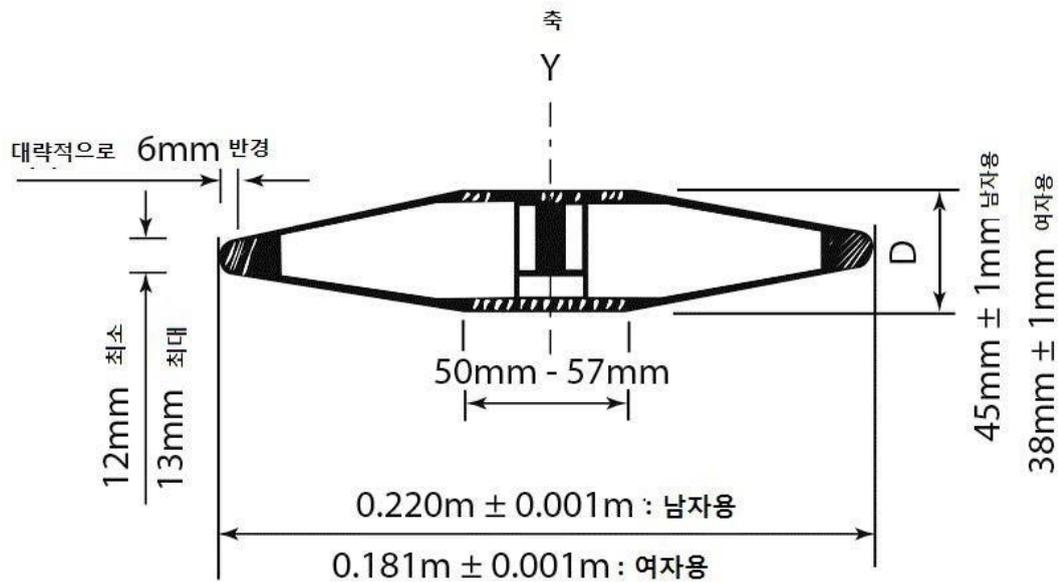


그림 17 - 원반

2. 원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맞아야 한다:

원반					
경기 허가 및 기록 공인을 위한 최소 중량	0.750kg	1.000kg	1.500kg	1.750kg	2.000kg
제조사에 대한 정보					
경기장비 공급범위	0.755kg	1.005kg	1.505kg	1.755kg	2.005kg
	0.775kg	1.025kg	1.525kg	1.775kg	2.025kg
금속테 외측 직경					
최소.	166mm	180mm	200mm	210mm	219mm
최대.	172mm	182mm	202mm	212mm	221mm
금속판 또는 평면 중심부분의 직경					
최소.	50mm	50mm	50mm	50mm	50mm
최대.	57mm	57mm	57mm	57mm	57mm
금속판 또는 평면 중심부분의 두께					
최소.	33mm	37mm	38mm	41mm	44mm
최대.	38mm	39mm	40mm	43mm	46mm
금속테의 두께(끝에서 6mm 지점)					
최소.	10mm	12mm	12mm	12mm	12mm
최대.	13mm	13mm	13mm	13mm	13mm

코멘트: 임원 구성

원반던지기 경기의 경우, 해당 임원을 아래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다.
- 2) 원반이 제대로 던져졌는지 및 시기를 측정하는 두 명의 심판원. 한 명은 2개의 깃발을 제공받아야 한다 - 시기의 유효를 나타내는 흰색 깃발과 실패를 나타내는 빨강색 깃발.

원반이 측정된 후, 심판원은 장비가 반납되고 착지장소가 정리되는 동안 빨강색 깃발을 소지한 채 서클 근처에서 서있도록 조언한다. 고깔이 서클 안에 대신 위치할 수 있다(어떠한 대회에서는 이 위치는 경기의 수석 심판원이 한다). DEM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두번째 심판원은 측정 테이프를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당겨서 고정하여야 한다.

- 3) 투척 이후 즉시 측정될 시기의 포인트를 나타내는 마커를 위치하는 심판원. 용기구가 섹터 바깥으로 착지할 경우 해당 심판원 혹은 스파이크/프리즘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라인에서 더 가까운)이 팔을 펼치면서 가리켜야 한다. 유효한 시기를 위해서는 가리키는 것이 없어야 한다.
- 4) 마커가 놓여진 곳에 스파이크/프리즘을 위치시키며 테이프가 제로 표시에 있는지 확인하는 심판원
- 5) 장비를 되찾아오며 장비를 장비 스탠드에 반납 또는 반납 장치에 위치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심판원 혹은 보조자. 테이프가 측정에 사용되었을 경우, 이 중 한명의 심판원 혹은 보조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테이프가 팽팽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6) 심판원-결과 기록지에 채점을 하고 각 선수를 부르는 기록원(그리고 그 다음에 올 선수).
- 7)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 8)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 9) 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 10) 장비스탠드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 (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의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모두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 (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참고 (iii): 풍향 및 풍속을 표시하기 위해 풍향계를 설치할 공간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원반 그물장

(규칙 190)

코멘트: 장애가 있는 선수를 위한 다양한 울타리를 친 장소가 그물장이 있지만, 임원, 관중 및 선수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반 그물장은 곤봉 던지기에서도 사용된다.

3. 모든 원반던지기는 관중과 임원 및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울타리나 그물장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본 규칙에서 상술한 그물장은 경기장 밖에 관중이 있을 때 행해지거나 타 종목과 동시에 경기장 내에서 행해질 때 사용할 목적으로 쓰인다. 본 규칙에서 제시한 규격이 적용되지 못할 경우, 특히 연습장에서는 훨씬 간단한 구조로도 충분하다. 자국 협회 또는 WPA 사무국에 요청을 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4. 그물장은 초속 25m로 움직이는 2kg의 원반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물장은 원반이 그물장에 스치거나 튕겨서 선수에게 되돌아오거나, 그물장 너머로 날아갈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모든 요건에 따르는 한 어떠한 형태의 설계나 구조라도 무방하다.
5. 그물장은 그림 1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평면도로 보면 U자형을 이루고 있다. 구의 너비는 6m가 되어야 하고, 투척서클의 중심부에서 전방으로 7m에 걸쳐 설치되어야 한다. 6m 너비 구의 끝은 그물망의 안쪽 가장자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장 낮은 부분의 그물틀 또는 매달린 그물망의 높이는 최소한 4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각 사이드의 그물장 앞3m으로 최소 6m가 되어야 한다[2020년 1월 1일부터 유효].

원반이 그물장의 이음부분이나 그물, 그물틀, 또는 매달린 그물망의 밑으로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장의 설계와 구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

참고 (i): 그물망이 서클의 중심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서클 뒤쪽의 그물틀/매달린 그물망의 설치방법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 (ii): 종래의 그물장의 설계와 비교해 보호각도가 동일하거나 더 높고 위험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게 개선되어 만든 설계는 세계육상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참고 (iii): 원반경기가 있는 인접 트랙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그물망 옆, 특히 트랙 쪽 옆은 이동식 패널을 통해 연장시키거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코멘트: 그물망은 문구의 너비가 각 그물망의 높이와 동일하도록 고쳐져야 한다.

6. 그물장의 그물망은 적합한 천연 또는 합성 섬유줄이나, 또는 부드럽거나 장력도가 높은 강철제 철사로 만들도록 한다. 그물코의 최대 크기는 철사의 경우 50mm, 섬유줄인 경우 44mm가 되어야 한다.

참고: 그물망과 안전 조사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육상 트랙&필드 경기시설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다.

7. 이 그물장에서 원반던지기용 최대 위험 낙하구역 각도는 동일 경기 대회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선수 모두 참가할 경우 약 69°이다(원반이 반경 1.5m의 구획된 원으로부터 방출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산). 따라서 경기장 내의 그물장 설치 위치와 배열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 위험구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그림 18에 설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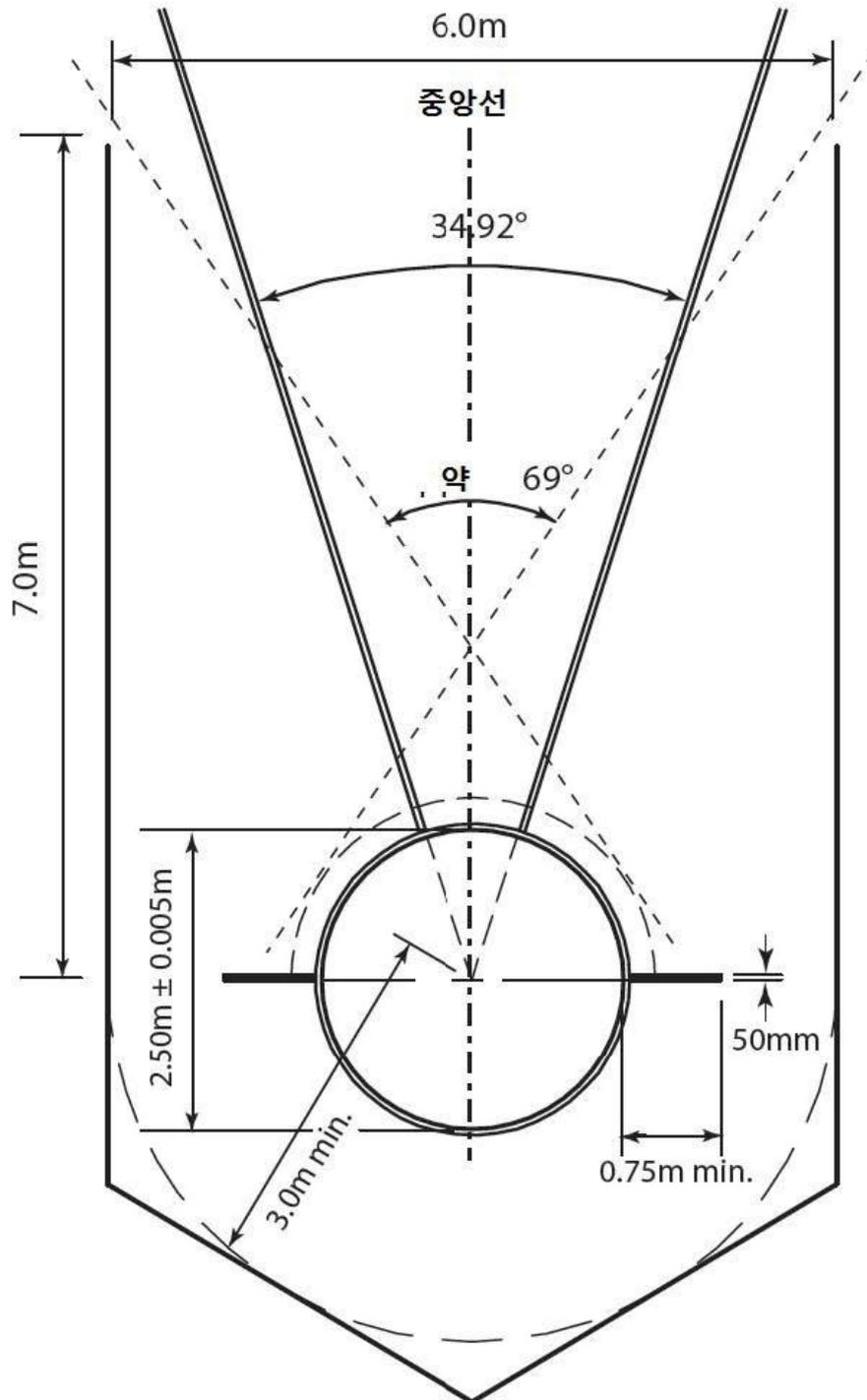


그림 18 - 원반던지기 전용 그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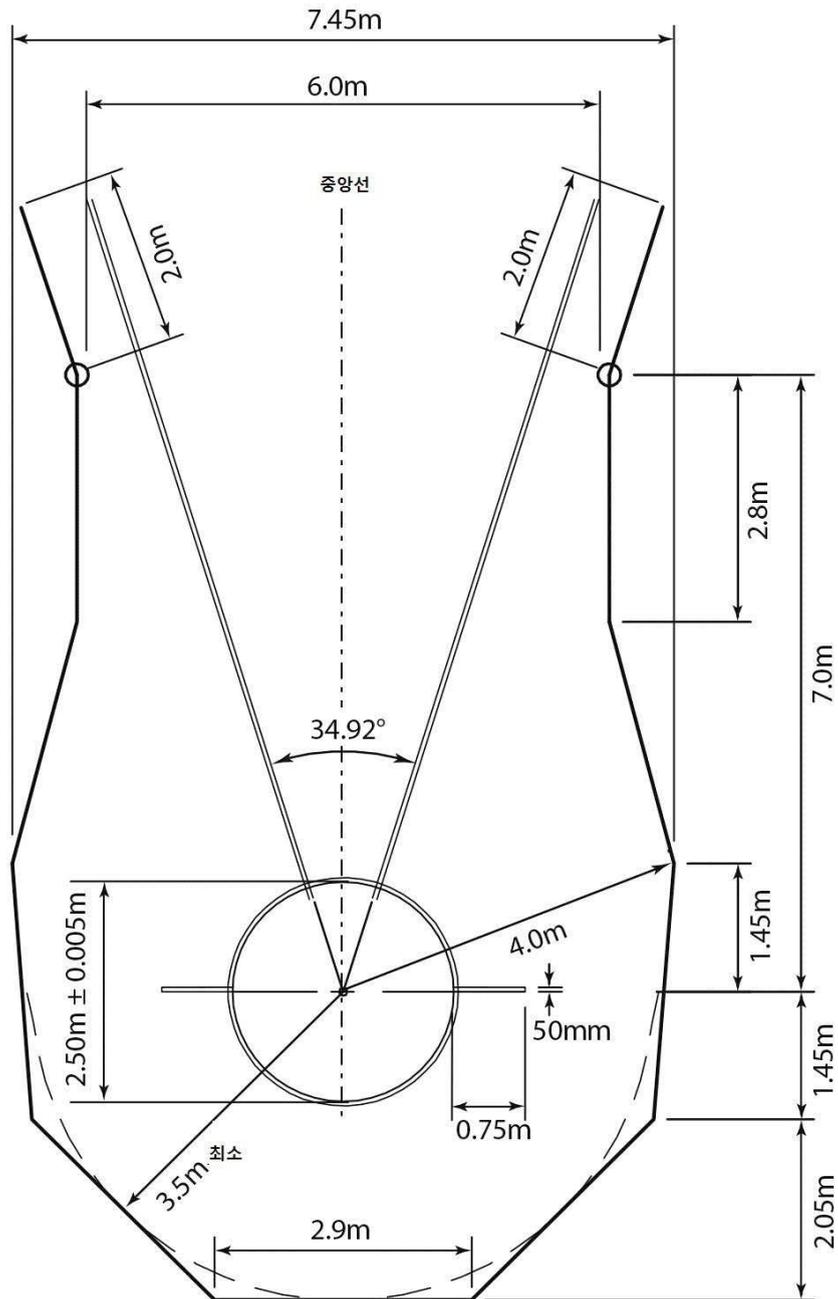


그림 19 – 중심원이 같은 서클의 원반던지기 그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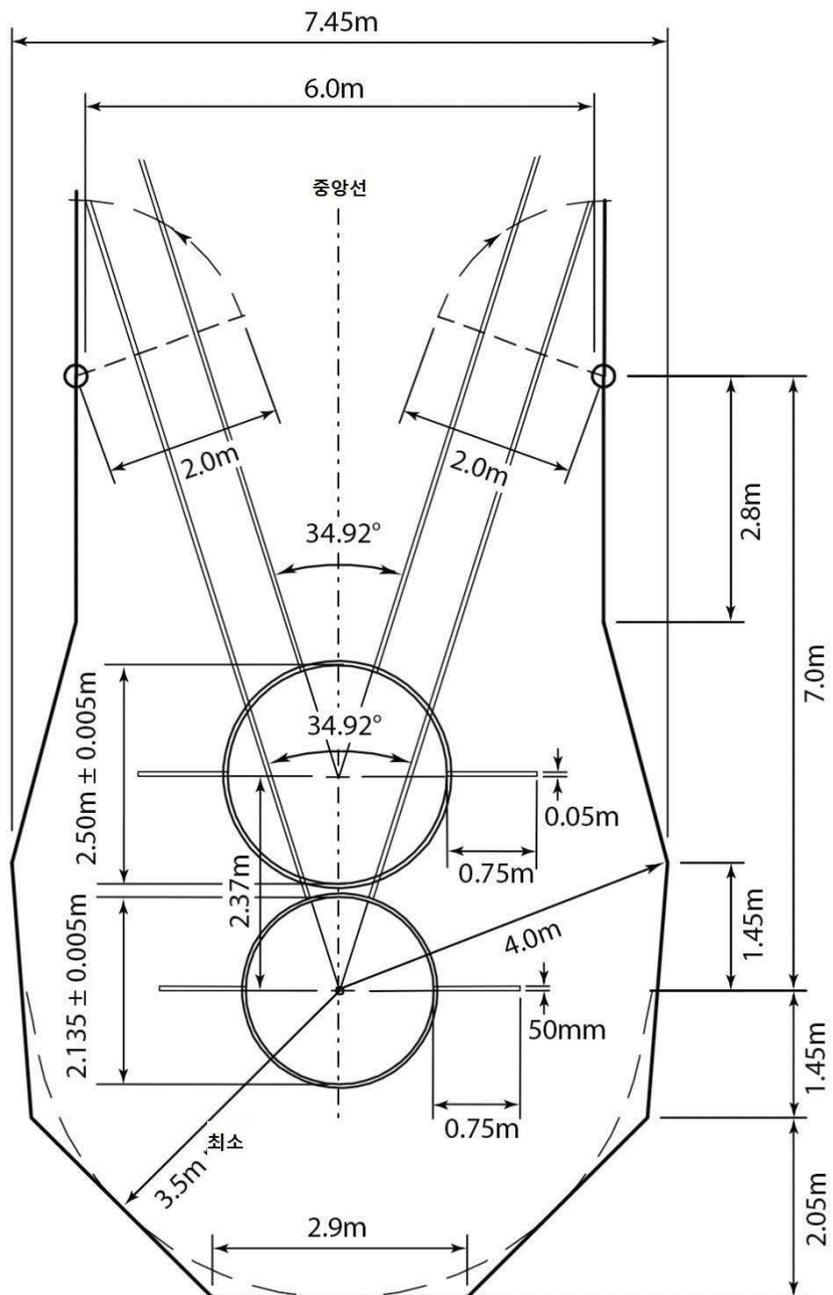


그림 20 - 중심원이 다른 서클의 원반던지기 그물장

규칙 33: 창던지기

(규칙 193)

대회

1.

- a) 창은 손잡이를 쥐어야 한다. 창은 어깨 또는 던지는 쪽 팔의 위에서 던져야 하고 팽개치거나 내던지는 식으로 던져서는 안된다. 비정통적인 투척방법(Non- orthodox styles)은 허용되지 않는다;
- b) 창던지기는 금속제 창 축이 창의 다른 부분보다 먼저 지면에 떨어졌을 경우에만 유효시기가 된다;
- c) 선수는 투척시기 중 창이 공중으로 던져 지기 전까지는 신체를 완전히 회전시켜 등이 투척용 원호(arc) 쪽을 향해서는 안된다.

코멘트: 이전 규칙에서 투창의 팁에 대한 언급은 제거되었이고 헤드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헤드 모양이 크게 달라서, 팁을 별도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창이 규칙 30.16과 33.1(b)에 의해 올바르게 착지하였는지와 규칙 20.20(b)의 측정 기준점이 이제 평가해야 할 영역이 더 커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원칙은 이전과 같으며, 투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더라도 착지에 대한 일정의 각도가 있어야 한다. 플랫폼 혹은 테일퍼스트 착지는 여전히 빨간 깃발로 표시되어야 한다.

2. 던지는 동작 중이나 공중에서 창이 파손된 경우 규칙에 합당하게 시기를 했을 경우에는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선수가 몸의 균형을 잃어서 본 규칙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경우라도 이를 무효시기로 간주하지 않으며, 선수에게 새로운 시기를 허용한다.

창

3. 창은 3가지 주요 부품으로 구성된다: 자루(샤프트), 축(헤드), 끈으로 감은 손잡이(코드그립).
4. 자루(샤프트)는 단단하거나 또는 속이 비어야 하고 고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하여 금속 또는 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자루(샤프트) 표면은 움푹 들어가거나 볼록하여서는 안되며, 홈이 파이거나 용기 져서도 안되고, 구멍이 있거나 거칠어도 안된다. 창자루 표면의 끝손질은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균일하여야 한다.
5. 자루(샤프트)는 끝이 뾰족한 금속제 축에 고정되어야 한다. 창 축은 전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창 축의 표면 전체가 매끄럽고 균일하다는 전제 하에 창 축에 다른 합금을 용접해 강화할 수 있다. 축 끝의 각도는 40도를 넘으면 안된다.
6. 창의 무게중심의 둘레를 감은 손잡이(코드 그립)의 직경은 자루(샤프트)의 직경보다 8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손잡이의 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일반적인 형태로서 가죽 끈을 감거나, 굽어 놓은 자국이 있거나 오목하게 패인 곳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손잡이는 굽기가 일정하여야 한다. 횡단면은 어느 부분이나 완전히 원형이어야 한다(참고(i)참조). 창자루의 지름이 가장 굵은 부분은 손잡이 바로 앞에 있어야 한다. 손잡이의 아래 부분을 포함한 창자루의 중심부분은 원통형이거나 뒤쪽 끝으로 약간 가늘어지는 형태이며 손잡이 바로 앞부터 손잡이 바로 뒤까지의 지름에 대해서 0.25mm 초과해 가늘어지면 안된다. 손잡이에서부터 앞쪽의 창 축과 뒤쪽의 테일 부분으로 일정하게 가늘어진다. 손잡이에서부터 앞쪽의 창 축과 뒤쪽의 테일 부분까지의 종단형은 일직선이거나 약간 볼록하여야 하며(참고(ii)참조), 창 길이의 전체를 통틀어서 창 축의 바로 뒤와 손잡이 앞과 뒤를 제외하고는 지름에 급격한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 축의 뒤 부분 지름은 2.5mm를 초과해 감소하면 안되며, 종단면의 요구사항인 이런 감소는 축 뒤쪽으로는 300m를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 (i): 횡단면은 원형이어야 하나 그 지름은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2% 이내여야 한다. 이 두 개의 직경 평균치는 원형 창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참고 (ii): 종단면의 모양은 최소 500mm 길이의 직선 금속날과 두께 0.20mm, 1.25mm인 두 개의 간극 게이지로 간편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약간 볼록한 부분은 직선 날을 창의 짧은 부분과 밀착시킨 상태로 흔들어 움직일 수 있다. 약직선부분은 직선 날을 창에 단단하게 고정시킨 후 창과 접촉한 직선 날 사이에 0.20mm 게이지를 넣을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은 축의 자루와 연결부분 바로 뒷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는 1.25mm 게이지를 넣을 수 없어야 한다.

7. 창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맞아야 한다:

창					
경기 허가 및 기록 공인을 위한 최소중량(손잡이 끈 포함):					
	400g	500g	600g	700g	800g
제조사를 위한 정보: 경기장비 공급범위					
	405g	505g	605g	705g	805g
	425g	525g	625g	725g	825g
전체 길이 (L0)					
최소.	1850mm	2000mm	2200mm	2300mm	2600mm
최대.	1950mm	2100mm	2300mm	2400mm	2700mm
금속제 축 뒤쪽 끝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길이(L1)					
최소.	750mm	780mm	800mm	860mm	900mm
최대.	800mm	880mm	920mm	1000mm	1060mm
금속제 축 뒤쪽 끝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길이 (L2)					
최소.	1050mm	1120mm	1280mm	1300mm	1540mm
최대.	1200mm	1320mm	1500mm	1540mm	1800mm
금속제 축의 길이 (L3)					
최소.	200mm	220mm	250mm	250mm	250mm
최대.	250mm	270mm	330mm	330mm	330mm
손잡이의 너비 (L4)					
최소.	130mm	135mm	140mm	150mm	150mm
최대.	140mm	145mm	150mm	160mm	160mm
가장 굵은 부분의 자루의 지름(그립을 앞으로 잡을 때 - D0)					
최소.	20mm	20mm	20mm	23mm	25mm
최대.	23mm	24mm	25mm	28mm	30mm

8. 창에는 투척 중에 무게중심이나 투척의 성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동부분이나 다른 장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9. 창을 금속제 축 끝까지 점차 가늘게 함에 있어서, 축 끝의 각도는 40°를 넘으면 안된다. 축 끝으로부터 150mm 지점의 지름은 창자루의 최대 지름의 8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창을 무게중심점과 금속제 축 끝과의 중간 지점의 지름은 창자루의 최대 지름이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0. 창자루 부분에서 뒤쪽 끝까지 점차 가늘게 함에 있어서는 무게중심과 창 뒤쪽 끝 사이의 중간점에 있어서 지름이 창자루의 최대 지름의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창을 뒤쪽 끝에서 150mm 지점은 창자루의 최대 지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창을 뒤쪽 끝의 창자루의 지름은 3.5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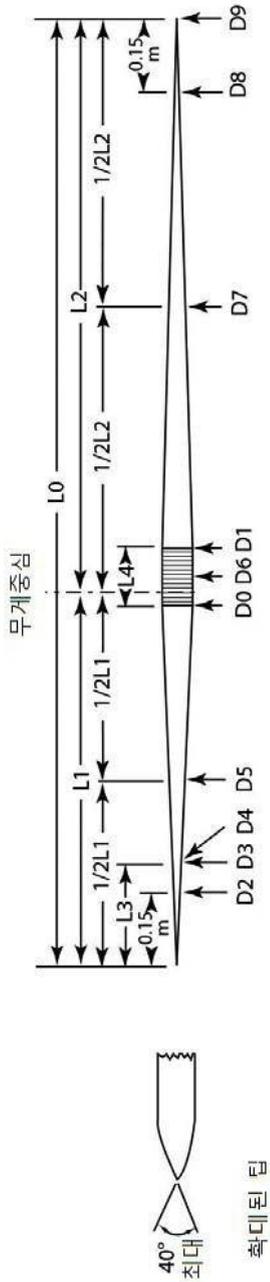


그림 21 - 국제경기용 창

길이	지름	최대	최소
L0	총합	-	-
L1	팁에서 무게중심까지	D0	D0-0.25mm
1/2L1	L1 절반	0.8D0	-
L2	꼬리에서 무게중심까지	-	-
1/2L2	L2 절반	-	D3-2.5mm
L3	헤드	0.9D0	-
L4	그립	D0+8mm	-
	그립 너머서(over grip)	-	-
	꼬리 중간부터 무게중심까지	-	0.9D0
	꼬리에서부터 150mm	-	0.4D0
C of G	무게중심	-	3.5mm
참고: 모든 지름 측정은 최소 0.1m 이여야 한다.			

코멘트: 임원구성

창던지기 경기의 경우, 해당 임원을 아래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다.
- 2) 투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및 시기를 측정하는 두 명의 심판원. 한 명은 2개의 깃발을 제공받아야 한다 - 시기의 유효를 나타내는 흰색 깃발과 실패를 나타내는 빨강색 깃발. 창이 측정된 후, 심판원은 장비가 반납되고 착지 장소가 정리되는 동안 빨강색 깃발을 소지한 채 서클 근처에 있도록 조언한다. 고깔이 서클 안에 대신 위치할 수 있다(어떠한 대회에서는 이 위치는 경기의 수석 심판원이 한다).
- 3) EDM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심판원은 측정 테이프를 도움닫기에 표시된 8m 지점을 통과하도록 당겨서 고정하여야 한다.
- 4) 투척 이후 즉시 측정될 시기의 포인트를 나타내는 마커를 위치시키는 한명 또는 두 명의 심판원. 장비가 섹터 바깥에 착지할 경우 한 명의 심판원 혹은 스파이크/프리즘을 가지고 있는 심판원(라인에서 더 가까운 아무나)은 팔을 뻗은 채 고정하면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심판원들이 장비가 헤드 퍼스트로 착지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경우 적합한 표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깃발 이외의 다른 시그널 형태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유효한 시기에 대해서는 표시가 필요 없다.
- 5) 마커가 놓여진 곳에 스파이크/프리즘을 위치시키며 테이프가 제로 표시에 있는지 확인하는 심판원.
- 6) 장비를 되찾아오며 장비를 장비 스탠드에 반납 또는 반납 장치에 위치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심판원 혹은 보조자. 테이프가 측정에 사용되었을 경우, 이중 한명의 심판원 혹은 보조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테이프가 팽팽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7) 심판원- 결과 기록지에 채점을 하고 각 선수를 부르는 기록원(그리고 다음 따라올 사람).
- 8)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 9)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10) 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11) 장비 스탠드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 (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의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모두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 (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참고 (iii): 풍향 및 풍속을 표시하기 위해 풍향계를 설치할 공간은 준비 되어있어야 한다.

D. 좌식 선수들의 투척 경기

규칙 34: 총칙

공식 용기구

1.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장애인 육상에 독점적인 장비 제외) 현행 세계육상의 사양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3.1.2 참조)에서는 현행 세계육상 상품 공인증이 있는 장비만이 사용된다(1.1참고).

장애인 육상 장비의 무게표는 부록 1에 나와 있다.

참고: 파트 B-3.1.2 아래 WPA 인정 대회에서 선수들은 자신의 스포츠 등급에 맞는 용기구 무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부록1에 따라)..

2. 부록 1에 나온 용기구 무게와 특별히 세계 육상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장비가 규칙에 맞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대회의 기술위원장(TD)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참고: 이는 세계육상 규칙 187 혹은 관련 부록에 문서화되지 않은 장애인육상에 독점적인 장비를 의미한다.

3. 아래에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용기구는 LOC가 제공한다. 기술위원장은 각 경기 대회의 해당 경기 규정에 따라 선수 개인의 장비 또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장비, 세계육상 공인마크를 붙인 장비를 제공하거나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모든 선수에게 제공되기 전에 LOC 및 기술위원장에 의해 반드시 측정, 확인 및 표시되어 있는 공인장비의 세계육상 목록에 있지 않는 용기구일 경우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LOC가 제공하는 장비 리스트에 이미 같은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4. 경기 중 장비의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없다.

조력(보조)

5. 다음의 항목들은 조력으로 간주됨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a)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손가락을 함께 테이핑 하는 행위. 손과 손가락에 테이핑을 사용할 때에 두 개 이상의 손가락에 함께 테이핑을 해서 손가락들을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해서는 안된다. 테이핑은 해당 종목 시작 전에 수석 심판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b) 몸에 붙이는 중량을 포함해서 시기를 실시할 때 어떠한 형태로라도 조력을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 사용;
- c) 규칙 34.6(d)항에 위배되지 않는 F31-33 및 F51-53 등급 선수들을 제외하고 장갑의 사용;

6. 다음의 사항들은 조력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 a) 선수가 더 잘 잡기 위해 본인의 손에만 적합한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포환 선수는 이러한 물질을 본인의 목에 사용할 수도 있다;
- b) 포환, 원반, 곤봉 종목에서 선수가 경기 용기구에 초크(분필) 또는 유사한 물질을 바르는 행위. 모든 물질은 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젖은 천으로 쉽게 지워져야 하고 어떠한 잔여물도 남겨서는 안된다;

코멘트: 이는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및 곤봉던지기에만 적용된다. 창던지기 선수는 기구에 어떠한 물질도 바를 수 없다. 하지만, 창던지기 선수가 규칙 34.6(a)를 준수하며 손에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 c) 규칙 34.5 (a)를 위반하지 않는 손과 손가락의 테이핑 사용;
- d) 규칙 34.5 (c)를 위반하지 않는 장갑의 사용;

스포츠 등급 F31-33 및 F51-53(예: 사지마비 선수)의 선수들은 창을 던지는 손이 아닌 쪽에 장갑이나 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손을 투척 프레임 또는 홀딩 바에 고정시키거나 붙일 수 있다.

투척 서클

7. 서클의 테는 단단한(band) 철이나 강철 또는 기타 적합한 재질로 만들고, 상단은 바깥지면과 같은 높이로 한다. 지면은 콘크리트, 합성물질, 아스팔트, 목재 또는 서클 가장자리를 따라 기타 적당한 재질로 만든다.

서클 안쪽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기타 견고하지만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만든다. 이 내부의 표면은 수평으로 서클 테의 상단보다 $2\text{cm}\pm 6\text{mm}$ 낮게 한다. 포환에서 이 규격에 맞는 이동식 서클을 사용할 수 있다.

고정장치(Tie-down Devices)의 표면 (스포츠 등급 F31-34 및 F51-57)

- a) WPA 인정 대회에서 좌식 투척 경기를 시행할 때에는 WPA 승인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파트B-3.1.2 참조).
- b)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B - 3.1.2 (a) 및 (b) 참조)에서 서클 안쪽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견고하지만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만든다.
- c) 이동식 WPA 승인 고정장치가 사용될 때에는 표면은 콘크리트 투척표면과 유사한 접지력을 주어야 한다(예: 모래 질감의 페인트를 입히거나 모래 질감이 있는 테이프를 붙여서 덮음)
- d) 이동식 플랫폼은 기술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판은 완전한 원 모양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경우 전면 원호 또는 반원은 반드시 지름 2.135m에서 2.5m의 원에서 던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부채꼴 부분의 각도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코멘트: 투척 플랫폼은 점점 제공이 가능하며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선수라도 투척 동작 중에 그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들이 땅에 적절히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 모든 좌식 투척경기(포환, 원반, 창, 곤봉)는 34.92도의 부채꼴 내에서 지름 $2.135\text{m}\pm 0.005\text{m}$ 혹은 $2.50\text{m}\pm 0.005\text{m}$ 의 서클이여야 한다. 서클의 테는 최소 6mm 두께로 흰색이여야 한다. 이동식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참고 (i):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흰색 선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원형 링은 오히려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ii): 원반 및 곤봉은 그물망에서 실시한다.

시기 및 계측

9. 모든 좌식 투척 종목에서 아래의 내용들은 실패로 간주된다:

- a) 포환, 원반, 곤봉 혹은 창이 헤드가 처음 닿는 곳이 낙하구역선 또는 낙하구역선 바깥 지면 또는 그물장이 아닌 다른 물체일 때는 무효시기가 된다.

참고: 기구를 던진 후 원반이 낙하구역선과 가까운 쪽(착륙공간을 향할 때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 왼손잡이의 경우 왼쪽)에 부딪힌 후 낙하구역선을 벗어난 착지 공간 안에 착지한 경우 규칙 30.16을 포함하여 다른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다.

- b) 선수는 투척 서클의 수직면 바깥에 있는 고정 스트랩(들)을 만지면 실패처리 된다.

10. 모든 좌식 투척 종목에서 계측거리가 1cm 미만일 경우에는 계측거리의 아래에 가장 가까운 0.01m로 끝수를 잘라서 가장 가까운 0.01m 단위로 기록한다.

11. 각 투척의 계측은 유효한 시기 후 즉시 측정해야 한다(또는 규칙 50.5에 따라 즉시 구두상의 소청이 이루어진 이후):

- a) 포환 또는 원반이 낙하한 가장 가까운 흔적에서 원호를 만든 서클 중심에 이르는 선을 따라 서클 안쪽까지 계측한다.
- b) 계측은 창이 금속제 헤드 끝부분이 지면에 최초로 낙하한 흔적에서 서클의 중심점을 따라 원호의 안쪽 가장자리까지 계측한다.
- c) 계측은 곤봉의 일부에 의해 접촉지점에서 서클의 중심점을 따라 원호의 안쪽 가장자리까지 계측한다.

규칙 35: 좌식 투척 요건

(스포츠 등급 F31-34, F51-57)

[임원을 위한 참고사항: 경기용 장비의 모양, 크기, 구조 그리고 다른 대회 장비의 특성에 관련된 이 규칙과 기타 대회 장비의 특성에 대해 기술과 장비에 관련된 파트 B-7.1에 나온 기본원칙을 유념해야 한다.]

1. 투척 프레임 규격:

- a) 쿠션을 포함한 좌석 표면의 최대 높이는 7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b) 각 투척 프레임은 반드시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이고, 각 면의 길이가 최소 30cm인 좌석을 보유해야 한다. 좌석의 표면은 반드시 평평하거나 앞면이 뒷면보다 높아야 한다(즉, 뒤로 기울어져야 한다).
-

참고: 앞면은 착지장소와 관련된 선수의 방향과 관계없이 선수가 앉았을 때 선수의 척추로부터 수평면으로부터 가장 먼 부분이다.

- c) 안전과 안정성을 위해 측면, 앞면 및 후면 받침대가 투척 프레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받침대들은 탄성이 없는 직물(예: 탄성이 없는 캔버스 천) 또는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구조물(예: 단단한 강철 또는 알루미늄)로 만들어질 수 있다. 후면 받침대는 5cm의 두께를 초과하지 않는 쿠션을 포함할 수 있다.

참고: 투척 프레임의 구조가 심판장들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d) 측면, 앞면 및 후면 받침대는 투척 시행시 추진력을 줄 수 있는 스프링, 움직이는 연결부위 및 기타 부품 등을 포함할 수 없다.
- e) 투척 프레임에 단단한 수직바가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수직바는 반드시 구부러지거나 곡선형으로 되지 않은 일자 형태의 1개의 손잡이여야 하고 횡단면이 타원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원형이나 정사각형이어야 한다. 수직바는 투척 시행시 추진력을 줄 수 있는 스프링, 움직이는 연결 부위 및 기타 부품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참고 (i): 대부분의 재질들이 압력을 가했을 때 일정 각도로 구부러지거나 비틀리는 점과 이러한 구부러짐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설계하는 것이 실질적,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구부러짐은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야 하며 기술 임원들이 보았을 때 구부러짐이 본 규칙의 의도 및 파트B-7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ii): 수직바는 더 나은 그립을 제공하도록 테이프 또는 다른 적당한 재료의 층을 가질 수 있다. 테이프 또는 다른 대체 재료의 두께는 선수의 신체적 기량에 공정하지 않은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iii): 선수의 안전과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던지기 프레임의 구성요소를 고정할 수 있다.

코멘트: 수직바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길이의 요건이 없다. 바는 수직이어야 하지만, "지면으로부터 정확히 수직"에 대한 일부 편차가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편차는 주로 수직에서 5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수직바를 보조하는 역할의 추가적인 피스(아래 그림에 설명된 것과 유사)는 허용이 되며 수직바의 가능성 있는 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강력히 권장된다. 수직 바 또는 이에 대한 보조는 어떠한 지점에서든 투척 서클 혹은 플랫폼 밖으로 돌출되면 안된다.

다림추(plum bob)의 사용은 투척 프레임이나 수직바의 일부가 투척서클 혹은 플랫폼에

위치하였을 때 이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IPC 경기 및 IPC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소집실 입구에서 최종 점검을 하기 전, 필요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투척 프레임은 사전점검이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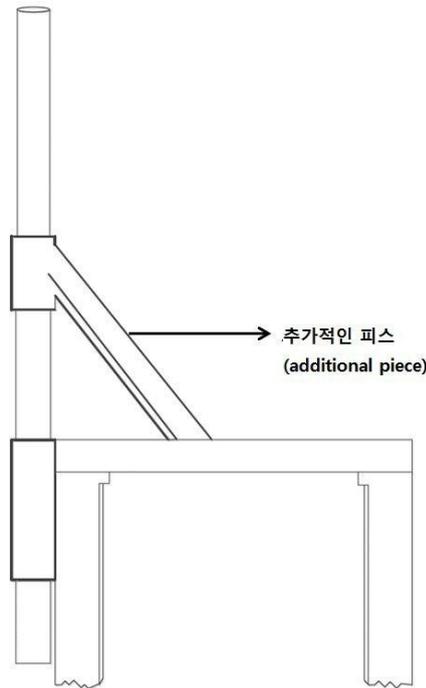


그림 22 – 수직바의 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피스

- f) 투척 시도 중 모든 수직바를 포함한 투척 프레임의 어떠한 부분도 움직여서는 안된다(타당한 정도의 약간의 움직임 제외).

자리표면의 눈금을 재거나 모서리는 측면, 전면, 후면 받침대 또는 메인 투척 프레임에 수직바를 수용하기 위해 절단될 수 있다. 이러한 절단의 크기는 공간이 받침대 또는 수직바를 넣는데 필요한 것보다 눈에 띄지 않는다. 전반적인 자리의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g) 발판이 사용되는 경우는 지탱 및 안정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 h)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일상용 휠체어도 허용된다(투척 시도 중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조건 포함).

2. 투척 프레임의 측정 및 검사

투척 프레임은 대회 시작 전에 소집실이나 경기 장소에서 측정하고 검사를 한다. 일단 측정을 하고 검사를 받은 선수의 프레임은 대회 시작 전까지 경기 장소에 보관을 하여야

한다. 관련 임원이 경기 전,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 투척 프레임을 다시 검사할 수 있다.

참고: 검사는 항상 선수가 프레임에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3. 투척 프레임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선수의 책임

선수들은 자신들의 투척 프레임이 규칙 35.1에 명시된 바에 따르도록 할 의무가 있다. 선수가 본인의 투척 프레임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해 경기가 지연될 수 없다. 선수가 해당 규칙을 준수하는데 실패할 경우, 선수는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규칙 6.16에 따라 결과 기록지에 "DNS"로 표기된다.

4. 투척 프레임의 배치

경기장소 내에 투척 프레임을 배치하고 고정시킬 때에 투척 프레임, 수직바, 발판의 모든 부분이 모든 시기에 걸쳐 서클 테의 수직판 내에 있어야 한다. 수직바의 앞 끝 부분은 반드시 투척 서클의 수직면 라인의 안쪽에 있어야 한다.

5. 프레임 고정을 위한 시간 배정

선수들이 투척 프레임에서 앉은 포지션을 실시하기 전에 서클 안에 선수의 투척 프레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최대 시간은 선수가 자리에 자신을 보호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워업을 하여야 한다:

a) F32-34 및 F54-57: 4분

b) F31 및 F51-53: 5분.

참고 (i): 타이밍은 좌석이 투척 플랫폼에 맞춰지고 고정되는 때에 시작하여야 하며 선수가 자신의 위치가 고정되도록 만들어진다.

코멘트: 투척 프레임이 서클 또는 투척 플랫폼에 위치할 때, 투척 의자에 선수를 고정시킨 후 연습 투척 시간을 시작한다. 투척의자에 선수를 고정하기 전에 이 규칙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 첫 번째 시기를 위한 시간은 선수가 확보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작하여야 한다. 선수가 투척 프레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의자(day chair)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은 투척 서클이나 투척 플랫폼에 일반 의자를 놓고 묶었을 때 시작된다

6. 고정장치 실패(고장) (스포츠 등급 F31-34, F51-57)

투척을 할 때에 만약 고정장치가 망가지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하는 임원은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 a) 선수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선수에게 시기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즉, 선수가 거리에 만족을 하고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선수는 고정장치가 망가진 시기를 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또는,
- b) 선수가 실패를 해서 시기가 기록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선수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시기를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규칙 36: 좌식 투척 테크닉, 리프팅 및 실패

1. 좌식 투척 종목의 모든 선수들(스포츠 등급 F31-34, F51-57)은 투척 프레임 안에서 앉은 상태로 용기구를 던져야 한다. 앉은 상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a) 선수는 두 다리가 무릎 뒤편부터 엉덩이 뒤편(좌골조면)까지 좌석의 표면에 닿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앉아 있어야 한다. 하지 위쪽 및 무릎 관통 절단 선수의 경우 다리의 잔여 길이는 반드시 좌석 표면에 엉덩이의 뒤편까지(좌골조면) 접촉하여야 한다.
- b) 이러한 앉은 자세는 반드시 용기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투척 동작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위쪽 허벅지 및 골반에 스트래핑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참고 (i): 본 규칙의 의도는 다리가 선수의 기록에 주는 도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참고 (ii): 만약 선수가 해부학적 제한으로 인해 상기의 요구조건을 준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WPA에 의해 해당 종목 시작 전에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WPA는 해당 선수가 본 규칙의 의도에 적합하게 투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인정 절차를 준비할 것이다.

참고 (iii): 이 규칙의 목적상, 엉덩이 뒤편은 선수가 앉았을 때 좌석표면과 접촉하고 있을 때 엉덩이의 가장 뒤편 및 가능한 한 앞으로 굽혀서 흉부가 무릎으로 향하고 좌골조면이 좌석표면과 접촉하고 있을 때를 가리킨다

참고 (iv): 선수가 좌석표면의 수직 윤곽선의 모서리를 한 다리로 가까운 면에 올라
 앉을 수 있는 데에 대한 효과를 충족하였으며 해당 규칙의 모든 요구사항이
 준수되었음이 제공되었을 경우 양쪽 무릎이 좌석표면의 수직 윤곽선과 같은 면과
 접촉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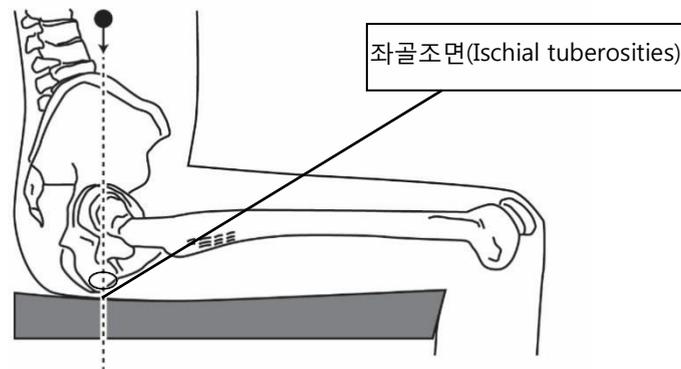


그림 23 좌골조면

2. 선수는 본인의 시기를 정지된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3. 선수는 본인의 시기 시작 자세에서 용기구를 잡을 때부터 기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앉은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시기는 실패 처리된다.

참고: 무릎 뒤쪽의 일부분이 투척 동작 시 기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좌석과 접촉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코멘트: 투척 동작 중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이 앞으로 미끄러져 좌석표면과의 접촉을 잃을 경우, 실패로 간주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임원 구성

좌식 투척 경기의 경우, 해당 임원을 아래에 따라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다:

- 1) 수석 심판원은 대회 전체를 관장할 것이다.
- 2) 다음을 포함하여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심판원.
 - a) 무릎이 시트 쿠션에서 "앞으로 미끄러져" 벗어났는지 관찰

- b) 규칙에 따라 재판 내내 착석 위치가 유지되었는지 여부 관찰; 그리고
- c) 수직 홀딩 바가 구부러지는지 확인하고 시행을 측정한다. 하나는 두 개의 플래그를 제공한다. 즉, 평가판이 유효를 나타내는 흰색 깃발과 실패를 나타내는 빨강색 깃발이다. DEM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심판원은 측정 테이프를 서클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당겨서 고정하여야 한다.

참고 (iv): 선수가 좌석표면의 수직 윤곽선의 모서리를 한 다리로 가까운 면에 올라

- 3) 시기 이후 즉시 측정될 시기의 포인트를 나타내는 마커를 위치시키는 심판원.
- 4) 마커가 놓여진 곳에 스파이크/프리즘을 위치시키며 테이프가 제로 표시에 있는지 확인하는 심판원.
- 5) 장비를 되찾아 오며 장비를 장비 스탠드에 반납 또는 반납 활송장치에 위치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심판원
- 6) 심판원 – 결과 기록지에 채점을 하고 각 선수를 부르는 기록원(그리고 다음 따라올 사람).
- 7) 스코어보드를 책임지는 심판원(시기-숫자-결과)
- 8) 선수들에게 그들이 시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알려주는 시계를 책임지는 심판원.
- 9) 선수를 책임지는 심판원.
- 10) 장비 스탠드를 책임지는 심판원.

참고 (i): 이는 임원을 배치시키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데이터 시스템 및 전자 스코어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대회 경우, 전문가가 특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드 경기의 과정 및 채점은 채점원과 데이터 시스템 모두에 의해 추적되어야 한다.

참고 (ii): 임원 및 장비는 선수의 경로를 방해하거나 관람객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참고(iii): 안전 예방 조치로 착지구역이 확보될 때까지 선수에게 기구를 건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참고(iv): 시계는 선수가 이동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

규칙 37: 곤봉 던지기

대회

1. 곤봉은 목 부분 및/혹은 머리 부분을 한 손으로만 잡아야 한다. 곤봉은 착지 지점을 바라보는 자세로 던질 수 있고, 착지 지점을 등진 채로 머리 위로 던질 수도 있다.

곤봉

2. 구조. 곤봉은 4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헤드, 넥, 바디, 그리고 엔드. 헤드, 넥, 바디는 단단하여야 하며 목재로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고정되게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바디는 깎이거나, 돌출되거나, 날카롭지 않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원통형의 엔드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 헤드, 넥, 바디의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고 움푹 들어간곳(dimple), 뾰루지(pimple), 홈(groove), 솟은 부분(ridge), 구멍(holes), 혹은 거칠(roughness)이 있어서는 안된다.
4. 헤드는 구체 또는 원통형이어야 하고 넥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져야 한다. 바디의 폭이 가장 넓은 부분의 지름은 60m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또한 원통형일 수 있다. 곤봉은 넥 쪽으로 갈수록 균형이 맞게 가늘어져야 하며 금속 엔드 쪽으로 갈수록 미세하게 가늘어져야 한다.
5. 곤봉은 다음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곤봉	
경기 허가 및 기록 공인을 위한 최소 중량	397g
제조사를 위한 정보	
경기장비 공급범위	402g 422g
전체 길이(금속 엔드 포함)	
최소.	350mm
최대.	390mm
넥의 지름	
최소.	18mm
최대.	20mm
바디 부분의 지름 너비	
최소.	50mm
최대.	60mm
금속 엔드의 지름	
최소.	38mm
최대.	39mm
금속 엔드의 두께	
최소.	12.5mm
최대.	1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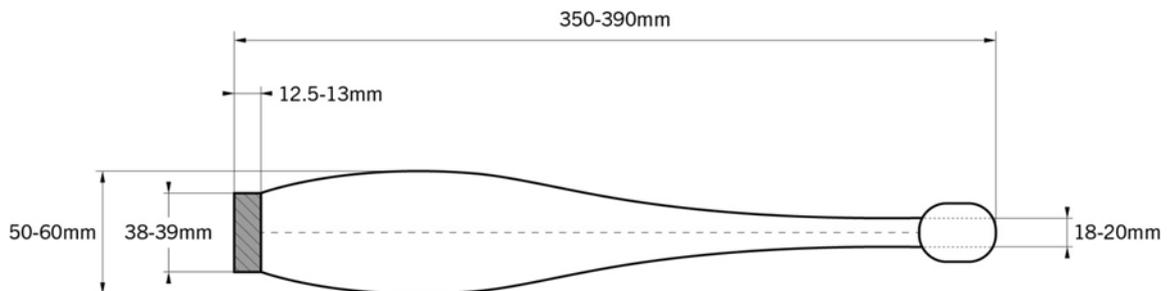


그림 24 - 곤봉

코멘트: 곤봉던지기는 임원에게 많이 위험한 경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임원, 기타 선수 및 그들의 보조자 및 언론과 관객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장비가 선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안내하면 모든 상황에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규칙 24.17의 참고(i)에 나온 대로 선수에게 이제 던지는데 안전하다고 알려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섹션 V - 실내 대회

규칙 38: 실내경기에서 적용되는 실외경기 규칙

(규칙 210)

본 섹션 5에 명시된 규칙의 예외사항들과 규칙 18과 27에 명시된 풍속측정에 대한 필요조건과 함께 실내경기에서는 섹션1~4까지의 실외경기 규칙이 적용된다.

규칙 39: 실내 경기장

(규칙 211)

1. 경기장은 완전히 벽으로 둘러싸여 지붕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대회를 위한 만족스러운 환경조성을 위해 조명, 난방, 환기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경기장은 타원형 트랙, 단거리 및 허들레이스를 위한 직선트랙 및 도약경기를 위한 도움닫기 및 착지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포환던지기용 서클과 낙하구역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은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3. 모든 트랙, 도움닫기, 발구름판 장소의 표면은 합성재질로 덮여져 있어야 하며 이 재질은 경기화의 6mm 스파이크를 수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트랙 제조업체 혹은 경기장 운영자가 대체 최대치를 요구하거나 특정 모양의 스파이크 사용을 금지할 경우, 이를 적용하고 선수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WPA 실내 선수권대회는 세계육상 실내 육상 시설 공인증이 있는 시설에서만 실시한다.

기타 WPA 공인대회(파트B - 3.1.2 참조) 또한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4. 트랙, 도움닫기 및 구름판의 합성표면 기초는 콘크리트같이 견고하거나, 장선에 부착된 나무판 혹은 합판시트처럼 공중에 뜬 구조물일 경우 탄력(용수철이 달린) 구역이 있어서는 안되며,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 각 도움닫기는 균일한 탄력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각 대회 전에 도약경기용 구름판을 점검하여야 한다

참고 (i): “탄력 구역”은 선수에게 부가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거나 시공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참고 (ii): 세계육상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세계 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 매뉴얼에는 트랙 측정표 및 마킹을 포함한 실내경기장의 구조와 설계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iii): 공인 신청 및 측정보고서와 공인시스템 절차에 관한 현행 표준 양식은 세계육상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코멘트: 적절한 조명의 부족은 실내경기에서 흔한 문제다. 덮여진(막혀진) 경기장은 경기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하며, TV가 보급되어 있는 경우 조도를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다. 피니시 라인 구역들은 완전자동 타이밍을 위해 추가적인 조명이 필요할 수 있다.

규칙 40: 직선 트랙

(규칙 212)

1. 트랙의 최대 허용 경사도는 너비 쪽으로는 1:100(1%) 이하, 세계육상이 면제 제공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달리는 방향으로는 어떤 지점에서든 1:250(0.4%)를 넘으면 안되고 전체적으로는 1:1000(0.1%) 이하가 되어야 한다.

레인

2. 트랙의 개별 레인 수는 최소 6개, 최대 8개가 되어야 하며, 양쪽에 너비 5cm의 흰색 라인으로 경계를 긋는다. 오른쪽에 있는 레인 라인을 포함한 레인의 너비는 $1.22\text{m} \pm 0.01\text{m}$ 가 되어야 한다.

참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트랙은 레인의 너비가 최대 1.25m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트랙이 새로 표면처리를 다시 하였을 경우, 레인의 너비는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스타트 및 피니시

3. 스타트 라인의 후방에 적어도 3m까지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 피니시 라인 넘어 최소 10m까지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되며, 그 앞에 선수가 부상을 입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피니시 라인 넘어 15m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코멘트: 직선 트랙은 50m 혹은 60m를 측정할 수 있다. 주요 대회인 경우, 60m 이상의 경기가 치러져야 한다.

조언이 필요할 경우, 스타트와 피니시에서 자유로운 구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여러 상황에서 스타트라인 뒤에서 프리존(자유구역)은 2m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 거리는 부정출발장치가 달린 스타팅블럭과 레인을 나타내는 레인 박스를 배치하기에 적합하다.

규칙 41: 타원형 트랙 및 레인

(규칙 213)

1. 일반적인 트랙의 길이는 200m가 바람직하다. 트랙은 2개의 평행인 직선 주로와 반경이 동일하며 경사가 있어도 되는 2개의 곡선주로로 이루어진다.

트랙 안쪽은 높이와 너비가 약 5cm인 적절한 재질로 만든 연석 혹은 5cm 너비의 흰색 선으로 구분한다. 연석 또는 흰색 선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1레인의 안쪽 가장자리가 된다. 연석 또는 흰색 선의 안쪽 가장자리는 트랙 전체 길이와 수평이 되어야 하고 최대 허용경사한도는 1:1000(0.1%)이하로 한다. 2개의 직선주로 위의 연석은 제외될 수 있고 50cm너비의 흰색 선으로 대체될 수 있다.

참고: 모든 측정은 규칙 15.2에 언급된 대로 진행될 것이다.

레인

2. 트랙은 최소 4개, 최대 6개의 레인이 있어야 한다.

레인의 너비는 우측의 레인선을 포함하여 0.90m에서 1.10m 사이여야 한다. 모든 레인의 너비는 동일하여야 하며 허용된 너비에서 오차범위 $\pm 0.01\text{m}$ 이내여야 한다. 레인은 50mm 너비의 흰색 선으로 구분한다.

코멘트: 실내 대회에서 레인의 너비가 좁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여전히 자신의 레인 안에서 출발하여야 한다(예: 손을 완전히 레인 안으로). 이는 스타팅 블록의 일부가 다른 선수를 방해하지 않을 경우 레인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규칙 16.2(e)참조).

경사(Banking)

3. 모든 레인의 경사 각도는 트랙의 모든 교차구역에서 동일하여야 한다. 직선주로는 평평하거나 최대 측면 경사가 안쪽 레인을 향해 1:100(1%)이어야 한다.

직선주로에서 경사진 곡선까지의 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선주로에서 5m까지는 연장하는 완만한 수평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수직변화도 있어야 한다.

안쪽 가장자리의 마킹(Marking of the Inside Edge)

4. 트랙의 안쪽 가장자리가 흰색 선으로 구분되었을 경우, 곡선에서 콘 혹은 깃발로 추가적으로 마킹을 하여야 하며 직선주로에서는 선택적이다. 콘의 높이는 최소 0.15m 이상이어야 한다. 깃발의 경우 크기는 0.25m x 0.20m, 높이는 최소 0.45m 및 설정 각도는 트랙 표면에 대해 60°가 되도록 비스듬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콘이나 깃발은 그 아래쪽의 가장자리가 트랙에 가장 가까운 흰색 선의 가장자리와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콘 또는 깃발은 곡선주로에서는 1.5m, 직선주로에서는 10m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에 배치한다.

참고: 내측 연석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코멘트: 타원형 트랙은 200m보다 길 수 있지만, 200m 이상의 레이스에 대한 기록은 승인되지 않는다. 200m 트랙의 발달은 짧은 거리의 트랙보다 유리하다. 상위 레벨 대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6레인 트랙을 보유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타원형 트랙의 이상적인 너비는 1m이어야 한다.

콘은 곡선뿐만 아니라 타원형 트랙 전체를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깃발이나 콘을 배치할 때 1레인 안쪽 가장자리에 있는 흰색 선은 해당 레인에 배정된 주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은 실내 대회에서 선호되고 권장된다.

규칙 42: 타원형 트랙에서의 스타트/피니시

(규칙 214)

1. 200m의 경사진 실내 트랙의 구조 및 마킹에 관한 기술적인 정보는 세계육상 경기 시설 매뉴얼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적용되어야 할 기본 원칙은 아래에 나와있다.

기본 요건

2. 레이스의 스타트와 피니시는 트랙의 직선구역에서는 직각(right angles)으로, 트랙의 곡선구역에서는 반경 선에 따라 너비 50mm의 흰색 선으로 표시한다.
3. 피니시 라인의 요구사항은 가능한 경우 모든 다른 길이의 레이스에서 한 개의 라인만 있어야 하며, 트랙의 직선구역에 있어야 하며 피니시 앞쪽에 직선 부분이 길도록 해야 한다.
4. 스타트 라인의 필수 요구사항은 직선, 계단식 또는 곡선부에 상관없이 모두 최단거리로 달렸을 때 동일한 거리가 되어야 한다.
5. 가능한 한 스타트라인(릴레이 레이스의 테이크오버 존 라인 포함)은 곡선주로의 경사도가 가장 큰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레이스 운영

6.
 - a) 300m 이하의 레이스는 끝까지 개별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 b) 300m 초과, 800m 미만의 레이스는 개별레인에서 스타트해서 두번째 곡선주로가 끝나는 지점까지 개별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 c) 800m 레이스 스타트의 경우, 각 선수는 개별레인을 배정받거나 레인당 최대 2uad의 선수가 배정되거나 그룹 스타트(주로 레인 1-4를 사용)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수들은 첫번째 곡선구간의 끝에 표시된 브레이크 라인(break line)이후 혹은 두개의

곡선구간에서 레이스가 진행되는 경우 두번째 곡선구간의 끝에서부터 본인의 레인을 벗어날 수 있으며 바깥쪽 선수들이 안쪽 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다.

- d) 800m를 초과하는 레이스는 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크(arc) 스타트 혹은 그룹 스타트를 사용한다. 그룹 스타트가 사용되었을 경우, 브레이크 라인은 첫번째 혹은 두번째 곡선의 끝 지점에 있어야 한다. 선수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그녀는 실격처리 된다. 브레이크 라인은 1번레인을 제외한 전 레인에 아크(arc) 모양으로 각 곡선 구간 이후에 50mm너비로 표시되어야 한다. 선수들이 브레이크 라인을 인식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급적 레인의 선들과 브레이크 라인의 색상과 다른 색을 띤 50mmx500mm, 높이 0.15m 이하의 작은 콘 또는 프리즘이 브레이크라인의 교차점 바로 직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참고 (i):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3.1.2(a)및(b)참조) 이외의 대회에서 해당 NPC는 800m 종목에서 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참고 (ii): 6레인 미만의 트랙에서는 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그룹 스타트를 할 수 있다. 가이드러너와 같이 뛰는 11,12등급 선수들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iii): 레인에서 달리는 레이스의 경우, 가이드러너와 같이 뛰는 11,12등급 선수들은 2개의 레인을 받을 수 있다.

200m 표준거리 트랙의 스타트 라인 및 피니시 라인

7. 1레인의 스타트 라인은 주 직선(principal straight)상에 있어야 한다. 스타트 라인의 위치는 제일 바깥쪽 레인의 계단식 스타트 라인이 경사의 각도가 12도가 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타원형 트랙에서 하는 모든 레이스의 피니시 라인은 1레인의 스타트 라인을 연장하여 트랙을 직각으로 가로질러서 각 레인선에 직각으로 굽는다.

코멘트: 트랙을 마킹 하는데 사용할 색상은 세계육상 트랙 및 필드 시설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트랙 마킹 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규칙 43: 트랙 경기에서의 시드배정, 추첨 및 예선통과

(규칙 215)

라운드 및 예선경기

- 실내경기의 경우, 아래의 표를 사용하여 특별한 상황이 없을 경우 각 라운드의 라운드 수와 예선 수, 그리고 각 트랙 경기 라운드의 예선 절차(예: 순위별(P), 기록(T))를 결정하여야 한다:

60m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9-16	2	3	2			
17-24	3	2	2			
25-32	4	3	4		2	4
33-40	5	4	4		3	2
41-48	6	3	6		3	2
49-56	7	3	3		3	2
57-64	8	2	8		3	2
65-72	9	2	6		3	2
73-80	10	2	4		3	2

200m, 400m, 800m, 4x200m, 4x400m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조	순위	
7-12	2	2	2						
13-18	3	3	3				2	3	
19-24	4	2	4				2	3	
25-30	5	2	2				2	3	
31-36	6	2	6				3	2	
37-42	7	2	4				3	2	
43-48	8	2	2				3	2	
49-54	9	2	6	4	3		2	3	
55-60	10	2	4	4	3		2	3	

1500m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조	순위	
12-18	2	3	3						
19-27	3	2	3						
28-36	4	2	1						
37-45	5	3	3				2	3	3
46-54	6	2	6				2	3	3
55-63	7	2	4				2	3	3

각각의 표에 표시된 대로 다음의 대체 표는 특정 등급 또는 혼합 등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표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혼합등급의 경우 위의 기본표를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적당한 표는 기술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다.

60m (T11-12) - 8 라인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5-8	2	1	2						
9-12	3	1	1						
13-16	4	1	4				2	1	2
17-20	5	1	7				3	1	1
21-24	6	1	6				3	1	1
25-28	7	1	5				3	1	1
29-32	8	1	8	4	1	4	2	1	2

200m, 400m, 800m (T11-12) - 6 라인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4-6	2	1	1						
7-9	3	1	0						
10-12	4	1	2				2	1	2
13-15	5	1	1				2	1	2
16-18	6	1	0				2	1	2

1500m (T11-12) - 6 레인

공표된 엔트리	첫 라운드			두번째 라운드			준결승전		
	조 순위	기록순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기록순	조 순위	기록순	기록순
6-10	2	1	3						
11-15	3	1	2						
16-20	4	1	6				2	1	3

참고: 위 예선통과 절차는 레인이 6개인 타원형 트랙 및/또는 레인이 8개인 직선 트랙에서만 유효하다.

코멘트: 6레인 밖에 없는 트랙이 있는 실외경기에서는 해당 규칙이 시드배정 및 조추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레인 추첨

2.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곡선주로 레인에서 달리는 모든 경기에서 레이스에 연속적인 라운드가 있는 경우 레인추첨은 3번을 하게 된다:
 - a) 바깥쪽 2개 레인에 기록이 가장 좋은 2명의 선수 또는 팀을 배정한다;
 - b) 다음 2개의 레인에 3위와 4위의 기록을 가진 선수 또는 팀을 배정한다;
 - c) 남아있는 모든 안쪽 레인에는 나머지 선수 또는 팀을 배정한다;
 - d) 랭킹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
 - e) 첫 라운드의 조편성은 사전에 정해진 기간 중에 수립한 유효한 공인 기록의 리스트로 정한다;
 - f) 첫 라운드 이후에는 규칙 21.3(a) 혹은 800m의 경우 21.3(b)의 절차에 따른다.
3. 기타 모든 레이스에서의 레인 순서는 규칙 21.4와 21.5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한다.

코멘트: 트랙의 레인 구성이 다른 경우, 사용할 표는 경기용 특정 기술규정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며 규정이 없을 경우 기술위원장 또는 LOC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규칙 44: 스파이크 길이

(규칙 216)

대회가 합성재질의 표면에서 치러질 경우, 신발 바닥 혹은 뒤꿈치에서 돌출된 각 스파이크 부분은 6mm(혹은 LOC가 요구한 수치)를 넘지 않아야 하고 항상 규칙 6.4에 나온 최대 허용치를 따른다.

규칙 45: 릴레이 레이스

(규칙 218)

레이스 운영

1. 4x200m 릴레이 레이스의 모든 첫번째 구간과 두번째 구간의 첫번째 곡선주로부터 규칙 42.6에 설명된 브레이크 라인의 가장 가까운 끝 부분까지는 레인 내에서 달려야 한다. 각 테이크오버 구역은 20m 길이일 것이며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네번째 선수는 이 구역에서 스타트를 할 것이다.
2. 4x400m 릴레이 레이스는 규칙 42.6 (b)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3. 4x800m 릴레이 레이스는 규칙 42.6(c)에 따라 운영될 것이다.
4. 두번째 혹은 세번째 곡선주로를 레인에서 달린 후 직선주로에 들어서면서 선수들이 자신의 해당 레인을 벗어나도 되는 릴레이 레이스의 경우, 계단식 스타트의 배치(layout)는 규칙 42에 설명되어 있다.
5. 4x200m 릴레이레이스의 세번째 및 네번째 구간, 4x400m 및 4x800m 릴레이레이스의 두번째, 세번째 및 네번째 구간의 대기선수들은 지명된 임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대기 위치를 자신들의 팀 멤버들이 마지막 곡선구간에 진입하는 순서와 동일한 순서(안쪽에서 바깥쪽으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진입중인 선수들이 해당 지점을 통과한 이후, 대기중인 선수들은 순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테이크오버 구역의 시작점에서 위치를 변경(교환)하여서는 안된다. 선수가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의 팀은 실격 처리된다

참고: 레인이 좁기 때문에, 실내 릴레이 레이스는 야외 릴레이 레이스에 비해 충돌이나 의도치 않은 방해를 받기 쉽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여분의 레인 하나를 각 팀 사이에 두는 것이 권장된다

규칙 46: 높이뛰기

(규칙 219)

도움닫기 및 발구름판

1. 이동식 매트가 사용될 경우, 발구름판의 레벨에 대한 규칙의 모든 사항은 매트와 상단표면의 높이에 맞춰 적용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도움닫기의 마지막 15m가 규칙 26.3, 26.4 및 26.5를 준수하는 도움닫기일 경우에 선수는 타원형 트랙의 횡경사(banking)에서부터 어프로치를 시작해도 된다.

규칙 47: 수평도약

(규칙 221)

도움닫기

도움닫기의 마지막 40m가 규칙 27.2와 27.3을 준수하는 도움닫기일 경우에 선수는 타원형 트랙의 횡경사(banking)부분에서부터 어프로치를 시작해도 된다.

규칙 48: 포환

(규칙 222)

낙하구역

1. 낙하구역은 포환 자국을 만들지만 튀어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2. 낙하구역은 다른 선수들과 임원들의 안전을 위해 공중에 날아가는 포환 또는 낙하구역 표면에 튕겨져 나오는 포환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지벽(stop barrier)과 4m 높이 정도의 보호 그물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방지벽은 최대한 서클에서 가까운 지점부터 가장 먼지점과 양쪽 사이드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실내 경기장의 제한된 공간의 측면에서, 방지벽에 둘러싸인 지역이 34.92° 전체를 포함할 정도로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적용된다:
 - a) 서클에서 먼 쪽 끝에 방지벽을 세울 때는 현재 남녀 포환던지기 세계기록보다 최소 50cm 이상 더 멀리 세워야 한다;
 - b) 방지벽 양쪽 낙하구역선은 34.92°의 낙하구역의 중심선에 좌우대칭이 되도록 한다;
 - c) 낙하구역 흰색 선은 34.92°의 완전한 낙하구역을 포함한 포환던지기 서클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상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양쪽 흰색 선과 34.92°의 낙하구역의 중심선을 평행하게 한다. 낙하구역 흰색 선이 평행하게 되는 곳에서는 두 낙하구역 흰색 선의 최소 거리는 9m가 되어야 한다.

코멘트: 양쪽의 방어벽/그물망을 원 방향으로 확장하여 8m 이내에서 시작하고 이 연장선의 길이에 대해서는 그물의 높이가 최소5m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좌식 투척 포환 경기의 경우, 스톱보드는 필요가 없다. 이 등급의 선수들에게는 실내지역의 적절한 장소에 이동식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포환 구조

5. 낙하구역의 종류에 따라(규칙 48.1 참조), 포환은 단단한 금속구 및 금속물 외곽제로 둘러싸이거나 속에 적절한 재질을 채운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덮어씌운 포환이어야 한다. 이들 두 형태의 포환을 동일 대회에서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견고한 금속 또는 금속 외곽제 포환

6. 실외 포환던지기 규칙 31.4 및 31.5에 따른다.

플라스틱 또는 고무 외곽제 포환

7. 포환은 일반 체육관 바닥에 낙하해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속에 적당한 재질을 채우고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덮어 씌워야 한다. 모양은 구형이고 표면은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매끈하여야 한다.

제조사를 위한 정보: 매끄러운 끝마무리를 위해, 표명 평균 높이는 1.6 μ m 미만이 되어야 한다(예: 러프니스(거칠기) 넘버 N7 또는 그 이하).

8. 포환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포환						
경기허가 및 기록 공인을 위한 최소 무게						
	2.000kg	3.000kg	4.000kg	5.000kg	6.000kg	7.260kg
제조사를 위한 정보						
경기장비	2.005kg	3.005kg	4.005kg	5.005kg	6.005kg	7.265kg
공급 범위	2.025kg	3.025kg	4.025kg	5.025kg	6.025kg	7.285kg
최소 지름	80mm	85mm	95mm	100mm	105mm	110mm
최대 지름	110mm	120mm	130mm	135mm	140mm	145mm

섹션 VI - 로드 레이스

규칙 49: 로드 레이스

(규칙 240)

서론

경기장 밖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참가 경기의 경우, 본 규정 및 규칙들은 일반적으로 엘리트 혹은 순위 및 상금이 있는 연령 그룹의 레이스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만 적용된다. 대회 주최자는 다른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정보, 특히 안전과 관련된 규칙에 적용되는 정보를 설명해주어야 한다.

거리

1. 남성과 여성의 표준 거리는 10km, 하프마라톤(21.0975km), 마라톤(42.195km)이다.

코스

2. 로드 레이스는 포장된 도로에서 실시한다. 교통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도로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인도에 적절하게 표시해 코스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풀밭 가장자리나 이와 유사한 부드러운 지면은 사용할 수 없다. 스타트와 피니시는 육상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한다.

참고 (i): 표준 거리에서 진행되는 로드 레이스의 경우,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 간의 거리가 두 지점간의 이론적인 직선거리가 전체 레이스 거리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ii): 휠체어 종목들을 제외하고, 레이스의 시작, 종료 및 해당 레이스의 일부분이 잔디 위 혹은 다른 비포장 지면에서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의 일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로드 레이스의 코스는 경기 중 선수가 사용 가능한 도로 중 최단거리 코스를 따라 계측한다.

모든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 - 3.1.2 (a) 및 (b) 참조)에서 계측선은 다른 표시선과

혼동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코스를 따라서 표시하여야 한다.

코스의 길이는 해당 경기 종목의 공식 거리보다 짧아서는 안된다. IPC 경기 및 IPC 대회 (파트 B - 3.1.2 (a) 및 (b) 참조)의 경우, 계측 허용 오차는 0.1%(예: 마라톤의 경우 42m)를 초과하지 않으며, 코스의 길이는 대회 전에 WA 공인 코스 계측원에 의해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i): 계측은 “자전거 회전 계측 방법(Calibrated Bicycle Method)”을 사용한다.

참고 (ii): 계측을 다시 할 경우 코스가 공식 규정거리보다 짧게 계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스 설정 시 “코스단축 방지 요인”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전거 계측 시 방지 요인은 0.1%이며, 이는 코스에서 매 Km을 1001m로 계측함을 의미한다.

참고 (iii): 레이스 당일 원뿔이나 바리케이드 등을 임시 설치물로 코스 일부분을 수정하려면 설치 장소를 코스 계측보다 늦게 결정해서는 안되며, 계측보고서에 설치 위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 (iv): 표준거리에서 개최되는 로드레이스에서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 사이의 고도 감소는 1000분의 1km(즉 1km마다 1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0.1%)

참고 (v): 코스 계측 공인증은 5년동안 유효하다. 그 후에는 뚜렷하게 변경된 부분이 없어도 다시 계측을 하여야 한다.

4. 주행 중 거리는 km단위로 선수들에게 표시해주어야 한다.

스타트

5. 레이스는 스타트 신호총, 대포, 에어혼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의 발사로 시작되어야 한다.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 명령과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경기에서는 레이스 스타트 5분, 3분, 1분 전에 소집 예고를 주어야 한다. “제자리에”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들은 LOC에 의해 정해진 방식대로 스타트 라인에 모여야 한다. 스타터는 모든 선수들의 발(또는 모든 신체 부위가) 또는 앞바퀴가(T33-34 및 T51-54) 스타트 라인 또는 스타트 라인 앞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확인하고 레이스를 시작한다.

코멘트: 중장거리 트랙 경기의 경우, 스타터 및 심판장이 이러한 경기에서 부정출발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드 경기와 기타 외부 경기의 경우 스타트의 리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규모 필드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비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하고 고의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경기 중이나 경기 후에 개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고려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주요 경기에서 시작 메커니즘이 오작동하고 계측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리콜을 시작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실적인 내용이 가장 좋은 옵션일 것이다.

참고 (i): 로드 레이스의 경우, 입식 선수들은 스타트를 할 수 있지만, 각 종목의 적격한 스포츠 등급(들)의 피니시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 (ii): 로드 레이스의 경우, 휠체어 선수들은 종목별 기술대표(TD)의 결정에 따라 스타트를 하지만, 각 종목의 적격한 스포츠 등급(들)의 피니시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참고 (iii): 휠체어 로드 레이스의 시드 배정은 스포츠 등급, 시드 타임 그리고 성별에 따른다(예: T54/34 남자는 앞 열에 시드를 받고, 그 다음은 T54/34 여자, 그 다음은 T52/33/51 남자, 그리고 T52/33/51 여자가 시드를 받는다). 각 스포츠 등급 종목/디비전의 스타트는 최소 30초의 간격을 두고 나눠서 한다.

참고 (iv): 각 스포츠 등급의 종목/디비전의 출발선은 1번 시드를 받은 선수가 앞 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2번과 3번이 그 오른쪽과 왼쪽, 4번과 5번이 그 오른쪽과 왼쪽, 이런 순서로 배열한다(그림 23 참조).

참고(v): 경기장 밖에서 시작하는 경기의 경우, 출발선의 최대 너비가 0.3m이고 출발 구역의 표면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색상이어야 한다.

코멘트: IPC경기및IPC대회및WPA 인정대회의 경우(3.1.2(a)-(c)참조),최소한조추첨(seeding)의기준은사전에지정된 기간동안수립된선수의유효한최고기록이되어야한다. 해당기간은대회의기술규정혹은엔트리상태및표준에대회 명시하는 서류에 나타나있을것이다. 이러한 세부 규정이 없을 경우, 기술대표(들)가LOC와함께조추첨(seeding)의 기준을결정할것이다. WPA승인경기(3.1.2.(d))의 경우, 기술대표(지정된 경우)와 LOC간에 시드 및 조 추첨이 합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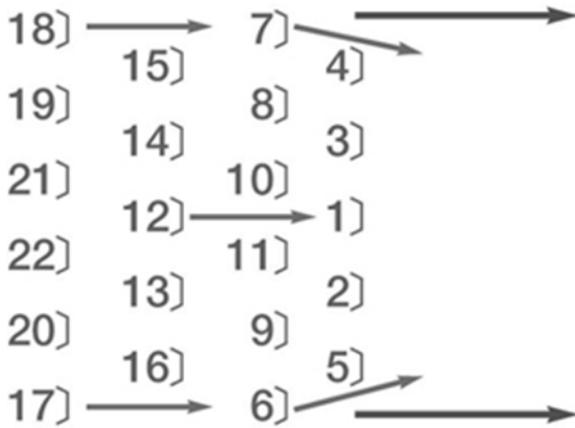


그림 25 - 휠체어 로드 레이스의 조추첨 출발점 예시

코멘트: 하프 마라톤이나 마라톤, 또는 대규모(mass) 로드 레이스에 있어 스타트 위치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적절한 인정을 받는 것은 선수들에게 중요하다. 위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지만, 처음 두 행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니시

6. 경기장 밖에서 종료되는 경기의 경우;

- a) 결승선의 최대 폭이 0.30m이어야 하며, 결승 구역의 표면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색상이어야 한다.
- b) 가이드러너와 함께 달리는 스포츠등급 T11 또는 T12 선수들의 레이스에서 선수는 반드시 가이드 러너 앞에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수는 실격을 당하게 된다.

안전

7. 로드 레이스의 LOC는 선수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 - 3.1.2 (a) 및 (b) 참조)에서 LOC는 대회에 사용되는 도로의 모든 방향에서 차량통행을 차단하여야 한다;

흡음(Drinking) / 스폰징(Sponging) 및 리프레시먼트 스테이션(Refreshment Stations)

8. 휠체어 경기 제외:

- a)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에는 물과 기타 적절한 다과가 배치되어야 한다;
- b) 모든 경기의 경우, 물은 대략 5km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10km가 넘는 종목에서는 물 이외의 다과도 이러한 지점에 배치할 수 있다;

참고 (i): 상황이 허락한다면 경기의 성격, 날씨 상태 및 참가자들의 주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물 및 다과들이 경로를 따라서 더욱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될 수 있다.

참고 (ii): 분무(Mist) 스테이션도 대회 조직 또는 날씨 상황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코멘트: 분무(Mist) 스테이션이 위치해 있을 경우, 이는 코스의 전체 너비의 폭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는 선수들이 달리거나 휠체어를 굴리며 젖지 않게 하도록 위함이다. 휠체어 선수들은 미는 바퀴 및 글러브가 젖으면서 추진력을 얻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분무 스테이션을 선호하지 않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 c) 다과에는 음료, 에너지 보충제, 식품 또는 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들이 포함될 수 있다. LOC는 우선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다과가 제공될지 결정할 것이다;
- d) 다과는 일반적으로 LOC에 의해 제공되지만, 선수가 어떤 공급소에서 다과를 제공받을 것인지 지정한 경우, 선수 본인(및 선수의 가이드러너)이 직접 본인의 다과를 조달할 수 있다. 선수(및 선수의 가이드러너)가 준비한 다과는 선수 또는 대리인이 맡겨 놓은 때부터 LOC가 지정한 임원의 감독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 해당 임원들은 이러한 다과들이 뒤바뀌거나 다른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e) LOC는 차단막, 테이블, 표시 등을 통해 다과들이 접수되거나 모아질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과들은 정해진 방식 내에서만 직접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과들은 접근이 용이하거나 승인된 인원에게 의해서 해당 선수(또는 선수의 가이드러너)에게 전달되기 용이하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다과를 전달하는 인원들은 지정된 장소 내에 머물러야 하며 코스로 들어가 다른 선수들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수가 다과 또는 물을 전달받을 때 임원이 해당 선수의 곁에서 움직이면 안된다;

- f) IPC 경기 및 IPC 대회(파트 B - 3.1.2 (a) 및 (b) 참조)의 경우, 기술 규정에 의해 리프레시먼트 테이블에 추가 임원을 허용할 수 있다;

참고: 국가에서 3명 이상의 선수를 출전시킨 경기의 경우, 기술 규정에 의해 리프레시먼트 테이블에 추가 임원을 허용할 수 있다.

코멘트: 2011년에 채택된 규칙 49의 개정판에는 외부 사건과 관련된 규칙의 조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논리적이었고 관행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이 규칙에서 처음으로 팀 임원과 리프레시먼트 테이블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었다.

- g) 선수 및 선수의 가이드러너는 출발할 때 또는 리프레시먼트 스테이션에서 전달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언제든지 물이나 다과를 손에 들거나 몸에 부착해서 운반할 수 있다;
- h) 의료상의 이유로 레이스 임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임원의 지시 하에 제공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리프레시먼트 스테이션 이외의 장소에서 다과 또는 물을 전달받거나 다른 선수 및 가이드러너의 음식물을 받은 선수 및 선수의 가이드러너는 첫 번째 위반 시 심판장이 일반적으로 옐로카드를 발행하는 경고를 받는다.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심판장이 일반적으로 레드카드를 발행하며 해당 선수를 실격 처리한다. 실격된 선수는 즉시 레이스 코스를 이탈하여야 한다.
- i) 가이드러너는 다과가 제공되거나 모아질 수 있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선수에게 전달되는 경우 공식 스테이션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중인 선수를 위한 다과를 모을 수 있다. 가이드러너는 지정된 구역 이외의 선수 또는 가이드러너에게 다과를 전달할 수 없다.

참고: 선수 및 가이드러너는 스타트 지점에 운반되었거나 공식 스테이션에서 모아지거나 받았을 경우 선수 및 가이드러너 끼리 다과, 물, 혹은 스펀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선수 및 가이드러너가 한 명 이상의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경고 및 실격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코멘트: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과 수집은 지정된 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지정된 구역 밖에서 가이드러너가 선수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휠체어 선수들(스포츠 등급 T33-34, T51-54)은 개인 리프레시먼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참고: LOC는 전맹 또는 부분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선수들(T11-13) 또는 상지 장애가 있는 선수들(T45-46)에게 음료수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특정 안전문제에 대해 임원들이 이해하도록 하고 모든 해당 조력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레이스 진행

9. 로드 레이스의 경우, 선수는 임원의 승인 및 감독 하에 선수는 표시된 코스를 벗어날 수 있다. 단, 그러한 코스 이탈로 경기 거리가 단축되어서는 안된다.
10. 만일 심판장이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을 해서 경기 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선수는 실격처리를 당한다.

코멘트: 피니시구역은 여러선수거나란히달릴수있을정도로넓어야하며,피니시구역에서 이들을분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한다. 트랜스폰더 계측 시스템이 피니시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백업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이상(예를 들면 비디오 녹화), 피니시 레인(funnels)은 피니시 라인에서부터 8~10m 지점에 최대 0.70~0.80m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피니시 레인(funnels)에 들어온 이후, 선수들은 서로를 추월할 수 없다. 피니시 레인(funnels)은 35~40m가량 길어야 하며 이는 선수들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라고 안내받을 것이다. 각 피니시 레인(funnels)의 종료 이후, 임원들은 선수들의 이름/연락처를 적어놓고 가능한 경우 그들의 트랜스폰더 계측칩을 복구시킬 것이다.

레이스 레인(funnels)은 선수가 입장하는 양 쪽 끝부분에 이동 가능한 로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 레인이 가득 찰 경우, 다음 로프를 마지막 선수 뒤로 끌어서 다음 피니셔가 새 결승 레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원 및 계시원(타임키퍼)은 피니시 라인 양쪽에 추가로 배치되며, 피니시 순서와 관련된 항소를 파악하기 위해 가능하면 비디오 기록 장비를 갖춘 임원(가능하다면 시야에 타이밍 시계 위치)을 임명하고 결승선 몇 미터 뒤에 배치시켜 기록을 하도록 권장한다.

로드 레이스가 주행 트랙에서 결승선을 통과할 경우, 규칙 18.5(차선 침범)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로드 레이스가 끝날 때 선수가 표시된 코스를 단축할 의도로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심판은 이규칙 49.10을 적용해야 한다.

11. 감찰원은 각 주요 지점에 주기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른 감찰원은 레이스 동안 코스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코멘트: 규칙 49의 관련 측면을 적용할 때 먼저 경고를 보내는 관행을 따르며, 해당되는 경우 규칙 7.2 및 7.3을 적용하면 구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기회가 발생할 경우 심판장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한 가지 옵션은 코스 혹은 리프레시먼트 스테이션 감찰원이 보조 심판장으로 임명되고 경고와 실격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끼리 소통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규칙 7.2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는 실격이 경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 트랜스폰더 타이밍 시스템이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추가적인 백업 녹화 시스템이 요구될 경우, 규칙 49.10에 설명된 것과 같은 레이스 레인(funnels/편널)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2. LOC는 각 스포츠 등급들 사이에 구별이 가도록 배번호를 제공한다.

13. 로드 레이스에서 스포츠 등급 T11-12 선수들은 최대 2명의 가이드러너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체를 할 때에는 항상 다른 선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마라톤 레이스를 위한 10km, 20km, 21.1km (절반) 또는 30km 지점, 하프 마라톤의 경우 10km 지점, 10km 레이스의 경우 5km 지점에서 교체를 하여야 한다.

참고 (i): LOC는 해당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좋은 일광조건에서 치러지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 (ii): 가이드러너 교체가 있었을 경우, 기록 인정을 위해서는 해당 선수 및 교체된 가이드러너는 두 명 모두가 경기를 끝마쳐야 한다.

참고 (iii): 코스의 구조(set up)에 따라, 교차로는 기술 대표(들) 및 LOC의 결정에 따라 마크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차로 마크는 레이스 시작 전 적합한 시간에 선수들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14. 가이드러너를 교체할 의향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심판장 및 기술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기술 임원들은 교체 조건을 결정할 것이며 선수들에게 미리 전달할 것이다.

참고: 기술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수는 레이스에서 실격 처리를 당할 것이다.

드래프팅

(스포츠 등급 T33-34, T51-54)

15. 스포츠 등급 T33-34, T51-54가 함께 참가하는 로드레이스 경기가 있는 파트 B - 3.1.2 아래 WPA 공인 대회인 경우, 다른 스포츠 등급 또는 다른 성별의 선수 뒤에서 드래프팅 하는 것이 금지된다. 선수들은 또한 모터가 달린 차량 혹은 자전거 뒤에서 드래프팅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 선수는 실격 처리될 것이다.

참고 (i): 드래프팅이란 5m 미만의 거리에서 1분동안 다른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기록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 (ii): 로드 레이스에서 스포츠 T53과 T54는 한 개의 등급으로 간주된다. 규칙 49.15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해

16. 규칙 18.2, 18.3 및 규칙 18.4의 조항은 로드 레이스에 적용된다.

섹션 VII - 소청 및 항소(이의제기)

규칙 50: 소청 및 항소(이의제기)

(규칙 146)

본 소청 규정들은 등급분류 혹은 반도핑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등급분류와 반도핑 문제는 세계 반도핑기구 코드 및 WPA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독점적으로 다루진다.

소청

1.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신분(등급분류와 반도핑에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소청은 반드시 대회 시작 전 기술위원장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기술위원장이 결정을 내린 경우, 항소 배심원에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의 제기된 문제가 시합 전에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수는 '소청 중' 상태로 경기를 참가하게 되고, 이 사안은 IPC에 회부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WPA는 해당 경기 종료 후 해당 선수의 상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한 해당 선수의 경기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2. 경기 결과 또는 특정 경기의 진행에 대한 소청은 해당 경기의 공식 결과 발표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LOC는 모든 결과 발표 시간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코멘트: 일반적으로 이는 결과가 TIC에 개시되거나(개시된 결과시트에 시간도 기재) 대회 기술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30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항소 배심원의 서기는 절차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없을 경우, TIC의 누군가가 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즉, 시간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심판장과의 논의를 주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모든 소청은 선수 혹은 선수 대리인이 선수단의 공식 대표를 통해 심판장에게 구두로 제기되어야 한다. 해당 인원 또는 팀은 소청(또는 이에 따른 항소)과 관련된 대회의 동일한 라운드에서 경기를 할 때(또는 팀 포인트 스코어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에 참가 중일 때)에만 소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심판장은 가능한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해당 소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해당 사안을 항소 배심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심판장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 배심원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다. 심판장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항소는 TIC 또는 공식적인

경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타 관리 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트랙 경기의 경우

- a) 만일 선수가 부정출발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즉시 이의제기를 하였을 경우, 출발 심판장(또는 임명되지 않은 경우, 관련 트랙 심판)은 본인이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선수가 "소청 중" 상태로 시합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예외적으로 심판장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세계육상 공인 출발정보시스템에 의해 부정출발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청 중" 상태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b) 스타터의 잘못으로 인한 잘못된 출발을 다시 하기 위해, 또는 규칙 17.5에 따라 스타트를 중단하기 위해 소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소청은 해당 레이스에 참가했던 선수 혹은 선수의 대리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소청이 인정된 경우, 부정출발 행동을 한 선수의 출발은 중단되며, 규칙 17.5 또는 17.7, 17.8에 따라 경고 또는 실격의 대상이 되는 선수들은 경고 또는 실격을 받게 된다. 경고 또는 실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심판장은 해당 경기 혹은 경기의 일부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무효화된 경기 또는 경기의 일부는 심판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참고: 규칙 50.4(b)에 나오는 소청 및 항소에 대한 권리는 스타트 정보 시스템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c) 소청 또는 항소가 선수의 부정출발에 의한 잘못된 제외 때문이고 레이스 종료 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때, 선수는 경기에서 기록을 기록하기 위해 스스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 후속 라운드에 진출하여야 한다. 심판장 혹은 항소 배심원이 사례의 특정 상황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예를 들어 다음 라운드 이전의 시간이나 경기 기간 등), 어떠한 선수도 후속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다.

참고: 본 규칙은 적절하다고 여겨질 경우 심판장, 항소 배심원에 의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규칙 18.2 참고).

- d) 소청이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한 선수 혹은 팀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심판장은 선수 혹은 팀이 소청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의해 실격을 당했거나 당했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소청 건은 기각된다.

코멘트: 스타트 심판장이 부정출발로 기소된 선수의 즉각적인 구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는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하며, 만일 선수의 소청이 유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례일 경우, 심판은 선수를 "소청 중" 상태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레이스 후, 배심원에게 항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최종 결정은 심판장이 내려야 한다. 하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판장은 만일 부정출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스타트정보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경우 혹은 선수가 부정출발을 했다는 것이 육안으로 명확히 보일 경우 및 소청을 승인할 유효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심판장은 선수를 "소청 중" 상태로 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없다.

이 규칙들은 스타터가 부정출발을 리콜하지 못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스타터가 올바르게 스타트를 중단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심판장은 특정 사례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레이스(혹은 일부분)가 재실시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극단적인 상황의 두 가지 예를 들자면, 완주한 선수가 부정출발에 책임이 있는 경우, 마라톤 레이스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필요하다. 하지만 선수가 스프린트 경기에서 리콜되지 않은 부정출발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다른 선수의 스타트 및 경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같은 경우가 아닐 것이다.

반면, 예를 들어 예선전에서 한명 또는 일부 선수들이 부정출발에 대한 리콜을 못했거나 스타트를 못함으로써 명확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심판은 해당 선수들에게만 다시 뛸 기회를 준다고 결정을 할 수 있다 - 그럴 경우 어떤 조건 하에서 다시 뛸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규칙 50.4 (c)는 선수가 부정출발을 해서 경기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다룬다.

5. 필드 경기에서 선수가 무효시기 판정을 받고 구두로 즉각적인 소청을 제기했을 경우, 해당 경기의 심판장은 관계된 모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 재량으로 그 시기를 측정하고 결과가 기록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약 소청된 시기가 생겼을 경우:
- a) 8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한 수평 필드경기에서 처음 세 번의 라운드 중 소청이 발생했을 경우, 오직 소청 또는 그에 따른 항소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그 선수는 최종 라운드로 진출을 할 것이다. 또는;
 - b) 수직 필드 경기에서 소청 또는 그에 따른 항소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만 해당 선수가 다음 높이를 시도할 수 있을 경우, 심판장은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때 관계된 모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선수가 "소청 중"상태로 시합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코멘트: 심판장이 특히 본인의 관찰 또는 비디오 심판장으로부터의 조언을 통해 심판원의 결정이 정확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선수는 시합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즉각적인 구두에 의한 소청 대상에 대한 시기의 측정을 결정하여야 할 때, 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a) 명확한 규칙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 해주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멀리뛰기에서 대상의 선수가 만든 명확한 표시가 점토에 있다거나, 투척 경기에서 도구가 명확히 섹터 밖에 착지하였을 경우;
- (b) 의심스러운 점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해주어야 한다(대회에 딜레이가 안 생기도록 즉시). 본 규칙의 좋은 적용은 스파이크와 프리즘을 가지고 있는 심판원이 빨간 깃발을 확인하더라도 항상 착지 지점에 표시를 남기는 것이다(도구가 확실히 섹터 밖에 착지하는 경우의 투척경기 제외). 이는 선수가 즉각적인 구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을 차치하고, 또한 깃발을 가지고 있는 심판원이 실수로 잘못된 깃발을 들었을 수도 있다.

6. 소청 받은 선수의 결과 또는 "소청 중"상태에서 달성된 다른 모든 결과는 선수의 해당 시기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것으로 판정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선수가 규칙을 지켜 시합을 했다고 추후에 밝혀졌을 때에만 유효하게 된다.

선수가 결과적으로 "소청 중" 상태로 경기에 참가하는 필드 경기의 경우, 다른 선수는 대회를 지속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수의 기록 및 경기 결과는

“소청 중”상태의 선수의 구두 소청이 성공적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유효할 것이다.

소청 항소

7. 소청 결과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항소는 반드시 아래의 상황 이후 30분 이내에 항소 배심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 a) 심판장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경기에서 변경된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난 후. 또는;
 - b) 결과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을 때 소청을 한 당사자들에게 심판장 또는 심판장을 대신할 권고가 주어진 후.

항소는 선수 또는 선수단을 대신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NPC 임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 양식이어야 하고, 항소비 200유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회/개최국의 화폐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항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항소비는 몰수된다. 선수 또는 팀은 오직 본인들의 항소와 관련된 종목의 동일한 라운드에서 경기하는 경우(또는 팀 포인트 점수가 실시중인 경기에 참가 중이었이던 경우)에만 항소할 수 있다.

참고: 관련 심판장은 소청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즉시 TIC에 판결을 내린 시간을 알려야 한다. 만일 심판장이 이에 대해 해당 선수단/선수에게 구두로 공지할 수 없는 경우, 공식발표 시간은 개정 결과의 발표 또는 TIC에 판결이 전해진 시점으로 한다.

8. 항소 배심원단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기타 다른 증거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것이다. 확보 가능한 모든 영상 증거를 포함한 이러한 증거들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심판장의 판결이 인정될 것이다.
9. 항소 배심원단은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을 경우 새 결정이 여전히 적용 가능함을 제공하는 경우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관련 운영기관이 다른 것을 정당화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려사항은 오직 해당 경기에 대한 시상식 전에만 수행할 수 있다.

코멘트: 특정 상황에서 심판장(규칙 2.14.2) 및 배심원은 여전히 적용 가능하고 실제적인 경우 각자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10. 본 규칙에서 다루지지 않는 사항과 관련된 결정은 항소 배심원 의장이 WPA가 임명한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심판 및 항소배심원의 결정(본 규칙에 따른 항소 대상)은 최종적이며, CAS를 포함한 다른 기관에 항소할 권리는 더 이상 없다.

코멘트: 항소가 있을 경우, 항소비의 지불(200유로 또는 이와 동등한 현지 통화)은 시상식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이는 항소 배심원이 분쟁중인 모든 당사자의 권리가 존중된다는 결정을 재고하고 원래 결정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배심원단의 이전 결정을 통해 항소비를 반환한 후 항소 배심원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없다.

WPA 공인 대회에서의 분쟁 절차

WPA 대회 승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LOC는 WPA 임명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WPA 인정 대회(파트 B-3.1.2참고)에서 소청과 소청 항소 범위를 벗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할 것이다.

특정 대회에서 분쟁절차 관련 정보는 해당 대회의 대회 매니저 혹은 WPA 기술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섹션 VIII - 세계 및 지역 기록

규칙 51: 세계 및 지역 기록

(규칙 260 및 규칙 261)

WPA 세계 기록 및 지역 기록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WPA 홈페이지를 참조:

www.worldparaathletics.org

코멘트: 홈페이지에 포함된 내용은 현행 기록 등록 양식이다.

제출 및 승인

1. WPA 세계기록 및 지역기록은 파트 B - 4에 명시된 대로 아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적합한 선수가(릴레이 경기의 경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WPA 공인대회에서만 획득할 수 있다:
 - a) 스포츠 등급 상태 승인(C), 혹은;
 - b) 확정된 재검 날짜가 있는 스포츠 등급상태 재검®의 날짜가 기록이 세워진 날 이후일 경우.
2. 규칙 4.7 및 4.8에 의해 실시된 트랙 경기 혹은 규칙 49에 따라 경기장 밖에서 치러진 대회가 아닌 이상 혼성 대회에서 획득한 선수의 기록은 승인되지 않는다.

참고: 여성전용 로드 레이스 기록은 규칙 51.22에 명시된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3. 다음의 기록들은 WPA에 의해 허용된다: 세계 실외 기록 및 지역 실외 기록.
4. 기록을 새운 선수(릴레이 경기의 경우 선수들)는 본 규정 및 규칙에 적합하게 대회를 치러야 하며, IPC 소속 단체의 관련된 대회에 참가하였어야 한다. 본 규정 및 규칙들의 적용은 관련 대회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5. WPA 기술대표가 관련 WPA 공인대회(파트 B-3.1.2참조)에 임명되었을 경우, 그는 이 규칙의 절차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6. 기록이 동일하거나 기존의 기록보다 더 높을 경우, 국가 운영 기관은 WPA에 의한 기록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함께 수집하여야 한다. WPA에 의해 승인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기록도 기록으로 간주될 수 없다. 국가 운영 기관은 기록의 제출의사를 즉시 WPA에 알려야 한다.
참고: 본 규칙에서 국가 운영 기관은 각 경기에 선수를 파견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 패럴림픽위원회 혹은 국가의 장애인 체육을 책임지는 NF가 될 수 있다.
7. 제출된 기록은 WPA에 의해 승인된 경기의 기록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야 한다. 기록이 동일할 경우, 기존 기록과 동일한 상태로 인정된다.
8. WPA 공식 기록 신청 서류는 기록이 세워지고 30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WPA 기록 신청서는 요청에 따라 WPA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으며, 또는 WP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www.paralympic.org/athletics/about/official-documents>
참고: WPA 기록 신청 서류는 WPA 승인대회에서의 기록을 위해 필요하다(파트B-3.1.2(d)참조).
9. 기록이 세워진 국가 운영 기관은 WPA 기록 신청 서류와 다음의 내용을 함께 보내야 한다:
 - a) 인쇄된 대회 프로그램(혹은 전자 파일로 된 동일한 내용);
 - b) 본 규정 아래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 공식 경기 결과;
 - c) 자동화 타이밍이 작동된 트랙 기록의 경우, 포토 피니시 사진과 트랙 경기 및 800m와 4x400m 릴레이를 포함한 제로 컨트롤 테스트 이미지 사진
 - d) 규정에 의해 필요한 모든 기타 정보는 제출되어야 한다.
10. WPA 세계 및 지역 기록은 다음의 대회에서 세워졌을 경우에 한해 승인해 준다:
 - a) IPC 반도핑 코드에 따라 진행된 IPC 경기, IPC 대회 혹은 WPA 인정 대회(파트B-3.1.2(a)부터(c)까지 참조). 또는;

b) 관련 운영 기관의 반도핑 규칙 및 WADC 국제 표준에 따른 랜덤 대회 내 테스트(소변 또는 혈액+소변)에 따라 진행된 WPA 승인 대회.

참고 (i): 기록 승인을 위해, 스포츠 등급 T61-62 선수가 달성한 모든 세계 및 지역 실외 기록은 기록 인증을 위해 소집실에서 진행될 MASH 재측정을 받아야 한다.

참고 (ii): 대회에서 기록을 새운 선수가 테스트를 받지 않았더라도 WPA 세계 및 지역 기록은 승인된다.

11. 예선전, 동 순위 해결, 무효 판정을 받은 경기들에서 세워진 기록은 승인을 위해 접수될 수 있다.

12. WPA 운영팀은 기록 인정에 대한 권한이 있다.

13. 기록이 승인된 경우, WPA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기록을 새운 선수에게 공식 기록 증명서를 제공할 것이며, 기록은 WPA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고 확인이 가능하다.

14. WPA는 새 기록이 승인될 때 마다 공식 기록 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것이다. 이 리스트는 리스트의 날짜에 따라 각 경기에서 선수 혹은 팀이 새운 최고의 기록을 대변할 것이다.

15. 기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WPA는 그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세부 수칙

16. 로드 경기에서의 제외:

a) 기록은 규칙 3에 따라 인증된 육상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 거리가 200m 혹은 그 이상일 때 기록을 인정받으려면, 그 기록이 수립된 트랙은 402.3m(440야드)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레이스는 둘레의 한 부분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c) 기록은 바깥 레인의 반경이 50m를 초과하지 않는 계란형 트랙 경기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단, 곡선 주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원호 중 더 긴 원호가 180도 중 60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d) 규칙 15에 따라 실외 트랙 경기의 기록은 오직 트랙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17. 트랙 경기에서의 기록(달리기 및 휠체어 레이스)

- a) 기록은 공식 계시원, 승인된 완전 자동 사진 판정 시스템(규칙 20.20에 따라 제로 컨트롤 테스트가 실시된) 혹은 트랜스폰더 시스템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규칙 20.25참고);
- b) 800m(4x400m 포함) 이내의 레이스의 경우, 오직 승인된 완전자동 사진판정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기록만이 승인될 것이다.
- c) 200m 이내의 모든 실외 기록의 경우, 본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풍속의 측정도 제출되어야 한다. 달리는 방향의 풍속이 2m/s를 초과할 경우, 기록은 승인되지 않는다.
- d) 규칙 18.6(c) 및 18.6(d)에서 다루는 경우가 해당 사건의 첫 번째 침해가 아닌 한, 선수가 규칙 18.5를 위반하였을 때 어떠한 기록도 승인되지 않는다;

코멘트: 규칙 18.6의 개정은 선수 또는 계주 팀이 기록 시간을 달성하고, 해당 경기에서 해당 선수(또는 계주 팀의 모든 선수)가 규칙 18.6(c)또는 18.6(d)에 따라 단일 위반을 범한 경우, 1라운드 이상의 경기의 경우, 해당 기록은 승인될 수 있다. 선수 또는 계주 팀이 기록 시간을 달성하고, 해당 경기에서 위반이 두 번 이상 발생하거나, 선수 또는 계주 팀이 동일한 경기의 이전 라운드에서 해당 위반을 이어받은 경우, 기록은 승인될 수 없다.

- e) 400m(4x400m 포함)이내의 기록의 경우, 가능할 경우 스타팅 블록에 연결된 세계육상 공인 스타트 정보 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획득한 반응 시간이 경기 결과에 표시되어야 한다.

18. 릴레이 경기에서의 기록

릴레이 팀의 첫 번째 선수가 새운 시간 기록은 기록 으로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 필드 경기에서의 기록

- a) 규칙 10에 따라 기록은 바, 교정 및 인증된 스틸 테이프를 사용하는 3명의 필드 심판원 또는 승인된 과학적 측정 장치와 자격을 갖춘 측정 심판원에 의해 확인된 정확성에 의해 측정된다;
- b) 멀리뛰기 및 세단뛰기의 경우, 풍속과 관련된 정보는 점프의 방향으로 초당 2m 이상 측정되면 기록은 승인되지 않는다;
- c) 기록은 경기에서 하나 이상의 기록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된 각 기록은 순간 이전의

가장 좋은 기록보다 동일하거나 우수하여야 한다;

- d) 규칙 2.11에 따라 투척 경기에서 도구 사용은 경기 전에 확인되어야 한다. 경기 중 기록이 동일하거나 우수하다는 것을 심판장이 알았을 경우, 심판장은 즉시 도구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규칙을 준수하거나 특성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규칙 2.11에 따라 경기 후 도구는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

20. 로드 경기(달리기 및 휠체어 레이싱)에서의 기록

- a) 코스는 규칙에서 요구하는 관련 측정 보고서 및 기타 정보의 요청 시 WPA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는 "A" 또는 "B" 등급의 세계육상/AIMS 공인 측정사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 b) 코스의 시작과 끝 지점은 그들 사이의 이론적인 직선을 따라 측정하며, 레이스 거리의 50% 이상 떨어져 있어서는 안된다;
- c) 시작과 끝 사이의 고도의 전반적인 감소는 1:100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예: 1km당 1m(0.1%));
- d) 본래 코스 또는 다른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식 코스를 측정하는 측정자는 선수에 의한 코스 진행은 공식 코스 측정가에 의해 측정되고, 코스와 문서를 따르는지 검증하기 위해 대회 기간 중 선두 차량에 타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측정 코스를 자세히 설명하는 문서의 사본과 함께 지정된다;
- e) 코스는 반드시 레이스 전 가능한 한 늦게, 레이스 당일 또는 레이스 후 훈련하자마자 원래 측정했던 것과 다른 "A"급 측정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참고: 만일 코스가 원래부터 최소 2명의 "A" 등급 혹은 각각 한 명씩 "A" 및 "B" 등급 측정가에 의해 측정되었을 경우, 본 규칙 아래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 f) 규정에 따라 설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경주 내 로드 경기의 기록은 중간거리로 설정된다. 중간거리는 반드시 측정, 기록 및 코스 측정 시 한 부분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21. 기타 기록(규칙 265)

- a) 경기, 선수권대회, 당일대회 및 다른 유사한 기록들은 LOC 혹은 대회를 관장하는 담당 기관에 의해 수립될 수 있다.
- b) 기록은 풍속 측정값을 제외하고 해당 경기에서 달성한 최고 기록을 인지하여야 한다. 풍속 측정은 경기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한 무시할 수 있다.

22. 기록 공인 경기

완전 자동 전자 계측 기록(Fully Automatically Timed performances (F.A.T.))

수동 계시 기록(Hand Timed performances (H.T.))

트랜스폰더 계시 기록(Transponder Timed performances (T.T.))

남성

F.A.T. 전용: 100m; 200m; 400m; 800m; 4x100m 릴레이; 4x400m 릴레이;

F.A.T. 혹은 H.T.: 1500m; 5000m; 10,000m;

로드 레이스

F.A.T. / H.T. 혹은 T.T.: 10km; 하프마라톤; 마라톤

도약: 높이뛰기 ;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 포환; 원반; 창; 곤봉

여성

F.A.T. 전용: 100m; 200m; 400m; 800m; 4x100m 릴레이; 4x400m 릴레이;

F.A.T. 혹은 H.T.: 1500m; 5000m; 10,000m;

로드 레이스

F.A.T. / H.T. 혹은 T.T.: 10km; 하프 마라톤; 마라톤

도약: 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 포환; 원반; 창; 곤봉;

혼성

F.A.T. 전용: 4x100m 혼성 릴레이

참고 (i): 여성 전용 로드 레이스에서는 여자 출발 시간과 남자 출발 시간을 분리하여 스테이지를 진행할 수 있다. 한 랩 이상 같은 코스에서 보조, 페이스, 드래프팅 혹은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간차를 선택하여야 한다.

섹션 IX - 메달 및 수료증(상장) 수여

규칙 52: 메달 및 수료증(상장) 수여

1. WPA 공인 대회인 경우 오직 결승 진출자만이 메달을 받을 수 있다.

릴레이 경기의 경우, 결승에 참가한 메달 받을 자격이 있는 각 팀의 4명의 선수 및 가이드러너(들)은 시상대에 올라갈 것이다. 규칙 23.10에 따라 대회에서 해당 팀들을 위해(대표해) 참가한 나머지 선수 및 가이드러너(들)은 나중에 본인의 메달을 수여 받을 것이다.

2. 선수들은 최종 엔트리 상에 가이드러너를 지명할 수 있다. 최종 승인에 의해 선언되었으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가이드러너들만이 메달을 획득한 선수 옆에서 메달을 수여 받을 수 있다.

a) 시각장애 선수들의 여러 명의 가이드러너를 사용하여 경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개인 경기의 경우, 선수와 함께 경기 전체(첫 경기부터 결승까지)에 참여한 가이드러너만이 선수와 함께 메달을 받을 수 있다.

참고 (i): 필드경기인 보조자들은 메달을 받을 수 없다.

참고 (ii): 선수가 1명 이상의 가이드러너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가이드러너들은 메달을 받을 수 없다.

b) 릴레이 경기의 경우, 결승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와 동행한 가이드러너(들)은 시상식 단상에 올라가 메달을 수여받을 것이다.

참고: 경기의 이전 라운드에 참여한 선수들 및 가이드러너들은 추후에 메달을 수여 받을 것이다.

3. 시각장애 선수들이 여러 명의 가이드러너를 사용하여 경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개인 경기의 경우, 트랙 및 로드 경기에서의 모든 가이드러너들(다수의 가이드러너가 참가한 경기 포함)은 대회에 적용 가능한 관련 프로토콜 가이드에 명시된 수료증 정책에 따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4. 대회 중 스포츠 등급의 변경은 선수의 결과(들), 순위 및 기록(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트랙 및 필드 경기에 적용될 수 있다. 엔트리의 재등록은 본 규칙 5.3에 따라 기술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트랙 경기

수정된 스포츠 등급이 해당 경기에 여전히 적격한 스포츠 등급일 경우, 엔트리의 재등록은 요구되지 않는다. 선수에 의해 세워진 결과, 순위 및 상금은 유효하다.

수정된 스포츠 등급이 해당 경기에 적격한 스포츠 등급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선수가 획득한 기록은 유효할 것이지만 순위 및 상금은 무효가 될 것이다.

필드 경기

수정된 스포츠 등급이 해당 경기에 여전히 적격한 스포츠 등급일 경우, 엔트리의 재등록은 요구되지 않는다. 포인트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 순위와 상금을 결정하는 포인트는 수정된 스포츠 등급에 맞게 다시 계산될 것이다. 수정된 스포츠 등급에서 동일한 대회(경기) 규칙을 적용할 경우 선수가 획득한 기록은 유효하다.

수정된 스포츠 등급이 해당 경기에 적격한 스포츠 등급의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선수가 획득한 기록은 수정된 스포츠 등급에서 동일한 대회(경기) 규칙을 적용할 경우 유효할 수 있으나, 순위 및 상금은 무효가 될 것이다.

부록 1

세계장애인육상 스포츠 등급별 용기구 무게

스포츠 등급 F11-13

연령 그룹	등급	원반 남성	원반 여성	창 남성	창 여성	포환 남성	포환 여성
오픈	F11-13	2.00kg	1.00kg	800gr	600gr	7.26kg	4.00kg
20세 이하	F11-13	1.75kg	1.00kg	800gr	600gr	6.00kg	4.00kg
17세 이하	F11-13	1.50kg	1.00kg	700gr	500gr	5.00kg	3.00kg

스포츠 등급 F20

연령 그룹	등급	원반 남성	원반 여성	창 남성	창 여성	포환 남성	포환 여성
오픈	F20	2.00kg	1.00kg	800gr	600gr	7.26kg	4.00kg
20세 이하	F20	1.75kg	1.00kg	800gr	600gr	6.00kg	4.00kg
17세 이하	F20	1.50kg	1.00kg	700gr	500gr	5.00kg	3.00kg

스포츠 등급 F31-38

연령 그룹	등급	원반 남성	원반 여성	창 남성	창 여성	포환 남성	포환 여성	곤봉 남성&여성
오픈 및 20세 이하	F31	NE	NE	NE	NE	NE	NE	397gr
	F32	1.00kg	1.00kg	NE	NE	2.00kg	2.00kg	397gr
	F33	1.00kg	1.00kg	600gr	600gr	3.00kg	3.00kg	NE
	F34	1.00kg	1.00kg	600gr	600gr	4.00kg	3.00kg	NE
	F35	1.00kg	1.00kg	600gr	600gr	4.00kg	3.00kg	NE
	F36	1.00kg	1.00kg	600gr	600gr	4.00kg	3.00kg	NE
	F37	1.00kg	1.00kg	600gr	600gr	5.00kg	3.00kg	NE
	F38	1.50kg	1.00kg	800gr	600gr	5.00kg	3.00kg	NE
17세 이하	F31	NE	NE	NE	NE	NE	NE	397gr
	F32	750gr	750gr	NE	NE	1.00kg	1.00kg	397gr
	F33	750gr	750gr	500gr	500gr	2.00kg	2.00kg	NE
	F34	750gr	750gr	500gr	500gr	3.00kg	2.00kg	NE
	F35	750gr	750gr	500gr	500gr	3.00kg	2.00kg	NE
	F36	750gr	750gr	500gr	500gr	3.00kg	2.00kg	NE
	F37	750gr	750gr	500gr	500gr	4.00kg	2.00kg	NE
	F38	1.00kg	750gr	600gr	500gr	4.00kg	2.00kg	NE

스포츠 등급 F40-46

연령 그룹	등급	원반 남성	원반 여성	창 남성	창 여성	포환 남성	포환 여성
오픈 및 20세 이하	F40,F41	1.00kg	750gr	600gr	400gr	4.00kg	3.00kg
	F42	1.50kg	1.00kg	800gr	600gr	6.00kg	4.00kg
	F43,F44	1.50kg	1.00kg	800gr	600gr	6.00kg	4.00kg
	F45,F46	1.50kg	1.00kg	800gr	600gr	6.00kg	4.00kg
17세 이하	F40,F41	1.00kg	750gr	500gr	400gr	3.00kg	2.00kg
	F42,	1.00kg	1.00kg	700gr	500gr	5.00kg	3.00kg
	F43, F44	1.00kg	1.00kg	700gr	500gr	5.00kg	3.00kg
	F45,F46	1.00kg	1.00kg	700gr	500gr	5.00kg	3.00kg

스포츠 등급 F51- 57

연령 그룹	등급	원반 남성	원반 여성	창 남성	창 여성	포환 남성	포환 여성	곤봉 남성&여성
오픈 및 20세 이하	F51	1.00kg	1.00kg	NE	NE	NE	NE	397gr
	F52	1.00kg	1.00kg	600gr	600gr	2.00kg	2.00kg	NE
	F53	1.00kg	1.00kg	600gr	600gr	3.00kg	3.00kg	NE
	F54	1.00kg	1.00kg	600gr	600gr	4.00kg	3.00kg	NE
	F55	1.00kg	1.00kg	600gr	600gr	4.00kg	3.00kg	NE
	F56	1.00kg	1.00kg	600gr	600gr	4.00kg	3.00kg	NE
	F57	1.00kg	1.00kg	600gr	600gr	4.00kg	3.00kg	NE
17세 이하	F51	750gr	750gr	NE	NE	NE	NE	397gr
	F52	750gr	750gr	500gr	500gr	2.00kg	2.00kg	NE
	F53	750gr	750gr	500gr	500gr	2.00kg	2.00kg	NE
	F54	750gr	750gr	500gr	500gr	3.00kg	2.00kg	NE
	F55	750gr	750gr	500gr	500gr	3.00kg	2.00kg	NE
	F56	750gr	750gr	500gr	500gr	3.00kg	2.00kg	NE
	F57	1.00kg	750gr	500gr	500gr	3.00kg	2.00kg	NE

스포츠 등급 F61- 64

연령 그룹	등급	원반 남성	원반 여성	창 남성	창 여성	포환 남성	포환 여성
오픈 및 20세 이하	F61,F63	1.50kg	1.00kg	800gr	600gr	6.00kg	4.00kg
	F62,F64	1.50kg	1.00kg	800gr	600gr	6.00kg	4.00kg
17세 이하	F61,F63	1.00kg	1.00kg	700gr	500gr	5.00kg	3.00kg
	F62, F64	1.00kg	1.00kg	700gr	500gr	5.00kg	3.00kg

부록 2

등급분류 체계표 - 패럴림픽 경기대회 및 세계 선수권대회



Class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	10000m	마라톤	높이뛰기	세단뛰기	멀리뛰기	원반	포환	창	Club	Class	
11					*	*	*	*	*			*	*	*		11	
12																12	
13																13	
20																20	
31																31	
32																32	
33													여성만 해당			33	
34																34	
35				35 & 38							35 & 38	35 & 38	35 & 38	35 & 38	여성만 해당	35	
36				36 & 38							36 & 38	36 & 38	여성만 해당	36 & 38	여성만 해당	36 & 38	36
37				37 & 38							37 & 38	37 & 38	37 & 38	37 & 38	37 & 38	Only Female	37
38				35, 36 or 37								35, 36 or 37		35, 36 or 37	35, 36 or 37	35, 36 or 37	38
40																40	
41																41	
61																61	
42																42	
63																63	
43																43	
62																62	
44																44	
64																64	
45																45	
46																46	
47																47	
51																51	
52	**	**	**	**												52	
53					***	***	***	***					****	****	****	53	
54																54	
55																55	
56																56	
57																57	

- 등급분류 계층 및/또는 기술규칙에 의해 통합되는 등급
- 존재하지 않는 등급/종목 조합 (2018).
- * 11등급은 12등급과 경기할 수 있다. 12등급은 13등급과 경기할 수 있다. 하지만 11등급과 13등급은 같이 경기할 수 없다.
- ** 가능한 조합: T51-53 혹은 T52-54.
- *** T53 과T54는 통합된 종목으로 경기한다.
- **** 가능한 조합: 세계의 연속된 등급간의 통합.
- ***** 가능한 조합: 53-57(여자) 혹은 54-57(남자) 사이에서 세계의 연속된 등급간의 통합.

부록 2

등급분류 계층표 2 - 지역 선수권 대회 및 지역 대회

Class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	10000m	마라톤	높이뛰기	세단뛰기	멀리뛰기	원반	포환	창	근봉	ss11
11																
12					*	*	*	*	*			*	*	*		12
13																13
20																20
31																31
32																32
33																33
34																34
35																35
36					35 & 38											36
37					36 & 38											37
38					37 & 38											38
40					35, 36 or 37											40
41																41
61																61
62																62
63									42, 44, 63, 64							63
64									42, 44, 63, 64							64
45																45
46																46
47																47
51																51
52	**	**	**	**												52
53					***	***	***	***				****	*****	****		53
54																54
55																55
56																56
57																57

 등급분류 계층 및/또는 기술규칙에 의해 통합되는 등급. Non existing
 존재하지 않는 등급/종목 조합 (2018).

* 11등급은 12등급과 경기할 수 있다. 12등급은 13등급과 경기할 수 있다. 하지만 11등급과 13등급은 같이 경기할 수 없다.

** 가능한 조합: T51-53 혹은 T52-54.

*** T53 과T54는 통합된 종목으로 경기한다.

**** 가능한 조합: 세계의 연속된 등급간의 통합. ***** 가능한 조합: 53-57(여자) 혹은 54-57(남자) 사이에서 세계의 연속된 등급간의 통합.



부록 3

세계장애인육상 입식 최대허용기립높이("MASH") 규정

February 2023

1 소개

1.1 이 부록에서는 세계 장애인 육상 규칙 및 규정의 목적상, 이 규칙은(“**MASH 규칙**”) 다음 스포츠 등급에서 양쪽 의족과 경쟁하는 선수의 MASH측정과 관련된 프로세스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

1.1.1 **T61 그리고/혹은 F61**

1.1.2 **T62 그리고/혹은 F62**

1.2 세계장애인육상 규칙 및 규정의 규칙 6.12.2항의 목적상, 선수평가를 완료한 선수만 WPA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세계장애인육상 등급분류 패널과 함께 평가세션에 참석하고, WPA 등급분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제1조에 명시된 스포츠 등급이 배정되면, 위 1명은 MASH 측정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 MASH 측정요원

2.1 세계장애인육상연맹은 측정요원(“**MASH Personnel**”)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개인에게 이 부록에서 언급한 과제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2.2 세계장애인육상연맹은 MASH측정요원의 훈련과 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세계장애인육상연맹은 MASH측정요원에게 측정과 인증을 위임할 수 있다.

2.3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등급분류자 또한 MASH측정요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MASH 측정세션

3.1 이 섹션에서는 선수들의 MASH(“MASH 측정세션”)를 측정 및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3.2 이 과정을 위해 세계장애인육상연맹은 최소 2명의 측정요원을 구성할 것입니다.

3.3 MASH 측정 세션에서 MASH 측정요원은 선수를 평가하고 부속문서 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수에게 MASH 측정결과를 부여할 것입니다.

3.4 본 부록의 규정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선수의 국가 혹은 당국의 패럴림픽 위원회는 책임을 진다. 선수가 국가 혹은 당국 패럴림픽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선수가 예정된 MASH 측정 세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 선수 관련 사항:

3.5.1 선수는 개인적으로 예정된 MASH 측정 세션에 참석할 책임이 있다.

3.5.2 선수는 MASH 측정 세션에 참석할 때 선수 국가 기관 또는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이하 "선수 지원자"라 한다)의 위원 1명과 동행할 권리가 있다. 선수가 미성년자이거나 자국의 법률에 따라 법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선수와 동행해야 한다.

3.5.3 선수(해당되는 경우 선수 지원 담당자)는 세계 장애인 육상 경기에서 지정한 선수 동의서 양식의 조건을 승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3.5.4 선수는 MASH 측정위원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권, 신분증, 또는 인증과 같은 문서를 제공합니다.

3.5.5 선수는 MASH 측정 세션에 참석하여 MASH를 측정하고 검진하기 위해 적절한 해부학적 불변 계측 점이 드러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3.5.6 선수는 MASH 측정위원이 제공하는 모든 합리적인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3.5.7 선수는 이에 책임이 있으며, 그에 해당되는 경우 선수 지원자는 선수의 장애 및 MASH와 관련된 정보가 적절한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는 WPA의 요청에 따라 WPA에게 제공됩니다.

3.6 MASH 측정위원 관련사항:

3.6.1 MASH 측정위원은 세계장애인육상경기(WPA)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영어로 MASH 측정 세션을 수행한다. 선수가 통역을 요청 할 경우, 선수의 국가 혹은 당국의 패럴림픽위원회의 구성원이 통역을 준비해야 한다. 통역사는 해당되는 경우, 선수지원 담당자와 함께 MASH 측정 세션에 참석할 수 있다.

3.6.2 MASH 측정위원이 MASH 측정 세션의 모든 측면을 수행하거나 선수의 MASH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MASH 측정 요원은 어떤 단계에서든 의학, 기술 또는 과학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4 MASH 측정 세션 중단

4.1 MASH 측정위원은 WPA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 이상에서 선수에게 정확한 MASH를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MASH 측정 세션을 중단할 수 있다:

4.1.1 선수가 본 MASH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1.2 선수가 MASH 측정위원과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4.1.3 선수가 MASH 측정위원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지침을 거부하거나 준수할 수 없는 경우.

4.2 MASH 측정 세션이 MASH 측정위원에 의해 중단될 경우, MASH 측정위원 및 WPA는 선수, 관련 국가 기관 또는 당국 패럴림픽 위원회에 중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선수 측에서 필요한 교정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 할 수 있다. (해당되는 경우)

4.2.1 선수가 해당 조치에 지정된 기간 내에 MASH 측정위원과 세계장애인육상경기(WPA)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경우, MASH 측정 세션이 재개된다.

4.2.2 WPA가 시정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교정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MASH 측정 세션이 종료되고, 선수는 WPA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WPA 공인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4.2.3 제4.2.2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선수가 새로운 MASH 측정 세션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WPA의 재량에 달려 있다. 선수가 새로운 MASH 측정 세션에 참석할 수 있는 경우, WPA는 새로운 세션의 장소, 날짜, 시간을 결정한다.

5 MASH 판독요청 (MASH Measurement Challenges)

5.1 MASH 판독의 유형과 MASH Challenge를 할 수 있는 사람.

5.1.1 선수의 MASH("MASH 판독")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도전에는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5.1.1.1 국가의 MASH 판독요청.

5.1.1.2 세계장애인육상연맹(WPA)의 MASH 판독

5.1.2 국가의 MASH 판독요청은 다음 단체 중 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5.1.2.1 국가 기관; 또는

5.1.2.2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

5.1.3 WPA MASH 판독은 오직 WPA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5.2 국가의 MASH 판독요청

5.2.1 국가 기관 또는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는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국가 MASH Challenge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2.2 국가 MASH 판독은 MASH 마스터 목록에 표시된 선수의 최종 배정된 MASH와 관련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2.3 국가 MASH 판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근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5.2.3.1 자연적인 골격의 성숙으로 인해 선수 골격 구조에 신장/높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 근거는 21세 생일 이전 또는 그 해 동안 관련 MASH 측정 세션이 수행된 선수에게만 적용되며, 선수의 MASH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체측정학 측정의 변경을 보여주는 의료 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5.2.3.2 의료상의 이유로 마지막 MASH 측정 세션 이후 선수의 키가 변경된 경우. 이 근거에 대한 신청서는 관련 의료 진단 및 선수의 MASH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체측정학 측정의 변경을 보여주는 뒷받침 의료 문서에 있어야 한다.

5.2.3.3 국가 기구 또는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가 MASH 측정 세션에서 절차상 오류가 발생하여 선수가 잘못된 MASH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5.2.4 선수는 국가 기구 또는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현재의 MASH에 따라 경기할 수 있어야 한다.

5.2.5 국가 MASH 판독요청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 또는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가 WPA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MASH 판독요청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5.2.5.1 선수의 이름과 IPC 스포츠 데이터 관리 시스템(SDMS) ID;
 - 5.2.5.2 측정된 MASH 판독의 세부사항 및 사본.
 - 5.2.5.3 국가 MASH 판독요청이 시행된 이유와 국가 기구 또는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가 선수가 배정한 MASH가 부정확하다고 믿는 근거에 대한 설명;
 - 5.2.5.4 위의 5.2.3항(해당되는 경우)에 명시된 판독요청 관련 근거에 대한 충분한 지원 문서; 그리고
 - 5.2.5.5 환불 불가 MASH 판독 수수료 150유로.
- 5.2.6 MASH 판독요청 문서는 가능한 빨리 세계장애인육상연맹(WPA)에 제출하고 SDMS에 업로드 해야 한다.
- 5.2.7 MASH 판독요청 신청서를 받은 세계장애인육상연맹(WPA)은 국가의 MASH 판독을 검토한다.
- 5.2.7.1 세계장애인육상연맹(WPA)이 국가 MASH 판독요청을 수락하면 WPA는 다음에 이용 가능한 MASH 측정 기회에서 새로운 MASH 측정을 수행할 MASH 측정위원을 임명한다. 선수는 MASH 판독위원회에 의해 새로운 MASH 측정 세션이 시작되기 전, 현재의 MASH로 경기할 수 있다. WPA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새로운 MASH 측정 세션이 MASH 측정위원회에 의해 수행될 장소, 날짜, 시간을 통지한다.
 - 5.2.7.2 세계장애인육상연맹(WPA)가 국가의 MASH 판독요청을 거부할 경우, 선수 MASH는 국가의 MASH 판독요청 이전에 MASH 마스터 리스트에 등재된 상태로 유지된다.
- 5.3 세계장애인육상 MASH 판독**
- 5.3.1 세계장애인육상연맹(WPA)는 소속 선수가 잘못된 MASH를 배정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MASH 판독요청을 할 수 있다.
 - 5.3.2 WPA가 MASH 판독을 결정할 경우, WPA는 MASH 판독의 관련 국가 기구 또는



국가 패럴림픽 위원회에 MASH 판독이 이루어진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5.3.3 세계장애인육상선수권 대회는 향후 장애인 육상 선수권 대회가 결정하는 장소, 날짜, 시간에서 새로운 MASH 측정을 수행할 MASH 판독 측정위원을 임명한다.
- 5.3.4 세계장애인육상선수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선수는 MASH 판독 측정위원회에 의해 새로운 MASH 측정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현재의 MASH에 따라 경기할 수 있어야 한다.
- 5.4 **MASH 판독 측정위원**
- 5.4.1 MASH 판독요원에는 선수의 MASH 측정 세션을 수행한 MASH 측정요원의 구성원이 포함되서는 안 된다.
- 5.4.2 MASH 판독요원은 이 MASH 규칙에 따라 새로운 MASH 측정 세션을 수행한다.
- 5.4.3 새로운 MASH 측정 세션이 완료되면, MASH 판독요원에 의해 선수에게 배정된 MASH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선수의 유일하고 유효한 MASH가 된다.

6 MASH 마스터 리스트

- 6.1 WPA는 세계장애인육상 웹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선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가, 스포츠 등급 및 스포츠 등급 상태, 현재의 MASH를 포함하여, MASH 마스터 리스트를 공개할 것입니다.
- 6.2 WPA는 국가 MASH 판독요청 승인 혹은 WPA MASH 판독이 이루어지면 WPA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선수의 MASH 마스터 리스트 옆에 선수의 현재 MASH 결과를 기재해 놓을 것입니다.

부속문서1: 양쪽 의족을 사용하는 선수들의 입식 최대허용기립높이(MASH) 결의안

의족을 사용하는 입식선수가 레이스, 도약, 투척하는 경우 (무릎 위 양쪽 절단, 무릎 아래 절단, 양쪽 하지 장애, 또는 무릎 위와 아래의 절단 결합), 최대 측정에 다음 공식이 적용됩니다. 다음 공식은 최대허용기립높이 측정에 적용됩니다. (모든 측정은 센티미터(cm)단위로 콤마 뒤의 1자리에서 반올림):

- 무릎 아래에 결합이 있는 선수의 경우:

남	$\begin{aligned} \text{최대높이} = & -5.272 + (0.998 \times \text{앉은 높이}) + (0.855 \times \text{허벅지}) \\ & + (0.882 \times \text{upper arm}) + (0.820 \times \text{forearm}) + 1.91 \end{aligned}$
여	$\begin{aligned} \text{최대높이} = & -0.126 + (1.022 \times \text{앉은 높이}) + (0.698 \times \text{허벅지}) \\ & + (0.899 \times \text{위팔}) + (0.779 \times \text{아래팔}) + 1.73 \end{aligned}$

- 무릎 위에 결합이 있는 선수의 경우:

남	$\begin{aligned} \text{최대높이} = & -5.857 + (1.116 \times \text{앉은 높이}) + (1.435 \times \text{위팔}) \\ & + (1.189 \times \text{아래팔}) + 2.62 \end{aligned}$
여	$\begin{aligned} \text{최대높이} = & -4.102 + (0.509 \times \text{팔의 너비}) + 0.966 \times \text{앉은 높이} \\ & + 2.14 \end{aligned}$

- 복합적 장애의 경우, 모든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최대높이 R²의 공식은 Canda 2009 간행물 (Canda, A. (2009) 젊은 성인의 신체길이를: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Anthropology 저널, 28(2): 71-82) PE 점수는 본 연구의 표4(남성) 또는 표5(여성)의 공식에 추가된다. (부록2 참조)
- 상지 측정을 할 수 없는 복합적 장애의 경우, 입식 높이는 다음 공식에 기초한다

남	최대높이 = 앉은 높이 / 0.52
여	최대높이 = 앉은 높이 / 0.533

- 무릎 위 아래의 절단결합(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 선수의 경우, 무릎 아래의 결손(위 참조)에 대한 공식은 결함이 없는 쪽의 허벅지를 측정하여 재 측정한다.

모든 조치는 ISAK 표준화 규격(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Kinanthropometry)에 따라 준거된다.

부속문서 2: 다중 지체장애의 최대허용입식 높이규정

남성

78 Stature Estimation from Body Segment Lengths in Young Adults—Application to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able 4 Regression equations on male sample

Code	R ²	RMSE	PE	Stature (cm)=
M 1 _m	0.978	1.41	1.54	1.346+1.023 * lower leg+0.957 * sitting height+0.530 * thigh+0.493 * upper arm+0.228 * forearm
M 2 _m	0.978	1.43	1.54	1.575+1.087 * lower leg+0.969 * sitting height+0.532 * thigh+0.551 * upper arm
M 3 _m	0.978	1.44	1.47	0.947+0.135 * arm span+0.914 * sitting height+0.545 * thigh+1.067 * lower leg
M 4 _m	0.975	1.53	1.50	2.630+0.992 * sitting height+1.245 * lower leg+0.609 * thigh+0.216 * foot
M 5 _m	0.974	1.54	1.49	2.590+1.027 * sitting height+1.302 * lower leg+0.613 * thigh
M 6 _m	0.969	1.69	1.77	2.354+0.179 * arm span+0.948 * sitting height+1.376 * lower leg
M 7 _m	0.963	1.84	1.85	4.866+1.753 * lower leg+1.109 * sitting height
M 8 _m	0.961	1.89	1.91	-5.272+0.998 * sitting height+0.855 * thigh+0.882 * upper arm+0.820 * forearm
M 9 _m	0.955	2.03	2.03	-6.059+1.059 * sitting height+0.953 * thigh+1.233 * upper arm
M 10 _m	0.936	2.43	2.62	-5.857+1.116 * sitting height+1.435 * upper arm+1.189 * forearm
M 11 _m	0.931	2.52	2	-7.517+1.283 * sitting height+1.439 * thigh
M 12 _m	0.928	2.57	2.82	29.795+0.333 * arm span+0.935 * lower leg+0.673 * thigh+0.771 * foot
M 13 _m	0.927	2.60	2.49	-9.049+ 0.527* arm span+0.973 * sitting height
M 14 _m	0.923	2.65	2.88	31.768+0.411 * arm span+1.043 * lower leg+0.673 * thigh
M 15 _m	0.922	2.67	2.97	-7.217+1.231 * sitting height+2.075 * upper arm
M 16 _m	0.920	2.72	2.91	36.224+0.979 * lower leg+0.856 * upper arm+1.183 * foot+0.723 * thigh+0.402 * forearm
M 17 _m	0.918	2.73	2.85	37.010+1.075 * lower leg+0.954 * upper arm+1.270 * foot+0.729 * thigh
M 18 _m	0.910	2.87	2.97	34.937+0.479 * arm span+1.426 * lower leg
M 19 _m	0.908	2.91	2.98	41.771+1.421 * lower leg+1.518 * foot+0.887 * thigh
M 20 _m	0.903	2.98	2.98	41.642+1.493 * lower leg+1.238 * upper arm+1.360 * foot
M 21 _m	0.890	3.19	3.38	31.176+1.382 * upper arm+1.123 * thigh+1.068 * forearm+1.123 * hand
M 22 _m	0.884	3.25	3.18	50.870+1.899 * lower leg+1.559 * upper arm
M 23 _m	0.883	3.23	3.61	37.026+1.507 * upper arm+1.164 * thigh+1.451 * forearm
M 24 _m	0.883	3.27	3.16	49.629+2.099 * lower leg+1.732 * foot
M 25 _m	0.862	3.55	3.66	40.422+ 2.232 * upper arm+1.382 * thigh
M 26 _m	0.844	3.79	3.88	35.854+2.203 * upper arm+1.577 * forearm+1.400 * hand
M 27 _m	0.834	3.91	4.15	43.424+ 2.398 * upper arm+2.083 * forearm

Code M n_m: M,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n°, serial number; m: male. RMSE: root mean square error. PE: pure error

여성

Table 5 Regression equations on female sample

Code	R ²	RMSE	PE	Stature (cm)=
M 1 _f	0.959	1.57	1.25	1.772+0.159 * arm span+0.957 * sitting height+0.424 * thigh+0.966 * lower leg
M 2 _f	0.959	1.57	1.34	2.305+1.013 * lower leg+0.970 * sitting height+0.451 * thigh+0.513 * upper arm +0.253 * foot
M 3 _f	0.958	1.59	1.34	2.907+1.062 * lower leg+1.005 * sitting height+0.453 * thigh+0.529 * upper arm
M 4 _f	0.955	1.65	1.33	3.326+1.007 * sitting height+1.219 * lower leg+0.523 * thigh+0.299 * foot
M 5 _f	0.954	1.67	1.31	4.082+1.285 * lower leg+1.049 * sitting height+0.528 * thigh
M 6 _f	0.951	1.71	1.45	1.815+0.212 * arm span+0.975 * sitting height+1.173 * lower leg
M 7 _f	0.940	1.89	1.55	5.192+1.711 * lower leg+1.116 * sitting height
M 8 _f	0.936	1.96	1.73	-0.126 +1.022 * sitting height+0.698 * thigh+0.899 * upper arm+0.779 * forearm
M 9 _f	0.929	2.06	1.92	-0.686+1.061 * sitting height+0.814 * thigh+1.237 * upper arm
M 10 _f	0.918	2.22	2.14	-4.102+0.509 * arm span+0.966 * Sitting height
M 11 _f	0.911	2.3	2.04	-0.559+1.094 * sitting height+1.325 * upper arm+1.229 * forearm
M 12 _f	0.892	2.54	2.34	-1.663+1.184 * sitting height+2.039 * upper arm
M 13 _f	0.894	2.51	2.23	0.685+1.246 * sitting height+1.306 * thigh
M 14 _f	0.875	2.74	2.68	35.709+0.328 * arm span+0.803 * lower leg+0.535 * thigh+0.973 * foot
M 15 _f	0.866	2.84	2.96	40.436+1.009 * lower leg+1.359 * foot+0.627 * thigh+0.939 * upper arm
M 16 _f	0.864	2.86	2.66	41.582+0.417* arm span+0.888 * lower leg+0.522 * thigh
M 17 _f	0.852	2.98	2.77	42.556+0.489 * arm span+1.142 * lower leg
M 18 _f	0.851	2.99	3.13	45.104+1.399 * lower leg+1.526 * foot+0.776 * thigh
M 19 _f	0.825	3.24	3.10	42.361+1.240 * upper arm+0.934 * thigh+1.239 * hand+0.973 * forearm
M 20 _f	0.822	3.26	3.36	50.489+2.047 * lower leg+1.693 * foot
M 21 _f	0.815	3.33	3.20	41.502+1.578 * upper arm+1.075 * thigh+1.645 * hand.
M 22 _f	0.795	3.50	3.49	52.044+2.077 * upper arm+1.154 * thigh
M 23 _f	0.780	3.63	3.36	46.344+1.870 * upper arm+1.630 * forearm+1.278 * hand
M 24 _f	0.769	3.71	3.57	53.970+2.105 * upper arm+1.966 * forearm

Code M n_f: M, multiple regression equation; n°, serial number; f, female. RMSE: root mean square error. PE: pure error

(Canda, A. (2009). Stature estimation from body segment lengths in young adults: Application to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Anthropology, 28(2):71-82)

부록 3: 소집실에서 MASH 확인절차

1 소개

세계장애인육상 규칙 및 규정의 6.13에 따라, 선수는 실제 키는 경기용 의족의 MASH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선수의 키는 소집실 심판원이 소집실에서 측정한다. 선수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경기를 시작할 수 없으며, 규칙 6.21에 따라 결과에 “DNS”로 표시된다.

이 문서는 지역조직위원회(LOC)와 소집실 심판원이 선수가 MASH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집실에서 제공할 장비와 따라야 할 절차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2 소집실 장비

소집실에서 선수의 키를 측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장비(LOC에서 제공해야 함)가 필요합니다:

2.1 스타디오미터 (혹은 장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

스테디오미터는 높이를 측정하는 장비 중 하나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자와 머리 꼭대기에 놓이도록 조정된 슬라이딩 수평 헤드피스로 구성된다. 자유 유형의 스타디오미터 혹은 벽걸이형 스타디오미터가 있으며, 이는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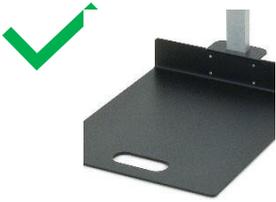
자유 유형의 스타디오미터		벽걸이 형 스타디오미터	
	 <p>Example of an acceptable baseboard</p>		
	 <p>Example of a baseboard which is raised and too narrow</p>		

그림 1: 스타디오미터 유형

기구 유형과 상관없이, 측정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선수는 머리, 어깨 면적, 엉덩이를 뒤에 붙인 상태에서 수직 극으로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족의 가장 뒤 부분이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폴 뒤에 배치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벽걸이 형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벽이 아닌) 단단한 수직 기둥에 고정해야 하는 경우, 선수가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 있는 동안, 기둥은 의족의 일부가 뒤에 배치될 수 있을 정도로 기둥이 충분히 좁아야 합니다. (아래 2.2.2a 참조)

만약 자유 유형의 스타디오미터를 사용한다면, 발판은 의족을 엉덩이 바로 아래에 두고 약 15cm간격으로 선수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충분히 넓어야 합니다. 측정값은 센티미터와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림 2: 선수는 의족의 가장 뒤 부분이 기둥 뒤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선수는 기구 혹은 벽에 등지고 선다.

2.2 금속 측정 기구

금속 측정 기구는 특히 벽에 부착된 스테디오미터를 고정할 때, 스테디오미터를 설치할 때 측정의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3 기포관수준기

기포관수준기는 스테디오미터의 수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 측정 막대를 선수의 머리 위에 위치시켜 스테디오미터의 정확한 수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림 3: 기포관수준기

2.4 수평면 공간

스테디오미터는 바닥이 수평면인 공간의 소집실에 배치해야 합니다. 스테디오미터가 위치할 바닥이 단단한 경우, 선수의 의족에 부착된 날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깔개(예. 합성 트랙

혹은 고무 매트)를 바닥에 위치시켜야 한다. 선수 대기실에서 소집실에 있는 별도 공간의 측정기구까지도 바닥표면에 의족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소집실에서 MASH 검증을 위한 절차

3.1 경기 전

경기 전, 소집실 심판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스타트 리스트를 검토한다:
 - a. T/F61-62 등급의 모든 선수들을 확인한다;
 - b. 해당 선수가 경기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여 소집실에 입장하는 시간을 확인한다.
 - c. 해당 선수의 MASH로 리스트를 작성한다. 각 MASH는 WPA MASH 마스터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MASH 검증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가 소집실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 문서의 섹션 1 참조)
3. 소집실에는 하나의 패널 당 MASH 측정위원이 최소 2명 이상 배정되어 선수가 MASH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명으로 구성된 측정위원 중 한 명은 측정자와 기록자 역할을 하고 다른 한 명은 균형을 선수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한다. 한 패널에 세 명의 측정위원이 구성되면 한 명은 측정자, 다른 한 명은 기록자, 나머지 한 명은 선수의 보조역할을 한다. 소집실 심판원은 패널의 구성원 중 한 명일 수 있습니다.

3.2 경기 중

경기 중, 패널에 측정위원이 배정되면 선수가 경기하는 모든 단계 및 라운드 포함 전에 모든 T/F61/62 선수에 대한 MASH를 확인해야 한다. MASH 확인은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1. 선수들은 경기용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선수는 최대한 바로 서있어야 한다. 다음 그림4와 같이 수행한다:

- a. 선수는 스테디오미터 또는 스테디오미터가 부착된 단단한 기둥의 발판(단단한 나무/고무)위에서 의족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가능한 똑바로 선다;
- b. 선수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기둥과 맞닿아야 한다:
 - i. 머리 (가능한)
 - ii. 어깨 면적(견갑골)
 - iii. 엉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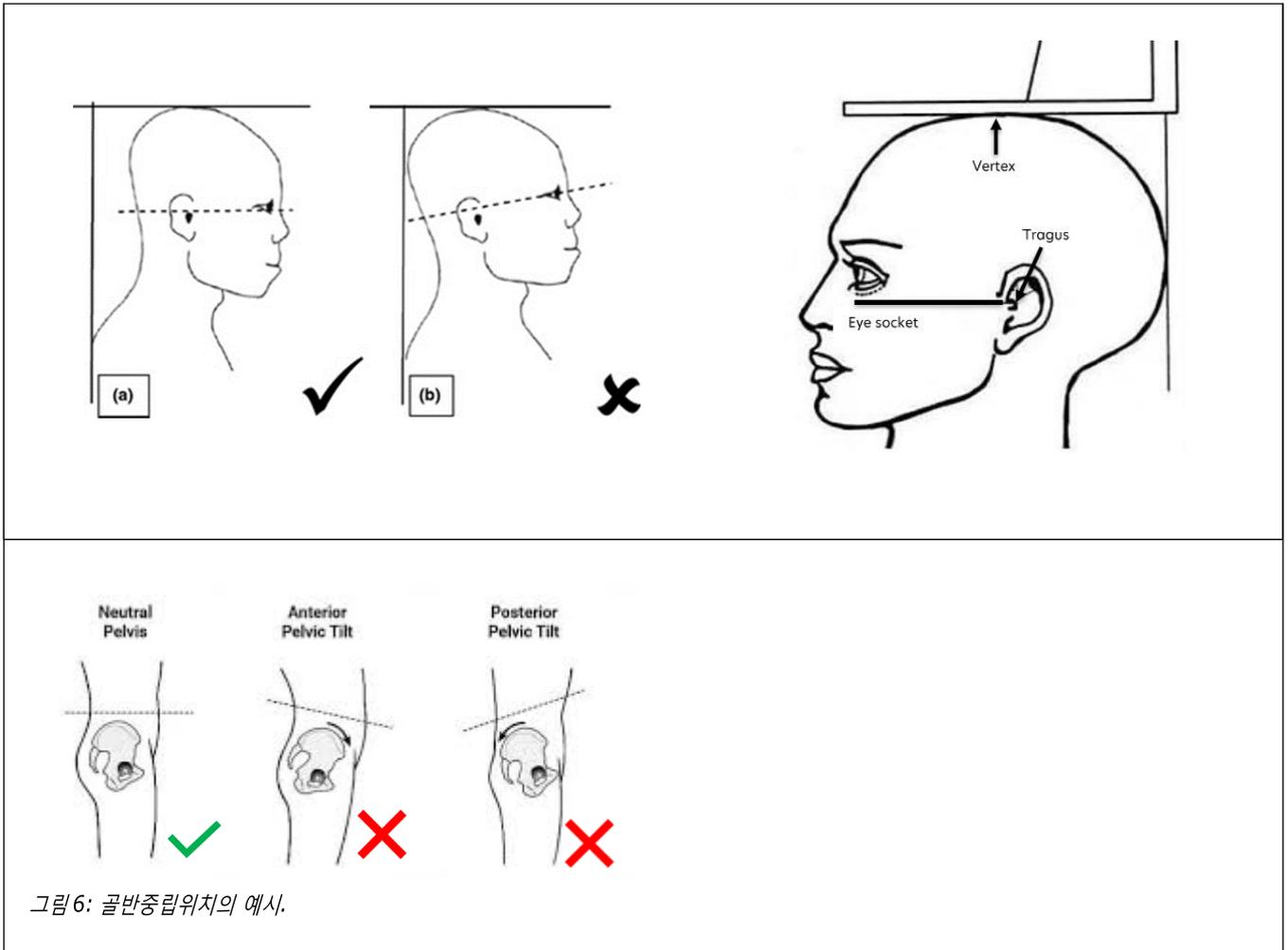


그림4: 선수의 정확한 자세

이 세 지점이 기둥에 맞닿기 위해서는 의족의 가장 뒤쪽 부분이 기둥의 양쪽에 있어야 할 수 있다. 위의 그림4를 참조;

3. 담당 측정위원은 선수를 배치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a. 목이 중립위치에 있다. (즉, 머리는 Frankfort Plane에 위치한다. -안와연과 귀 이주를 수평이다. 정렬된 경우 정점은 두개골의 가장 높은 지점(vertex)입니다. (그림5);
 - b. 골반과 엉덩이가 중립에 있다(그림6);
 - c. 무릎 핀 상태.

선수가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수는 팔을 사용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예: 높은 의자 사용) 또는 측정위원의 도움을 받습니다. 선수가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지대는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그림4 참조)



4. 선수의 입석 높이는 항상 WPA MASH 마스터 목록에 기록된 MASH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선수가 MASH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소집실 심판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선수는 WPA 규정 6.13에 따라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5. 측정요원은 MASH 유효성 검사 양식(부속문서 4의 예)를 작성하여 경기가 끝날 때마다 기술대표(TD)에게 제출해야 한다. 템플릿 MASH 유효성 검사 양식도 아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orld Para Athletics

Adenauerallee 212-214
53113 Bonn, Germany

Tel. +49 228 2097-200
Fax +49 228 2097-209

info@worldparaathletics.org**www.worldparaathletics.org**